

아시아 · 대양주

3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타이베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2014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4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터키(서비스·투자) 뿐 아니라 중국과 FTA를 타결함으로써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을 잇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수출 애로인 비관세장벽 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세계 각국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을 자국 기업을 육성·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 건수도 2013년에 1,6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2013년 9월에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중 FTA 내에 비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였고,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에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분야별 및 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와 무역장벽보고서(제1권) 등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목차

1. 무역장벽 보고서
2. 분야별 통상환경
3. 아시아·대양주
4. 아메리카
5. 유럽
6. 아프리카·중동



중국	2
일본	133
뉴질랜드	158
대만(타이베이)	169
라오스	183
말레이시아	200
몽골	239
베트남	257
싱가포르	291
인도	308
인도네시아	333
카자흐스탄	405
캄보디아	433
타지키스탄	450
태국	458
투르크메니스탄	470
파키스탄	489
파푸아뉴기니	508
필리핀	522
홍콩	541

아시아·대양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타이베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3

중국

중국 경제현황

중국은 지난 2010년 GDP 5.95조달러로 일본(5.50조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3년 중국의 GDP는 56조8,845억 위안이며, 1인당 GDP는 41,908위안(6,750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가운데 GDP가 1조위안을 상회하는 지역은 24곳이며, 텐진(16419달러), 베이징(15,216달러), 상하이(14,652달러) 등 1인당 GDP가 1만달러가 넘는 도시는 65개인 바, 이 도시들의 총인구는 전 중국 인구(13.6억)의 23.0%인 3억1,268만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007년까지 두 자리수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2008-11년간 9~10%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최근 중국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해간다(穩中求進)」는 목표하에 경제발전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소비위주의 내수 중심 성장모델로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을 통한 구매력 확충을 꾀하고 있으며, 전통산업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의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12년 및 2013년 연속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0.10.27일 발표된 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12.5 계획)에 따르면 12.5 계획(2011~15년간)의 경제사회발전 목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주민소득의 증가, △사회건설강화, △개혁개방 등이다. 또한,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①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②과학기술진보 및 혁신, ③민생보장 및 개선,

④자원절약 및 환경 친화적 사회건설 ⑤개혁개방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7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을 지정하고,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자유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제수지흑자 누적, 투자과잉, 환경오염, 외국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외자 평등과 선별적 외자유치 전략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으며, 외자기업에 대한 과거 우대정책이 축소되고, 세무, 노무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기업소득세에 대한 내·외자 기업간 차별적 세율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新노동계약법의 제정(2008년)으로 인건비 우위에 따른 제조기지로서의 장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관련 규제도 점차 강화되어 오염유발 산업의 투자 유치도 점차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신산업·첨단기술·내륙 투자는 환영을 받지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요 지역개발 정책, 서부대개발(서부 12개 성시), 중부굴기(중부 6개 성), 동북진흥(동북 3개성 및 내몽고)에 따라, 동 지역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이러한 경제정책 변화를 숙지하면서, 부상하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경제 주요지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총생산 (GDP, 조달러)	5.0 (세계 3위)	5.9 (세계 2위)	7.3 (세계 2위)	8.4 (세계 2위)	9.3 (세계 2위)
경제성장률	9.1%	10.3%	9.2%	7.7%	7.7%
1인당 GDP (달러)	3,678	4,291	5,432	6,173	6,838
무역액 (억달러)	22,073 (-13.9%) 세계 2위	29,727 (34.7%) 세계 2위	36,421 (22.5%) 세계 2위	38,667 (6.2%) 세계 2위	41,512 (7.3%) 세계 1위
무역수지흑자 (억달러)	1,961	1,831	1,551	2,311	2,693
FDI (억달러)	900	1,057	1,160	1,117	1,264
외환보유고 (억달러)	23,992 (세계 1위)	28,437 (세계 1위)	31,811 (세계 1위)	33,116 (세계 1위)	38,213 (세계 1위)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자료원 : 국가 통계국

무역액, 무역수지흑자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FDI, 외환보유고 자료원 : 중국 외환관리국

한·중 경제관계 현황

1992.8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수출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다. 한·중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후 2013년까지 64억달러에서 2,289억달러(자료원: 한국무역협회)로 약 35배가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는 13만명에서 691만명으로 무려 53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09~13년) 한중 교역은 연평균 10.6% 성장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한국과 중국간 총 교역규모는 2,289억달러(한국 통계)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1,459억달러, 수입은 2.8% 증가한 830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에 대해 40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물론 최근 유럽 채무위기 영향으로 중국의 대외수출이 감소하면서 한중 교역도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한중 교역액은 2,289억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38억달러(8.6%)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격

히 위축되었던 한중교역이 위기가 진정되면서 점차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지난 2013년 실제투자 기준으로 연간 51.1억달러(출처: 수출입은행)였고, 2013년까지의 총 투자금액(누계)은 448.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가 지난 2009년 이후 미국에 이어 2위 투자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데이터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중국 투자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과거 2000년 산동, 천진, 요녕, 길림 등 진출 업체 비중이 전체 투자기업의 55%(누적 집계)를 차지한데 비해, 2014년에는 37%(누적 집계)로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강소성, 상해 등 동남지역으로의 진출은 2000년 20%(누적 집계)에서 2014년 27%(누적 집계)로 급증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업 진출이 확대되어, 1990년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업체 수 기준)이 각각 86%와 9.8%였던데 반해, 2013년에는 각각 77%와 20%로 두 업종의 격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의 대중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3년 동안 누적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308억달러로 중소기업 200억달러에 비해 약 1.5배를 투자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대기업 투자금액이 중소기업을 추월하여 2007년부터는 약 2배로 투자가 급증하였다. 넷째, 중국의 임금상승, 세금혜택 축소, 환경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우리기업의 투자패턴도 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지역, 서비스업,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최근 한중간 인적교류 확대로 문화·관광분야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중국인의 의료관광비자 발급건수는 3,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76.5%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동 분야 중국 고객 유치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자료원: 글로벌 윈도우 (K-메디컬, 중국 의료 관광객과 공생관계 맺자)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중국은 1992년부터 2006.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관세인하를 계속하여 평균관세율이 2000년 15%에서 2005년 10% 및 2006년부터 현재까지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중·미간 협상에서 2005년까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9.4%까지 낮추고 농산품 관세율을 2004년까지 1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767개이고, 평균 잠정관세율은 4.4%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1.1.1일부터 관세의 전체 수준을 재인하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관세인하 조정을 통해 중국의 평균 관세수준은 종전의 16.4%에서 15.31%로 인하되었으며 평균 인하율은 6.6%에 달했다. WTO 양허내용에 따라 2002.1.1일부터 총 4,315개 품목(전체의 59%)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평균 관세율이 12%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HS 코드)은 7,316개로 확대되었다. 2003.1.1일부터 3,000여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 관세율이 11%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HS 코드)은 7,445개로 확대되었으며, 2004.1.1일부터 2,414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이 10.4%로 인하되었다. 2005.1.1일부터 1,000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이 9.9%로 인하되었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7,550개로 확대되었다. 2006.1.1일부터 143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유지하였고,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7,605개로 확대되었다. 이후 매년 일부 품목의 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나 평균관세율은 9.8%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2년의 경우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8,194개로 확대하였고, 2013년에도 일부 부세칙세목을 조정하여 세목의 총수를 8,238개로 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수출입관리 강화 및 국제무역분쟁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CNC 크랭크축 연마기, 3D프린터, 용접 로봇, 수정, 알렉산더 보석 등 품목을 추가하여 수출입세목은 2013년의 8,238개로부터 8,277개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최혜국세율 이외에도 ‘중국-아세안 FTA’ 조기정착을 위한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조기 자유허획(Early Harvest)’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2005. 7.20일 부터 7,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09.1.1일부터 6,750개 품목에 대하여 최혜국세율 대비 평균 80%의 특혜폭을 유지하였으며, 2010. 1.1일부터는 6,800여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관세율 0.1%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99%의 특혜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경제무역관계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해 2004.1.1일 부터 홍콩산 제품 374개 품목과 마카오산 제품 311개 품목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약품, 플라스틱고무제품, 방직원료 및 방직품, 귀금속, 식품, 제지, 음반 등과 마카오의 의류, 반도체, 규산염 시멘트, 동박, 플라스틱포장용지 등이 영세율 적용 혜택을 입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2013년의 경우 홍콩산 제품 1,760개 품목과 마카오산 제품 1,271개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ITA 협정에 따라 2005.1.1일부로 모든 정보통신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수입관세율도 3.0L이하의 소형승용차가 2003년 38.2%에서 2004년 34.2%로, 3.0L 이상 자동차는 43.0%에서 37.6%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30%



로 하락한 이후, 2006.1.1일 28%로 하락하고 2006.7.1일부로는 25%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8.9%에 달하고 농산품은 15.2%까지 하락했다.

중국의 관세인하는 수입증대 및 그에 따른 관세수입증가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수입을 확대하고 국내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올 해 784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할 것인 바, 특히 추가된 항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향신료, 특수조제된 영유아 분유, 심장박동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둘째, 자동차생산라인로봇, 잉크젯프린터, 유기발광이극진공관 디스플레이, 전동자동차용 변환모듈, 리튬전자축전지 등 장비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발전을 위한 설비, 부속품 및 원재료

셋째, 고효율, 운모판, 텅스텐 등 에너지지원형 제품 및 자원절약형 환경보호제품

넷째, 사료반죽분사기 등 농업지원형 제품

다섯째, 오리털, 아마섬유, 자동 방적기 등 섬유산업발전을 위한 제품

지속적 경제발전 및 자원절약형, 환경보호형 사회건설을 위하여 석탄, 원유, 화학비료, 철강합금 등 고오염, 고소모성 및 자원성품목에 대하여 수출잠정세율형식의 관세를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한편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비수기 계절수출관세율을 낮추고 화학비료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징수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인하 조치는 수입우대정책의 점진적 폐지 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조치와 밀수방지강화 등 관세보호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체 관세수입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 중국 관세율 조정추이

연 도	평균관세율(%)	평균인하율(%)	조정대상품목
1992.12	43.2	-	2,898
1993.12	35.9	16.8	3,371
1996. 4	23.0	35.9	4,900
1997.10	17.1	26.0	4,874
1999. 1	16.7	2.4	-
2000. 1	16.4	1.7	-
2001. 1	15.3	6.6	3,462
2002. 1	12.0	21.5	5,332
2003. 1	11.0	8.3	3,000
2004. 1	10.4	5.4	2,414
2005. 1	9.9	4.8	900
2006. 1	9.8	0	143
2007. 1	9.8	0	47
2008. 1	9.8	0	45
2009. 1	9.8	0	16
2010. 1	9.8	0	6
2011. 1	9.8	0	8
2012. 1	9.8	0	
2013. 1	9.8	0	

* 출처: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

한편 한국과 중국은 2000.3.10일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적용 양허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 즉시 인하효과가 있는 품목 55개가 선정됐다. 중국은 200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739개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 이후 ▷757개 품목(2003년) ▷902개 품목(2004년) ▷928개 품목(2005년)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늘려왔다. 2005.11월부로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9.1일부로 3차 관세양허안이 실시됐다. 그 조치로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를 제외한 회원국의 1,71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또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화공제품, 목제품, 플라스틱 제품, 피혁, 금속제품, 기계전기 제품들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관세가 인화된 품목수는 2005년 928개에 비해 789개 품목이 증가하고 평균 관세인하율은 27%에 달하였



다. 2008.1.1일부터 1,709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4%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09.1.1일부터 1,751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10.1.1일부터는 1,767개 품목에 대하여 평균 23.3%의 관세율을 인하하였고, 2013.1.1일부터는 1,875개 품목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수입규제

(1)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중국은 국내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정부는 2002.1.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수입허가증은 수입허가증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성의 대외경제무역청 또는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파견사무소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2002.1.1일까지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제품 관련 비관세조치(쿼터, 허가증, 가전제품 특정입찰)를 폐지하였다. 중국은 이미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에 있어 소맥, 양식, 면화 등 대부분의 농산품에 대하여 과거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 제도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1.1일부로 밀 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한 관세쿼터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쿼터외로 수입하는 일정수

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환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쿼터 및 허가증 등 직접적인 관리제도 조치를 큰 폭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에 맞추어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貨物進出口管理條例)>, <화물수입허가증 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수출허가증관리규정(出口許可證管理規定)>, <기계·전자수입관리방법(機電產品進口管理辦法)>,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방법(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기계·전자상품 수입쿼터관리실시세칙(機電產品進口配額管理實施細則)>, <수출상품쿼터관리방법(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등 일련의 수출입 관리제도를 발표, 수출입쿼터와 허가증관리 제도를 수정하였다.

(2) 특정상품 수입 자동 등록관리제도

합리적인 외환관리 및 주요상품 및 주요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 관리제도를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2005.1.1일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7년 <자동수입허가화물관리목록>은 당초 1,098개였으나, 중국 상무부는 2007.4.1일부터 플라스틱원료(HS 3901100001 등 13개), 펌프, 버너, 인조섬유기계, 세척기, 표백기, 염색기, VCD/DVD, 의료용 기기(8413110000 등 140개), 강재(스테인레스 제외), 강괴(7208100000 등 176개) 등 329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품목이 재조정되어 2014년 현재 599개 품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고,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중국이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심사허가 사항이 아닌 일종의 신고제도로서 해당기업이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따라서 자동수입 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의 축소가 수입 간소화 정책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통해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자동수입허가 기계전기제품 리스트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세번에 따라 상무부 또는 각 지방, 부분별 기전산품 수출입 판공실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입상품의 분류(分級) 관리제도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 2, 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 분류관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進口國營貿易管理貨物)”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國營貿易專業公司(국영무역전문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進口指定經營管理貨物)”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은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으로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한 수입관리제도는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일시에 철폐를 하지 못하더라도 품목별로 철폐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전시물품 수입관리 제도

1997.4월부터 新규정을 제정하여 전시용 수입물품의 국외반출 기간을 6개월로 연장, 전시회 개최 중의 면세수입 물품, 물품의 성질, 용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단 주류의 면세조치는 폐지되었다.

(5) 중고 기계·전자제품 수입제한

안전문제, 환경오염 등을 중시하여 1998.1월부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다만,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機電產品進出口司)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외국계 기업의 경우 소재지 전자상품관리국을 통해 신청·허가가 필요하다.

1998.11.1일부터 외국계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중고기계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세관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6) 수입자동차 통관지 지정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수입은 대련항, 천진신항, 상해항, 황포항, 만주리항, 심천(深川皇崗)항, 신강 아라산구(阿拉山口)항 등 7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단, 자동차 부품은 상기 7개 지역 외에 산둥, 강문, 항주, 호화호트, 우루무치 및 천진 동항으로도 수입이 가능하다.

(7) 수입상품에 대한 전자수용 강제검사 실시

1999.1월부터 중국 정부는 전자 환경과 소비자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PC, 디스플레이, 프린터, 전원스위치, TV, 음향설비의 6개 품목에 대해 전자수용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8)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규제 관련 주요내용

폐플라스틱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사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중간원료의 경우 아래 규정을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HS 391510, 391520, 391530, 391590 네 가지 품목의 폐플라스틱의 수입은 허가하고, 폐플라스틱을 수입, 이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생산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점차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모든 수입자는 국가환경 보호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수입신청서”, “원료용 폐기물수입 환경보고서” 및 수입량



을 유관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되는 폐기물은 선적전 검사, 도착 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중국환경보호제한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반덤핑 및 반보조금 등 무역장벽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례」(2002.1.1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2013.9월말 현재 중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16건의 반덤핑 규제를 시행(이외에 2012.7월부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09.2월 TPA(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3년여만에 있는 신규 조사로서, 한-중간 교역 규모의 급성장에 비해 최근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제소건은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중국의 對韓 반덤핑규제 발동 건수

'06	'07	'08	'09	'10	'11	'12
1	1	2	1	0	0	1

그러나 13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양국간 무역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2010.8월 한국산 TPA(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원심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2~3%의 낮은 마진율을 도출하였다. 동 케이스는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 조치 중 가장 큰 규모(2011년 수출액 37억달러)였으나,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황산 및 PE/PP 등 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반덤핑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7월에 반덤핑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제품의 주요 원료로서 2011년 대중 수출액이 12억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통상 현안이다. 2014.1월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 한국산은 2.8~48.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세제상의 제한

(1) 중국의 세제

1) 개요

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등 6가지로 분류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통세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득하는 판매 수입, 영업수입 또는 재화의 수입가격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이 해당
- 소득세류: 생산, 경영자가 취득하는 이윤 또는 개인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이 해당
- 재산세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서 재산세(房產稅), 도시재산세(城市地方產稅), 차량선박세 등이 해당
- 행위세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량취득세, 인지세, 계약체결세 등이 해당
- 자원세류: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등이 해당
- 목적세류: 특정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시보



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교육세 등이 해당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문서송달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외자기업에 대해 각종 비과세 혜택 등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공평한 조세환경 조성을 이유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모두 폐지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여 2008.1.1일부터 외자기업, 내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10.12.1일부터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세 대상을 외자기업으로도 확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차이는 없어졌다.

2) 기업소득세

- 납세의무자: 중국 내의 기업 및 수입을 획득한 기타 조직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구분
 - 거주자 기업: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
 - 비거주자 기업: 외국(지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구도 중국 내에 없지만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중국 내에 기구·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
-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소득 범위
 - 거주자기업: 중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국외에서 과세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 비거주자가업: 중국 내에 기구·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기구·장소가 획득한 중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과 중국 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

○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 재화판매소득, 용역공급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특별배당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증소득(受贈所得), 기타소득 등을 포괄

○ 세율

- 기본세율: 25%, 소형저이윤기업: 20%

* 소형저이윤기업: ① 제조업: 과세대상소득 30만원안 이하, 종업원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000만원안 이하, ② 비제조업: 과세대상소득 30만원안 이하, 종업원수 80명 이하, 자산총액 1,000만원안 이하

소형저이윤기업의 기업소득세 감면: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연간과세소득이 10만원안 이하인 소형저이윤기업은 별도의 심사·비준 없이 소득의 50%를 감면하고 20%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
 <기존대상> 연간과세소득 6만원안 이하 ('12~'15년) →
 <신규대상> 연간과세소득 10만원안 이하 ('14~'16년)

- 국가가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신기술기업: 15%
- 중국 내 설립된 기구·장소와 실질적인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율: 기업소득세법 20%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의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0%)
- 비거주기업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 소득 10%(한·중조세조약 제23조)

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급여, 보너스, 개인사업 소득 등 자연인이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거주자와 비거주의 구별 및 과세범위

- 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 영구 거주자: 거주자 중 중국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 중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를 묻지 않고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영구거주자: 중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내 체재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개인.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이 과세되지만, 세무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중국 내 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중국 내국 기업·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에 의해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비거주자: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됨.

○ 과세방법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을 정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종류별로 구한 세액을 합하여 과세
-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이자·배당·특별배당소득, 일시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소득: 기본 공제(월 3,500위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800위안)액과 기본연금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산재보험비, 고용보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단계 누진세율(3~45%)을 적용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소득(사업소득):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손실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며 5~35%의 누진세율

❖ 중국에 근무하는 한국기업의 주재원에 대한 과세문제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체제기간이 1년 중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본점과 중국 지점이 지급한 모든 급여 등에 대해서 중국에서 과세되도록 한 중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구 분	체류 기간	중국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중국내 지급	해외지급
비거주자	183일 미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거주자	1년~5년 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5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4) 부가가치세(增值稅)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도 한국처럼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및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과세함)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중 어느 하나만 과세되고 두 가지 세목이 동시에 과세되지는 않는다. 만약 하나의 영업행위가 재화의 판매(부가가치세 해당) 및 서비스 제공(영업세 해당)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혼합판매행위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세는 과세하지 않음)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혼재로 부가가치세 공제사슬이 끊어져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영업세 부과 범위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사업

최근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에 과세되는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1.1일부터 상해시에서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대해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시범사업이 개시되었으며, 2012년 하반기에는 시범실시 지역을 북경, 천진, 광둥성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3.8.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4.1.1일부터 철도운수업, 우편통신업이 부가가치세로 시범 시행되는 등 업종 전 부문에 대한 영업세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 전면 전환을 단행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재화를 공급하는 자, 가공·수선교체용역을 제공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재화의 중국 내 판매 또는 재화수출, 과세노무의 제공 등
- 면세 대상: 농산품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 농산품, 피임약품과 기구, 과학연구나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기구와 설비,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수입물자와 설비 등

○ 세율

- 기본세율 17%
- 저세율 13%(식용곡물, 식물성 식용류, 수돗물, 냉방, 난방, 온수, 석탄가스, 서적, 신문, 잡지, 사료 등)
-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3%의 징수세율이 적용(‘14.7.1일부터)되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엄격한 계산서 관리

중국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용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한국의 세금계산서에 해당), 기타 부가가치세영수증, 영업세영수증의 3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세금계산서)은 모두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한다. 중국 국세청은 가짜 영수증 수수에 대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영업세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수리·수선 용역을 제외한 용역, 재화 중 유형자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부동산의 양도

○ 세 율

- 건축업, 문화체육업 3%
-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 5%
- 오락유흥업 5~20%

(2) 상주 대표기구 설립과 과세 문제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계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면세했었다. 그러나 2010.3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원관리 입장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게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중국 기업소득세법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서명한 조세협정과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되므로, 중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대표처라면 중국의 대표처 과세 원칙에 관계없이 중국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시(한·중 조세조약 제5조)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등
--

중국의 대표처 세원관리 정책의 변화로 세무적 측면에서는 대표처를 설립하는 이점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진출시 우선 대표처를 설립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내 업종별 설립 규제 등 기타 다른 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APA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 회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사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기업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을 편법적으로 해외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사 중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절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 과세당국은 20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7.11월 최초로 APA를 타결하였으며, 싱가포르, 덴마크 등과도 APA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이다.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는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관련 장벽

외자기업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및 제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 방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외자기업이 ①상품검사기구 시행 ‘종류표(種類表)’ 또는 ‘지방종류표(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②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검사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이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 하는 품목, ③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④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품목을 제외한 것을 수출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①‘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자를 대신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한다.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상품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품 검사제도 및 관련 품목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수량·중량검사, 포장상태 검사 등 수입상품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계, 전자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품질안전허가증제도를 시행하여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입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CCC 단일 강제인증제도 실시

중국 정부는 2001.12.11일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한 단일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2001.4월 국가품질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을 통합하여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의 총괄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AQSIQ)을 설치하고, 동 총국 산하에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를 설치하여 단일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 인증제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적합성 평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CCC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중국 내 10개 국가지정인증기관과 지역별 157개 국가지정 검사기관이 있다.

2003.8.1일부터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중국정부가 지정한 'CCC'인증 대상품목은 반드시 'CCC'인증을 획득하여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중국내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며, 만약 'CCC'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도용·변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CCC'인증 신청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 ②서류심사 → ③제품검사 → ④공장심사 → ⑤공장시료 채취 검사 → ⑥평가를 거쳐 심사과정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90일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2003.5.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6.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2007.6월 부터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8.6월에는 용제형 목기도로,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SFDA)을 식품의약품감독관



리충국(CFDA)로 확대 개편하여, CCC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CFDA에서 허가심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CCC 인증대상 품목은 21개 분야 152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 중국의 CCC 강제인증 품목(21종류 152개 품목)

연 번	분 류	품목수
1	전선 및 케이블	22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
3	저압형 전기장비	9
4	저공률 전동기	1
5	전동공구	16
6	전기용접기	15
7	생활용 전기제품	18
8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
9	정보기술장비	12
10	조명장비	2
11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9
12	자동차 및 안전부품	4
13	자동차 타이어	3
14	안전용 유리	3
15	농기계 제품	1
16	라텍스 제품	1
17	소방기기	3
18	기술안전보호제품	1
19	무선 로컬 네트워크제품	1
20	인테리어 제품	3
21	완구류	6
합 계		152

중국 정부는 2007.6.1일부터 유모차, 보행기 등 아동용 이동보조기구, 전기완구, 플라스틱완구, 장난감 총 등 탄환발사완구, 금속완구 및 인형 등 6종의 완구제품에 대해 CCC 인증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2006.3.1일부터 중국품질인증센터(中國質量認證中心) 등 지정인증기구에 완구 제품 CCC 인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중국은 현재 연간 완구생산규모가 500억위안에 달하고 완구생산기업도 광둥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8,000개사가 포진해 있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 수입국들이 중국산

완구제품의 품질하자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중국 내에서도 완구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중국산 완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 CCC 인증취득 대상 완구류(HS코드 기준 14개)

HS 코드	세부 품목
8712.0081	아동용 자전거
8715.0000	유모차
	보행기
9501.0000	완구 자전거, 기타 완구차
9502.1000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9502.9100	플라스틱제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인형용의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9502.9900	기타 플라스틱제 인형용 완구부품
	기타 인형용의 완구부품
9503.1000	완구전동기차 및 부품
9503.3000	플라스틱 조립식 완구
	금속 조립식 완구
9503.4900	전동 동물완구
	플라스틱 동물완구
	비전자칩부팅식 플라스틱 동물완구
	금속 동물완구
	비전자칩부팅식 금속동물완구
9503.5000	완구용 악기류
	플라스틱 완구용 악기류
9503.6000	플라스틱 퍼즐
	금속퍼즐
9503.7000	기타 플라스틱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
	기타 금속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완구
9503.8000	아동용 전동차
	아동용 전자부팅식 완구
	비전자칩 부팅식 플라스틱 완구
	비전자칩부팅식 금속완구
9503.9000	영상신호 주파수를 보유한 완구
	전자칩부팅식 완구
	기타 정적 금속완구
	탄환발사완구(완구용 화살, 완구용 표창 등)



환경관련 규제

환경관리 여건

2013년 중국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4가지 주요오염물질(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질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의 연간 감축목표를 전부 달성하여 전국의 환경질량이 일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013년 전국 주요오염물질 배출량(만톤)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년대비	배출량	전년대비	배출량	전년대비	배출량	전년대비
2352.7	2.9%↓	245.7	3.1%↓	2043.9	3.5%↓	2227.3	4.7%↓

분야별 환경상황에서는 대기오염(미세먼지, 스모그)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국의 PM10의 연평균 농도범위는 $47\sim305\mu\text{g}/\text{m}^3$ (평균 농도 $118\mu\text{g}/\text{m}^3$, 기준달성 도시비율이 14.9%), PM2.5의 연평균 농도범위는 $26\sim160\mu\text{g}/\text{m}^3$ (평균농도 $72\mu\text{g}/\text{m}^3$, 기준달성 도시비율이 4.1%)이었다. 특히, 징진지 지역 PM10 평균농도는 $181\mu\text{g}/\text{m}^3$, PM2.5 평균농도는 $106\mu\text{g}/\text{m}^3$ (베이징은 각각 $108\mu\text{g}/\text{m}^3$, $89\mu\text{g}/\text{m}^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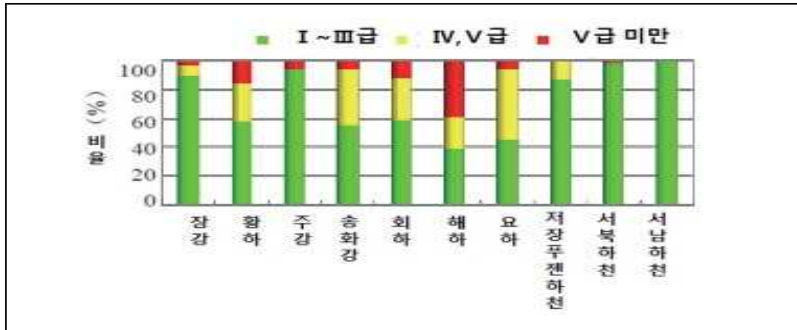
전국의 스모그 일수가 평균 35.8일로 전년대비 18.3일 증가하여 1961년 이래 최대치를 보였으며, 중동부지역에서 안개와 스모그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의 지표수는 전반적으로 약간 오염되고[황하, 송화강, 회하(淮河), 요하(遼河)], 일부 도시 하천구간은 오염이 심각한 수준[해하(海河)]이며, 많은 호소(湖沼)들이 부영양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하수는 전국 4,778개 측정지점의 59.6%가 수질이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공업 고체폐기물 발생량은 327,702만톤이고, 종합 이용율은 62.3%이었으며, 전국 도시의 생활쓰레기 수거량이 1.73억톤이었다(무공해 처리율은 89.0%).

농촌의 경우에는 건설점용, 파괴, 생태퇴화 등에 따른 농촌 경작지 감소와 퇴화문제가 심각하며, 소도시와 농촌의 환경상황이 여전히 우려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2013년 10대 유역의 수질상황



환경관리정책 및 법제 현황

중국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 헌법에 환경보호 내용을 명시하고, 1989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법령을 본격 정비하고 있다.

중국 환경법제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소음오염방지법’ 등 오염매체별 환경보호법률과 ‘수자원관리법(水法)’, ‘야생동물보호법’, ‘산림법’ 등 자연자원관리법률, 국무원이 제정·시행하는 환경보호 및 자연자원관리 행정법규(조례 등), 환경보호부에서 제정한 각종 환경기준 등이 있다.

2014년 상반기에 국가기준화관리위원회에서 비준·발표한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 발전, 생태환경보호 강화 등과 관련된 환경기준은 30여건에 달하며, 주로 공업제품의 에너지소비정량, 에너지 사용제품의 에너지 효율 한계치, 오염물질 배출량 등과 관련된 기준들로서 <도시오수처리장 운영감독관리기술규범>, <화력발전소 집진사업 기술규범>, <화



력발전소 연기정화시설 운영관리 기술규범>, <유전폐수정화사업 기술 규범>, <위험폐기물 처리사업 기술준칙> 등이 새로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법’은 2014.4.21일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으로 2015.1.1일 정식 발효 예정이다. 새로운 환경보호 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늘고, △기본국책으로서 환경 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 처벌 강화 등 내용도 대폭 신설 또는 보강되었다.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95년과 ‘00년 두 차례 수정 이후 제3차 수정¹을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오염물 배출허가제도 실시, 석탄, 자동차, 먼지 등 중점분야 및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추진된 주요 환경관리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주요 오염물 총량배출 저감을 위하여 <12.5기간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종합사업방안>, <국가환경보호 12.5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 12.5규획>을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염색 등 중점업종에 대해 폐수정밀처리 및 회수사업을 실시(842건 프로젝트)하고, 12,724개 축산양식장의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이용시설을 보완하였으며, 화력발전기계의 탈황시설 개조 및 철강소결기 배연탈황시설 신설(2.36만㎡), 석탄가스화 개조사업(가스 사용량 26억㎡ 증가), 석유정제업종의 탈황시설 설치, 탈질기계 신설, 낡은 자동차 퇴출(183만대), 환경오염방시설의 비정상적인 운행행위 단속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특히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3.9월 제정한 <국가 대기오염방지 행

1_ 현재까지 제출된 수정관련 의견에 따르면, 대기오염 발생시, 성(省)급 인민정부는 제때에 예보를 발령해야 하며, 현현(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기업에게 생산정지,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석탄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허가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중점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는 구역에 대해 환경평가 심사를 중지하는 등의 대기오염방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동계획(2013~17년)>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여, 2013년 1월부터 국가 제 5단계 기체연료 점화식엔진 및 자동차 배출기준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 질량 예보정보센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74개 도시를 공기질량 신규기준 제1단계 측정실시 대상도시로 지정하고 496개 측정지점의 6가지 오염물질의 실시간 농도와 공기질량지수(AQI) 정보를 공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전국자연보호구 종합관리를 위해 2013년에 국무원이 <국가급 자연보호구 조정관리규정>을 출범하여 국가급 자연보호구 44곳을 지정하였으며, 국가급 자연보호구 384곳에 대한 인류활동 원격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완성, 전국자연보호구 기초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유엔생물다양성 10년 중국행동방안(2013년)>을 제정하였다.

고체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전국위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규획>에서 확정한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건설사업(41건),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 건설사업(253건)을 완성하고, <폐가전 전자제품 처리기금 등 정책에 관한 통지> 등 제도를 보완하였다.

2013년에 중앙재정의 농촌환경보호 전문자금 투입규모가 60억 위안에 달하고, 전국 농업비점오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농경지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국가통제지점이 270개로 증가하였다. 농촌청정시범마을을 1,600개 건설하고, 농촌 음용수안전 프로젝트 건설에 중앙과 지방에서 농촌음용수안전 프로젝트 건설에 324.35억 위안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녹색순환 저탄소 교통운송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의견>을 출범하여 녹색교통 발전을 촉진하고, 공로와 수로의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자금투입을 강화(공로 환경보호에 125억 위안을 투입)하고, 우시(無錫) 등 10개 도시에서 저탄소 교통도시 지역성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교통운송 분야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감축을 추진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종합조치를 통한 석탄소비량 감축(2013년에 원탄소



비량이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0%를 차지), 소형 화력 발전기계 퇴출 등 에너지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다.

기업 환경오염 규제시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한 이후, 동 제도는 지속 보완되어 2003.9월에는 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평가·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2009.10월에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높여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사회,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획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시행되었다.

(2) 청정생산제도

2003.1월부터 청정생산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생산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정생산 활성화와 청정생산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정생산심사방법」을 2004.9월에 제정하였고, 세부 심사절차를 규정한 「중점기업 청정생산 심사절차규정」을 2005.12월에 제정하였다. 심사방법에 따르면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적 심사와 강제심사로 구분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족한 기업에는 자발적 심사를 장려하며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 배출총량이 규정을 초과한 기업(1부류), 생산과정에서 유독유해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2부류)은 강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2.7월에 ‘청정생산촉진법’을 수정하여 청정생산심사를 강제 적용하

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는 기업의 친환경관리를 촉진하고자 2003년에 환경친화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지표, 관리지표와 제품지표 등 심사지표에 근거하여 심사 후 우수기업에 ‘국가환경친화기업’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3) 제품생산자 책임제도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부터 회수처리와 재생이용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자제품의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을 제정(2006.2.28일 발표, 2007.3월 시행)하였으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의무, 사전인증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2006년에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강화 사업에 관한 의견’(환발 [2012] 제157호)을 반포하여 2015년까지 전자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기반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을 확정(2006.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비율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순환경제촉진법’이 2009.1월 제정·시행되었으며, 순환경제계획제도, 자원낭비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제도, 순환경제 평가제도와 심사제도, 생산자 책임연장제도, 에너지 다소비 및 수자원 다소비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전문관리 감독제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장려조치, 순환



경제발전기금, 세수특혜 등)를 포함하고 있다.

(4) 기타 기업환경 관리제도

환경기준은 대표적으로 환경질기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있으며, 국가 기준을 표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준을 시행하므로 국내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대기·수질 오염배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배출 신고 등기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간에 소재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오염배출 현황을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며, 관련 오염방지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 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오염 배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 오염배출 허가증제도(오염 배출업체의 허가배출 오염물 수량과 종류 및 배출 행방 등을 규정), 오염사고 보고 의무 등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이나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환경오염행위는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을 지게 된다.

중국 정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산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위반기업의 블랙리스트 공표 및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집법 사후감찰도 철저해 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예정인 우리기업들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방비체계가 긴요하다.

환경관련 주요 신규 정책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축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환경관련 부문별 정책 목표와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하는 각종 계획을 다수 발표하였다.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 발표(2011.12월),²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 결과(2012.11.8~14),³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2013.3월)⁴ 등에서도 대폭 강화된 환경관련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전환에 따라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2012.5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9월)과 같은 분야별 추진계획들도 속속 발표되었다.

(1) 12.5 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통제사업 방안

중국 국무원은 2011.12.27일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한 사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관하여 국무원 차원에서 발표한 최초의 정책문서로서 12.5계획 기간의 주요목표와 중점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목표는 2015년까지 단위 GDP(1만위안, 2005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톤으로 통제하여 2010년 대비 17%, 2005년 대비 34% 감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체제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온실가스배출량 통제심사체제 및 탄소배출거래시장을 구축하며, 각 지역의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 재생에너지 발전 상황, 삼림의 탄소고정 잠재능력 등 요인과 일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2.5계획 기간 각 지역의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절약 및 소비량 저감, 저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고정 능력제고,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의 절약과 대체 가속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_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주요 오염물질 총량 감축, 환경산업 발전, 농촌 환경보호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

3_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을 4대 중점추진분야로 채택하고, 당장에 '생태문명 건설'을 최초로 삽입

4_ 경제발전 방식 전환(내수확대, 환경보호, 해양관리 강화 등), 도시와 농촌의 호혜·상생, 민생개선, 개혁개방 심화 등을 강조



(2) 국가 환경보호 12.5 계획

중국 정부는 12.5 계획 기간 환경보호사업의 과학적 발전을 추진하고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제정하였다. 2015년까지 주요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뚜렷하게 감소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음용수상수원 환경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수질을 대폭 개선시키고, 중금속 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위험 화학품, 위험폐기물 등에 대한 오염방지 효과를 뚜렷하게 하는 한편, 도시의 환경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수준을 제고하고 생태환경 악화추세를 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목표책임제 시행, 종합 정책결정 메커니즘 보완, 법규체제 강화, 환경경제정책 보완, 과학기술 지원 강화, 환경산업 발전, 투자규모 확대, 엄격한 환경법 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이행 상황과 성과를 지방정부 지도자와 간부의 종합심사 평가를 진행하는 중요기준으로 삼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3)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발전 12.5 계획

중국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계획을 제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격 및 토지정책, 세제혜택 부여 및 재정지원, 투자유자루트 확충, 기술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분 야	주요 목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산업 규모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생산총액 연평균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고, 2015년에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의 생산총액 4.5조 위안을 실현하여 GDP 대비 비중을 2%로 제고
기술설비 품질 향상	2015년까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산업 설비·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국제브랜드와 핵심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절약 및 환경설비와 제품을 개발

분 야	주요 목표
고효율 설비제품의 시장점유율 제고	2015년까지 고효율의 에너지절약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10%에서 30% 이상으로 제고 자원순환이용 제품과 환경제품 시장점유율을 현저히 제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서비스 육성	계약에너지관리 메커니즘을 채택한 에너지절약 서비스업종의 판매액을 연평균 30%씩 제고 2015년까지 연간생산액이 10억위안 이상인 전문화된 계약에너지관리기업과 환경서비스기업 20~50개 육성

(4) 환경보호장비 발전 12.5 계획

주요 목표는 2015년까지 환경장비산업의 생산총액 연평균 성장률 20%를 달성하여 생산총액 5,000억위안을 이루고, 환경장비 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을 실현하여 수출총액 100억위안을 달성하는 것이다.

주요 발전 분야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정비장비, 고체폐기물 처리장비, 소음과 진동 통제장비, 자원종합이용 장비, 환경모니터링 전문기기, 환경오염정비 부가재료와 약제, 환경비상대응장비 등이다.

(5) 환경서비스산업 발전 12.5 계획

주요목표는 12.5 기간 환경서비스업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율 40%를 달성하여 환경보호산업 중 환경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을 30%로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오염처리 시설의 사회화(社會化), 전문화된 운영서비스 중점 육성
- 종합환경 서비스 중점 육성
- 환경자문 서비스 추진 강화
- 환경 기술 서비스 발전 촉진
- 환경모니터링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발전 촉진
- 환경 서비스 표준과 평가 시스템 구축 촉진



(6)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2011~15년)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혁위’), 재정부와 수리부는 2012.5월에 발표한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계획(2011~15년)>을 통해 2015년까지의 추진목표를 확정하였다.

2010년 기준 중점유역 국가통제구간의 수질 Ⅲ급 이상 비율을 2006년 대비 13.4% 확대했고 Ⅴ급 미만 비율도 16.9%로 낮추는 등 개선추세에 있지만, 전반적인 수질오염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집중식 지표수 음용상수원지의 수질 확보 ▲성 경계구간과 오염이 심각한 지류의 수질환경 개선 ▲중점호수의 부영양화 지수 개선 ▲요하유역 오염정비 사업을 생태복원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수질환경 모니터링 능력과 예보능력 및 비상대응능력 제고 ▲주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총량과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총량을 지속적으로 저감 ▲Ⅰ급~Ⅲ급 수질구간 비율을 5%p 제고하고, Ⅴ급 미만의 수질구간 비율을 8%대로 낮춤(송화강유역, 해하유역, 요하유역과 황하중상류유역) ▲중점유역의 주요오염물질 배출총량과 하천유입 오염총량 저감(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총량을 2010년 대비 9.7% 감축하고, 암모니아질소 배출총량은 11.3% 저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해 2014.9월 환경보호부·발전개혁위·재정부 공동으로 <호수생태환경보호발전계획(2013-2020)>을 확정하여, 중국 전역의 음용수 기능을 가진 365개 호수를 대상으로 현 수질상황과 2015년 수질목표(3급 유지 또는 미달 호수를 3급으로 개선)를 제시하고, 5개 지역 구분에 따른 개선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7)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2013~17년)

국무원은 2013.9월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대 구제조치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북경-천진-하북성(京津冀) 지역과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경의 경우 PM2.5의 연평균 농도를 $60\mu\text{g}/\text{m}^3$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⁵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 종합관리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오염물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책임평가제 실시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 ▲관련 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 10대 구체조치를 제시하였으며, 북경시 등 주요 지방정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행동계획의 후속으로 환경보호부는 2014.7월 ‘징진지(京津冀) 지역(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 지역의 약칭) 및 주변지역의 중점업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제한 방안’ 발표를 통해, 2015년까지 주요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을 2013년 대비 30% 이하로 감축할 예정이며, 전력발전,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492개 기업⁶, 777개 생산라인 및 생산 유닛에 대한 강제 개선지표를 설정하였다.

환경산업 투자여건

과거 2, 30여 년간 중국의 경제발전 성과는 놀랍지만, 그로 인해 환경·생태 보호 측면에서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환경·생태 보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_ 2013년 징진지 지역 PM10 평균농도는 $181\mu\text{g}/\text{m}^3$, PM2.5 평균농도는 $106\mu\text{g}/\text{m}^3$ (베이징은 각각 $108\mu\text{g}/\text{m}^3$, $89\mu\text{g}/\text{m}^3$) 수준

6_ 관련기업 가운데 파탕발전그룹(大唐發電集團), SINOPEC(中國石化), CNPC(中國石油), Shou Steel(首鋼), 허베이강철(河北鋼鐵) 등 대기업도 포함



국무원은 2011.10월 <환경보호 중점업무 강화 의견>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 투자를 각 급(級)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중점분야인 수질오염 처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태보상특별기금 마련 및 환경보호 책임보험제도 구축 등이다.

또한 2011.12월 발표한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 따르면 12.5 계획 기간 동안 환경분야에 3조 4천억위안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⁷. 중국 정부의 환경투자는 11.5 계획 기간 이래 매년 확대되어 왔고, 오염 처리시설 운용비용, 환경보호산업, GDP 성장, 취업 등에서 견인 역할을 해왔다.

<국가환경보호 12.5 계획>에서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 감소, 수질환경 개선, 대기오염 종합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14년 3월 발표한 <국가 신형 도시화계획(2014-2020년)>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3년에 상주인구 기준으로 53.7%(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은 36%)로, 선진국의 평균 수준(80%)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오는 2020년에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위해 중국 재정부부는 향후 6년간 도시화에 42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자금은 민관합동투자(PPP)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화의 확대에 따라 환경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7_ 최근 스모그 등 환경개선 수요 증대에 따라 '14.3월 열린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14~'15년간, 2.5조 위안(435조원) 추가투자를 결정, 기존의 3.4조 위안(620조원)에서 5조 위안(870조원)으로 확대

■ 참고: 12.5 계획 중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

수질오염 방지사업	대기오염 방지사업	농촌오염 방지사업	폐기물처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농촌 오수처리 시설 • 슬러지 처리시설 • 축산폐수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황, 탈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 시설 설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종합 환경 정돈사업 • 농업에서 비점 오염원 감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위험 화학물질, 의료 폐기물, 위해 폐기물 등의 적정 관리 및 처리시설 설치 사업

또한, 폐자원의 순환이용과 순환경제사회 구축, 토양환경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탄소시장 등도 향후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중국물자재생협회가 발표한 <중국재생자원업종발전보고(2013년)>에 따르면 2013년 한해에 폐철강, 폐비철금속,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지, 폐가전전자제품, 폐차, 폐선박 등 8가지 주요재생자원의 회수총량이 1.6억 톤에 달하고(회수자원의 가치로는 4,817억 위안), 2013년 기준 중국의 재생자원 회수업체 수량이 10여만 개, 종사자가 1,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광산으로 비유되는 도시폐기물의 재활용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양오염⁸⁾에 관해서도, 2014년 내에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토양오염 관리와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토양복원 프로젝트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 제정과 시장기능을 통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선전,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등 7개 지역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8_ 2014년 4월 17일 중국 국토부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전국 토질에 대한 조사 결과, 약 20%의 농지가 공·광업 폐기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쪽 지역의 토질 오염이 북쪽 지역보다 심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의 환경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 또한 정책적으로 자국 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4.5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통계국이 공동 발표한 <중국 환경보호 관련산업 상황공보(2011년 기준)>에 따르면, 환경보호관련 산업규모가 현저히 확대되고 산업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11년 기준 환경보호관련 종사업체(기관)는 23,820개, 종사자는 319.5만 명, 연간 영업총액은 30,752.5억 위안(500조원), 연간 수출계약액은 333.8억 달러(34조원)로 집계되고 있다⁹.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처리 효율과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확보, 현지 프로젝트 핵심 기관과 바이어와의 연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현지 실증화 선행, 현지 전문기관 활용¹⁰ 등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품목별 장벽

자동차

(1)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 폐지 및 고율의 관세 적용

중국은 2004년까지 자동차를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1.1일부터 자동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완성차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허가라기보다는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다.

9_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11년 총매출액 59조 3,632억원('05~'11년간 연평균 16.4%씩 증가), 환경산업체수는 34,196개, 종사자수는 183,538명, 환경부문 수출액은 4조 9,767억원('06~'11년간 연평균 31.3%씩 증가)으로 조사

10_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8월에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연락처: +86-10-8591-0997, 홈페이지: <http://ebasiacenter.or.kr>.)

자동차 수입관세는 최근 많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52.5%에서 2004년에는 3.0L 이상 차량이 37.6%로, 3.0L 이하는 34.2%로 30%대까지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완성차 30%, 부품 14%의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2006.1.1일부로 자동차 수입관세율이 28%로 인하되었고 2006.7.1일부로는 완성차 관세율이 25%, 부품은 10%로 인하되었다.

(2) 중고자동차의 수입금지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주재원이 중고자동차를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 후 이를 제3자(중국인)에게 양도하거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3)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의견 실시

2006.12.26일 발개위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실의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에 의하면 주요 구조조정 조치의 하나로 완성차 생산기업이 타 지역에 분공장을 건설시 전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승인 받은 생산능력의 80%에 도달해야 하며, 기존 생산능력이 국가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정 부관련 부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자동차 판매량이 아래 기준을 초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단 승용차 10만대, SUV 5만대, MPV(다용도 승용차) 5만대, 기타 승용차 8만대, 대형트럭 1만대, 중형 트럭 5만대, 경트럭 10만대, 소형트럭 10만대, 중대형 버스 5,000대, 경버스 5만대 등이다.

한편, 중외합자 자동차 생산기업은 합자경영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조속히 개선 하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공장 건설 및 신제품 공고 신청 등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기업이 신제품 생산시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등록보고서에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생산능력 건설 및 생



산준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상응한 생산조건 구비 후 신제품 인증 및 생산이 가능하다.

(4) 자동차산업 진흥계획 발표

2009.3월 발개위와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자동차 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상기 2006년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자동차 산업발전 목표와 내수 및 수출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소형배기량 자동차(1.6L 이하)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 10%→2009년 5%→2010년 7.5%), 농촌지역 자동차 보급, 노후자동차 교체 보조금 등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은 중국 자동차 기업이나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 조치들은 2010년말에는 모두 종료됐다.

(5) 자동차제품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은 2007.3.1일부터 승용차, 상용차, 차체 및 부속품 등 자동차 제품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 신에너지차 보급 관련 지원 정책 발표

2013.9.13일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발개위에서 2013년~15년까지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차 보급 추진에 대한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6만위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3.5만위안, 수소연료전지차는 20만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3.10.1일부로 2015년까지 3차 에너지 절약 차량(배기량≤1.6L 종합연료 연비≤규정치) 구매시 일괄 보조금 3,000위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연비 규정치를 대폭 상향하여 집행한다.

(7) 분야별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관리규칙 시행

시장경쟁 질서 유지, 산업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 기업 기술력 향상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9.7.1일부터 <전용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규칙> 및 <신에너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기업 및 제품 관리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1.1일부터 <상용차 생산기업 및 제품 관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규칙을 통해 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시(공장신설, 생산능력 확대 등) 보다 높고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1)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축소 및 수출허가 관리제도 시행

중국 정부는 2005년 들어 철강산업의 과잉투자와 이에 따른 철강수출 급증을 억제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요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5.4.1일부터 철강 반제품인 빌레트, 잉고트 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 2005.5.1일부터 일부 철강관련 원료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하 내지 폐지, 철광석 수입에 대한 자동허가관리제도 실시, 2005.5.19일부터 철광석, 선철, 철스크랩, 빌레트, 잉고트 등의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시 수출세 부과 등을 시행중에 있다. 2006.9.15일부터 중국은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스테인리스 열연 강판,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강재 등을 포함한 142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과거 11%에서 8%로 인하했다.

2007.4.15일부터는 일부 특수강재, 스테인레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종전 8~11%에서 5%로 인하하였으며, 일반탄소강, 열판, 형재, 와이어로드 등 83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취소되었다. 동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인하 또는 취소 품목 159개는 주로 2006.9.15일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율이 11%에서 8%로 인하된 철강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환급율이 재인하 또는 취소되었다.



한편, 2007.5.20일부터는 상기 수출 부가가치세가 취소된 83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6월부터 선철, 철스크랩 등 반제품에 대하여는 15%, 완제품(탄소강 와이어로드, 형재 및 기타 제품)은 5~10%의 수출관세율을 적용하였다. 2008.1월 반제품의 수출관세 세율은 15%에서 25%로 인상되었으며 열판의 수출관세 세율은 5%이다.

철강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말미암아 2008.12.1일부터 67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가 취소되었고, 2009.4.1일부터 냉연제품 등의 수출환급율은 13%로 인상되었으며 2009.6월 일부 강재품목 및 철강제품의 수출 환급율은 9~13%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경제금융위기의 극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자 무역마찰 소지를 제거하고 국내 산업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0.7.15일부터 일부 저부가가치 철강재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하였다.

중국산 원료 및 반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제의 변동, 가공무역 억제 등에 따라 원료 구매가격 인상으로 전반적인 국내 철강사의 다소간의 원가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2) “철강산업 12.5 계획” 발표

2011.10월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5년(2011~15)간 중국 철강산업 정책의 근간이 될 “철강산업 12.5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 조강소비 최고점은 2015~20년 기간 중 7.7~8.2억 톤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철강 설비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다소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 최고점은 이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철강산업 11.5 계획”에서도 2010년 중국 조강수요를 약 3.8억 톤으로 예측했었지만, 실제로는 약 6.2억 톤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투자→소비)에 따른 GDP 및 고정자산투자의 증

가을 감소가 조강수요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전망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정량적으로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집중도 제고, 고급강재 개발, 친환경 발전 등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산업집중도 제고 목표는 중국 철강기업의 대형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2015년에는 5천만 톤 이상 대형 철강사 5~6개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급재 자급률 제고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철강사들은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하에 R&D 투자를 확대해 수입제 대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급 강재인 자동차강판과 전기강판의 ‘자급률 90% 이상 달성’ 등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다.

신규 연해 철강기지 건설은 중국의 고급 강재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강재 수출 및 해외 철광석 수입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기존에 발표된 연해기지 중 담강(湛江), 방성(防城)항, 복건성 영덕(寧德)은 사업 진척에 탄력을 받은 반면, 이번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일조(日照), 연운(連雲)항 등의 건설은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2012년 국무원은 담강과 방성항 프로젝트를 비준하며 연해 철강기지 건설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철강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중국 정부는 2005.7.20일 중국 철강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외자기업의 중국 철강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에 의하면 철강투자는 모두 발개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 철강기업이 중국 철강산업에 투자하려면 자체 지식재산권 기술을 보유하고 전년도 조강량이 1,000만톤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국내 기존 철강사의 개조 및 이전과 결합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서의 건설은 불허하며, 원칙적으로 지배주주 참여도 불허한다.

2011.10월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12.5 계획”에 따르면, 향후 중국 철강산업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고 해외 선진 철강사와 중국 철강



사의 공동 투자 및 공동 R&D 센터 설립을 권장하고 있지만, 기존 ‘지배 지분 불허 방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한편 동 계획은 중국 철강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철강사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중국산 강재를 둘러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강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신문망에 보도에 따르면 2011년 해외에서 제기된 중국 강재 관련 반덤핑 제소액은 최대 5,192억달러에 달하며, 2012년 중국 강재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안건은 무려 60여 개에 달한다.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제소한 안건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ASEAN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2013.3.19일 인도네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등 5개국 냉연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5.9~55.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Perstimas社は 자국 정부에 중국 및 한국산 전기 도금 주석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정식 요청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철강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흥국들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ASEAN은 중국(2010년), 한국(2007년)과 맺은 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자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의 두께 0.5mm 이하 도금강판(HS 721012) 수입관세율은 2006년 15%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0년 이후에는 무관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 2013년 이후 대중국 반덤핑·반보조금 제소 현황

국가	일시	관련 제품	내용	세율
인도	13.01.04	STS 열연 (최대 폭 1,605mm)	니켈 6% 이상 300계 제품 관세 부과 결정	20%
콜롬비아	14.07.10	스틸로퍼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	20%~
베트남	14.09.10	무봉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10.71~37.29%
한국	14.07.25	H형강	반덤핑 입안조사	-
대만	13.02.20	STS강 냉연	반덤핑 조사 개시 (4.20일 최종판정)	-
말레이 시아	13.02.20	선재 전기도금 주석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 반덤핑 조사 제소	0~25.2%
	14.07.10	열연판	반덤핑 입안조사	-
	14.09.09	철근콘크리트	반덤핑 입안조사	-
인도네 시아	-	전기도금 주석강관	반덤핑 조사 진행 중	-
	13.03.19	냉연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5.9~55.6%
터키	13.03.15	STS 배관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13.82~25.27%
호주	13.02.06	아연도금강관 및 알루미늄 도금강관	덤핑 예비 판정 (4.30일 최종판정)	11~55.3%
브라질	14.10.31			
캐나다	13.01.08	보통강 열연강관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27.3%
	13.01.22	아연도금강선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제소	-
	13.03.11	무게목유정용강관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연장 결정	-
	14.09.12	철근콘크리트	반덤핑·반보조금 예비판정	26.0~58.1%
미국	13.02.04	열연	일몰재심 실시 결정	-
	13.02.08	석유강관	반덤핑 행정재심사 신청	-
	13.03.21	STS 개수대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 결정	반덤핑 (27.14~76.53%) 반보조금 (4.80~12.26%)
	14.02.24	탄소강와이어로드	반덤핑·반보조금 입안조사	-
EU	13.02.16	무게목강관	반덤핑 조사 실시 결정	-
	13.02.22	특수 도금강관	반보조금 조사 개시	-
	13.03.15	유기피복강관	상계관세 부과 결정	44.7%
	14.07.10	열연판	반덤핑 입안조사	-
	14.08.15	냉간압연판	반덤핑 입안조사	-

자료: 언론보도 종합, 포스코경영연구소

※ 2014년 제소한 반덤핑 건을 추가함.



섬유·직물

(1) 산업 및 통상정책

2009년 발표된 10대 산업진흥계획의 섬유 분야에서는 기술 업그레이드 투자 강화, 내수시장 확대, 기업의 구조조정 재편 장려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술 업그레이드에서는 하이테크기술 섬유산업화 및 응용, 산업용 방직품 기술 산업화, 신형 방직기계 기술장비 자급화, 브랜드 및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방직직조산업 기술개조, 날염산업 에너지 절감 및 배출감소, 화학섬유산업의 기능성 및 차별화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중국 섬유제품의 관세율은 평균 11.9%(2007년 기준)이며, 완제품 의류의 경우 15% 이상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고급 기술에 한정하여 투자 장려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로 외자도입을 통하여 섬유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수출세 부과 및 취소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선진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유입확대 우려를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2005.1.1일부터 HS 8단위 기준 14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당초 중국 정부는 2005.5.20일 공고를 통해 2005.6.1일부터 동 품목중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내 섬유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여 2005.5.30일 전격적으로 148개 품목 중 80개 품목과 기타 1개 품목 등 81개 품목에 대해 2005.6.1일부터 수출관세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미국 및 EU와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2005.5월 중국산 7개 섬유류 카테고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를 발동하였으며, EU도 2005.5월 중국산 2개 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 가드를 발동키로 하였다. 중국은 EU와는 중국산 10개 섬유품목의 對 EU 수출증가율을 2007년까지 8~12.5%선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 EU와 방직품 무역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율적 수출량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2006.1.1일부터는 52개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취소했다.

상기 2005.6월 체결한 ‘중국-EU 방직품 무역협정’의 효력이 2007년말로 만료돼 2008.1.1일부터는 EU의 중국산 방직품 쿼터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쿼터물량을 확보하기 쉬운 대형 국유기업들은 그 동안의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저가경쟁으로 시장점유를 노리던 중소형 외자·민영기업들은 동 협정의 해제를 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방직품 쿼터가 폐지되면서 중국내 모든 방직기업들이 유럽 수출의 공평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쿼터제 폐지가 EU의 보호무역정책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EU는 WTO상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 협정(SPS) 등에 근거해 환경보호, 수출입 상품품질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반덤핑 등 다른 보호무역 수단들도 대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중국진출 우리기업들은 주의가 요망된다.

(3) 경직적인 원산지규정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을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동 원단 소품목 하나하나에 생산국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가 훼손되는 경우 통관이 어렵게 되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한 원단이 아닌 제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 표시로 인해 제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외에는 개별품목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는 가공수출



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통상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자재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시장 특성 및 최근 트렌드

경제성장과 더불어 재화 공급능력이 향상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며, 이에 최초 진출 시 고급제품이라는 이미지 확보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인식이 부족한 시장으로서 특허권, 상표권의 침해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서 가짜 제품을 모아서 파는 소위 ‘짜통시장’이 유명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자·기계

(1) 엄격한 수입관리

중국은 전자·기계제품에 대해서 수입쿼터, 특정제품 목록관리 및 자동등록제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2002.1.1일부터 실행해오고 있는 수입쿼터 관리대상 전기·기계제품은 매년 상무부에서 확정 매년 7.31일전 다음해 쿼터량을 발표하여 분배·관리하고 있다.

특정제품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수입 신고서 및 관련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상무부 사무실을 경유하여 상무부에 신고하면 심사 허가 후 기계 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입기관 및 업체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야 해외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화구입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은 기계 전자제품수입증명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한다. 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기계·전자제품의 수입기관 및 업체는 수입신청표를 작성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관련 국가법률·법규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경우 기계전자제품 수입등록표가 발급된다. 외환관리부서와 은행에서는 등록표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며 세관은 수입등록표에 근거하여 통관

을 허용하고 있다.

(2)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 인증의 장벽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7.1일부터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총 62종: 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3)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우대

가전제품 농촌판매 강화(家電下鄉) 정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중저가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저가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중국 국내 브랜드 제품의 판매를 크게 신장하는 효과를 창출하였다. 중국의 가전하향 등 정책의 지원 기준도 중국 국내 브랜드의 기술 수준 및 가격 수준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품

(1) 수입통제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유독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03」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 방법(2003.10.15일)」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최초 수입화학품’에는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하여 국가환경보호국에 수입등록된 것일지라도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1994.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 목록에는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이번에 신규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며,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 2차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2006.1.1일부터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중국은 또한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2002.3.15일 시행)에 의하여 「위험화물리스트」(GB 12268): 유독성화학목록: 기타<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기타 위험화학품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과학연구, 의료, 약물제조 또는 방어목적으로 쓰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통제화학약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는 국무원 상무부에 의하여 공동 지정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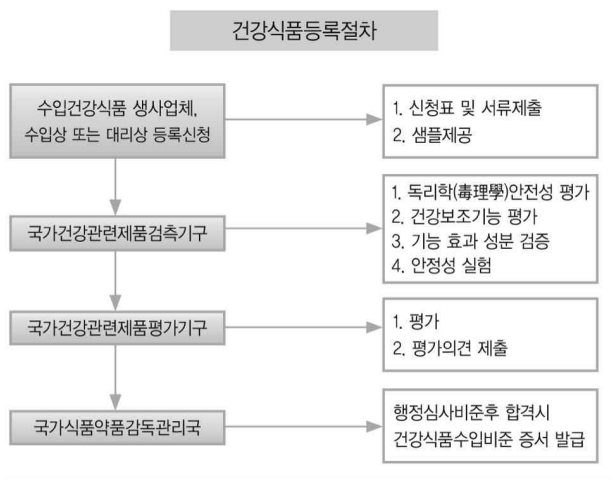
(2) 수입합판에 대한 검역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식물검역증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

(1)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위생허가 제도 실시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 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양소보충제를 보건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



하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
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
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
록 함량에 제한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다만, 인삼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되었다하여도 기능성을 표
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 건강보조식품 기능별 종류

1. Enhancing immune	2. Assisting blood lipids reduction**
3. Assisting blood sugar reduction**	4. Antioxidation**
5. Assisting memory improvement**	6. Alleviating eye fatigue*
7. Alleviating lead excretion**	8. Clear the throat
9. Assisting blood pressure reduction**	10. Sleep improvement
11. Facilitating milk secretion**	12. Alleviating physical fatigue#
13. Enhancing anoxia endurance	14. Assisting irradiation hazard protection
15. Weight control**#	16. Improving child growth**
17. Increasing bone density	18. Improving nutritional aneamia**
19. Assisting the protection against chemical injury of liver	20. Eliminating acne*
21. Eliminating skin chlorasma*	22. Improving skin water content*
23. Eliminating skin oil content*	24. Regulating gastrointestinal tract flora**
25. Facilitating digestion**	26. Facilitating feces excretion**
27. Assisting the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주: * body test; ** animal test + body test; # cordial test

중국내 건강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건강식품 등록시 필요 서류

수입건강보조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생산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도표
제품품질 기준(업체 자체기준)	검증기구가 발급한 검증보고
제품포장설계(제품의 라벨 포함)	제품설명서 견본원고
업무위탁서(대리업체 수속진행시)	생산국가(지역)에서 동제품 생산판매를 허가한다는 증빙서류
제품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개



(2) 한·중 양국간 위생표준(식품 및 첨가물기준) 차이 존재

우리의 식품 및 첨가물 공전에 해당하는 중국 위생표준의 경우, 우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입 식품 모두에서 부적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가물의 경우, 각국마다 사용기준이 달라 해당제품의 유형에 따른 첨가물 기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해조류의 경우 비소 등 중금속 기준이 중국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국내에서 기준에 맞더라도 수출용인 경우 수출회사에서 별도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금속 기준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중국에 수출하려는 식품 중 해조류(다시마, 김 등)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주로 비소기준에서 부적합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금의 경우 아질산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2009년부터 양국간 식품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식품안전기준전문가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기준이 불명확한 우리 전통식품(예를 들어 막걸리, 김치 등)의 기준과 규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 식품의 대중국 진출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막걸리는 2012.8월 위생부에서 세균총수 기준을 완화하여 2013.2월부터는 생막걸리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식품 기준은 각국의 식문화와 습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로 양국간 최종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출국 회사는 수입국의 기준을 존중하여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자신들이 수출하려고 하는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 및 검사항목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사용된 첨가물 모두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기준규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국내 수출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최근 중국은 사료의 멜라민 성분검출,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및 크리

스탈바이올렛 그리고 니트로퓨란계 물질의 검출 등으로 중국내 식품수출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불법기업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9.1일부터 시행하여 온 CIQ 합격표시제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폐지한 바 있다. 수출식품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2007년 특별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며, 2009년을 품질안전원년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식품안전법을 시행함에 따라 식품 수입시 영문식품수출증명서(수출국 정부 발행)를 요구하는 등 중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미국산 육류, 곡류 등에 대한 부적합 사례를 홍보하는 등 국제적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수입되는 외국의 식품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정도의 검사 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입 식품 모두 안전성에 대한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지방 CIQ의 경우 실험실을 대폭 정비하고 장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검사능력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시험항목도 확대 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중국 수출시 보다 주의의 기울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된 식품군의 경우, 사전에 중국검역당국에 수출국 현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중국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및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의 공고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수입식품 표시기준 표첨

AQSIQ는 수입되는 식품의 표시사항 관련규정인 「수입식품표시관리법(進口食品標籤管理辦法)」을 개정하여 2000.4.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포장에 표기된 원제조국의 모든 외국어 표기를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전면 교체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중문 표시를 할 수 없는 표기는 지을 수밖에 없어 상품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2004.7월에는 2005.10월부터 새로운 표시기준을 시행한다고 공포하



였는데,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중국 내 수입업체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한편 중국은 2005.4.1일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關於調整進出口食品,化粧品標籤審核制度的公告)를 시행해 수출입 식품에 대한 라벨심사와 제품검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품 수출입 업체는 심사 접수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직접 수출입검역기관을 통해 제품검역과 동시에 라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검역기관들은 수출입 식품에 대해 품질관련 검사와 검역 등을 시행한 후, 검역 증명서에 ‘라벨심사합격(標籤經審核合格)’ 표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4.1일부터 각 지역의 라벨심사 접수기관은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전심의 신청접수를 중지하고 수출입검역기관도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제품라벨 심사증서(進(出)口食品,化粧品標籤審核證書)’에 의거한 검사신청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기존에 취득한 ‘수출입식품 및 화장품 제품표시 심사증서’는 4.1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5.10월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식품 제품라벨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食品標籤通則)(GB7718-2004)’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량포장 특수식품 제품표시 통칙(中華人民共和國預包裝特殊膳食食品標籤通則)(GB13432-2004)’ 등에 따라 신규 증서로 교체해야 할 경우, 2005.12월 AQSIQ가 발표한 ‘수입 식품 제품라벨 심사증서 교체 심사에 대한 통고(關於對進口食品標籤審核證書進行審核換證的通告)’에 따라 증서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라벨사전신청비용의 단독 부과가 폐지되는 대신, 이 신청비용이 제품검사비용의 일부항목으로 포함되고 AQSIQ 식품, 화장품 라벨심사실이 관장하던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의 라벨링 검사 권한이 지역별 세관의 수출입검역기관으로 이양됐다. 또한 한국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시 증문표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중국의 표시규정에 맞는 인쇄표

시물을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중문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에 문제가 없음에도 표시사항 부적합으로 반송처리 될 수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

중국은 전 세계 원료의약품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원료 의약품 생산대국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5대 의약품 생산국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정비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해마다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개혁, 약품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에도 급속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11월 WTO 가입 후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3억 인구의 보건의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함께 도시화,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 의료개혁 및 제약업체의 구조 조정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중국시장의 흡인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제약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의약품이 조정기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인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CFDA가 자국의 의약품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판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강제 적용, 임상시험 기준, 판매유통 관리 강화 등 의약품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 공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수준 제고는 영세제약기업의 시장퇴출과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중국의 수입약품의 심사·허가업무의 주요 관리규정으로는 ‘수입약품관리방법(進口藥品管理方法)’을 들 수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수입약품은 반드시 CFDA가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항의약품검사소가 발급한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 최초로 수입신고한 수입항을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신고가 가능하여 수입자는 수입항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수입의약품의 등급 제도가 한국 의약품의 등급과 달라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약품등록방법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이한 의약품등급제도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내 의약품의 등록신청이 6개 부류로 구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수입의약품도 이에 맞춰야 하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약품과 동일품목에 대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심사절차와 심사요구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의약품기준이 있는 원료약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내 생산되고 있는 동일품목의 등록요구와 마찬가지로이다.

CFDA는 국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 관련규정에 적합한 약품도 일부는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 등록시 요구하는 규격은 중국약전(CP; 中國藥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데, 수입허가 심사시 타 국가의 약전(공정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서화된 규정은 없으나, 관행적으로 중국 자체규격 CP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록 신청시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약품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증 기한만료일 6개월 전에 CFDA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품목은 새로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5년 재등록 제도가 수입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중국내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WTO 내국민대우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약품재등록제도가 기업에 대한 CFDA의 요구사항 이행상황을 감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약품 유통이후의 재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처리결정을 내리고 기 허가한 품목의 수입실태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CFDA의 제품허가 소요 기간이 최단 3개월이고 평균 1년 정도 소요되어 수입허가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허가비용도 품목당 10만위안에서 20만위안 정도 소요된다. 등록대행업체에 따라 등록기간 및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검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물류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수입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입시 엄격히 적용하는 17%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을 포함 40~45% 정도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공인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수입화장품위생 허가증”을 신청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동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批准文号)를 취득하여야 한다. 상기 위생안전성 검사의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은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은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위생허가증 발급에는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유행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시에 출시하기 곤란하여 대중 수출에 매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품 당 검사 및 심사비용이 일반화장품은 최소 11,000위안이 부과되고, 특수화장품의 경우에는 17,000~35,000위안으로 수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4.6월부터 일



반화장품의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업체의 기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장품에 부과되는 관세 10~15%, 소비세 8~30%, 부가가치세 17%의 고율의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004.8.1일부터 수입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시행하여 수입 일반화장품의 허가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기업의 제출서류와 샘플수량도 크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허가기간이 장기간이며 기업마다 소요되는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아직 화장품수입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기존의 일반화장품과 특수용도(기능성) 화장품 재분류가 진행되었으므로 새로운 화장품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시 부적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소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라하여 수입검사단계에서 검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및 안전부문에서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장품의 위생표준 및 기준을 제정하는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2007년 도관 화장품위생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발표하였는바, 관련 기준의 변화에 대한 꾸준한 관찰을 통하여 수출시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부적합 처리되는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원료(황토 등) 등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중금속 허용기준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화장품 표시심사제도의 번잡성에 대하여는 2006년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6.4.1일부터는 기존의 수출입 화장품표시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위생검사시 표시사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수출입 화장품표시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고 기준의 변경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기업은 2006.5.1일

까지 발급신청이 종료되었다. 수출입 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에는 표시 심사, 검사, 확인이 포함되며 검사검역비용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고 표시심사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2010년도는 중국의 화장품 인허가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화장품기업도 새로이 수입화장품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2010.4.1일자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접수규정」 및 「화장품행정허가 심사자료요구에 관한 규정」중 특히, 신원료 문제, 원료허가 및 품목허가의 분리진행, 원료의 안전성 평가자료, 잔류농약자료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새로이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적용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로 기업의 서류준비 및 예측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 하반기 들어 CFDA에서 일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실행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당분간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고 일정한 집행관행이 확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이 화장품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와 관련 기업들의 경험을 공유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희토류

1) 개관

중국의 자원 원가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자원의 대규모 채굴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용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광물자원 낭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자원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자원가격이 자원의 희소성 수준과 수급관계, 환경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해



가격조정을 통한 에너지절약 동기부여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자원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수출 쿼터 운영

공업정보화부와 상무부는 2009년부터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현재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쿼터는 2005년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 2010년 30,250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 2013년 31,001톤, 2014년 30,610톤까지 축소된 상태이다. 2011.5월 국무원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희토류를 채굴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관련 법률을 제정,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012.4월 희토산업협회를 발족시켰으며, 희토류 개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지질환경회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희토류 생산을 엄격하게 관리, 통제해 나가고 있다.

출처 : 중국 희토류 정책보고서
<http://www.cre.net/list.php?catid=34&page=2>

2011년과 2012년의 수출쿼터 소진율은 5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희토류 전쟁을 겪으면서 최대의 피해국은 중국이며 현재 광산을 제외한 대부분 하류산업은 붕괴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원료의 70% 이상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통제 및 불건전한 유통에 의한 가격폭등과 유럽발 경기침체가 맞물려 희토류 제품의 수요감소를 촉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희토류 수출쿼터는 30,601톤(경희토 27,005, 중희토3,605)로 설정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경희토와 중희토를 분리하여 쿼터를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면상으로는 쿼터를 줄이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경희토는 미국과 호주가 2002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공급과잉상태이나 중희토는 중국 외에서 생산이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수출쿼터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예상되나 경기가 회복되고 외국의 광산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출처 : 중국 희토류 정책보고서
<http://www.cre.net/list.php?catid=34&page=2>

3) 외국인 투자 제한 동향

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굴, 선별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으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

중국 정부조달시장 특징

중국의 중앙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국무원이 결정·공포하며 지방예산에 속하는 집중조달목록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구가 결정하여 공포한다. 중앙국가기관 조달센터 등 6개의 중앙부처산하 조달센터가 있으며, 각 지역정부 산하의 조달센터가 존재하고, 이들이 관할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물품을 집중조달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산조달하고 있다.

중국 조달시장이 우리나라 조달시장과 다른 점은 바로 입찰 대리업체의 존재이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입찰센터(招標中心)가 존재하지만, 입찰대리업체(招標代理公司)가 있어 정부를 대신하여 대부분 입찰 과정을 진행 한다. 약 5,000여 개의 입찰대리업체가 있으며, 갑(甲)급 업체의 경우 전국의 입찰 대행이 가능하고 입찰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 대리가 가능하다.¹¹ 을(乙)급 업체는 해당 사업자등록 소재지

¹¹_ 101201 중국 재정부 정부조달 대리기구 자격인증방법



에서만 입찰 대행이 가능하며 1,000만원(한화 약 18억원) 이하의 입찰 건만 대행이 가능하다.

집중조달은 국무원 및 성급 이상 지방정부가 공포한 집중조달지정 물품과 금액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분산 조달하고 있다.

입찰 조달방식은 공개 입찰방식 및 초청 입찰방식,¹² 경쟁성 담판, 단일 구매,¹³ 가격 조희,¹⁴ 국무원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기타 조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반드시 정부조달정보매체에 입찰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명 경쟁과 유사한 초청입찰방식으로 조달을 할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매체에 자격예비심사공고를 발표하여 응찰자의 자격조건을 공포하며 그 외 국제입찰은 국제입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 국제 입찰망’에서 공고한다.

중국 정부의 입찰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아래의 주요 입찰 정보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
- 12_ 물품·서비스의 경우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이상 공급자를 선택하고 응찰 초청장을 송부하고, 특수성을 가진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조달해야 할 경우 및 공개입찰 비용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진행
 - 13_ 무응찰 또는 합격된 입찰제안서가 없는 경우 또는 재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하여 세부규격 또는 구체요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긴급한 수요인 경우, 사전에 가격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총 4개의 경우에 해당되면 담판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개별 공급자와 담판을 진행하여,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
 - 14_ 조달물품의 규격과 기준이 통일되고 현물 공급지가 충족하며 가격변화 폭이 적은 정부조달의 경우, 가격조희소조가 상응한 자격과 조건에 부합되는 공급자 명단 중 3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정하고, 가격조희 통지서 송부하며, 가격조희 후 조달수요, 품질·서비스에 부합하고 최저가격 제안자를 거래 공급자로 확정하는 방식

■ 참고: 중국 주요입찰정보 사이트

URL	주무기관	운영기관/ 위탁업체	내 용
http://www.cogp.gov.cn	재정부	중국정부구매	중국정부구매 대표사이트
http://www.chinabidding.com	상무부 및 재정부	중국국제입찰	국제입찰 위주
http://www.caigou2003.com	재정부 산하업체	정부구매정보망	정부조달 국내입찰 위주
www.ctba.org.cn	발개위	중국입찰투찰 협회	중국입찰 제도 및 정책
www.cgpnnews.cn	재정부	정부구매신문망	정부구매 관련 사항

중국 조달시장 최근 동향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실용주의 노선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국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급속한 발전의 결과로 빈부격차, 도농격차, 동서격차, 구조적인 부패, 상대적인 박탈감 등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덩샤오핑이 1978년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내놓은 지 꼭 36년 만에 시진핑 새 정부에게 성장모델을 대전환 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 시진핑 체제의 경제정책 핵심은 내수(consumption), 도시화(city), 환경보호(clean)의 3C로 요약된다.

중국 경제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0%의 경제성장을 보이다가 2011년 9.3% 성장한데 이어 최근 6분기 연속 7%대 성장 지속하면서 정책기조도 고속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의 중국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고,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연안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및 기반시설과 의료시설의 격차가 커지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중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로 이주한 많은 농촌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농촌 출신 도시근로자(農民工)’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저층 노동계급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및 의료보험 등에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농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문화혜택과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던 중국은 최근 심각한 환경오염이 전국적으로 누적되어, 올해 3월 북경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스모그를 시작으로 환경오염이 주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어찌 보면 시진핑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소비(consumption), 도시(city), 환경(clean)의 3C정책이 된 것은 필연적 결과일 수 있다.

중국의 조달 트렌드(trend) 변화

2013년 중국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00년초 중국의 정부조달법을 시행한 이래 매년 20%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달시장규모는 16,381.1억위안으로 2012년대비 17.2%(금액대비 2,403.4억위안)이 증가한 규모로 국가재정지출의 11.7%수준이며, GDP의 2.9%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조달시장의 주요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1) 협의 공급제도의 확산

협의공급이란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면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와 공급 물품, 수량 등을 선(先)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조달자와 공급자간 가격 협상을 통해 결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매방식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앙정부를 주축으로 하여 기존 조달방식인 공개입찰, 초청입찰(Restricted tendering), 경쟁성담판(Competitive

negotiation), 가격문의(Request for quotations), 단일구매(Single-source procurement)에서 중앙정부 집중조달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강화로 협의공급 및 지정구매를 통한 집중조달이 강화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도 점점 많은 제품을 MAS로 구입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 정부도 구매패턴이 협의공급과 지정조달로 확산되고 있다. 지정구매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제품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개 혹은 여러 공급자를 선결정하고 상기 선정된 공급자들과 지정구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공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¹⁵ 이같은 방식으로 조달되는 주요 물품으로는 컴퓨터, 인터넷 설비, 공조기, 사무용품, 엘리베이터 등 26개 품목이다.

■ 참고: 중국과 한국의 입찰 방식 비교

중국		한국	
공개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일반 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 진행
	• 공개경쟁원칙을 우선		• 일반경쟁원칙을 우선
초청 입찰	• 해당사업에 적격인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지명 경쟁	• 해당사업에 적격인 업체를 입찰에 초청하여 진행하는 방법
	•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공급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경우 • 공개입찰방식에 필요한 비용이 정부조달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입찰에 대한 비용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단일 구매 조달	• 조달자가 직접 공급상을 선정 및 조달을 관리하는 방식	수의 계약	•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유일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경우 •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원래 조달사업의 일치성이나 관련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비밀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인 경우 • 생산·소비자가 1인인 물품 등인 경우

15_ 2012 조달청 중국정부조달시장 진출 가이드북



중국		한국	
	서비스 요구를 보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원래공급자로부터 추가 구입이 필요한 경우		
경쟁 성 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직접 3개 이상의 공급상을 초청해 담판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	협상 에 의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계약이행 과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에 대해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조달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입찰 공개 후 입찰에 참가한 공급자가 없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한 공급자가 없어 새로운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기술이 복잡하거나 성격이 특수 하여 상세한 규격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입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지 않은 경우사전에 가격 총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		
가격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3개 이상의 공급상이 제공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으로 조달하는 관리방식조달상품 규격, 표준이 통일적 이고 상품 공급원이 충족하며 가격 변화가 작은 정부조달 사업인 경우	다수 공급 자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들과 계약을 선 체결하고 계약된 여러 물품 중 수요기관이 구매할 할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요청하는 방식
협의 공급, 지정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개입찰을 통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자를 우선 결정하고 계약 유효기간 내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

(2) 용역 조달시장의 비약적 발전

2013년 중국조달시장 특징의 하나는 “뛰어난 신예(後起之秀)”로 표현 되는 용역(서비스)분야의 비약적 성장을 들 수 있다. 용역분야 중국조달 시장규모는 1,534.4억위안으로 2012년 동기대비 26.4%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전통적 조달분야인 물품구매, 시설공사분야보다 월등한 증가폭을 시현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세를 시현한 주요원인으로는 중국조달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용역분야 진작을 위한 정책효과

를 들 수 있으며, 다른 또 하나는 각급 조달기관에서의 새로운 용역품목 개발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경시의 경우는 법률, 회계, 심사 등 전문분야에 대한 용역(서비스)을 정부집중조달품목에 포함시키는 한편, 강소성의 경우에는 교육문화, 사회민생, 의료위생, 농업, 재무심사, 과제기획 등 21개 공공 용역을 정부조달 품목으로 신규 발굴한 결과 총 조달금액이 10억위안에 이르는 등 작년동기 대비 무려 46.1%의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경제정책 지원

중국 정부의 정부구매력(Bargain Power)을 활용해 자원절약, 환경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 각 방면에서 중국정부에서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환경표지 및 자원절약제품 조달구매 확대를 위해 관련품목을 계속 확대한 결과 51종에 9.8만개 제품이 조달구매대상이며, 자원절약제품의 경우에는 61종에 약9여개를 지정하여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효과에 힘입어 정부조달실적은 각각 1,839.1억위안, 1,434.9억위안을 조달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구매한 실적은 12,454억위안으로 전체 조달실적의 76%를 점유하였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소상공인으로부터 5,765.3억위안을 구매하였고 이는 전체 중소기업 조달실적중 46.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에서 시행한<중소기업제품 조달구매 촉진방법>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재권 전쟁의 시대 도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재권 진흥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특허권·상표권 등 지재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세와 더불어 지재권을 둘러싼 국가·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재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계 지재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부문 G2로 부상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 전략과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속도로 쾌속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11.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계기로 시작된 양 기업간 특허전쟁은 현재 9개국에서 50건에 달하는 등 가히 지재권 전쟁의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 증대에 힘입어 향후 중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한중 FTA 체결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상호투자과 교역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기업간의 지재권 문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 기업 모두 중국의 지재권 관련 최근 정책동향 및 판례, 지역별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종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재권 정책 및 법률 개정 동향

(1) 중국의 지재권 출원 동향

중국의 2011년도 발명특허 출원(신청)은 526,412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등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여 특허출원 분야에서 G1으로 부상하였으며, 2013년에도 825,136건으로 전년 대비 26%성장하였다. 상표출원도 2013년도 출원량이 전년 대비 14%증가한 1,886,546건을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기업의 대중국 지재권 출원은 2013년 기준으로 특허 10,866건, 디자인 1,797건, 실용신안 253건 등 총 12,916건에 달하여,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으며, 상표 또한 7,700건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으나 중국과의 교역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의 지재권 법률 제·개정 내용 및 특징

(상표법 개정)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담당 특허청)은 2011.9월 중국 상표법 3차 개정(안)을 공고한 후 수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중국 전인대(국회)에 제출, 본 개정(안)이 2013.8.31일 전인대(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2014. 5.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표신청·등록 관련 과정 간소화 및 행정감독 강화, 지리적 표시의 보호력 강화 및 악의적 상표 선등록 방지 등 상표 출원인의 편의 도모 등이다.

(특허법 개정)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특허담당 특허청)은 2012.8월 특허법 4차 개정(안)을 공고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본 개정(안)은 2015년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지식재산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재권에 대한 이중 보호체계를 구현하고, 특허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특허출원을 위해 소요되는 개인비용과 사회적 자원 절감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무발명조례 제정)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직무발명인의 권리귀속과 이익배분을 명확히 규정, 과학인재들이 주도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11.12일 직무발명조례 초안을 공고한 후 현재 주요내용을 수정 중에 있는바, 향후 중국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사측과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 각급 법원의 지재권 소송 동향 및 특징

중국 정부의 지재권 중시 정책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재권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지재권 분쟁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전국 지방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관련 1심 민사사건은 88,583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는 등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표관련 분쟁사건은 상표권 등록 또는 확인의 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표관련 침해소송과 상표권 등록 등 교차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전국 각급법원에서 접수한 상표소송 사건은 23,372건으로 전년 대비 17.45%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소송 사건도 51,351건으로 전년보다 4.64% 증가하였다.

지재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어려운 사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관련 분쟁이 전체 지재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대중의 생활과 점점 밀접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시 판결을 통한 해결보다 조정 및 화해를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지재권 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약 70%가 재판은 하였으나 판결대신 조정·화해(調解)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최근의 사례로는 2012.7.2일 광둥성 고급법원에서 있었던 애플사와 중국 웨이관사간의 “iPAD” 상표분쟁 사건(약 700억원)이 있다.

2014년도 중국의 지재권 주요이슈 및 향후 전망

중국은 2008년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제정한 후부터 지재권 출원량 등 양적 측면에서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10월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15년)”을 수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 제도개선과 과학기술 업무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14년 4월에는 “2014년도 중국 특허사업 발전전략”을 통해 특허·상표 등의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적체 해소를 지재권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훈련 강화와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지재권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실시하는 등 집행조치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금년 1월 개최된 전국 지역지식재산권국 국장 회의시에는 선창위 중국 특허청장이 지재권 대외협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성급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지재권 보호수준 제고 등의 2014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지재권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도 기준 3,399건의 특허에 대한 담보 대출액이 141억위안(2조 5천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무형자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지재권과 금융 분야가 융합되는 펀드운용과 기술거래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미래 트렌드는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중국 전인대(국회) 상무위원회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지재권 법원 설립(안)을 통과시켰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북경·상해·광둥성 등 3개 지역에 지재권 법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소송관할은 위 3개지역 지재권 법원이 관련 성·시 전체의 비교적 난이도 높은 특허소송 1심과 일반적인 지재권 소송 상소건에 대한 최종심을 관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시행(2008.8.1) 후, 6개 외국기업의 LCD 패널 가격담합행위(2013.1월, 607억원), 茅台/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2월, 780억원), 분유업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8월, 1,217억원),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가격담합(2014.8월, 2,053억원), 폭스바겐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2014.9월 현재, 530억원)에 대해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퀄컴(Qualcomm)의 지식재산권남용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위법소득 몰수와 매출액의 10%내 과징금 병과)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도 크게 실추되는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쟁법 개관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壟斷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약(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불공정거래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는 기구는 크게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非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 간의 업무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상무부(기업결합심사업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관련 독점행위업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非가격관련 독점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업무)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은 직접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성급 관련부문에 위임 처리하고 있다.

독점협약(카르텔)과 부당한 가격행위

독점협약(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약’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약’으로 구분된다.

그 중 ‘수평적 독점협약’은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약으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하며, ‘수직적 독점협약’은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독점협약을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격독점행위의 경우 첫 번째 신고자는 면제되고, 2번째 신고자는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신고자는 50% 이하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부당한 가격행위’에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선동, 가격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행위 등이 있다.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선했던 상품 판매, 재고상품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허위표시, 허위홍보, 상업비방), 상업적 뇌물행위,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염매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한 경품판매행위, 입찰담합행위가 있다.

경영자집중(기업결합)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위안(약 1조 7,400억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위안(약 3,50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위안(약 7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商談)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審査; 30일간)와 중점심사(進一步審査; 90 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 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 아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벌 등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혐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위법행 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 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혐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 더라도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위법행위의 중지, 위법소득의 몰수, 위법소득 3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영업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중 입찰담 합의 경우에는 낙찰무효처리 등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부당한 가격행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위법소득의 몰수조치, 위법소득 5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휴업명령 또는 영업취소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상업적 뇌물행위, 입찰담합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하다.

서비스 장벽

해운

해운의 경우 2001.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조출료(早出料, dispatch money;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 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 무역항 수수료비용 규정 및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1.9.20일)」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해운조례(2001.12.21일 제정, 2002.1.1일 시행)」를 제정, 시행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국내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된 것은 해운 관련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의 운임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6.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2005.12.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고, 既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대리업 5백만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2013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를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하여 외상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만이 선박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비를 부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항공

중국민용항공국(구 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을 기존 35%에서 49%까지 높인 바 있다.

중국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8.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동 경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후 2003년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된 CEPA에 따라 2004년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2005.2.24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이 중소형 공항위탁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합작,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하였다. 단,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여객/수하물 서비스, 화물/우편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의 항공운수지상조업관련 인가를 획득하고 동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업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지상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홍콩·독일·미국·싱가포르 등의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2012년말까지 중국은 아세아 44개국, 아프리카 23개국, 유럽 35개국, 아메리카 8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등과 114개의 항공운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항공산업의 매출액은 5,561억위안으로, 2011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나 이윤은 296억위안으로 20.5% 하락하였다. 그중, 항공사의 매출액은 3,890억위안으로, 2011년 대비 9.1% 증가하였으나 이윤은 211억위안으로 22.7% 하락하였으며, 공항의 매출액은 550억위안으로 2011년 대비 10.9% 증가하였으나 이윤은 45억위안으로 23.7% 하락하는 등 매출액은 증가하고 이윤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민용항공국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 9개 국영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MU), 광주의 남방항공(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기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10.11일)하였으며, 지방항공사도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유통

중국은 2004.4월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을 발표해 상업분야에 있어 지역 및 수량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독자기업 설립도 허용하였다.

동 관리방법은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試點辦法)>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중국의 WTO 가입 시장개방 스케줄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신규 관리방법은 2004.12.11일부터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투자자의 자격요건으로 연간 매출액, 자산규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금 규모도 도매업 50만위안, 소매업 30만위안으로 크게 낮추었다. 또한, 도매업은 2004.6.1일부터, 소매업은 2004.12.11일부터 지역제한이 철폐되었다. 2006.12.12일부터는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 판매 등 일부 품목에 도소매업 제한도 폐지하여 내수유통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설립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에는 중앙 정부 상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 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성급 주관부처가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동일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내 누계기준 30개 이상의 매장을 개설할 경우 취급 품목이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2006.12.11일부터 제한 취소),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정제유, 식량, 식물유, 식용설탕, 면화 등이며, 또한 이 품목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이고 공급업체가 다를 때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심사 승인의 지방부문에 대한 권한위임에 관한 통지’(2005.12.9일)에 따라 2006.3월부터 특정업태 및 품목을 제외하고 중앙 상무부로부터 지방정부 및 국가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로 상업기업의 승인 권한이 위임되어 종전보다 인허가 절차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현재 외자유통기업의 법인 설립 조건은 2006년 개정 ‘회사법’에 따라 최저 자본금은 3만위안이며, 외자유통기업의 존속기간은 30년, 중서부 지역에서는 40년이다. 매장 설치 조건은 해당지역 도시발전 및 상업발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매장 증설을 위해서는 연도감사에 통과하고 기업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외자유통기업은 상품, 쿠퍼 및 허가증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도서, 주유소, 약국, 도매업 등)

외자유통기업의 출자비율은 기본적으로 49% 이하로 제한된다.

중국의 TV홈쇼핑, 온라인판매, 통신판매, 직접판매 등의 유통분야 및 프랜차이즈 경영, 위탁경영 등의 분야는 여전히 지방정부가 아닌 상무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진입 장벽 및 진출시 소요시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TV홈쇼핑 또는 전자상거래에 진출할 경우에는 광전총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고, 상무부로부터 외자기업 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받은 외자기업은 사업을 진행할 때 <외자유통업분야관리방법>이 아닌 <외자온라인기업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하고, 공상관리국이 아닌 광전총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외자기업이 방송채널을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국 TV홈쇼핑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여 외국 단독투자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는 2008년 개정, 발표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대형 종합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ICP(인터넷 영업허가증), 문화사업 경영허가증 등을 취득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취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접판매의 경우 2005.9월 발표된 <직접판매관리조례>는 자본금, 보증금, 설립자격, 판매원 수당, 판매원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

는 일정한 설립 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다단계 판매는 금지하는 대신 1998년 암웨이, 에이본 등 10개 외자기업에 대해 판매점을 개설하고 판매원의 급여를 평준화하는 조건으로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자기업과는 달리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해외직판 경험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서비스센터 설치 요구, 판매원 및 판매수당 관련 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가 존속되고 있다. 이후 <직접판매산업 서비스망 설립 관리방법>이 발표되어 2006.10월부터 직접판매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 중이다.

프랜차이즈 경영사업의 경우, 2004.12월 상무부령으로 <프랜차이즈 관리방법>이 공포되어 외자기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통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1월 국무원은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공포하였으며, 최초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법규가 탄생하게 되었다. 동 조례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사업자 등록제도 신설, 사업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의무화, 가맹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 자격요건은 개업 1년 이상된 직영점을 2개 이상 보유한 자로 규정하는 한편 공상부처에 등록된 ‘기업’만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외자 기업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1) 외국 로펌의 주재 형태: 대표처 형식으로만 가능

※ 근거: WTO 가입시(2001.11) 양허안, 외국 변호사사무소 중국대표기구 관리조례(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机构管理條例)

(2) 외국 로펌 대표처의 업무 범위

1) 허용범위

외국로펌 중국대표처는 중국법률사무를 포함하지 않는 하기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의뢰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자문 및 국제조약, 국제관례에 대한 자문을 제공
- 의뢰인 혹은 중국로펌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해당 외국로펌의 변호사가 법률업무관련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법률에 관한 업무를 처리
- 외국의로인을 대표하여 중국법률사무소에 중국법률에 관한 사무를 위임
-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국로펌과 장기간의 위임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
- 중국법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제공

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되면, “중국법률사무”로 인정된다.

- 변호사의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소송에 참여
- 계약서, 협의서, 정관 또는 기타 서면문서에서 중국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증명을 제공
- 중국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의견과 증명을 제공
- 중재과정에 대리인의 신분으로 중국법률의 적용 및 중국법률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대리의견 또는 평론을 발표
-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기관 또는 기타 법률법규에서 수권한 구체적인 행정관리직능을 가진 조직에 등록, 변경, 신청, 비안수속 및 기타 절차를 수행

2) 금지 사항

- 외국로펌, 외국의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은 자문회사 혹은 기타명의로 중국 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외국로펌 대표처는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그가 고용한 보조 인원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중국 법률사무소에 투자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 또는 중국변호사와 손익을 분담하는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연합사무실을 만들거나 인원을 중국법률사무소에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

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의 지분적 권익을 향유하여서는 안됨.

3)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한 특칙

- 현재 홍콩, 마카오, 대만의 주민은 직접 중국사법시험에 참가할 수 있음.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되어 중국 국내의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홍콩, 마카오 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중국 국내 변호사의 업무 수행 권리를 향유하고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중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대만주민은 법률고문, 대리, 자문, 서류작성 등 방식으로 중국 국내의 비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의 방식으로 대만 관련 혼인, 상속 등의 소송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3) 외국 로펌의 중국대표처 설립 및 유지

1) 설립 요건

- 외국 법률사무소가 이미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개업했고 변호사 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함.
- 대표기구의 대표는 직업변호사여야 하며,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변호사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하며, 변호사직업윤리, 업계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함. 수석대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당해 외국 법률사무소의 동업자 또는 동등한 직위의 인원이어야 함.

2) 설립 절차

- 대표처 설립예정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 신청서류를 제출
- 관련 사법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함께 국가사법부에 제출



- 사법부에서 6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 직업허가증, 대표직업증서를 발급함.
- 직업허가증, 대표직업증서에 근거하여 대표처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에서 대표처 설립등기를 함.
- 관련 사법국에 대표처 설립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2일내에 등기 절차를 완료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은행, 외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3) 외국로펌 중국대표처의 유지에 필요한 업무

- 매해 연도감사
- 대표처 설립 후 소속 파견인원, 현지인원에 대한 등록, 처리
- 인원 변동에 따른 사항 등록/취소
- 연도감사와 별도로 사법국에 통계자료 제출
- 사법국 지정 시스템상의 자료 등록(별도 ID/PWD 보유)

건설 및 부동산

중국 건설시장 규모는 2012년 1조 5,299억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규모에 비하여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은 미약하여 1991년 최초 진출 이래 약 137.9억달러(806건)를 수주하는데 그치고 있다. 주로 한국 그룹계열사 및 제조업체 발주공사와 일부 아파트, 빌딩 등 투자개발형 공사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국 진출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가 2008년 22.5억 달러의 수주를 피크로, 2009년 99건 8.2억달러, 2010년 78건 6.0억달러, 2011년 65건 10.6억달러, 2012년 75건 15.6억달러, 2013년 1~9월 55건 3.4억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설계·감리용역 분야도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현지법인 설립시 외자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건설시장 진출조건이 다소 완화하였으나, 한국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외국 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합자나 합작을 통해 현지 외국인투자 건설 기업을 설립하거나(특급 시공기업은 등록자본금 3억위안 이상, 1급은 5천만위안 이상, 2급은 2천만위안 이상) 사전에 차관공사나 외국인투자 공사 등을 수주한 다음 본국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증, 과거공사실적 등을 토대로 5년 기한의 ‘외국기업도급자질 증명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證)’를 취득하여 중국 내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 등록 자본금은 면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외국 건설기업은 2005.7.1일부터는 반드시 중국내에 현지법인(독자, 합자 또는 합작형태)을 설립하여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GS건설, POSCO건설, SK건설, STX건설, 성도ENG, 현대건설, 삼성ENG, 삼성물산(건설), 롯데건설, 엠코 등이 현지 면허를 취득하였다.

외국기업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다음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 전액 외국투자, 외국증여금, 외국투자 및 증여금으로 건설하는 공사
 -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공여받아 시행하는 국제입찰공사
 - 외자가 50% 이상인 중외 합자 프로젝트, 또는 50% 미만이나 중국기업이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
 - 중국기업이 투자하였으나 기술상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공사
- * 3, 4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비준으로 받아야하고 중국 건설사와 공동으로 수행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구분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 각 성·시·자치구(대외무역경제 주관부문)에 설립신청→국무원 보고→국무원(상무부)는 건설부의 의견을 들어 가부결정하고 허가서 발급(총 70일 소요)→신청인은 허가서를 받아 성·시·자치구에 등록하고 영업허가 취득



한편, 외국기구가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승인에 따라 부동산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제외) 및 중국 내에서 근무, 학습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실제 수요에 맞는 한 채의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 분양건물(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 자체 주거용이 아닌 분양건물은 구매할 수 없다.

중국의 경제발전, 도시화 및 위안화 절상 등을 기대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의 기업이 호텔, 오피스빌딩,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2.1월 개정, 시행중인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하고,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빌딩, 국제전시장의 건설과 경영 및 토지개발·분양(합자, 합작의 경우만에 가능하도록 함) 등 부동산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택의 실물분배제도를 폐지하고 상품주택 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택건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저소득 가구를 위해 12.5 계획 중에 서민주택 3,600만채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 건설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이 경기과열의 주요인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개발업자의 토지양도 거래 참여를 제한(2010.1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비중을 제고(서민

주택 건설용지가 전체 토지공급의 70%에 달해야 함. 2011.2월)하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지공급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기업이 자칫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후분양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철저한 사전 시장 및 입지 조사와 파트너의 물색 등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6.7월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시장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을 발표해 외국기관이 중국 내 설립한 지점, 대표처(부동산 기업 제외)와 중국 내 근무와 학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실제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반드시 실명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기업 설립시 투자액이 1000만달러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이 등록자본 미납, 국유토지사용증 미취득,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젝트 투자 총액의 35% 미만일 경우 대출과 외환결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 실거주자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을 제한받게 되었다.

금융

중국은 외국의 금융기관 진출·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설치신청에 대



한 허가, 엄격한 지점 및 현지법인 승격요건, 위안화 업무제한 등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을 살펴보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 영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은행지점은 신청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200억달러 이상(현지법인은 총자산 100억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1) 은행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외국계 은행 역시 최근 10년간 점포확장 속도도 가속화되고 확장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은 2013.6월말 현재 현지법인 6개, 지점형태 3개, 사무소 2개 등 총 83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북경, 상해, 심천, 청도 등 한국인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영업범위도달러, 위안화 업무 시장에서 한국계 고객뿐만 아니라 중국계 고객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관행적으로 1년에 분행 1개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내륙개발 및 동서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점포 개설시 연해 지방에 대한 점포인가를 제한하고 외국계 은행 미진출 지역과 동북, 중부, 서부지역 진출에 대해 우대조건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점포확장 속도 둔화로 외국계 은행의 중국내 영업 확장과 현지화 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 WTO 가입 후 은행업 현황

- WTO 가입 후 2006년 발표한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와 <외국계 은행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통해 외국계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은 후 외국계은행법인 또는 분지행을 설립할 수 있다.
 - 법인설립 납입자본은 10억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이며, 분지행 설립시 총행은 1억위안 혹은 해당 자유환전 화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또한 예금, 단기·중기·장기대출, 어음인수와 어음할인, 정부채권·금융채권 매매·주식 이외의 기타 외환유가증권 매매, 신용장업무 및 담보제공, 국내외 결산·자기명의 또는 타인명의의 외국통화 매매, 대리보험업무·동업자간 자금차입, 대여금고 제공·신용조사 및 자문업무,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허가한 기타업무 범위 내 일부 또는 전부 외환업무와 위안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하지만 위 범위 내 위안화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감독국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전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
 - 신청 전 2년간 연속적으로 이익 실현
 -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

2) 제약 조건

- 2011년말부터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예대비율이 75% 이하로 규제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어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현재 중국은 외국은행의 중국내 은행의 지분 소유를 20% 미만(합작법인인 경우 25% 미만)으로 하고 있어 한국계 은행이 중소형은행의 경영권 획득이 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증권업

QFII제도 도입(2002.11월), 비유통주 개혁(2005.4월) 등 점진적으로 주식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단, '외자지분참여 증권회사 설립규칙'에 따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경우 외국계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다.

(3) 보험업

보험회사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 전 2년 이상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본사의 자산이 50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보험시장 전면 개방(2004.12월)으로 영업범



위 및 영업지역 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생명보험회사의 현지법인은 합자형태만 가능하고, 지분취득률 50% 상한은 유지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2년 이후 자동차 강제책임보험이 외국손해보험사에게도 허용되었다. 다만, 감독당국의 별도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21개 외국 손해보험회사중 8개사(한국계 2개 포함)에 대해 취급인가가 이루어졌다.

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 ‘전신조례’, ‘외상투자통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12.11일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후 2008.9.10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於修改「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的決定)에 따라 개정돼 2009.2.5일 공포되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할 수 있으며 등록자본금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등록자본금

지역	분류	최저 등록자본금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0억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0만위안
1개 성(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1억위안
	부가통신서비스	100만위안

출처: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기간통신서비스(무선호출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시내·장거리·국제 유선통신 등의 경우 49%를 넘을 수 없고, 부가통신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 중의 무선호출 서비스 포함)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서비스 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외 주요 투자자 자격요건

중국측 주요 투자자	외국측 주요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주무부처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p>*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중국 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법인 · 법인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기간통신 서비스 경영허가증 획득 ·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 기간통신서비스 경험이 있고 실적 양호 <p>*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총출자액 대비 출자액 비율이 30%를 넘는 최대 투자자를 지칭</p>

출처: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서비스 경영 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통신기업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업정보화부가 발행하는 ‘기간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과 ‘다지역 부가통신서비스 경영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1개 성(省), 직할시, 자치구인 경우에는 각 성과 직할시, 자치구 산하의 전기통신관리부에서 발행한 ‘부가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개정판)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50% 이내,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단, 2013.9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國務院關於印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的通知)’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를 제한을 폐지했다.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부가통신서비스 개방 내용

업종	구분	개방조치
부가통신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 기타 전신서비스 인터넷 정보서비스 데이터 처리 및 스토리지 서비스 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보안이 담보되는 전제하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정 형식의 일부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

또한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독점체제였던 통신서비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분야는 China Mobile(中國移動)과 China Unicom(中國聯通)이 경쟁하고, 유선통신분야는 기존의 China Telecom(中國電信)에서 China netcom(中國網通)이 분리되어 이른바 4강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장 및 유선전화 사업 정체로 무선 분야 제1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지배적 위치가 심화됨에 따라 통신시장 구조개편 요구가 대두되었다. 중국 정부는 유무선 사업자를 통합하여, 2008.5.23일 기존의 4대사업자와 China Tietong(中國鐵通)을 합하여 3

개의 종합사업자를 설립하는(5합3)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였고,(결과적으로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ina Mobile 3개 사업자) 2009.1.7일 3장의 3G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즉 차이나모바일과 China Tietong이 합해진 신China Mobile은 TD-SCDMA를, China Unicom으로부터 CDMA부문을 인수한 China Telecom은 신China Telecom이 되어 CDMA2000을, China Unicom(GSM부문)과 China netcom이 합병한 신China Unicom은 WCDMA를 각각 기반으로 제3세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체제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3월 중국의 통신 3사가 발표한 2011년 연차보고서로 봤을 때, 차이나모바일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기타 통신사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1인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 3사 2011년 실적

통신사	매출액		순이익		순이익률	이동통신 가입자 수(억 명)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 점유율	ARPU (위안)
	금액 (억위안)	증가율	금액 (억위안)	증가율				
차이나 모바일	5,279.99	8.8%	1,258.70	5.2%	23.8%	6.5	66.6%	71
차이나 텔레콤	2,449.43	11.7%	164.04	10.5%	6.7%	1.26	12.9%	52.4
차이나 유니콤	2,091.7	22.2%	42.3	14.2%	2%	2	20.5%	47.3

출처: 각사 2011년 연차보고서, 건흥리서치 정리

4G 기술의 경우 중국은 3세대의 TD-SCDMA에서 진화한 TD-LTE를 4세대 기술표준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국무원이 2006년에 발표한 ‘2006- 2020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요강’에 16대 중대 전문프로젝트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TD-SCDMA가 여러가지 기술적 단점과 한계를 보이며 WCDMA, CDMA2000과의 시장경쟁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4G로의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상해 엑스포에서 세계 최초의 TD-LTE 시범망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시연한데 이어, 2011.3월에는 ‘6+1’도시 TD-LTE 대규모 테스트 계획을 발표, 심천(深圳), 항주(杭州), 상해(上海), 광주(廣州), 남경(南京), 하문(廈門) 등 6개 도시에서 TD-LTE 대규모 기술테스트를 추진하고 북경 장안가(長安街) 주변에 TD-LTE 시범망을 구축하였고, 대규모 기술테스트의 1단계(싱글모드 단말기 테스트) 및 2단계(다중모드 단말기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TD-LTE는 초기부터 Qualcomm, ST-Ericsson, Nokia-Siemens, Alcatel-sbell, Ericsson, Bharti Airtel, Softbank Mobile 등 세계적인 칩, 장비 업체와 해외 통신사업자들의 참여가 활발해 기술발전 및 산업화 과정이 TD-SCDMA보다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10.8일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및 4세대 모바일 통신(TD-LTE) 산업화 전문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 4G TD-LTE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3대 이동통신사업자도 2013년 통신전시회(2013 PT ExpoComm)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4G 사업을 선보였다. 공업정보화부는 2013.12.4 China Mobile(中國移動),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 등 3대 통신사에 대해 4G 라이선스를 발급(LTE-TDD 방식만 발급되었고 LTE-FDD 방식은 제외)하였다. 이어 2013.12.18에는 ‘국가 정보소비 시범도시’로 전국 68개 시(市), 구(區), 현(縣)을 선정하여 광섬유 브로드밴드와 TD-LTE 네트워크 구축을 지방정부의 건설 및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고, TD-LTE 네트워크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보급률을 제고하고 인터넷 접속속도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업정보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지정한 ‘세계 통신의 날’인 2014.5.17에 China Unicom(中國聯通) 및 China Telecom(中國電信)에 주파수 분할방식인 LTE-FDD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2014년을 본격적인 4G 상용화 원년으로 삼고, 연말까지 1억 대의 TD-LTE 단말기 출하할 예정이다.

한편, 복수 사업자 경쟁체제에 따른 망간 접속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산업부(현 공업정보화부)는 2001년.11.8일 ‘통신망 상호접속 분쟁 처리방법(電信網間互聯爭議處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중국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전용통신망 사업자 간에 인터넷 기술방안, 상호접속 관련 네트워크 기능 및 통신시설 제공, 상호접속 시한, 통신서비스 제공, 망간 통신품질, 상호접속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에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 공정경쟁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전신(전화·통신)조례(2000.9.25일 공포)를 대체할 수 있는 「전신법(電信法)」의 입법화를 198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다.

■ 「전신조례」의 한계성

- 1997년까지, 중국의 통신산업은 ‘행정과 경영 미분리(政企合一)’ 상태로, 주로 ‘홍두문건(紅頭文件)¹⁶⁾’에 의거한 행정관리 실시
- 1998년부터 통신산업 개혁 추진, ‘행정과 경영 분리(政企分離)’ 및 정보산업부(信息產業部, 현 공업정보화부) 출범. 그후 잇따라 우정과 통신 분리, 통신사업자 구조조정 추진
-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관리 방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었으며, 규제 필요상 우선 <전신조례> 제정 및 2000.9월부터 시행
- 그러나 <전신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한계성 노출, <전신법> 제정 가속화 필요
 - 인터넷 활성화, 관리에 대한 내용 거의 전무. 사물인터넷 등 최신 이슈에 관한 내용 부재
 -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내용 부재 또는 미흡
 - 보편서비스 기금 설립, 공중통신망·전용 통신망·방송 전송망 구축시 국무원 산하 정보산업 주무부처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 규정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

16_ 중국공산당의 각급 기관이나 국무원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급기관에 하달하는 규범성(規範性) 문건의 속칭. 문서의 윗부분에 붉은 글씨로 제목과 발행기관이 표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아래쪽이나 끝에 붉은 도장을 찍는 일종의 공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률은 아니지만 하급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닌 문서



그러나 「전신법」이 단시일 내 공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 컨버전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신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신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국가광전총국 등 유관부서와 합의를 거쳐 방통융합, 상호접속, 독점방지 등 조항의 내용을 확정해야 하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신조례」 제정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초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신법」은 입법절차에 따라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무원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신법」 제정 관련 일지

- 1980년 <전신법> 초안 작업 개시
- 1993년 <전신법> 초안 작업 제8차 전인대 입법계획에 삽입
- 1998년 제9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종 입법항목으로 삽입
- 2000.9월 정보산업부 “소전신법”이라 지칭된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발표, 동 조례는 행정법규로 기타 법률과 상충시 기타 법률이 우선되어 시장을 규범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2001.4월 <전신법> 초안영도소조, 공작소조, 전문가지문위원회를 구성, 정보산업부 왕쉬둥 장관이 초안소조 조장 담당
- 2003년 <전신법> 제10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삽입
- 2004.6월 정보산업부 제6차 업무회의에서 <전신법>(심사초안) 통과, 국무원에 제출
- 2005.12.28일 전인대상무위원장 <전인대상무위원회2006년입법계획> 발표
- 2007.3.9일 전인대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이 예비 입법항목으로 삽입
- 국무원 2010년 입법계획,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전신법> 포함
- 이후 시장에서는 <전신법>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아직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통신관련 법체계의 대표적인 미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전신조례’와 비교해봤을 때 ‘전신법’ 초안(2009.7.27일 개정판, 이하 ‘전신법 초안’이라 약칭)은 3망융합, 통신표준, 통신시설 구축, 비상통신 보장 및 통신관계, 감독검사 등 내용을 추가하고 법적책임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통융합이 대세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IPTV, 모바일

TV, 인터넷 동영상 등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2010.1.13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방송망, 통신망, 인터넷을 하나로 융합하는 ‘3망융합 2010-2015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방송과 통신 상호진입 시범사업 실시, 케이블 방송망의 디지털화 및 쌍방향화 추진, 통신 브로드밴드망 구축 가속화, 도시의 FTTH 추진,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망 커버리지 확대 등을 3망융합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국무원에서 2010.6월 승인한 ‘3망융합 시범방안’에 따르면, 국가광전총국은 IPTV 통합편성·방송제어 플랫폼 구축·관리 권한을 독점한다.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유통신사업자는 국가광전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IPTV 전송, 모바일 TV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는 제외된다.

원칙상 시범거점지역 1곳당 IPTV 전송 서비스는 통신사업자 1개사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TV Distributing 서비스는 적격 통신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국내 IP 전화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1개사 또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조인트벤처에서 운영할 수 있다.

❖ 방송·통신 상호진입을 위한 서비스 허가 신청

구분	신청기관
국유 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통신사업자 그룹본사는 국가광전총국에 방송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현지에서 해당 방송서비스 제공 · IPTV 전송, 모바일 TV 방송 Distributing, 공중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등 방송 서비스(방송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 서비스 제외) 가능
케이블 방송망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省)급 통신관리국에 부가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 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¹⁷ 허가 신청 · 공업정보화부에 케이블 방송망 기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국내 IP 전화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부가서비스 허가 신청. 허가를 받은 후 시범거점 지역의 자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 제공

국무원 관공청은 2010.6월말에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명단을 발표 한데 이어 2011.12.30일 2차 명단을 발표해 시범지역을 확대시켰다.

❖ 삼망융합 시범거점지역 1차, 2차 명단

구분	도시
1차 명단 (12개 도시)	베이징시(北京市), 상하이시(上海市), 라오닝성 다롄시(遼寧省大連市), 헤이룽장성 하얼빈시(黑龍江省哈爾濱市), 장쑤성 난징시(江蘇省南京市),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杭州市), 푸젠성 샤먼시(福建省廈門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青島市),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漢市), 후난성 창사·주저우·샹탄 지역(湖南省長株潭[長沙·株洲·湘潭]地區), 광둥성 선전시(廣東省深圳市), 쓰촨성 옌양시(四川省綿陽市)
2차 명단 (42개 도시)	톈진시(天津市), 충칭시(重慶市), 저장성 닙보시(浙江省甯波市), 허베이성 스자좡시(河北省石家莊市),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太原市), 네이멍구 자치구 후허하오터시(內蒙古自治區呼和浩特市), 라오닝성 선양시(遼寧省沈陽市), 지린성 창춘시(吉林省長春市), 안후이성 허페이시(安徽省合肥市), 푸젠성 푸저우시(福建省福州市), 장시성 난창시(江西省南昌市), 산둥성 지난시(山東省濟南市), 허난성 정저우시(河南省鄭州市), 광둥성 광저우시(廣東省廣州市), 광시자치구 난닝시(廣西壯族自治區南寧市), 하이난성 하이커우시(海南省海口市), 쓰촨성 청두시(四川省成都市), 구이저우성 구이양시(貴州省貴陽市), 윈난성 쿤밍시(雲南省昆明市), 티베트자치구 라싸시

17_ 부가통신서비스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 아날로그 주파수공용 통신서비스(TRS), 무선호출 서비스, 국내 VSAT 서비스, 유선통신망 기반의 국내 데이터 전송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전송 서비스, 가입자망(CPN) 서비스, 네트워크 호스팅 서비스

구분	도시
	(西藏自治區拉薩市), 산시성 시안시(陝西省西安市), 간쑤성 랴저우시(甘肅省蘭州市), 칭하이성 시닝시(青海省西寧市), 닝샤자치구 인촨시(寧夏回族自治區銀川市), 신장자치구 우루무치시(新疆維吾爾自治區烏魯木齊市), 장쑤성 양저우시(江蘇省揚州市), 타이저우시(泰州市), 난통시(南通市), 진장시(鎮江市), 창저우시(常州市), 우시시(無錫市), 쑤저우시(蘇州市), 후베이성 샤오간시(湖北省孝感市), 황강시(黃岡市), 어저우시(鄂州市), 황산시(黃石市), 셴닝시(鹹甯市), 셴타오시(仙桃市), 천먼시(天門市), 첸장시(潛江市), 광둥성 포산시(廣東省佛山市), 윈푸시(雲浮市)

중국의 3망융합은 현재 IPTV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국무원에서 3망융합 시범거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미 IPTV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이다.

투자 장벽

주요 투자현황 및 투자전망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는 2008-12년간 연평균 8.8% 증가하였으며, 2011년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1993년 외자 최다유치개도국으로 등장한 이후 미국과 외자유치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중이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액 (억달러)	924	900.3	1,057.4	1,160.11	1,117.16
증가율(%)	23.6	-2.6	17.4	9.72	-3.7

중국의 2012년 외상투자기업수는 44만여 개로, 2011년보다 1.32% 감소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약 1,117억달러로 2011년에 비해서는 3.7% 하락하였다.

최근 중국 내 외국인 투자유치 총액 중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3.9%에서 2010년 47.3%, 2011년 50.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차 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2001년 74.2%에서 2010년 50.9%,



2011년 48.1%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메디컬, 친환경 에너지 절약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3년에는 12.5 계획이 3년째를 맞아 주요 프로젝트 투자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상반기는 에너지 부분 투자 부진으로 증가세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인프라 투자 호조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2012.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인프라 투자는 올해까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일정 수준의 투자 성장을 유지하더라도 점차 투자 의존도를 낮추면서 투자구조를 최적화는 정책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투자정책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 발표

현재 중국 내 투자는 현금, 부동산,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출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분 출자방식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10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회사등록기관) 및 외환관리국이 각각 지분출자관련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투자에 대한 인허가기관인 상무부가 관련 규정을 발표하지 않아 실무상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출자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5.4일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해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11.10월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출자 임시규정”을(이하 ‘임시규정’이라 약칭) 발표했다. ‘임시규정’은 2012.10.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적용범위

- 국내·외 투자자(이하 ‘지분출자인’이라 약칭)가 중국 국내기업(이하 ‘지분기업’이라 약칭)에 지분으로 출자해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

립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즉, 신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를 통해 내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2) 규제사항

- 출자지분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권한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해야 한다.
- 피투자기업 전체 주주의 지분출자액과 기타 비화폐자산의 출자금액 합계는 등록자본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분에 대한 평가

- 출자에 사용될 지분은 법에 의해 설립된 중국 국내 평가기구로부터 가격평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지분출자인과, 피투자 기업의 주주, 기타 투자자는 협의 하에 지분출자금액 및 지분가액 확정을 확정한다.

9개 중점업종 기업 구조조정

2013.1월 공업정보화부 등 중국 정부부처는 공동으로 ‘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重點行業企業兼並重組的指導意見(工信部聯產業[2013] 16호))’을 발표하였다. 2012년초 발표된 산업고도화 계획(2011~15년)을 통해 중국은 자동차, 철강, 시멘트, 선박, 희토류, IT, 의약, 전해알루미늄, 현대화 농업 등 9개 업종을 위주로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는 업종별로 2015년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목표가 제시되었다. 공업정보화부와 12개 정부 부처는 철강산업 구조조정 정책 실시세칙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국무원은 2013.10.15 ‘심각한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실시세칙은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 M&A펀드 설립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국유자산 운영예산에 기업 구조조정 전문 자금을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법령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이 중국 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한지를 규정한 외국인투자지침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인 투자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제한은 지분을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며, 장려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말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1995.6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최초 실행된 이래 5차례(1998, 2002, 2005, 2007, 2011년) 수정되어 2012.1.30일자 수정안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대외개방 확대, △제조업 개혁,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추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금융·의료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있다. 의료기구 부문이 제한산업에서 제외되어 의료기기 시장 개방 확대가 기대된다. 자동차 산업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완성차 조립 산업이 투자 장려산업에서 제외되었고, 과잉생산과 중복 건설을 막기 위해 실리콘, 석탄화학공업 역시 장려류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별장, 골프장 건설이 투자 제한산업에 추가되어 동 분야 외자유치 감소가 예상된다.

(1) 신규 투자 장려 산업

1) 농림목어업

- 녹색, 유기농 야채 재배에 대한 투자(단, 중저산출 농촌토질개선, 밭
임 무공해 재배기술, 유전자 변형 수목 신품종 육성에 대한 장려조
항 삭제)

2) 광산채굴업

- 셰일가스(shale gas), 해저천연가스 수합물에 대한 탐사와 개발
(단, 석유탐사기술의 개발과 응용 및 오일셰일(oil shale), 중유 등
비일상적 석유자원탐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방식을 ‘합작’에서 ‘합자
및 합작’ 두 가지 방식으로 변경), 해저 천연가스 수합물에 대한 탐사
및 개발

3) 제조업

-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외자지분율 50% 미만) 생산
(단, 담배산업 분야 내 제지법연초박편 생산 및 담배필터 생산에 대
한 투자 장려조항 및 자동차제조(외자지분비율 50% 미만) 및 자동
차 R&D 건설에 대한 투자 장려조항 삭제)

4)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

- 재생수 공장건설과 운영 및 자동차 충전소, 배터리 교환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

5) 도소매업

- 일반상품의 공동배송, 신선 농산품의 저온배송에 대한 물류 및 그와
관련된 기술서비스, 농촌 프랜차이즈 배송업에 대한 투자

6)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 창업 투자기업 및 지재권 서비스 등 두 가지 분야 추가



7) 교육

- 고등교육기구(합자, 합작에 국한), 직업기능 훈련

8)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업

- 철도간선망의 건설 및 경영, 국제컨테이너 복합운수 업무

9)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탐사업

- 바이오 프로젝트 및 바이오 메디컬 프로젝트 기술, 바이오 에너지 개발기술, 자원 재활용 및 종합이용기술, 산업 배출물의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응용

10) 수리, 환경, 공공시설관리업

- 오수 및 쓰레기 처리장, 위험 폐기물 처리장(소각장, 매립장) 및 환경오염관리시설의 건설 및 경영

11) 보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업

- 노인, 장애인 및 아동 서비스기구

12) 문화, 체육, 오락업

- 공연장소 및 체육시설 경영, 헬스/경연, 체육훈련 및 중개서비스

(2) 신규 투자 제한 산업

제한형 투자 산업 분야에서 추가한 내용은 주로 광산자원 탐사와 개발에 대한 제한과 농산품 가공종류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일부 생산능력 한도제고(땅콩 및 면화씨 등 각종 식용유지 가공산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 ①탄산음료 생산, ②페타이어 재생산 및 저성능 공업 고무부품생산, ③컨테이너 제조, ④세금공제 금전 출납기(중국세법에 따른 세금 등이 표시되는 금전 출납기) 제조, ⑤기초전산업무 등 중국 국내 업무 및 국

제 업무에 대한 제한, ⑥특허경영, 위탁경영, 상업관리회사 등 상업회사, ⑦상품경매, ⑧금융임대회사, ⑨대도시 도시가스, 열 공급 및 공배수관망의 건설과 경영, ⑩의료기관(합자 및 합작)에 대한 투자제한을 삭제하였다.

(3) 신규 투자 금지 산업

별장건설과 경영에 대해 ‘투자 제한’에서 ‘투자 금지’로 강도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우편물의 중국내 특송 서비스 업무도 금지 산업 분야에 추가됐다.

단, 인터넷 문화 경영 분야에서 음악의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사항에서 제외하였다.

지방정부의 외자심사 승인 권한 확대

중국 국무원이 2010.4.6일 발표한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권한 조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심사 및 승인 권한은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외자심사 승인 권한이 기존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대폭 상향되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내 투자 장려 산업과 투자 허가 산업의 외자심사 승인 권한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단, 투자 금지 산업 분야는 여전히 투자가 금지되고, 투자 제한 산업에 속하는 5,000만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는 계속 중앙정부의 심사 승인을 받는 등 제한규정이 유지된다. 또, 에너지 다소모, 오염물질 다배출, 자원 수출형 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할 것이며, 이들 산업군에 한해서는 투자 심사 및 비준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 영업상의 규제

과거 투자진출 후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도 현지조달 의무(local contents), 출자비율 규제, 수출의무 비율, 외화 평형유지의무 등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국의 WTO 가입 등 제도의 개선과 개방 확대에 따라 이러한 영업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관련 수정 법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2000.10.31 수정판)
- 「외자독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2001.04.23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001.03.15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2001.08.01 수정판)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000.10.31 수정판)
-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 (2006.01.1 수정판)

(1) 현지조달(Local Contents) 의무

기존 외자기업은 필요한 기계설비, 원자재, 연료, 부속품, 사무용품 등을 중국 내에서 구입할지, 외국에서 구입할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중국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현지조달 의무가 폐지되었다.

(2) 출자비율 규제

중국은 <中外합자기업의 등록자본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임시규정(119986)>에 근거하여, 외자기업의 총투자액에 대한 등록자본의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총투자액은 차입금을 포함한 합영기업의 기본건설 자금, 생산·운전자금 등 계약과 정관이 규정하는 총액이며,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 총액이다. 외자기업이 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무부 및 공상행정관리국의 사전인가가 필요하다.

■ 투자총액 대비 등록자본금 최소 유지비율

(단위: 만달러)

투자금액	등록자본금/투자총액	최소등록자본금
300이하	7/10	
300~1,000	1/2	210
1,000~3,000	2/5	500
3,000이상	1/5	1,200

(3) 수출의무비율

과거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00% 단독 투자 외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품의 전량을 수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사실상 수출의무비율을 폐지하였다.

(4) 고용규제 및 노동조합 설립

중국 내 다른 기업의 재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지(상)사인 경우 현지직원 채용시 외국기업복무총공사(FESCO) 등 인력공급기관에 의뢰하여 채용해야 하며, 현지 직원의 급여를 동 기관에 납부하면 동 기관이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일정액(40~50% 수준)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지(상)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공회(노동조합) 설립은 총공회 및 지역공회의 강력한 행정지도로 설립이 강요되고 있다. 한편 공회가 있는 경우 공회가입자수에 관계없이 최고경영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 임금총액의 2%를 기업이 부담하는 공회비로 납부케 하고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공포·시행

한편 중국은 2008.1.1일부터 노동계약법을 시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연성 감소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임금 2배 지급 등)하였으며,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하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급)을 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도 일정부분 제약받게 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사회보장보험 부담

중국은 종전 국가와 국유기업이 보장해 주던 사회보장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 현재 양로보험(국민연금),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의료보험(건강보험), 생육보험(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을 도입,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률이 임금총액의 30% 이상에 달하여 기업은 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별로 조례(시행령에 해당)형태로 되어있는 관련 규정을 법률로 통합·격상하는 「사회보험법」을 제정 시행(2011.7월)중이며, 동 법률의 제정·공포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 법규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바,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2013.1.16일부터 발효되어, 파견근로자나 현지채용자, 자영업자 등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연금(養老)보험 가입이 일정기간 면제되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가입도 면제 받을 수 있다.

(2)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15% 내외의 임금인상율을 기록하였다. 2012년에는 23개 성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기준선은 14%였다.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5 계획 기간 중(2011~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2011.8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평균 21.7%, 2012년에는 25개성에서 평균 20.2%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최근 중국의 연간 근로자 임금인상율 및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안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각 지역별 최저임금기준 현황

(2013.9월 현재)

구분	시행시기	최저임금기준(단위: 위안/월)						비전일제 (위안/시간)
북경	2013.1.1	1400						15.2
천진	2013.4.1	1500						15
하북	2012.12.1	1320	1260	1150	1040			13
산서	2013.4.1	1290	1190	1090	990			14



구분	시행시기	최저임금기준(단위: 위안/월)						비전일제 (위안/시간)
내몽고	2012.11.1	1200	1100	1000	900			10.2
요녕	2013.7.1	1300	1050	900				13
길림	2013.7.1	1320	1220	1120				11.5
흑룡강	2012.12.1	1160	1050	900	850			11
상해	2013.4.1	1620						14
강소	2013.7.1	1480	1280	1100				13
절강	2013.1.1	1470	1310	1200	1080			12
안휘	2013.7.1	1260	1040	930	860			13
북건	2013.8.1	1320	1170	1050	950			14
강서	2013.4.1	1230	1150	1070	980			12.3
산둥	2013.3.1	1380	1220	1080				14.5
하남	2013.1.1	1240	1100	960				11.7
호북	2013.9.1	1300	1020	900				14
호남	2012.7.1	1160	1050	950	870			11.5
광둥	2013.5.1	1550	1310	1130	1010			15
광서	2013.2.7	1200	1045	936	830			10.5
해남	2012.9.1	1050	950	900				9.2
중경	2012.5.1	1050	950					10.5
사천	2013.7.1	1200	1070					12.6
귀주	2013.3.1	1030	950	850				11
운남	2012.5.1	1100	980	830				10
서장	2010.7.1	950	900	850				8.5
섬서	2013.1.1	1150	1050	950	870			11.5
감숙	2013.4.1	1200	1140	1080	1020			12.7
청해	2012.12.1	1070	1060	1050				10.8
녕하	2013.5.1	1300	1220	1150				12.5
신강	2013.6.1	1520	1320	1240	1160			15.2
대련	2011.4.1	1100	1000					11
하문	2012.8.1	1200						12.7
심천	2013.3.1	1600						15.2

※ 지역내 도심, 주변부, 농촌 등 급지에 따라 차이(일부지역 보험포함)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규정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투자기업들이 중국의 복잡한 청산절차로 인해 겪는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8.2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외상투자기업 청산관리규정”이 폐지되고, 내외자 기업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중국 “회사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다만, 특별법인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등 외상투자 관계 법령과 회사법의 내용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특별법인 외상투자 관계법령이 원칙적으로 우선하게 된다.

한편 “회사법”에 따른 청산세부규정이 한동안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으나, 2008.5월 “청산 및 파산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발표되어 대략의 규정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에 따라서는 청산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길게는 청산에 약 2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2008.5월 “청산 및 파산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라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장부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무한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바 우리 진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락 사무소 설치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 조사나 자사 상품의 홍보 등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소(辦事處) 혹은 대표처(代表處)라 부르며, 우리 기업에는 연락 사무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 사무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단, 6개월 기간으로 본사의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하는 등의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연도감사를 받아야 한다.
- 본사파견 간부(현지직원 채용 가능, 단 직접 채용 불가)의 직명은 수석 대표와 대표이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중국 현지의 시장 조사, 중국 사업 파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법인 설립 전 자사 상품의 홍보,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제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당사자가 직접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허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를, 해운업 및 해운대리상은 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민용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연락 사무소의 임의적인 등기사항 변경 행위와 허위 증명서류 제출 행위가 빈번해지고, 특히 지방소재 연락 사무소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2010.1.4일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과公安部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후 2010.11.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조례」가 2011.3.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연락 사무소에 대한 관리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다.

(1) 연락 사무소 등기 심사 강화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연락 사무소 등기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증명서(최소 2년 이상),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각각 받아야 한다. 단,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기업이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혹은 연락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한해 현행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소속 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발급한 연락 사무소의 등기증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한다.



(2) 연락 사무소 대표인원 관리 강화

공상총국은 ‘연락 사무소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 사무소 대표 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우, 관할 공상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표 인원수가 절대로 4명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표 인원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현지 공상국이 직접 연락 사무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연락 사무소 위법행위 관리강화

각 지역 공상행정 관리국에서는 신설 연락 사무소에서 등기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주소지 등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며, 연락 사무소가 각종 방법으로 금액을 수취하고, 영리 활동에 종사한 것이 발각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연락 사무소 설립 등기를 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연락 사무소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과세업무를 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연락 사무소 경비지출액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과세처분 할 수 있다. 등기증 등록기한 만료, 소재 주소지 임의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기록이 있는 연락 사무소에 대해서는 신용분류 감독관리를 따로 진행한다.

(4) 기타 주의사항

연락 사무소는 일반 상주 사무소(영업행위 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 사무소(택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같이 과세 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 기관 연락 사무소(정부기관, 면세 형태) 등 3개의 형태로 나뉘는데, 「외국기

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연락 사무소는 위 3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중국 법률상 명시된 연락 사무소 업무 범위에 맞게 시장 조사 등 비영리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 연락 사무소가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법인이 있으나 타 지역에서 영리 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 적발시, 심할 경우 연락 사무소 등기 말소 및 과세처분이 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표처도 폐쇄시에는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표처를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중국내 법인설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중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농촌 토지는 농민 집체 소유)의 두 가지이고, 개인이나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은 용도별로 사용 연한이 다른데, 거주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기술·문화·위생 및 체육 용지는 50년, 상업·관광 및 오락용지는 40년, 복합 또는 그 밖의 용지는 50년이다. 다만, 주거용지의 경우 2007.3월 제정된 물권법(2007.10.1일 시행) 제149조에 의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약법 제213조 제1항은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체소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20년 임대기간 규정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출양(出讓)방식, 유상이전방식, 상품주택



구매 방식, 합자·합작방식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 유상출양방식: 토지사용자가 토지관리부문으로부터 국유 토지 사용권을 최초로 양도받는 것으로 협의취득 또는 입찰·경매·공시 등의 방식을 취한다.
- 유상이전방식: 이미 출양 된 토지사용권을 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계약이나 지상건물의 매입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 상품주택 구매방식: 직접 상품주택을 구입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합자·합작의 방식: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합자 혹은 합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국가법률 및 법규상의 구체적인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4) 금융상의 제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 중국과 외국기업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상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1) 과실송금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시 외환관리국 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

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반 서류를 요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2) 본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자금차입 규제

2004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경외외국계은행외채관리방법>을 통해 외채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외국계은행 모행 혹은 관리부에서 허가 받은 중국 역내 채무자의 연간 여신한도, 유동성수요 및 역내 대출항목 수요 등에 따라 연간 단기외채 지표를 확정하되, 외채 잔액이 외화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중장기외채는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현재 외환관리국은 은행별 외채잔액 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외자은행이 외채한도를 소진할 경우 중국 내에서 차입할 수밖에 없어 자금코스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기업 및 외자은행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첨부]

중국의 WTO 가입과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비관세 장벽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 ○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 실시(6종 116개 품목) ○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가입 5년 후 수입허가증제 취소 • 가입 4년 후 非정부 구매 기계 전자전기제품 입찰제 취소 • 가입 5년내 모든 쿼터제 점진 취소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1.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함.

관세 장벽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평균 관세율 17% ○ 농산품 평균 관세율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관세율 2005년까지 9.4%로 인하 • 농산품 관세율 2004년까지 17%로 인하 (2013년 기준, 농산품 관세율 14.8%) • 중국은 WTO 가입 후 정보통신기술 협정(ITA)에 서명하고 ITA 적용 품목 중 2/3에 대해 2003.1.1일 까지 관세폐지, 잔여분은 2005.1.1일까지 관세폐지 • 자동차 관세는 현행 80~100%에서 2006.7월 까지 25%로 인하, 같은 기간 중 부품은 23.4%에서 10%로 인하 •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율 할당제도' 및 국가 또는 국영기업이 농산물 수입 등을 관리하는 'state trading' 적용

출처 : wto 정책보고서(중국)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pr_e/s300_e.pdf

투자 조건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Ms 시행 •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 •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 • 수출의무비율 폐지 •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심사 일원화 추진

출처 : wto 정책보고서(중국)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pr_e/s300_e.pdf

대외무역권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 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 ○ 상해(浦東), 심천(深圳)의 합자 무역회사에 한해 각종제품 수출입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 이내 점진적으로 대외 무역권 부여

유통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도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 심천 소재 합자 무역회사 및 개방 시범도시 소재 합자소매업체에 한해 외국생산제품의 중국 내 유통 허용 ○ 외국인기업의 타사제품 도매 금지 ○ 4개 직할시에 한해 외국인 소수지분 합자도매업체 각 1개사 설립허용 ○ 외국인기업의 유통망, 도매점, 창고시설 소유 및 경영 금지 	■도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의 식염, 연초 도매업은 불용 • 2005.1월 이전 합자기업의 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 유통 허용. 2003.1월 이전 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除草) 필름 유통 허용 • 2002.1월 이전 합자기업의 외국 다수 지분 허용: 유통업체 진출 지역 및 수량 제한 폐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제조 상품 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 • 외국서비스업자의 유통상품 관련 서비스 전면 허용(A/S 포함)
■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성 성도(省都),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에 한해 합자소매업체 '제한적' 허용 	■소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煙草)는 개방대상에서 제외 • WTO 가입후 5개 경제특구,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青島, 鄭州, 武漢에 합자소매업체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이하 분점보유 합자소매 업체의 외국측 지분 65% 허용. 분점 3개 초과 시에는 중국측 다수 지분 요구 ○ 합자소매업체의 도매업 가능(별도승인건) 	<p>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京, 上海는 합자소매업체 4개 이하 허용. 기타 도시는 2개 이하로 제한 • 北京소재 합자기업 2개사의 北京내 분점설치 허용 • 2002.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및 각 성 성도(省都), 重慶, 寧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 2003.1월 이전 소매유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보유비율 제한규정 폐지 • 외국 유통업체 점포면적 20,000s/m 미만 제한규정 폐지(中-EU 타결안)
<p>■ 프랜차이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4월부터 내외국(内外資)기업의 직판(direct sales) 금지 	<p>■ 프랜차이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1월 이전 모든 제한규정 폐지 • 향후 직판활동 관련 조례·규정 제정시 WTO 회원국들과 논의

운송 및 관련 서비스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p>■ 철도·도로 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허용 • 2003.1월 이전 외국인투자 도로 운송 업체 설립 허용. 2006.1월 이전 외국인 독자 철도운송업체 설립 허용
-	<p>■ 창고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설립허용 • 2003.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p>■ 화물운송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측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 ○ 극히 제한적·예외적 범위내에서 외국인 단독투자업체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허용지역 제한 ○ 절대다수 합자기업은 국제 화물운송 영업만 허용되고 극소수만이 국내화물 운송 영업 가능 	<p>■ 화물운송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 2004.1월 이전 외국유통기업의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 설립 1년후 지사설립 허용(등록 자본금 US\$ 12만 추가 요구) • 합자기업 최초 설립 5년후 합자기업 추가 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업무범위를 국제운송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외국측 소수 지분만 허용	■ 항공기 정비 • 합자기업내 중국측의 지배지분 요구 • 영업허가증은 경제상황에 따라 발급 • 국내기업과 달리 합자기업은 국제시장 업무 수행 의무
-	■ 특사운송 •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 2004.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통신, 인터넷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업체도 보유(또는 경영)불가	• WTO 경쟁원칙 도입 기초통신 및 부가가치통신서비스(인터넷 포함)의 단계적 개방
-	■ 부가통신서비스(무선호출 포함) • WTO 가입직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 지분율 30% 초과 합자기업 설립 허용 • 2002.12월부터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青島, 瀋陽, 深圳, 廈門, 西安, 太原, 武漢 등지(14개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 2003.12월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50%까지 허용
-	■ 이동전화(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 WTO 가입직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2002.12월부터 허용대상지역을 상기 14개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 2004.12월부터 외국지분율만 49%까지로 인상 • 2006.12월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
-	■ 기간통신서비스(국내 및 국제 서비스) • 2004.12월부터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 2006.12월부터 허용대상지역을 상기 14개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 2007.12월부터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 2008.9월부터 전국 또는 광역(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자본금을 기존의 20억위안에서 10억위안으로 하향조정하고 성(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자본금을 기존의 2억위안에서 1억위안으로 하향조정

보험업

	현행 개방 내용
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생명보험사에 대한 지분제한 유지(자국사 지분참여 25% 이하, 합자사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참여 시, <保險公司股權管理辦法> 제2장 제1절 제4조에 의하면 단일 주주의 출자비율은 중자보험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단일회사가 지분참여 상한선 25%를 다 차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요 주주는 보감회의 인가를 거친 후 2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非생명보험사(손보, 재보)의 단독법인 설립가능 • 영업 지역제한 폐지 • 상품제한 폐지: 생명보험사의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 단체, 양로, 연금보험 영업 허용, 손보사의 경우 전 상품판매 가능

은행업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외국계 은행은 외국 기업과 외국 인대상 외환 업무에 종사 ○ 일부 외국계 은행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외국인 대상 위안화업무 실시 ○ 외국계 은행의 중국기업/ 중국인대상 영업 금지 ○ 외국계 독자/합자은행 설립 허용 ○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 설치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 ○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 허용(자산 US\$ 100억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은행관리규정> 제34조의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은행은 인민폐 업무 가능 • 중국내 도시 전부 개방 • 중국기업/중국인 대상 영업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업무 • 현재 외환업무는 지역제한 대상제한(중국기업/중국인) 없이 전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화업무 ○ (상해, 및 심천 소재) 32개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영업 허가증 보유 ○ 상해, 심천 지역 외국 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안화 영업 ○ 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지역 고객 상대 영업 가능 ○ 중국 내 3년 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 연도 흑자경영일 경우에 한해 위안화 영업 허가증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화업무 • 외환업무는 지역제한 대상제한(중국기업/중국인) 없이 전부 허용

증권업 및 자산관리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증권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자증권사 설립 허용(외국측 지분 33%만 참여가능) • A株 중개업무를 제외한 증권업무 허용 • 中 합자증권사 외국인 지분비율 49% 상향 최종 개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2012.8월 “외자참여 증권사의 설립 규칙” 수정 초안을 공개했고, 2개월 동안의 의견 반영 기간을 거쳐 10월 최종 개정안을 발표함. - 수정 초안의 내용인 합자증권사 외국인 최대보유지분 상향 조정(33.3%→49%) 및 신규 설립 후 5년 이상의 영업기간 규제를 받았던 BK 등 업무의 신청도 2년 이상으로 단축됨. - 또한 CSRC는 합자증권사의 최대 중국주주는 반드시 4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대만, 마카오, 홍콩의 투자자들도 외국인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임.
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자 증권투자자금 관리회사 설립허용(외국측 지분 49%까지 참여가능)

전문 서비스업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법률 ○ 외국계 로펌은 중국법률 관련 업무 종사 금지 ○ 아래 지역에 영리성 사무소 설치 가능: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青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 외국계 로펌의 중국 내 사무소는 기업별 1개로 제한	■ 법률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 설치 지역/ 수량 제한 폐지 • 외국계 변호사사무소는 중국이외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영업경험 필요 • 외국계 변호사는 매년 중국 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구 •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 고용 불가
■ 회계 ○ 기존 합자 회계사사무소는 존재하지만 최근 추가 인가 사례는 없음. ○ 외국계 회계사사무소는 외국 기업 및 해외증시/중국 B증시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가능 ○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CPA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인증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회계 • 중국 CPA 자격 획득 후 회계사사무소 설립 가능 • 중국 CPA 자격획득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대우 실시 • 외국 회계사사무소는 중국 회계사사무소와 제휴 가능 • 현지화(本地化) 요구 강제규정 폐지
-	■ 도시계획 •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 외국을 대상으로한 관련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단체와 협력 요구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서비스(치과 포함)• 합자/독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 허용•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 숫자 제한 가능•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국적자로 구성• 외국인 의사는 지방위생당국 허가증 취득 후 중국에서 단기적(6~12개월)으로 의료 활동 가능

상업서비스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비스• 외국인 다수지분 합자기업 설립 허가, 2005년 이전까지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서비스• 자격요건 부합 엔지니어 또는 학사 학위 소유자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에 대해 중국 내 서비스업무 허용•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조치 없음•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독자기업을 제외한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서비스• 외국인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업무 허용(단, 호화 부동산은 제외)• 합자기업에 대해 수수료 또는 계약 체결방식의 서비스 허용
■ 광고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 49%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 2002.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인정, 2004.1월이전 외국인 독자 기업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화물검사• 화물검사 서비스에 법정(法定) 화물 검사업무는 미포함• 2002.1월 이전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 지분 허용. 2004.1월이전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합자기업의 외국측 파트너에 대해 3년 이상의 영업경험 보유 요구.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50만달러 이상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 • 중국건축기업과 합자건축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요구 조건은 별도 관리 • 합자건축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건축 프로젝트 수주 의무화

시청각 부문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10편의 외국영화 수입	■ 영화 •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20편의 외국영화 수입 ■ 시청각제품 • 합자기업 설립후 영화를 제외한 시청 각 제품 유통 허용
■ 영화상영권 ○ 외국인 소수지분 조건하에 영화상영권 설립 허용	-

관광

종 전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호텔업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율 25% 이상	■ 호텔업 • WTO 가입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 2003년까지 외국인 독자호텔 설립 허용
■ 여행사 ○ 합자여행사내 외국측 소수지분 요구 ○ 합자기업의 외국측 연간 매출액 5,000만달러 이상 요구 ○ 합자기업 등록자본금 500만위안 이상 요구 ○ 합자여행사의 영업범위는 중국 국내로 제한하며 해외(출국)여행은 불허	■ 여행사 • 국가지정 휴양지내 영업 허용(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 • 2003.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 2005.1월 이전 외국인독자기업 허용 • 2005년 연말이전 지사설립 제한규정 폐지

기타 서비스

- 교육서비스: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특수교육을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합자학교 설립허용



- 환경서비스: 합자기업만 허용
- 기타 금융서비스: WTO 가입 후 금융정보·데이터·자문 서비스 허용

일본

일본경제 개관

2012.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는 최근 소비세율 인상(2014.4월)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엔저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 2/4분기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1.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및 선구매로 인한 1/4분기 확대의 반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2013년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1.2	0.8	0.4	△0.1	1.5	△1.8

물가는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13년 3/4분기 중 플러스 전환 후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세율 인상 직후 20여년만에 3%대로 상승하였다. 18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점진적으로 하락(2013년 1/4분기 4.2% → 2014년 2/4분기 3.7%)하며 고용시장은 건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둔화,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물량 증가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엔저에 따른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상반기 무역수



지 적자는 7.6조엔으로 1979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엔화는 일본 정부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엔화 매입이 지속되어 강세가 계속되어 왔으나, 아베노믹스 금융 완화정책 효과 및 미일 금융정책 방향성 차이 등으로 엔화 약세 기조로 전환되었다.

■ 2010년 이후 엔/달러 환율 추이(평균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1월	14.8월
¥87.77	¥79.78	¥79.79	¥97.6	¥103.94	¥102.95

일본의 국가채무는 매년 1조엔 이상 증가하는 사회보장비 등으로 인해 2014년말에는 1,010조엔에 달할 예정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GDP 대비 231.9%)이다. 다만, 국채의 낮은 해외보유 비율(8.0%), △세계최대 규모의 대외순자산(약326조엔), △세계2위의 외환보유고(1조 2,780억불),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은 편이며, 유로존과 같은 재정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른 공공투자 증가, 기업실적 개선, 소비심리 증대 및 2020년 하계올림픽 동경 유치 성공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2014.4월에 시행된 소비세 인상(5→8%)에 따른 영향,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같은 대외경제여건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일본정부는 2012.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디플레이션 극복을 통한 일본 경제 재생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①과감한 금융완화, ②신축적 재정정책, ③성장전략(‘세 개의 화살’로 표현)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첫째, 금융정책으로는 일본은행이 본원통화 공급량을 대폭 확대시켜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디플레이션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 은행과 공동으로 물가 목표 2%를 설정하였으며, 일본은행은 2014년말까지 본원통화 공급량을 현행보다 2배(138조엔→270조엔)으로 증대시키는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결정하였다. 둘째, 재정정책으로 일본 정부는 2013년 추경예산(5.5조엔) 및 2014년 일반회계예산(95.9조엔)을 활용, 공공사업 중심의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지방 경제와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기초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는 흑자 달성을 목표로,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4월 8%로 인상하였으며, 2015.10월 10%로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셋째,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으로 정부지원과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부흥계획’, ‘시장창조계획’, ‘국제화 전략’ 등 세 가지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산업부흥계획’으로 각종 제도 개혁 및 과당 경쟁 업계 재편 등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 및 국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창조계획’으로는 의료, 환경·에너지, 인프라, 농업·관광 등 4개 분야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성장분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전략’으로는 TPP, RCEP 등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일본 기업이 진출 가능한 국제시장 획득과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베노믹스 정책 추진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엔화 하락 및 주가 상승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투자 효과 등으로 인해 2013년도는 큰 폭의 실질GDP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소비자 물가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구조개혁 성패에 따른 소비·투자 등 민간 모멘텀 회복,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외부 평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일본의 신용등급이 급락할 경우 주가하락 및 금리 상승 등 금융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시장의 특징

일본 시장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요구사항, 엄격한 제품규격, 업종별협회의 자율규제 존재, 복잡한 유통구조 및 유통업체들의 높은 지배력 등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특징을 다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본시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비의 양극화 진행, 선별적 소비 형태

경기 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난 일본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격적 저가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단카이(団塊) 세대의 퇴직에 따른 고령화상품 수요

2014년 9월 현재 일본은 이탈리아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가 2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680만명 가량의 단카이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대량 정년 퇴직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단카이 세대를 포함한 60세 이상의 인구가 일본 전체의 개인 금융 자산 1,400조 엔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커다란 구매력을 가진 시니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유통 구조 변화

일본은 여전히 복잡한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십수년간 크게 변화하여 도매업에서 소매업까지를 수직적으로 지배해온 메이커가 유통 시장에 있어서 지배력이 크게 감퇴되는 등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또한 외국제품 수입형태도 종전에는 종합 상사, 수입 총 대리점, 전문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1차 도매상으로부터 2차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으

로 흐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입품의 유통 경로였으나, 근년에는 대형 소매상, 도매상에 의한 개별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 도매·소매상에 의한 소규모 수입, 소비자가 직접 행하는 개인 수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rivate Brand 상품 생산의 확산

글로벌 상품 조달력을 갖춘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 및 유통을 컨트롤하여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실현하여 소비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메이저 유통 대기업이 다양한 상품군에 PB제품을 출시하고 있어 PB에 저항감이 있던 소비자조차 점점 PB상품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글로벌 경기 악화가 맞물려 당분간 PB상품의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갈라파고스화 (Galápagos Syndrome)

일본은 인구 및 소비시장 규모가 충분히 큰 만큼, 일본기업들로서는 내수시장만을 겨냥하고 독자적인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술면에서는 세계 최첨단 수준이면서도 오히려 세계표준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핸드폰과 디지털TV 방송, 차량 네비게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부품공급선 다원화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은 안정적 생산을 위해 부품공급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품공급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다원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우리기업의 새로운 대일시장 진출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 무역·투자 현황 및 일본시장진출 여건

무역현황

2013년 현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무역상대국(수출 3위, 수입 2위)이며,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제3위 무역상대국(수출 3위, 수입 7위)이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은 평균 약 16%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947억달러를 기록했다.

2014.1~8월간 교역액은 573.6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2% 감소했다. 동 기간 우리의 대일수출액은 217.2억달러(전년 동기대비 4.3% 감소)로, 대다수 품목에 걸쳐 수출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일 무역추이

(단위: 억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8월
총교역액	693	1,080	1,032	946.9	573.6
대일수출	282	397	388	346.6	217.3
대일수입	643	683	643	600.3	356.4
무역수지	-361	-286	-255	-253.7	-139.1

우리의 주요 대일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2013		2014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8,442	-1.8	4,467	-19
2	철강판	1,991	-21.5	1,525	23.9
3	무선통신기기	2,395	-23.5	1,305	-14
4	반도체	2,246	-15	1,272	-13.6
5	금은빛백금	1,058	-20	614	-11.5
6	자동차부품	801	2.6	604	19.1
7	합성수지	831	-5.4	563	0.9
8	플라스틱 제품	851	-13.6	555	-2.9
9	정밀화학원료	712	-3.4	512	9
10	금형	444	-4.6	369	19.7
총계		34,662	-10.7	21,727	-4.3

■ 우리의 주요 대일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2013		2014년 1-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5,111	11.6	2,677	-14.5
2	철강관	3,658	-21.4	2,269	-10.4
3	플라스틱 제품	3,264	-17	1,930	-13.7
4	기초유분	2,292	72.9	1,712	9.9
5	반도체제조용장비	1,928	-40.7	1,365	12.7
6	합금철선철및고철	2,184	-14	1,233	-23.7
7	광학기기	2,089	-14.7	1,129	-18
8	기타화학공업제품	1,683	-15.3	1,024	-11.1
9	정밀화학원료	1,345	-11.2	904	0.8
10	석유제품	1,873	21.4	890	-33.6
총계		60,029	-6.7	35,640	-12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우리의 대일무역적자는 2011년 286억달러 → 2013년 253억달러로 감소 추세에 있다.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도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에는 78.9억불(전년대비 △24.0%)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상반기 대일 부품소재 수입 의존도는 사상 최저수준(18.0%)을 기록하였다.

■ 부품소재산업 대일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6월
대일수출	138.1	169.5	152	139	71
대일수입	380.9	397.2	374	344	150
수지	-242.8	-227.7	-222	-205	-79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중장기적으로 대일 교역구조 개선을 위하여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품질향상, △부품·소재 조달전시상담회 지속 개최,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일본기업 입주 유도, △중소기업간 협력·교류 활성화 추진 등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자현황

일본은 미국에 이어 누계 제2위의 對韓 투자국가이며, 투자누계 액수는 2014년 1분기 362억달러(총 투자유치 중 16.2%)에 달하고 있다. 연간 신고액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최대 치인 45.4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일본의 해외투자 중 한국의 비중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는 △소위 '6중고' 등 일본내 기업환경 악화, △한국과 주요국간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 △일본기업의 對韓투자방식 변화(하청→제휴), △동아시아 공급망에서 한국의 중요성 증가 등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일본기업들에 있어 부품 및 중간재 공급선의 안정성확보 및 소위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동남아, 한국 등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일 누적투자액은 2014.3월 58.8억달러로, 일본에의 외국인투자에서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 양국 상호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09	'10	'11	'12	'13
對韓투자	1,934	2,083	2,289	4,542	2,690
對日투자	418	345	259	657	856

※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신고 기준)

일본시장진출 환경

그간 일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본시장 초기진출 및 정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기업들이 부품 및 중간재 조달시 주로 자국업체를 이용해 왔고,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특성을 가진데다가, 정부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특유의 유통구조, 엄격한 규제(예컨대 품목별로 별도 공장허가 필요), 표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한·일 기업들의 사업방식 차이도 우리기업들의 대

일시장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시장은 일단 정착 후에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일본기업들은 일단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비즈니스 관행에 있어서도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 중 다수는 경기 호·불황의 영향 및 영업실적의 기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일본시장의 장점으로 꼽는다.

한편,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들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 부품공급선 안정성확보를 위해 한국제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바, 최근 우리제품의 품질 및 이미지 제고와 맞물려 우리기업의 대일수출 및 시장진출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재판매용 또는 해외진출 자국공장용 부품·중간재 구매시 한국제품 구매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분야의 경우 내수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국업체를 중시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경향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간재의 경우 일본시장 내에서 중국 등 신흥국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제3국 공동진출

최근 인프라 건설, 에너지 자원 개발, 철강·화공 등 분야에서 한·일 기업 간 비교우위를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미쓰비시 상사의 인도네시아 LNG 생산기지 공동건설, 한국전력과 스미토모 상사의 UAE 화력발전소 건설, LG상사·현대 엔지니어링과 토요엔지니어링의 투르크메니스탄내 가스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우리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에 우호적으로 융자하는 경향이 있는 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양국 수출신용금융기관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 비관세 장벽

일본의 비관세조치는 상관행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도 연관되어 있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동 비관세 장벽을 수시로 발굴, 일층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

수산물 수입쿼터(김Q 포함)

일본은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 IQ 설정 품목 현황(총 17개)

- 對한국 쿼터(1개): 김
- 글로벌쿼터+對한국 쿼터(9개):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꽂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 글로벌 쿼터(7개):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 조제품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IQ제도의 근거(일본 통상산업성 고시)를 고려할 때, IQ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농업협정 제4.2조와 주식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제한조치는 일반관세로 전환하여야 하며, GATT 제11조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바, 일본의 IQ제도는 동 조항들에 대한 예외 사유(농업협정 부속서 5, GATT 제11조2항, 제20조(g) 등)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김과 다시마의 경우 현행 IQ제도는 IQ 전체 품목의 쿼터를 ① 수요자 할당, ② 상사 할당, ③ 선착순 할당 등으로 세분하고 쿼터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쿼터 미소진 분량이 발생하며,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김 IQ 할당량('06.1월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 및 실제 수출량

	'07	'08	'09	'10	'11	'12	'13	'14
IQ물량(만속)	436	531	627	722	818	913	1,009	1,104
- 수요자	261	318	376	(434)	(492)	(550)	(607)	(664)
- 상사	175	213	251	(288)	(326)	(363)	(402)	(440)
수출량(만속)	217	239	349	471	692	750		
소진율(%)	(49.8%)	(45.0%)	(55.7%)	(65.2%)	(84.6%)	(82.1%)		

■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2014년)

(단위: 만속)

구 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 고
합 계		1,829 (1,674)	1,104 (1,009)	496 (486)	229 (179)	○ 제품별, 국가별 할당 <한국>
수요자		646 (602)	438 (404)	208 (198)	-	- 마른김: 45%
상 사		1,168 (1,057)	666 (605)	288 (298)	214 (164)	- 조미김: 41%
선착순		15	-	-	15	- 조제김: 14%
		(15)			(15)	<중국> - 마른김: 90%
						- 조제김: 10%
						※ 한국:중국:글로벌 = 60:27:13
마 른 김	소 계	945 (903)	496 (454)	444 (444)	5 (5)	○ 할당별, 국가별 할당
	수요자	404 (383)	248 (227)	156 (156)	-	<한국>
	상 사	536 (515)	248 (227)	288 (288)	-	- 수요자: 40%
	선착순	5 (5)	-	-	5 (5)	- 상 사: 60%
						<중국> - 수요자: 42%
						- 상 사: 58%



구 분		계	한국	중국	글로벌	비 고
조미김	소 계	464 (411)	457 (404)	-	7 (7)	○ 제품별 한국 할당 <마른김> - 수요자: 50% - 상 사: 50% <조미김> - 수요자: 28% - 상 사: 72% <조제김> - 수요자: 42% - 상 사: 58%
	수요자	127 (101)	127 (101)	-	-	
	상 사	330 (303)	330 (303)	-	-	
	선착순	7 (7)	-	-	7 (7)	
조제김	소 계	420 (360)	151 (151)	52 (42)	217 (167)	○ 조제김의 종류 - 구운김, 자반김 등 ※ 紙狀이 아닌 것은 3g을 1매로 환산
	수요자	115 (118)	63 (76)	52 (42)	-	
	상 사	302 (239)	88 (75)	-	214 (164)	
	선착순	3 (3)	-	-	3 (3)	

※()는 13년도 할당량

활어차 일본내 운행 문제

양국간 활어 수출입 교역이 활발하나, 일본 활어운반 특수차량과 달리 우리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의 도로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차량은 활어를 일본 항만구역에서 일본의 특수차량에 적재 후 통관하고 있어 신선도 저하, 비용증가 등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활어운반 특수차량에 대한 일본내 등록절차 면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면제, 차고증명 의무 면제, 운전자 무비자, 우리측 차량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인정 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일수출 활어운반 차량 물류비용 비교

❏ 활어차량 11.5톤 기준, 활납치 3톤 선적 기준

항 목		출발지	목적지	선임 및 육상운송임	활납치 kg당 물류비	비 고
국제선임		부산	오사카	2,900,000원	967원/kg	
일본 육상 운송임	일본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500,000엔 (6,500,000원)	2,167원/kg	일본차량 임대료
	한국 활어 차량	오사카	동경	250,000엔 (3,250,000원)	1,083원/kg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비기사 일당 등

일본항운협의회 사전협의 제도

일본은 자국 항만 입출항 및 하역작업과 관련하여 항만 노동자의 고용·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일본항운협회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컨테이너선 출현, 항만 기계화 등으로 일본 항만 노동자와 중소형 하역회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일본 항만 노동자와 하역회사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전의 경중에 따라 입항 등 변경사항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1일~71일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미한 안전의 경우(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 전월 20일까지 사전협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중요한 안전(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전전월 20일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다.

❏ 협의방식 및 절차

2자 협의 (선사-일본항운협회)				2자 협의 (일본항운협회-노조)				
선사	⇒	선주항만협의회	⇒	일본 항운 협회	⇒	(중요안전) 중앙노사의“사전협 의에 관한 협의회”	⇒	중앙 · 지구
	⇐	외국선주협회	⇐		⇐	(경미안전) 각 지구 노사와 사전협의	⇐	노사 사전협의

이러한 사전 협의제도의 문제점은 선사가 경쟁력있는 터미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점, 과도하게 긴 사전 협의 기간 등에 있다. 즉, 일본 선사들은 대부분 자회사·계열사로 하역 회사를 설립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외국 선사에게만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선사들은 운항선박 변경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 통상 ‘터미널 입항 7일 전후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등에 대해 ‘입항 전월 20일까지 항운협회(민간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시간은 짧음에 비해 사전 협의 신청기간이 너무 길어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선농산물 수출관련 PLS 적용대상 문제

일본은 2006.5월부터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 리스트를 설정하고,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대상 물질수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05) 283 →('06) 799 →('12) 802개로 확대

이에 따라 한국산 수출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농약성분 등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디페노코나졸 성분의 고추에 대한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1ppm인 반면, 일본의 허용기준은 미설정으로 0.01ppm 적용

** PLS(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PLS 시행에 대응하여 국내 등록농약 중 일본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05~'13.10월 현재까지 고추 Acequinocyl 등 총 64건에 대한 한국의 기준을 일본정부에 제출하여 파프리카 Tetracozazole 등 45건을 일본 잔류기준으로 반영시켜 우리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 및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현재 반영을 검토 중인 농약성분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농약 등 한국의 수출농업인이 선호하는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의 추가설정 요청과 함께 일본의 PLS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 제안에 대해 일본정부에서 반영검토중인 품목(2014.8월)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한국 제안 MRL(ppm)	비 고
Difenoconazole	고추	미설정	1.0	2014.1.6 요청
Etofenprox	고추	미설정	2.0	2014.2.11 요청
계 2건				

■ 일본 잔류기준 설정에 한국의견이 반영된 품목

(2014.8)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기준 MRL(ppm)	비 고
Tetraconazole	피망	미설정(0.01)	1	2005년 반영고시
Tebufenpyrad	피망	미설정(0.01)	0.5	"
Fluazinam	피망	미설정(0.01)	0.3	"
Zoxamide	피망	미설정(0.01)	0.3	"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기준 MRL(ppm)	비 고
Dithianon	피망	미설정(0.01)	0.3	"
Prochloraz	피망	미설정(0.01)	1	"
Iprowalcarb	토마토	미설정(0.01)	2	"
Flutolanil	딸기	미설정(0.01)	5	"
Indoxacarb	오이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오이	미설정(0.01)	1	"
Fluquinconazole	오이	미설정(0.01)	0.1	"
Bitertanol	가지	미설정(0.01)	0.5	"
Difenoconazole	호박	미설정(0.01)	0.3	"
Cyazofamid	인삼	미설정(0.01)	10	2007.10.30.고시
Tebuconazole	고추	미설정(0.01)	5	2008.6.30.고시
Flutolanil	인삼	미설정(0.01)	1	2009.6.4.고시
Fenamidone	고추	미설정(0.01)	3	2009.6.4.고시
Novaluron	고추	미설정(0.01)	0.7	2010.1.29고시
Acequinocyl	고추	(1→0.01)	1.0	2010.1.29고시
Tolyfluanid	인삼	미설정(0.01)	0.05	2010.10.20.고시
Tolyfluanid	고추	미설정(0.01)	1	2010.10.26.고시
Acetamiprid(2009)	고추	(2 → 1)	2	2010.8.17.확정
Propamocarb	고추	(2→0.01)	2	2010.11.9.확정
Lufenuron	오이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Flusilazole	고추	미설정(0.01)	0.3	2010.11.11.고시
Bifenthrin	들깨잎	0.1	2	2010.12.13고시
Dithianon	고추	미설정(0.01)	0.3	2011.5.13.반영
Flonicamid	피망, 고추	0.4	2.0	2012.6.14.고시
Pyrimethanil	감	5→삭제	2.0	2013.3.15.반영
Pyrimethanil	대추	10→삭제	0.5	"
Pyrimethanil	복숭아	3→삭제	2.0	"
Spirodiclofen	감	2→삭제	1.0	"
Spirodiclofen	대추	5→삭제	5.0	"
Pyrimethanil	인삼	0.05	0.3	2013 반영
Abamectin	고추	0.03	0.2	"
Dithianon	피망	0.3	2	"

농약품목명	대상작물	당초 일본잠정 MRL(ppm)	현재 일본기준 MRL(ppm)	비 고
Dithianon	고추	0.3	2	"
Dithianon	인삼	0.5→삭제	0.5	"
Pyridaben	가지	1.0→삭제	1	"
Pyridaben	고추	2.0→삭제	2	"
Difenoconazole	피망	미설정(0.01)	2	2014.4월 반영
Difenoconazole	인삼	미설정(0.01)	0.7	2014 반영
Cyprodinil	인삼	0.5	0.5	2014 반영
Thiifluzamide	인삼	미설정(0.01)	1	2014 반영
44건	12작물			

※ 고려인삼과 갯잎은 한국측 요청대로 「기타야채」로 분류

돈육 차액관세 제도

일본은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UR 협상 후에도 차액관세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차액관세제도는 기준액을 정하고, ①수입 가격이 낮아 기준액 이하로 수입될 경우 기준액과 수입가와의 차액 전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②가격이 높아 기준액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는 종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일본은 동 제도를 돈육(부분육, 가공육) 뿐만 아니라, 유제품, 완두콩, 팥, 쌀·보리가루 등 곡류, 커피 조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차액관세 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한국산 돈육(부분육, 가공육)의 대일 수출이 상당부분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 對일본 돈육 수출현황

(단위: 톤/천미달러)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8
對일본	수출량(톤)	0	0	0	0	96	0.8	53	167	119	61
	수출액(천\$)	0	0	0	0	563	5	334	607	464	280
전체	수출량(톤)	83	1,423	187	270	548	482	547	1,275	1,924	1,388
	수출액(천\$)	353	5,248	477	1,181	1,733	780	1,560	2,913	4,751	5,124



* 2000년 구제역으로 대일본 돈육 수출 중단, 2004년 제주도산 돈육은 수출 재개되었으나, 2004.11월 돼지열병 때문에 다시 수출 중단, 2009.9부터 제주도산 돈육수출이 재개되었으나, 2010.1월 구제역 발생 이후 다시 수출 중단(소시지, 햄 등 열처리가공품은 제외)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명령검사 제도

일본은 2008.3.1일부터 잔류농약 명령검사 적용대상을 10kg 초과 휴대 물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검사를 적용받게 되었다.

현재 대일수출 농산물 중 모니터링 강화검사(30%)를 받는 품목은 벌꿀 1품목임.

또한,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중 전수검사로 남아 있는 품목은 파프리카, 미니토마토, 홍고추, 깻잎 등 4개 품목이며, ID 등록업체에게는 검사명령(전수검사)을 면제하고 있다.

※ 對일 수출 채소류 ID 등록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갖춘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ID등록업체가 ID 부여 품목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전수검사를 면제하고 선 통관 후 샘플검사를 적용하는 제도로써 對일 수출품의 통관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일본정부의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사 현황

(2014.8)

검사태세	품 목	검출성분	기준치 (ppm)
명령검사 100% (전수검사)	미니토마토	플루킨코나졸	0.01
	파프리카	클로르피리포스	0.5
	홍고추	디페노코나졸	0.01
	깻잎	지니코나졸	0.01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국제기준(국제식품보호협약 제2조)에 의하면 검역병해충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방제되는 병해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 검역당국은 비검역 병해충('97년부터 총 5속 189종)을 제외한 병해충에 대해 소독 등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공통분포병해충으로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는 52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일본은 2013.8.24 8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40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였다.

※ 우리측에서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 52종 중 40종은 일본 측이 인정한 반면, 12종은 아직 미지정 상태

※ 비검역병해충 미지정종(12종) 현황

구분	학명	한글명	일반명
병 (5종)	<i>Colletotrichum lagernarium</i>	탄저병	Anthracnose
	<i>Didymella bryoniae</i>	덩굴마름병	Black rot
	<i>Erysiphe cichoracearum</i>	흰가루병	Powdery mildew
	<i>Phytophthora capsici</i>	역병	Soft rot of cucurbit fruits
	<i>Phytophthora infestans</i>	역병	Blight of potato
해충 (7종)	<i>Aphelenchoides fragariae</i>	딸기잎선충	Strawberry crimp nematode
	<i>Bemisia tabaci</i>	담배가루이	Silver leaf whitefly
	<i>Liriomyza trifolii</i>	아메리카잎굴파리	American serpentine leafminer
	<i>Pinnaspis aspidistrae</i>	난초핀깍지벌레	Fern scale
	<i>Planococcus citri</i>	귤가루깍지벌레	Citrus mealybug
	<i>Polyphagotarsonemus latus</i>	차면지응애	Broad mite
	<i>Pratylenchus penetrans</i>	딸기뿌리썩이선충	Northern root lesion nematode



정부 조달 분야

입찰·계약 제도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 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일본 입찰제도의 특징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며,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앙 정부 조달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1조 8,344억엔으로 전년대비 30% 증가(조달 건수도 14,640건으로 전년대비 16.1% 증가)하였다.

연도별 정부조달의 총액 및 총 조달 건수

(단위: 억엔)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조달총액 (전년대비증감율)	13,648 (-2.8)	18,542 (+35.9)	15,630 (-15.7)	14,110 (-9.7)	18,344 (+30.0)
정부조달총건수 (전년대비증감율)	12,741 (-1.3)	14,462 (+13.5)	13,249 (+8.4)	12,613 (-5.0)	14,640 (+16.1)

한편, 일본의 건설사업의 규모는 2013년도 약 49조 9,500억엔으로서 그

중 정부부문의 공공사업분야가 약 21조 9,600억엔이고 민간분야가 약 27조 9,900억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 년도별 건설분야 투자실적

(단위: 억엔)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424,000	419,282	418,900	449,000	499,500
공공분야	173,700	179,820	172,100	188,600	219,600
민간분야	250,300	239,462	246,800	260,400	279,900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맹국으로 정부 조달시장의 개방정책과 정부조달제도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집중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단체별로 각각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 집행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 절차에 민간무역의 기준을 반영한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사용언어, 대금지불조건 등에 있어서 외국의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별도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등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관행은 중앙정부 조달에 있어서 개방대상 조달안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이 2012년 기준으로 금액대비 3.0%, 건수대비 3.2%로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2013년 일본 세관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적발 건수는 총 28,135건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고 건수를 기록했으며, 2007년 이후 7년 연속 2만건을 넘겼다. 이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적발 건수가 25,844건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하여, 2006년 48.2%에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기존의 모방품 백, 신발류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휴대전화단말 및 그 부속품, 컴퓨터 제품, 인형 및 완구류, 심지어 의약품까지 모조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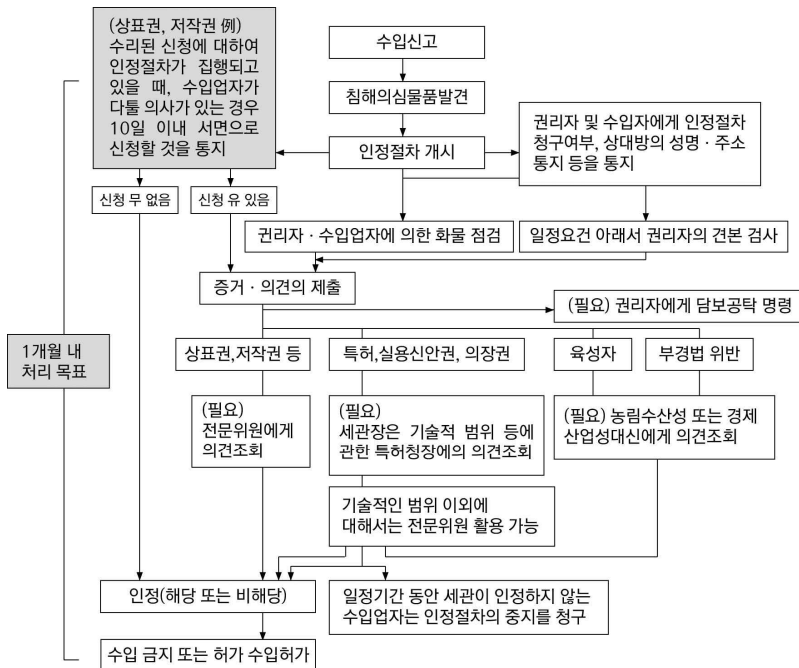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금지는 2013년 1.2%로, 2006년 44.5%에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중국	20,996	90.4%	21,235	91.2%	25,007	94.0%	25,844	91.9%
한국	574	2.5%	447	1.9%	274	1.0%	328	1.2%
기타	1,663	7.2%	1,598	6.9%	1,326	5.0%	1,963	6.9%

지식재산 권리별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 실적 (2013)

권리		2010	2011	2012	2013	2013(구성비)
특허	건수	9	8	3	2	0.0%
	접수	4,258	16,276	2,562	331	0.1%
의장	건수	56	88	79	43	0.2%
	접수	49,266	26,304	21,291	10,852	1.7%
상표	건수	22,994	22,843	26,304	27,975	98.4%
	접수	519,274	567,107	1,012,538	599,142	95.4%
저작권	건수	273	484	322	383	1.3%
	접수	57,865	116,662	81,191	17,768	2.8%
기타	건수	1	5	2	19	0.1%
	접수	25	1,885	10	94	0.0%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절차(규정 인용)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특허권자 등은 신청에 의해 수입물품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 등은 아래와 같은 금액을 합산한 공탁금을 기간 내(통상 10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i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일실이익(과세 가격의 20% 정도를 기준으로 함)
- ii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의심화물의 창고보관료 상당액



- iii 기타 예상되는 인정절차 기간 중에 수입업자가 의심화물을 통관할 수 없는 것에 의하여 받게 되는 손해(예를 들어, 화물의 손상, 변질, 국내 매수 예정인으로부터 청구될 위약금 등)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는 10일 이내에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에게 권리를 침해했다는(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한다.

- ※ 수입업자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기간 경과 후 수입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침해 여부를 인정하고, 침해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몰수 폐기한다.

세관장(지적재산담당관, 지적재산 조사관)은 상기 증거, 의견에 의해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등 관계성청) 및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당해 화물이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인정결과 및 이유를 수입업자 및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정절차를 완료한다.

- ※ 권리자에 의한 수입금지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으나, 수입금지에 따른 수입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담보(신청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수입업자 또는 특허권자 등은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수입화물이 특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청구할 수 있다(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견 조화를 할 수 있다).

특허청장에게 의견 조화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조회 기간을 30일로 하고 있어 인정절차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게 되지만, 가능한 30일 이내에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심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수입자의 대응

- i 통지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ii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을 소정 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
 - iii 지재권 침해물품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화물의 수입에 대한 동의서를 권리자로부터 받거나 또는 침해 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이 허가된다.
 - iv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ii의 자발적 처리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몰수한다.

뉴질랜드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뉴질랜드는 제조업분야가 취약하여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품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총 수입액의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의류, 신발, 섬유를 포함한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찾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를 공여받기 위해서는 적용국가에서 최종 생산되고 당해국가의 부가가치가 50%이상이어야 하며, 뉴질랜드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또한, 뉴질랜드는 UN권고 및 관세법에 의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지정한 최저개발국에 대하여 특혜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를 공여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해당 협정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으나 일반관세(General Tariff)자체가 낮거나 무관세 적용 품목이 많아서 협정체결에 따른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 2014년 11월 15일 한-뉴질랜드 FTA 타결이 공식 발표되었는바, 정식 발효시점부터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100% 한국의 전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4/2015 정부예산안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는 건축자재의 관세와 세금을 2014년 6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특히 석고보드(plasterboard), 철근(reinforcing steel), 쇠못(wire nail)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가 3년간 중단될 예정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뉴질랜드는 통관절차상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어 일부 농·축산물 수입 시 통관지연과 같은 실질적인 무역장벽이 일부 존재한다. 특히 새로운 품종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통관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뉴질랜드는 자국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수입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및 상계관세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거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3.9월 현재 11개 품목(대부분 중국산)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홈페이지(www.med.gov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2013년 6월 뉴질랜드 C사의 roxley Stationery Ltd.의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한국산 다이어리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12월 조사결과에서 덤핑은 확인되었으나 뉴질랜드 관련 산업에 피해가 없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2014년 6월 기준, 12개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뉴질랜드에는 모든 공산품의 표준취득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나 규정은 없으며, 품목에 따라 관련 기관, 법규 및 규정이 산재해 있어 품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기계류, 전기 및 가스용품 등의 품목군은 인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품의 경우도 호주, 유럽, 싱가포르, APEC 회원국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인증취득 필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표준협회(www.standards.co.nz)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는 호주와 양국간 상호인정협정(The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고, EU와는 NZ/EU MRA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를, 싱가포르와는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를, APEC 회원국과는 식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선적변경(Reflagging Policy)

기존에 뉴해역에서 조업중인 외국용선(FCVs, foreign charter vessels)이 뉴질랜드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려면 2016년 5월까지 선적을 뉴질랜드 국적으로 변경을 의무화하는 수산업(Fisheries Act) 개정을 2014년 7월 31일 완료하였다. 어선 국적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어선이 뉴질랜드 규정(Maritime Rule Part 40D)에 제시된 선박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Convention)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원자격 증명서를 소지하여야한다. 선적변경이후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노사관

계법률, 작업장 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한다.

※ 개정 법률안은 뉴질랜드 의회 홈페이지(www.parliament.nz)에서 찾아볼 수 있다.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모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차산업부(MPI)와 관할 시의회에서 담당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품 안전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제조 또는 식품내수유통, 식품수입을 대상으로 하고 식품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인증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EU, 호주,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인증을 별도의 인증 없이 인정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에 비해당품목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수입품 유통 30 일전에 보건부 산하 Medsafe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수도시설 제품인증

뉴질랜드의 수도시설 제품은 호주 인증인 WaterMark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시험과 인증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해당인증은 의무사항으로 미인증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전자제품인증

뉴질랜드는 전기제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호주방송통신규제기구(www.acma.gov.au)는 전기통신, 무선통신, EMC 및 EME 기술에 대한 기존의 인증을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의 C-tick은 2016년 2월 말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폐지될 예정이다. RCM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S/NZS 4417 전기 안전성(Electricity Safety) 요구조건 충족시켜야한다.

건축자재인증

뉴질랜드 주택의 95%가 목재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나 누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규격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BRANZ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건축자재가 승인의 대상은 아니며, 규격승인 대상여부는 BRANZ(www.branz.co.nz)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인증(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뉴질랜드 환경인증제도인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www.environmentalchoice.org.nz)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38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서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가 요구하는 제품시험평가 및 현장실사를 대행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실험 및 시험재배만 허용하고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3년 10월 이후 환경위험관리국(現 환경보호청 www.epa.govt.nz)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생물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유전자변형식품(GMF)의무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뉴질랜드는 다음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규제품목: 농산물, 남극대구 및 비막치어, 동물의 털을 이용한 브러시류, 화학무기, 씹는담배, 인간 배아, 마약류, 애완동물용 추적기, 특정 개 품종, 멸종위기류, 폭발물, 허위과장광고상품, 위험물질, 위험폐기물, 해양 포유류, 현금, 불법개조차량, 유해물, 오존 파괴 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처방약품, 무선전파방해 장비, 방사능물질, 송어류 . 2014년 6월 기준,상기 규제품목에 휴대용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 규격 미달 및 표기 삭제된 타이어, 남방참다랑어 등 품목이 추가되었다.

수입규제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 조달 관련 장벽

뉴질랜드 정부조달은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개괄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조달 기본정책은 자유경쟁체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무역협정



의 일부로 호주와 싱가포르와는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이 정부중앙기관에 의한 집중구매방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과 물자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건별 조달물량은 대부분 소규모이다. 입찰공고 등의 행정조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정부전자입찰서비스(www.gets.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통신서비스

뉴질랜드는 Vodafone과 Telecom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1%, 46%로 두 회사가 전기통신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영업 허가가 노동시장의 수요 평가에 의해 제한되며, 외국인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조건이 존재한다.

* 2013년 6월기준 (2014년 11월 확인가능 최신) 뉴질랜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Vodafone 42%, Telecom(현 Spark) 33%, 2 Degrees 25%임.

자연인의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경제적 수요심사, 쿼터, 국적 및 거주요건, 국내 주소 요건, 학위 경력 요건, 타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시장 수요 심사 및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두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FTA협정이 체결된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FTA에서 자연인의 일시체류에 대해 양허하고 있으며, 이민쿼터가 FTA협상의 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뉴질랜드 의약관리청(PHARMAC)

1993년 창설된 의약관리청(www.pharmac.health.nz)은 뉴질랜드 내 의약 가격조정 및 보조금 수준과 조건 등을 결정하는 독립기관이다. 미국의 무역전문가들은 의약관리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부조달 독점과 보조금지급이 비관세장벽(NTB)이 되고 있으며, 기관의 불투명성 및 비합리적인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제한

뉴질랜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정치 부패도가 낮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 Poor's는 2013년 8월 뉴질랜드에 투자 적격 등급 중 AA+(신용상태 우수)를 부여하였다. 뉴질랜드의 무역 및 투자업무는 우리나라의 KOTRA와 유사한 Investment New Zealand (www.investmentnz.govt.nz)가 담당하고 있다.

- * 2014년 6월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는 뉴질랜드의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각 AA, Aaa,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투자(Land Investment)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
- 지분매입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주식감정가 총액이 1억 뉴불 초과



- 투자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규모가 1억 뉴불 초과

토지투자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정보국 산하 해외투자청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토지의 총 면적이 5ha(5000m²)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이며, 총 면적이 4,000m² 초과
- 토지가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
- 자연보존 목적의 토지로 총 면적이 4,000m² 초과
- 공공위락 목적의 토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지역
- 해안선을 포함 또는 인접토지의 총 면적이 2,000m² 초과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뉴질랜드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 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에 최근 건설허가 및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어획쿼터

수산분야는 마오리족의 특수이익을 인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업적 쿼터는 자국민에게만 할당되며, 외국인의 경우 쿼터 라이선스를 임대받아 어획활동이 가능하다.

기타 장벽

소프트웨어 대한 특허금지

1953에 제정된 기존의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왔으나, 기존의 소프트웨어 특허내용을 포함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오픈소스(Open Source)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혁신과 경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의회는 2013년 8월 소프트웨어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개정법안(Patent Bill)을 통과시켰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1994)의해 보호된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품과 결합되면 그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 ※ 세탁기에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세탁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켜 에너지 효율과 세탁능력이 개선된 경우 특허대상임.
- ※ 새로운 법률문서 자동처리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적용하였으나 컴퓨터의 작동방법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경우 특허대상이 아님.

소규모 시장의 한계

뉴질랜드는 다품종 소량의 제품이 통용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품목이나 분야에 따라 주변국 시장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의 진출이 강했던 시장이며 아직도 이들 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으려는 보수적 성향 때문에 초기시장 진입에 애로가 존재한다.

신속하지 못한 일처리

뉴질랜드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는 적은 인력을 이유로 대체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며,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민간 기업에서도 의사결정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내심이 요구된다.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ManpowerGroup의 2014 전문인력 부족 현황 조사(2014Talent Shortage Survey)에서 전체산업의 59%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엔지니어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 숙련공, 회계 및 재무인력, IT 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질랜드 직장인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직장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 높아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대만(타이베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4,491품목이며, 2013년도 평균 관세는 5.88%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3.85%, 4.23%이다.

■ 평균 관세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3월
농산물	13.16%	13.73%	13.88%	13.88%	13.88%	13.85%	14.65%
공산품	4.10%	4.18%	4.18%	4.23%	4.23%	4.23%	4.23%
전체	5.56%	5.71%	5.85%	5.89%	5.89%	5.88%	6.35%

자료원: 財政部 關務署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經濟部 能源局(에너지자원국)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 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	14	446
2001	8	222
2002	2	13
2003	2	30
2004	1	11
2005	1	11
2006	1	2
2007	1	7
2008	6	30
2009	10	40
2010	5	42
2011.9.	5	16
2012	2	5
2013	0	0
2014.10	1	4

자료원: 財政部 關務署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은 “WTO 원산지 협정”에 따르고 있다.

수입규제

대만은 공공 도덕, 생태계 보호 차원(GATT 1999 제24조), 국가안보 차원(GATT 제21조), WTO 규범에 의해 일부 소수의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농·공원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으며 2014.11월 기준 총 2,195개의 농·공산품(농산품 968개 품목, 공산품 1,227개 품목)의 수입이 제한/금지되고 있다.

(1) 수입할당제

대만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16종의 농산품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적용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 농산품

농산품의 경우 식용쌀 등 총 16종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제한하고 있는 바, 바나나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14종 품목의 할당은 매년 규정 할당 기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 및 최고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 품목별 할당량(2013)

(단위: 톤)

품목명	총할당량	최저 할당량	최고 할당량	할당방식
식용쌀	15,000 20,652 15,000	20 20 20	3,000 4,130 3,000	할당기간마다 입찰
바나나	13,338	20	-	비례할당
녹용	5	50kg	-	
동양배	9,800	20	-	
팔	2,500	20	500	할당기간마다 입찰
우유(액체 타입)	21,298	250	4,259	
땅콩	5,235	14	1,047	
마늘	3,520	12	704	
마른 표고버섯	144	3	28	
	144	3	28	
마른 팽이버섯	50	3	10	
	51	3	10	
야자	3,000	20	600	
	7,000	20	1,400	
빈랑	8,824	15	1,764	
파인애플	11,870	15	2,374	
	12,000	15	2,400	
망고	7,000	11	1,400	
	5,755	11	1,151	
유자	4,300	15	860	
용안과육	330	15	66	

자료원: 財政部 關務署(2013)



○ 소형 자동차

9인승 이하의 자동차 및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 자동차의 수입할당제는 2010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 동일 관세 17.5%로 수입량 제한이 완전 해제되었다.

▣ 소형 자동차 수입할당량 및 세율

(단위: 대, %)

구분/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할당량	미국	29,860	35,832	42,998	∞	∞
	EU 국가	475,428	570,514	684,617	∞	∞
	캐나다	38,555	42,266	55,519	∞	∞
	우리나라 및 기타 WTO 회원국(국가당)	29,860	35,832	42,998	∞	∞
세율	할당량 이내 물량	20.3	18.9	17.5	17.5	17.5
	할당량 초과 물량	30.0	30.0	30.0	17.5	17.5

자료원: 財政部 關務署

반덤핑 및 상계관계

대만 재정부는 2013. 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2013.8월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8월까지 실시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 수출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 될 수 있다.

*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對대만 수출을 금지했음.

정부조달 관련 장벽

1999.5.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 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 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2008.12.9일에 대만은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7.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



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투자기관(대만전력공사) 수입화물 입찰에 우리나라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우리 선사는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화물 취급시 대만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이 2009.7.15일 GPA 가입 후 2013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2,502건(표결 금액 기준 2,983억 대만 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247건(비중 9.87%)이며 낙찰 금액은 총 769억 대만 달러(비중 25.78%)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2013년)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128	1,513.22	3	2.34	135.13	8.93
구매입찰	888	1,073.60	235	26.46	628.07	58.50
용역입찰	1,486	396.21	9	0.61	5.92	1.49
합계	2,502	2,983.03	247	9.87	769.12	25.78

자료원: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지식재산권 보호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 전문경찰(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과 영업비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著作權法)》, 《특허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집적회로 보호법(積體電路保護法)》, 《CD관리조례(光碟管理條例)》,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등이 있음.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公平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자 19명을 2004.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이 대만 업체에 CD-R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투자장벽

외국인(화교 포함) 투자진출 제한분야

(1) 투자 제한분야

대만은 2003년도에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을 지정하여 국가 안보 및 내수 산업 보호와 관련된 일부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2012. 6. 29. 개정된 화교 및 외국인 투자 통제 조례(僑外投資負面表列-禁止及限制僑外人投資業別項目), Negative List for Investment by

Overseas Chinese and Foreign Nationals)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만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아래표 내용과 같다.

❖ 투자 금지 분야(2013.6.17 개정)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화학원료 제조업	기본화학공업	군용 Nitroglycerol 제조	국방부	
		수은법	경제부	내국인 대우
		UN이 금지한 화학무기공약 상에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분류에 속하는 화학품	경제부, 국방부	내국인 대우
		CFC, Halons,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행정원 환경보호서	내국인 대우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군용 촉발신관 도화제, 화약기폭제 재료	독성화학물질제조(‘독성화학 물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국방부	-
기초금속 공업	미분류 기타 기초금속제조업	금속 카드뮴 제련공업	경제부	내국인 대우
기계설비 제조· 수리업	기타 통용 기계설비 제조업	화기 및 무기제조, 총기 수리, 탄약, 사격통제장치 (군용항공기 제외)	국방부	-
육상 운수업	버스업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	교통부	화교 가능
	택시업	-		
	일반 자동차 여객운수업	관광버스 운수업		
우편· 택배업	우편업	-	교통부	내국인 대우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방송업	공중파 라디오방송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금융 중계업	우편·저축, 환어음	-	교통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 위원회	내국인 대우
법률·회계 서비스업	기타 법률 서비스업	민간 공증 서비스	사법원	화교 가능
레저 서비스업	특수 오락업	-	경제부	-



■ 투자 제한 분야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농업, 목축업	쌀·잡곡·특용작물·야채·식용버섯·화초농사·기타 농작물 재배업	-	행정원 농업위원회	-
	소·돼지·닭·오리 사육 및 기타 목축업			
임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화교 가능
어업	-	-	행정원 농업위원회	-
담배 제조업	-	-	재정부	내국인 대우
화학원료 제조업	기초 화학원료 제조업	Nitroglycerol 제조 (공공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것에 한함)	국방부	-
컴퓨터·전 지제품·광 학제품 제조업	-	군사 기구 설비	국방부	-
기타 운수 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미분류 기타 운수공구 및 그 부품 제조업	군용 항공기구 제조·수리	국방부, 경제부	-
기타 제조업	기타 미분류 제조업	상아 가공	행정원 농업위원회	내국인 대우
전력 및 연료 가스공급업	전력공급업	송전·배전업	경제부	-
	가스공급업	가스배송관	경제부	-
용수공급업	용수공급업	수도사업	경제부	-
수상운수업	해상운수업	선박운송·대여	교통부	화교 가능
	하천·호수운수업			
항공운수업	항공운수업	-	교통부	화교 가능
운수보조업	항공운수보조업	공항 서비스업자, 항공 케이터링업자	교통부	1. 화교 가능 2. 다른 조약 또는 협정으로 규정된 자는 예외
전신업	전신업	제1분류 전신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업종	세부분류	항목	주관기관	비고
법률·회계 서비스업	지정사 사무서비스업	토지등기 전문 대리 서비스	내정부	-
라디오· TV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케이블 라디오· TV시스템 운영, 위성 라디오· TV방송 사업	국가통신방송 위원회	-
	TV 방송업			
	유선 및 기타 유료 방송업			

자료원: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가공무역수출구역”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 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산의 100%를 수출해야 한다.

기타 특별 경제 구역(예: 과학단지, 공업단지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대만 地政司가 제정한 “토지법(2011.6.15일 수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은 임지, 제염지역, 수산지역, 사냥지역, 광업지역, 수원지역, 군부대 및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주거, 상점, 공장, 교회, 병원, 외국인 학교, 공관, 공익단체 회의장, 묘지 등의 목적)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해당 관할 구청의 허가과 신청 절차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개인 및 회사 명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해외송금액 제한이 따른다.

- 사업체: 1년 누적송금총액 5천만 달러이하
 - 개인(거류증 소지 외국인 포함): 1년 누적송금총액 5백만 달러 이하
 - 비거주자(사업체나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 송금전당 10만 달러 이하
- 단, 송금액이 아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송금 관련 거래 계약서



또는 투자허가서 등 송금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체: 송금건당 100만 달러 이상
- 개인: 송금건당 50만 달러 이상
-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선물거래 관련 송금
- 대만 경내 거래이나 대만 경외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송금할 경우
- 그 외 은행측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송금

경쟁정책

대만은 일반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자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규제 등과 같은 수입 규제 사항이 없거나 매우 적다.

실제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자료에 따르면, 2014.8월 기준 대만의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6건으로 중국산 수진/구두/과산화벤조일/론갈리트/포틀랜드시멘트와 그 소재 및 한국, 중국산 스테이레스강 냉연제품(300계열) 등이 있다.

기타 장벽

외국 운전면허증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년 이상 거류 가능한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대만 단교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대만-일본 간 항로에 대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대만-일본 간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 및 선적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불의의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대만은 2005. 1월부터 금융서비스업을 주축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4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계획 만기년도인 2008년에는 금융서비스업의 생산액이 GDP의 10.03% 비중을 차지하였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은행 지점·연락사무소 설립 및 관리법(外國銀行分行代表人辦事處設立及管理辦法 2001. 9. 4. 제정, 2009. 12. 11. 개정)에 따라 외국 은행의 대만 지점 설립 구비 조건 중 대만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이 2억 5천만 대만 달러 이상에 달해야 하며, 향후 매 차례 신규 지점 설립 시 최저 운영자금 투자액은 2억5천만 대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점 설립 신청 당해 연도로부터 1년 전 은행 자본 및 자산 규모 기준 세계 랭킹이 500위권 이내이거나 설립 신청 전 3년 동안 대만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 실적

WTO 협정에 따라, 2004.1.1부터 다수 항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으며, 음반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음반물 불법 복제 판매 신고 시, 최고 1천만 대만 달러 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경찰단(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한 결과 미국 BSA가 발표한 2010년 세계 각국의 불법복제율 중 대만의 불법복제율은 37%로 전년대비 1%p 감소되어 세계 랭킹 23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7. 1. 1일부터는 배기량 2001cc 이상의 승용차(9인승 봉고차 포함)의 물품세를 35%에서 30%로 인하했고, 2011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쿼터 제한 없이 1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009. 7월 대만의 WTO GPA 가입이 발효됨에 따라 대만이 양허한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었다.

라오스

수입정책

관세 및 수입부과금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9.6월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라오스의 경우, 2015년까지 일반품목군의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하고 2018년까지 관세 철폐를 완료할 예정이며, 일반민감품목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20%로 인하하여 2024년까지 0~5%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10~9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 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기존 소비재에 부과하던 판매세(5~10%)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법을 2006년도에 제정, 이를 2010.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라오스 소재 기업 중에서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제도가 적용되어 세액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이 4억 KIP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납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라오스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이 부과되며, 수출용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세율이 적용되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미세한 수치의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통관 절차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 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과 뇌물수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Report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제4 연례보고서는 對라오스 수출입시 통관절차와 육로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89개 국가 중 161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상기 조사시 소요비용에는 서류 비용, 검역 및 검사 관련 비용, 육로 이동 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세금 및 뇌물은 미포함

위의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만 해도 주변국인 태국(3), 인도네시아(6), 말레이시아(7) 등에 비해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검역 및 기술검사에 통상 8일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 수입 통관 시 기본 구비서류: ①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②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③Certificate of origin, ④Commercial invoice, ⑤Customs import declaration, ⑥Customs transit document(for Thailand), ⑦Import Permit, ⑧Packaging list, ⑨Bill of lading, ⑩Terminal handling receiptsorder

수입 규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차량 폭증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2011.10월 라오스 정부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수입 잠정중지를 발표한 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경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강화를 들 수 있다. 중고차량 수입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리령을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지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중고차량업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라오스는 고위험 화학물질, 총기류, 마약류, 사회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물 등의 수입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시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 농업·임업부 보건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WTO 가입과 무역의 편의를 위해 수입 쿼터 및 무역 수지 균형 정책을 폐지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라오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용 철강과 시멘트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조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3년간 수출 농산물에 대해 국가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현재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 투자자는 투자법에 따라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재정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면세기간(tax holiday)부여, 수입 관세의 경감 및 원자재 생산설비 등의 면세 혜택이 있다.

독점규제

2004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라오스는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하 'UNCTAD')의 지원 하에 독점규제령을 제정하였다. 독점규제령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카르텔의 형성이나 독점, 덤핑, 담합, 가격고정, 시장 분할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규제령상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Trade Competition Commission)과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독점규제와 관련된 모든 체계가 갖추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는 라오스의 경우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제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 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역에

서는 경쟁저해요소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역에서는 일부 경쟁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조달

정부 조달은 재무부 산하의 조달 감독 부서(Procurement Monitoring Off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달 대상은 모든 정부 부처, 행정기관, 국영기업 등이다. 정부 조달은 △제한경쟁입찰(limited bidding) △국내가격비교(local price comparison) △국제가격비교(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회계 연도별로 공개되는 정부 예산안에 정부 조달 지출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부분의 자본재 및 산업 장비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형식으로 구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STEA) 산하 지적재산표준화국(DIPSM)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라오스는 1995년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지적재산협력에 관한 아세안 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에도 가입하였다.



라오스는 1995년에 상표권에 관한 법령, 2002년에 특허권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2007년에 최초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법을 제정하였다. 상표권의 경우,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출원한 순서에 따라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후 10년 단위로 등록연장이 가능하다(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특허권은 20년,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해당 저작물의 작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개시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저작일로부터 50년간 존속되고, 저작물이 공시된 경우에는 저작물이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50년간 존속된다.

서비스

교육

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사업(교육사업, 교육 장비생산산업, 학교 설립), 직업 훈련과 보건사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Lao American College 등 여러 사립대학과 사설학원이 있으며, 이 중 Lao-Korean College, Lao Top College, LOGOS Academy, Masters College, Glory School은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외환

외환 관리법은 외환 사용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과의 거래 대금 지불, △외국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교통비, 보험비, 세관에 물품 보관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구의

승인 하에 외국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상환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 하에 외국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 송부, △외국 투자자에게 배당금 송금

한편,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라오스중앙은행(BOL)은 상업은행과 외국환 관리국에서 취급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Kip화의 기준 환율을 매일 단위로 정하고 있다. 환율 변동 범위는 미국 달러화의 경우 $\pm 0.25\%$, 유로화와 태국 바트화의 경우 $\pm 0.5\%$,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pm 2\%$ 로 제한을 두고 있다. BOL은 환율이 허용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BOL은 수입업자에게 적용하던 외환거래 관련 필요 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절차를 완화하는 등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신

라오스 정부는 통신분야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신 분야는 라오스내 가장 개방된 서비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은 외국투자 49% 지분을 가지고 라오스 국영기업 및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6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라오스는 Lao Telecom, Star Telecom(UNITEL), Bee Line, ETL, Sky Telecom, Planet 6개 통신회사가 CDMA, GSM 기술을 활용하여 영업중이며, 이중 Sky Telecom과 Planet 사는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Bee Line은 러시아계 외국회사 VimpelCom이 과반수 이상 지분(78%)을 소유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전자상거래

라오스 산간 벽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느리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아직 미비하고 전자상거



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도 아직은 부족하다.

법률 서비스

현행법상 외국 국적 변호사는 라오스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라오스인이더라도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라오스에서 효력이 없다.

투자 유치

개요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 개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하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는 부작용 증가 및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자원(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2015.12.31까지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과 국가안보, 공공의료 및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분야는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2001년 통과된 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시 투자가 가능하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의 여러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 후반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 하락한 것에 반해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의 폭발적 증가(특히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원 개발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011.1.1일 한국거래소와 합작으로 증권거래소를 개장하였고, 이러한 자본시장의 형성 및 대외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의 라오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4 아시아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14~15년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제회복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라오스 또한 각종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연평균 7%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라오스는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였으며 2011.4월 구체적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은 폐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절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단일 창구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는 기획투자부 산하의 투자촉진부서에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기획투자부, 상공부, 재무부,公安부, 노동사회복지부, 외교



부 등)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단일창구서비스의 주요 역할은 투자환경 및 법규에 대한 정보 제공, 각종 투자신청 구비서류 작성 안내, 사업/취업/거주 비자신청서 접수, 사업등록번호 및 납세자등록번호 확인 제공 등이다.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 유형은 100% 단독투자, 합작 투자(joint venture), 계약에 의한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계약에 의한 협력사업: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법인과 라오스 국내 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 국내외 투자자간의 합작 투자: 라오스에 법인을 설립 및 등록하여 국내외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임. 외국인 투자자는 총 자본금의 최소 1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의 성격, 규모 및 영업조건을 감안하여 투자허가증 유효기간이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최대 75년까지 연장 가능함. 천연자원과 에너지 탐사 관련 사업은 반드시 합작 형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100% 외국 투자자 단독소유기업: 외국인이 단독으로 라오스에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며, 외국 법인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도 해당됨(단,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 정보수집과 투자기회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음. 외국 은행 설립의 경우, 설립 장소가 수도인 Vientiane으로 제한되어 있음.)

과거 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크게 (i) 외국인투자허가증발급, (ii) 기업등록증발급, (iii) 세무등록증발급, (iv) 기타 인허가발급 절차로 나뉘어졌으나, 2011.4월 통합투자촉진법에 대한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절차가 단일창구서비스(One-stop Service)로 크게 간소화

되었으며, 일반사업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외국인투자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기업등록증만 취득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등록증은 광업, 발전업 및 정부양허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단일창구서비스, 그리고 일반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일반사업종목에 대한 투자는 총 자본금이 최소 10억 Kip이 되어야 한다. 등록증 취득과 법인설립 외에도 모든 투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라오스중앙은행의 외자유치증서,公安부의 회사인감 및 정보문화부의 회사인감 승인 등이 있다. 아울러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부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라이선스(공장운영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처리 허가증 등)를 취득하여야 한다.

토지사용권

1975년 라오스는 공산혁명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하여 왔으나, 라오스 정부는 2011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자본금 500,000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다. 토지사용권은 기존 토지임차권과 달리 토지보호, 이용, 용의,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토지관리청(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만 가능하다. 또한 대상토지의 총면적은 8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거주 및 사업영역 그리고 이에 필요한 건물 건축 등 라오스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목적범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매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국가토지관리청은 토지사용권 매입자 명의로 토지등기권리증(Land Title)을 발급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사용권은 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허용기간만 유효하고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사용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면 투자기간도 함께 연장하여야 된다.

그러나 토지사용관련 규칙은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며 아울러 앞서 말한 과거 정부의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른 해외투자자 토지사용권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라오스 주요 정치·경제인들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라오스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프라건설, 서비스, 물류, 제조, 첨단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바, 2014년 기준 전국 10여개 지역이 SEZ로 지정되었다.

이중 남부 사바나켓(Savannaket)주의 Savan-Seno Special Economic Zone은 이미 2007년부터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SEZ로써 면세기간 2~10년(제조업 우대 10년, 서비스업 2년), 법인세 8~10%, 개인소득세 5% 등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최대 99년까지 임차(연장도 가능), 30년 이상 임차 시 최초 12년은 임차료 면제 혜택이 있다. 2014.8월 현재 총 49개 기업이 Savan-Seno SEZ에 투자를 하였으며, 한국 광물제련업체의 제련소도 신축되어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해당 자원(원자재)이 라오스에 존재할 경우 해당 자원의 50%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 고용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 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고용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송금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외국 투자 법인의 수익은 모두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며, 라오스내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한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 투자자의 과실송금 등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 회수 (repatriation), 납세증명서(tax certificate) 제출, 외환 강제 매도 (surrender) 등의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

배당금의 해외반출

외국인 투자자가 납세의무와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배당금을 해외로 반출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오스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에서 외국 환을 매입하여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외국환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① 외국환 매입 및 해외송금 신청서
- ② 예금계좌 사본
- ③ 중앙은행이 발행한 외자유치증서
- ④ 사업자등록증, 투자허가증



⑤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의사록

회계처리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회계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계산서 및 회계 문서를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시행하여야 하는 회계시스템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소규모기업은 기본회계시스템(현금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복식부기를 갖춘 표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계산서는 라오어와 킵(Kip)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 문서는 최소한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부기 및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무부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조세 적용

라오스 조세법상 모든 법인은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거 라오스 국적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5%의 고정세율이 적용되고 합작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법인경우 법인세율은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면세혜택기간 종료 후,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의 위치에 따라 10~20%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 발효된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일반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0년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경감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된 바, 동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매출에 따라 0%~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목재) 탐사를 위한 산업이나 기업은 천연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가 혹은 1큐빅 미터에 따라 2~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목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커피, 차(茶), 화훼 종자에도 관련 세율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2006년 발효), 이 협정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우리기업이 라오스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라오스에 지분 10% 이상의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우리 기업이 라오스에 기술 등을 제공하고 받는 지적재산권 사용료(royalty)에 과세되는 세율이 5~10%에서 5%로 인하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 국제중재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라오스 법원에 의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필요시 국제중재절차에 의존한다. 다만, 판례가 부족하고 정부 및 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계약 작성시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오스 정부는 1998년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정’을 서명하였다.

라오스 계약법상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중재판정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계약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행상 이와 같은 방법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 현황

1989년 라오스 국영은행이 국영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분리되면서 상업 부분의 96개 라오스 국영은행 지사가 7개의 국영 상업 은행으로 전환되고, 1999년에 BCEL,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등 3개의 은행으



로 다시 통합되었다. 이후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두 은행이 라오스 개발은행(Lao Development Bank)으로 통합되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오스 국영은행은 통화와 환율 정책을 총괄하며 라오스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는 라오스 국영은행 외 3개의 국영 상업은행(BCEL, 라오스 개발은행, 라오스 농업진흥은행)과 다수의 일반 상업은행이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인이 영업중인 2개의 상업은행(인도차이나 뱅크, 부영라오 은행)과 다수의 국외 은행 지사, 합작 은행, 상업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이자율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상업은행은 단기 대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영 상업은행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장기 예금, 대출 금리 설정 등 민간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무 관리

노동시장 구조

산업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도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제7차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는 산업별 종사자 비율이 1차 산업(농업) 경우 75%에서 70%로 감소하고, 2차 산업(공업)은 5.5%에서 7%로 증가, 3차 산업(서비스)은 19.5%에서 23%로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방에 7개의 기술훈련센터(skill-training center) 건립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복지 네트워크 확충사업 등을 수립 및 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양성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급인력 수급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흥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UNDP, IMF 등 해외원조기구 증가로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어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월 1,50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고급인력의 이직률이 높다.

최저 임금

하루 8시간, 월 26일 근무기준 2012년도 최저임금은 626,000 kip(약 78달러)이다. 이는 2011년 569,000 kip(약 71달러)에서 10%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7~8%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세의 영향이 크다.

또한 2013~14 회계연도에 40% 가량 증가 예정인 공무원 급여인상안에 따른 민간부문 근로자들의 급여인상 기대심리로 실질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사회보장기금

근로자가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가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10인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납부액은 월 보수액의 9.5%이며 고용주가 5%, 근로자가 4.5%를 부담한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경제의 특징

경제·산업 구조

말레이시아는 석유·가스, 팜오일, 고무, 목재, 주석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부국이자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조업 기반확충 노력의 결과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화학제품 및 철강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바이오산업, 이슬람금융, 관광, 교육 등 첨단기술 집약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탄탄한 1·2차 산업의 기반 위에 첨단기술 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경제발전 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Vision 2020’이라는 장기 발전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5년 단위의 말레이시아 계획(Malaysian Plan)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경제정책 및 발전전략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1)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2011~2015)

2010.6.10 Najib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2011~2015)을 발표한 바, 동 계획의 목표, 10대 전략적 중점 육성 분야 및 12대 국가 핵심경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제10차 계획의 목표
 - 경제성장률(계획기간 중 연평균): 6.0%
 - 2015년 1인당 GDP: 38,850링깃(USD 12,140)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5.3%(2010년)→3.0%(2015년)
 - 민간투자(계획기간 중 연평균): 12.8% 성장(연평균 1,150억 링깃 신규투자)
 - 고용(계획기간 중 연평균): 2.4% 증가, 140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 10대 전략적 중점 육성 분야
 - 내부 역량 강화 및 외부 변화 활용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문화를 통한 고소득 사회로의 전환
 - 생산성에 기반한 성장과 혁신 장려
 - 최고급 인력의 육성, 유지 및 강화
 - 균등기회 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른 성장 발전 추구
 - 정부와 민간 기업 간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
 - 천연 부존자원의 효용가치 극대화
 - 정부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
- 12대 국가핵심 경제 분야
 - 석유 및 가스, 팜오일 및 연관 상품, 금융 서비스, 도소매업, 관광 산업, 전자 및 전기, 민간 의료산업, 교육,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농업 서비스, 광역 쿠알라룸푸르 구축

(2) 새 경제모델(NEM: New Economic Model)

제10차 말레이시아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인 New Economic Model(NEM)을 발표·추진 중이다.



< NEM 기본 원칙 >

- High Income: 1인당 GDP 7천불에서 10년 내에 1만5천달러로 도약
- Sustainability: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배려로 삶의 질 향상
- Inclusiveness: 인종에 무관한 빈곤탈피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집 총리는 NEM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 경제개조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을 수립, 12개 핵심 분야에 걸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31개 세부 프로젝트(Entry Point Projects)를 도출하고, 동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총리 실내 PEMANDU 주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 전략의 기조로 1980년대부터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의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982년부터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기치 하에 전기·전자를 비롯한 제조업 육성정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강력 추진해왔다. 그 결과 반도체, 노트북, 전자부품, 가전제품 분야의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전기전자 등 제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전기전자 제품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수출상품으로 부상(총 수출액의 약 35%)하였다. 또, 최근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IT, BT 등 지식기술 집약 산업과 이슬람금융,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지역 발전전략

말레이시아는 상기 국가전체 차원의 발전전략과는 별도로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중심의 발전전략도 동시 추구하고 있다.

< 지역별 발전전략 >

- Johor주 등 남부지역: Iskandar Malaysia
- Kedah주 등 북부지역: 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
- Terengganu주 등 동부지역: East Coast Economic Region
- Sabah주 지역: Sabah Development Corridor
- Sarawak주 지역: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

(4) 2014년도 정부 예산안

말레이시아 정부의 2014년도 정부지출 예산은 2,642억링깃(약 90조원), 조달은 2,241억링깃으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2,171억링깃이 운영경비이고, 465억링깃이 개발 예산이다. 2014년 정부수입은 2,241억링깃으로 소득세(47%), 간접세(14.8%) 등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달보다 지출이 커서 적자가 지속될 것이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4년말까지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5% 이내로 축소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균형재정에 도달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상당부분을 건설 및 교통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 예산에 나타난 주요 프로젝트성 사업 >

- ☐ Banting-Taiping 서해안고속도로(316km), Ipoh-Padang Besar, Gemas-Johor Baharu의 double-tracking 프로젝트
- ☐ Sipitang의 사바 암모니아 요소 프로젝트, Keabangan 오일가스 통합생산프로젝트, Lahad Datu 가스프로젝트, Pengerang, Johor의 RAPID 프로젝트
- ☐ 항공교통관제센터 건설(KLIA), Kota Kinabalu, Miri, Sibul, Mukah, Langkawi, Kuantan 공항 여객터미널 개선 등
- ☐ 5개 지역 Corridor 개발을 위해 기초 인프라와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
 - * Iskandar Malaysia(IM), 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NCER), East Coast Economic Region(ECER), Sabah Development Corridor (SDC),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SCORE)
 - 2013년중 534억링깃의 신규투자가 약정되었고 이중 50%가 실제로 집행(이스칸다르 지역 주요 프로젝트로 파인우드 스튜디오, 글렌이글 병원, 페가수스 국제학교 등)
- ☐ 5개 지역 Corridor 개발을 위해 2014년 예산중 16억링깃을 배정
 - o 동 예산은 동남 복합개발, 사바지역 팜유 관련 산업, 사라왁지역 사마라주 산업단지 및 할랄 파크 지원에 소요될 계획
 - o 한편 East Coast Corridor의 Kuantan 항구가 확장될 계획이며 Gebeng, Kertih에 종합 석유화학단지를 설립
 - o Northern Corridor에서는 상업용 곡물재배, 비료살포 시스템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
- ☐ 대중교통망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
 - o Ipoh-Padang간 철로 복선화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조호바루까지 연결할 계획이며 국가 전체적인 철로 개선작업을 추진(29억링깃 배정)
 - o LRT 및 KTM, ERL 역에 'Park & Ride'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62백만링깃 배정)



- 택시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집중 택시서비스 시스템을 도입(15.3백만링깃 배정)
- 도시와 농촌간 원활한 교통망 확보를 위해 사바 및 사라왁 등 항공사업에 1.3억링깃을 배정
- 아울러 경제성보다는 국민편익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동해안 Pahang - Kelantan 간 철도운영에 52.9백만링깃을 배정

최근 경제동향

최근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과 수출 및 투자 급감, 국내소비 위축 등의 악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2009년에는 GDP 성장률 -1.7%의 성장 감퇴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후 전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4.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도 연초 전망(5.5% 내외)보다 높은 6%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말레이시아 최근 거시 경제지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제성장률(%)	4.8	-1.5	7.2	5.1	5.6	4.7
GDP(억달러)	2,310	2,023	2,468	2,879	3,035	3,124
1인당 GDP(달러)	8,390	7,203	8,633	9,941	10,304	10,428
물가상승률(%)	5.4	0.6	1.7	3.2	1.6	2.1
실업률(%)	3.3	3.7	3.3	3.1	3.0	3.1
외환보유액(억달러)	913	967	1,065	1,336	1,397	1,349

소비자물가

2013년 말레이시아의 연간 소비자물가는 2.1%(2012년 : +1.6%) 상승하였다. 2013.1- 8월중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1.7%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13.9-12월중 큰 폭(2.9%) 상승함에 따라 연간 전체로는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2013년 하반기 들어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상악화에 따른 일부 품목 공급 차질과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임금인상 압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충분한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여 말레이시아 물가는 당분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말레이시아 링깃화 환율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 2008년 1달러당 3.46링깃에서 2012년 4분기에는 1달러당 3.06링깃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말레이시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요국 통화대비 강세를 보였다. 이후 2013년 들어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우려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 제기, 말레이시아 총선실시에 따른 국내의 불확실성 등이 링깃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요 통화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전체로는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미달러화대비 6.8% 절하되면서 연말 3.28링깃으로 상승하였다.

■ 최근 링깃화 환율 추이

(1달러당 링깃, 기간말)

2013				2014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3.09	3.18	3.26	3.28	3.27	3.21	3.27

금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2011.5월 이후 정책금리(Overnight Policy Rate, OPR)를 3.00%로 유지하는 등 경기부양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삭감, 최저임금제 시행, 2015.4월 부가가치세 도입 예정 등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4.7월 정책금리를 3.25%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은행간 일



일물 평균금리 및 여타 만기 금리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반영하여 25bp 내외 수준 인상되었다.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2010			2011	2012년	2013년	2014
3월	5월	7월	5월	12월	9월	7월
2.25	2.50	2.75	3.00	3.00	3.00	3.25

교역동향 및 교역환경

교역동향

(1) 전반적 교역동향

2013년 말레이시아의 수출은 2,284억달러, 수입은 2,061억달러를 기록하여 223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1997.11월 이후 무역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흑자폭이 감소하는 중이다.

■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1,573	1,987	2,282	2,277	2,284
수입	1,238	1,647	1,876	1,965	2,061
무역 수지	335	340	406	312	223

말레이시아의 2013년 주요 교역국가와의 수출입실적을 분석하면, 10대 수출대상국에서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10대 수입대상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뒤로 밀리면서 대인도네시아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10대 교역국 비중은 수출의 경우 2012년 72.2%에서 2013년 72.3%로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 2012년 72.5%에서 2013년 71.8%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3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수출>			<수입>		
(단위: 백만달러)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2012순위)	수출금액 (비중)	순위	국가명 (2012순위)	수입금액 (비중)
1	싱가포르(1)	31,912(3.1%)	1	중국(1)	33,740(13.4%)
2	중국(2)	30,711(6.7%)	2	싱가포르(2)	26,081(0.0%)
3	일본(3)	25,328(6.3%)	3	일본(3)	17,899(-11.5%)
4	미국(4)	18,444(6.4%)	4	미국(4)	16,179(1.8%)
5	태국(5)	12,674(3.8%)	5	태국(6)	12,281(4.3%)
6	인도네시아(9)	10,500(17.3%)	6	대만(7)	9,990(22.2%)
7	홍콩(6)	9,898(1.6%)	7	한국(8)	9,725(21.7%)
8	호주(9)	9,238(2.1%)	8	인도네시아(5)	8,879(-12.0%)
9	한국(8)	8,292(0.8%)	9	독일(9)	7,278(-3.2%)
10	인도(7)	8,175(-14.0%)	10	베트남(12)	6,031(15.7%)

※ 자료: World Trade Atlas

2013년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12.2%), 석유/가스(8.9%), 석유제품(8.5%), 팜유(5.4%), 석유정제품(4.5%) 등이며,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수출 품목 1위(약 277억불)를 기록하였다.

(2) 한-말 교역동향

2013년 기준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7대 교역국이자 제2위의 투자국(제조업 프로젝트 승인 기준)으로 활발한 무역·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85.8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對말레이시아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110.9억달러를 시현하여 양국 간 교역규모는 최초로 196.7억달러를 돌파하였다.

기존 주요품목 중심의 수출 촉진뿐만 아니라 최근 말레이시아가 중점 육성 의지를 표명한 녹색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등과 관련한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금액	4,324	6,115	6,275	7,723	8,588
	증가율	-25.4	41.4	2.6	24.3	11.2
수입	금액	7,574	9,531	10,468	9,796	11,096
	증가율	-23.6	25.8	9.8	-6.4	13.3
합계	금액	11,898	15,646	16,743	17,519	19,684
	증가율	-24.2	31.5	7.0	4.6	12.4
수 지		-3,250	-3,416	-4,193	-2,073	-2,508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교역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해보면, 수출은 경유,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합성수지, 석유제품, 승용차, 철강제품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집적회로 반도체, 원유, 중유, 나프타, LPG 등이 주도하고 있다.

■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품목명	2012년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경유	1,417	1,815.0	1,673	18.0
집적회로반도체	543	-13.0	546	0.5
평판디스플레이	317	-48.3	390	23.2
승용차	239	11.1	317	32.6
합성수지	264	-11.8	294	11.5
합성고무	296	-17.7	276	-6.7
휘발유	47	-	231	386.8
기타정밀화학원료	-	31.1	228	174.9
냉연강판	250	-3.8	174	-30.6
축전지	82	17.1	140	71.8
칼라TV	121	3.1	140	15.1
중유	40	-74.2	130	226.3
동조가공품	145	1.8	127	-12.4
총계	7,723	23.1	8,588	11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분류)

■ 對말레이시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품목명	2012년		2013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천연가스	2309	10.8	2953	27.9
종유	1103	97.6	1487	34.9
집적회로반도체	923	-18.4	895	-3
원유	607	-49.8	616	1.5
컴퓨터부품	360	-23.2	405	12.4
개별소자반도체	305	-6.4	308	1
식물성유지	327	-5.5	262	-19.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87	49.2	246	182.4
나프타	119	-64.4	160	34.5
주석괴및스크랩	158	-25.7	160	0.9
합판	171	5.6	159	-6.7
기타석유화학제품	82	-26.8	156	89.6
총계	9,796	-6.4	11,095	13.3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분류)

교역환경

(1) 관세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채택(세부단위는 9단위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아세안 FTA가 2007.6.1일부로 본격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



출하는 우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tariff.customs.gov.my>)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2) 통관

말레이시아의 통관용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를 토대로 9 Digit Level 기준으로 10,579개 물품이 있으며,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 Customs)은 통관절차 원활화를 위해 통관검사 방식을 통관시검사(clearance-based controls)에서 통관후검사(post-clearance audit control)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이다.

수입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customs duty), 판매세(sales tax) 및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브로커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Bill of landing 또는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C1) Declaration

수·출입 관련, 여타 통관 양식으로는 수입물품의 경우 custom form no.1이 요구되고, 수출 물품의 경우에는 custom form no.2가 요구되며, custom form no.3는 말레이시아내 물품 운송시, custom form no.8은 환적용, custom form no.9은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으로 요구되는 양식이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산지 규정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을 규율하는 국내 법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바 이는 비특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ASEAN CEPT와 관련하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바 CEPT 제도는 ASEAN 국가들이 i)당해 물품이 ASEAN 국가내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또는 ii) F.O.B. 가격의 40%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한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40% 부가가치 산출 시 원재료, 노임 및 간접비용 등이 고려된다.

(4) 수입규제

말레이시아는 수출입 의존형 경제 구조상 정부의 수입 규제가 심한 편은 아니며 수입금지 제도 및 수입허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생, 안전, 환경보호 및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 허가 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물량 확보 및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a) 수입금지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4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의 16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이를 압수하고, 최대 RM 5,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모조 화폐
- 공서양속, 사회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 단검
-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 아비산 나트륨(Sodium Arsenite)
-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 파랗나(Piranha fish) 어족류
- 거북이 알
-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 독성 화학물
-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b) 수입허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필요로 한다.

- 보건, 위생, 지적 재산권 및 자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국내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 가능한 품목

쌀, 설탕, 자동차, 철강 등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Approved

Permit)를 받아야 한다(AP 대상 상세품목은 www.miti.gov.my 참조). 종종 수입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예컨대 일부 철강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바,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시 Open AP(중고차) 또는 Franchise AP(신차)를 받고 수입해야 하는데, 2009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를 통해 통상산업부에서 각각 2015년, 2020년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2014년 National Automotive Policy에서는 동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발표하여 자동차 AP의 최종 폐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의 수입시 수량제한으로는 자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설탕 및 밀가루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 수입시에는 국립쌀위원회(National Paddy and Rice Board)가 관여하여 자국내 쌀 가격을 고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령은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 및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Regulations 1994’가 있다.

2011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내기업(Megasteel사)의 청원으로 수입산 열연강판(Hot Rolled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없다고 결정하고 조사를 종료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말레이시아 철강업체 Amsteel Mills에서 한국, 중국, 터키 등에서 수입되는 와이어로드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고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제소하여 6.25일부터 조사를 개시하였다. 업계의 적극적 대응으로 최종 반덤핑 판정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고탄소



강(탄소성분 0.6%이상)은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저탄소강의 경우 관세율은 P사 제품 3.03%, 여타 회사 25.20%로 결정되었다.

한편, 2013.2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주석도금강판 생산업체인 Perstima사가 한국, 중국산 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하였 고, 2013년 11.16부로 아국산 수입에 대해 3.46~9.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4년에도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 및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가 이어졌다. 2014.6월에 열연코일(Hot Rolled Coil)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가 있었고, 9월에는 철근(Rebar)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도 이루어 졌다. 2014.8월에는 후판에 대한 WTO 세이프가드 조사도 개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편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이 올라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 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말레이시아 철강업체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03.9.26부터 아국산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 가 결정되었고, 2009년 재심에서 동 조치를 5년간 연장함으로써 최근 10년간 아국산 신문용지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2014년 재심에서 더 이 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수출이 재개될 전망 이다.

■ 말레이시아의 아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스틸 와이어로드 (탄소성분 0.06%이하)	7213.10 7213.20 7213.91 7213.99	반덤핑	2012.6.25	확정판정일: 2013.2.20 반덤핑 조치 종료일: 2018.2.19	P사 3.03%, 기타 25.20%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일자	관세부과 일자	부과 관세
주석도금강판	7210.12.20	반덤핑	2013.2.20	확정판정일: 2013.11.16 반덤핑 조치 종료일: 2018.11.15	D사 9.78%, S사 3.46% T사 4.46% 기타 9.78%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000	반덤핑 (조사중)	2014.6.16	예비판정일: 2014.10.15 (예정)	-
열연코일	7208.10.000 7208.25.000 7208.26.000 7208.27.000 7208.36.000 7208.37.000 7208.38.000 7208.39.200 7208.39.900 7225.30.000	반덤핑 (조사중)	2014.6.18	예비판정일: 2014.10.17 (예정)	-
철근	7214.20.210 7214.20.910 7214.20.290 7214.20.990 7228.10.100 7228.10.900 7228.20.100 7228.20.900 7228.30.100 7228.30.900 7228.40.100 7228.40.900 7228.50.100 7228.50.900 7228.60.100 7228.60.900	반덤핑 (조사중)	2014.9.2	예비판정일: 2014.12.31 (예정)	
후판 (전기, 전자, 자동차, 보일러, 압력용기용 후판 제외)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	세이프 가드 (조사중)	2014.8.18	예비판정일: 2014.11.17 (예정)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라는 정부 소유 회사에서 제품 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 인증으로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는 바,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나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 오토바이 안전 헬멧(Motorcyclist Safety Helmet)
- 안전벨트(Motorist's Safety Seatbelt)
- 전기제품(Electrical Appliances)
- 가스 가구(Gas Appliances)
- 화재 안전 물품(Fire Safety Products)
- 시멘트, 세라믹 타일 등(Cement, ceramic tiles, ceramic sanitary ware)
- 통신 장비(Communication Equipment)
- 차세대 디젤 엔진(New generation of diesel engines)

말레이시아는 Halal 식품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가공육류,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정부조달 관련 제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군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

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천만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 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기업(Statutory Body) 구매도 정부조달 규정에 따른다. 단,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달 금액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없이 1억링깃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령, 건설은 건설부 Contract Service Center 및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 물품과 연구용역 참가자는 재무부 담당부서에 등록을 요한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미푸트라 입찰기업(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 http://www.treasury.gov.my/pdf/lain-lain/msia_regime.pdf 참고)

지식재산권 보호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의장권, 저작권 등의 보호로 구성되며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조인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룰 21개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을 설립하였는바, 이는 말레이시아가 많은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로 인해 국제 감시 국가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보인다.

a) 특허권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b) 등록상표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2011년 발효된 동법 및 특허법 부분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후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을 관장하는 Trade Description Act 1972가 있는데, 동법이 2011년 전면개정되면서, 등록상표를 Trade description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권자는 Trade Description Act 2011에 따라 법원에 허위표시 확인 명령(TDO, Trade Description Order, 유효기간 1년)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부서(MDTCC)에서는 이러한 확인결과를 기반으로 침해자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3년에 등록상표 관련 국제상표출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Madrid Protocol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산업의장

말레이시아에서 산업의장의 보호는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업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산업의장법은 등록된 산업의장에 대한 권리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산업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



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d) 저작권

198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격, 보호의 범위와 보호방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이며 하며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간이다. 또한 동 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실연을 한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징은 강제 집행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바, 동 규정은 법을 집행할 특별 수사반이 구성되어 저작권 침해 복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당해 복제물과 복제 장치를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2.3.1 발효된 개정법에서는 저작권 위반물의 유통 배포와 관련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면책요건 규정, 영화 상영중 캠코딩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또, 저작권 등록부(Register of Copyright) 및 자발적 등록제(voluntary notification of copyright)를 도입하여 등록담당기관이 증서를 발행하면, 해당 저작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등록부에 기재된대로 추정효과(prima facie evidence)가 부여된다.

e) 집적회로 설계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f) 지리적 표시

2000년 지리적 표시법은 당해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의 명칭을 딴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 따라 포도주, 주정, 자연물, 농산물, 수공업품과 같은 상품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질서와 사회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의 홈페이지(<http://www.myipo.gov.my>)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세 제도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거주 법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은행, 보험, 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거주 기업을 제외한 여타 법인이 과세연도 동안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의 세율은 25%이며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소득중 최초 50만 링깃에 대해서는 20%, 50만링깃 초과



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GST의 도입과 함께 2016년부터는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과세 소득이 16,667링깃 이상일 때 1~26%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2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거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2014년1월1일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였다. 보유주체(회사,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5년이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보유기간 6년차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Sales Tax 1972, Service Tax 1973에 따라 부과해온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대신하여 2015.4월부터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oods and Service Tax가 도입되어 일부 면세, 영세율 품목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6%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동 세제 실행은 관세청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중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가간 소득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정하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세금공제 혹은 세금감면을 위해 양국간에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목적은 국내외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하고, 자본수출국 납세자가 감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다.

투자동향

(1) 전반적 투자동향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3.7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전히 자유화한 이후,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총 406건 305억 링깃의 외국인투자를 유치(승인 기준)하였다. 2013년에 FDI로 승인된 주요 제조업 분야는 화학제품, 석유제품, 전기전자제품, 기본 금속제품, 식품제조, 기계장치, 고무제품 등이다.

■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승인기준)

(단위: 십억 링깃)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액	33.4	46.1	22.1	29.1	34.2	20.9	30.5

※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2013년 對말레이시아 최대 투자(제조업 프로젝트 승인기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투자액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한국(17.9%), 싱가포르(14.8%), 일본(11.8%), 중국(9.9%)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3년 對말레이시아 10대 투자국

(단위: 십억링깃, %, 2013년)

순위	국 가	투자규모	비 중
1	미 국	6.32	20.7
2	한 국	5.47	17.9
3	싱가포르	4.52	14.8
4	일 본	3.59	11.8
5	중 국	3.01	9.9
6	네덜란드	2.38	7.8
7	영 국	1.71	5.6
8	독 일	0.48	1.6
9	홍 콩	0.45	1.5
10	벨기에	0.29	1.0
Total		30.5	100

※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제조업 프로젝트 승인 기준

(2) 한-말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9.6억달러를 투자하였으며(신고기준), 이는 총 해외투자액의 2.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對말레이시아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투자산업 분야로는 전지전자, 석유화학,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광업 분야 등이 나,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예 따라 정보통신, 친환경산업(에너지), 금융 분야로 다변화·고도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한-말 상호 투자 동향

(단위: 천달러)

년도	한 → 말			말 → 한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 2009	1,149	7,919,950	1,547,023	724	7,040,041	6,031,662
2010	111	1,706,006	1,599,793	18	105,822	80,848
2011	108	177,673	251,728	11	93,492	96,698
2012	127	738,422	734,856	14	182,157	108,125
2013	81	416,683	483,338	16	54,500	54,132
누계 총계	1,576	10,958,734	4,616,738	783	7,476,012	6,371,465

※ 자료: 수출입은행/Invest KOREA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55,000링깃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주로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진출 이후에는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약 300여개 정도의 아국 대·중·소기업 지상사 및 현지 법인, 교민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 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www.kocham.org.my)이 2009.11월 이후 설립·운영중이다.

❖ 말레이시아 진출 주요 한국기업 현황

업종	주요기업
제조업	고려제강,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한화 Q-Cells, CJ제일제당, 동화기업, KCC,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엘피온, 동부메탈, 코웨이,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 등
도소매업	대우인터네셔널, 삼성물산, SK네트웍스, 현대종합상사, 효성, GS글로벌 등
운수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고려해운, 현대상선, CJ GLS 등
건설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공기업	KOTRA, 한국관광공사
금융업/통신	우리은행, SK텔레콤

투자환경

(1) 투자환경 일반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4년도 Doing Business Index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세계 189개 국가중 6번째로 기업하기 용이한 나라로 평가했다. IMD의 2014년 세계 경쟁력 순위 평가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전년도



15위에 이어 3계단 상승한 12위로 평가받았다. World Economic Forum 역시 2014-2015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순위를 전년도 24위에서 4계단 상승한 20위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우수한 금융환경, 노동시장의 개선 등이 최근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2월부터 비즈니스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의미하는 ‘Pemudah’를 구성·운영 중에 있는 바, 동 태스크포스팀은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과 국내외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료주의 개선,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또, 경제개조프로그램(EPT)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12개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규제완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투자환경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영어상용, 우수한 사회 인프라, 석유, 가스, 팜오일, 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상황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슬람권 및 아세안 수출기지로서의 유망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부미푸트라 정책에 따른 말레이계 필수 지분확보 규제,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제한, 산업용 가스공급 부족, 행정 절차의 지연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 관련 세부 분야별 환경

a) 고용 및 해고

고용 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1955년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야 하고, 간부나 매니저 지위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는 고용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고용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바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 ▲조합의 간부 여부에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 계약은 계약 해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 계약의 경우 어느 일방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 같아야 하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통지하여야 하는 바,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4~8주의 통보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법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암시된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고용인에 사전 통보 없이 해고,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징계(징계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됨)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관행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할 수 있는데, 노동청의 유권 해석에 있어 무단결근 등 명백한 근무태만행위가 있다 해도 결근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는 해고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은 최대 연장 근무시간을 월 10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상근무일의 연장근무는 정상 시급기준 1.5배, 법정공휴일에 대한 급여는 3배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근무시간과 관련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주당 4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요청이 있을시 거부할 수 있다.

노동청은 2011년 현재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157만명 수준이고, 불



법 외국인 노동자도 130만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14일 이내 관련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 비자는 최초 5년까지 발급가능하고, 이후 추가 5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은 내국인력 보호를 위해 내국인을 우선 고용 할 것과 정리 해고시 같은 기능의 노동자라면 외국인을 먼저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1.1부터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다. 서말레이시아는 월 900링깃, 동말레이시아는 월 800링깃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3년 최저임금제 실시와 함께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식당 등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고급 외국인 기술 인력이 단기 투입되는 플랜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비자(Work Permit)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b) 외환관리

1998.9.1일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링깃(Ringgit)화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링깃화의 해외거래를 전면 불허하는 외환관리 제도의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링깃화의 해외거래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다만 환율제도는 1998.9월 고정환율제 실시 이후 안정적 경제성장 및 중국의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주요 교역국 통화 바스킷의 변동 수준에 연동해 움직이는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실시 중이다.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말레이시아 국내 은행에서 관리되는 링깃화 계좌를 대외 계좌라고 지칭하는 바, 대외 계좌간의 계좌 이체의 경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나 지사 사업체의 은행 계좌는 대외 계좌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제외하고 어떠한 외환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나, 거주자의 경우 해외투자 목적으로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액수를 송금할 경우 외국환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운영 중인 비거주자 통제기업(NRCCs)은 사업을 진행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다. 다만 수출 신용 재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총 1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환전을 위한 특별승인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기대 가능 수준의 충분한 자본과 합당할 정도의 자기자본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천만 링깃 이상의 대출을 하려는 경우 자국의 국내 대출금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대출액에 상관없이 무역관련 대출분을 포함하여 당해 기업이 받은 총 대출액 중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c) 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 교육훈련 및 환경 관리 활동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형태이며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 형태로 제공된다.(www.mida.gov.my 참조)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제조 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및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정책에 따라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이 55,000링깃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 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MTS(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가 15% 이상인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의 권장 분야와 하이테크로 지정된 분야의 프로젝트 및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별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을 부여받은 회사는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개척자자격 대신 ITA(Investment Tax Allowance) 혜택을 선택할 경우, 매년 과세대상 소득의 70% 상한 내에서 초기 5년간 이루어진 자본투자(공장, 기계, 플랜트, 장비 등)의 60%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미사용 투자 공제액이 있는 경우, 5년 이후로도 혜택이 부여된다. 고도기술(High Tech)분야의 투자는 개척자 제도의 과세대상 소득 감면폭과 ITA의 과세대상 소득의 감면 상한이 100%로 늘어난다. 인센티브 신청은 투자청(MIDA)에서 관장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분야(Strategic Project)의 경우 10년간 100% 과세대상 소득 감면 또는 ITA 혜택을 통해 5년간 자본지출의 100%를 과세 소득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투자(reinvestment)에 대해서도 일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업종별 인센티브 상세내용: <http://www.mida.gov.my/env3/index.php?page=manufacturing-sector-2>)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생명공학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Malaysian Biotechnology Corporation Sdn Bhd)로부터 바이오넥서스(Bionexus) 지위를 승인 받은 회사의 경우 ▲회사가 수익을 낸 첫해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5년내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자세액 전액 공제, ▲바이오넥서스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이중 공제 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3) 서비스 분야 투자 자유화 조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 제조업 분야 외국인의 투자 지분 참여 제한

을 없앤데 이어, 2009.4.22일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지분 참여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운송, 레저, 임대, 보건 등 27개 분야에 대한 말레이계 투자자본 참여의무비율(종전 최소 30%) 규정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말레이계 이외의 내국인(주로 중국계 및 인도계)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9.4.27에는 금융산업 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상업은행 분야를 제외(상업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30% 투자지분 상한규정을 유지)한 이슬람 은행과 투자은행 및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지분 상한을 종전의 49%에서 70%로 확대하였다. 2009~2012년 중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2개의 이슬람은행과 5개 상업은행 및 2개 이슬람보험회사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부여하고 2010년부터 주재국내 외국계상업은행에 대해 최대 4개의 지점개설을 허용하며 2009년부터 10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지점개설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2009.6월부터 Labuan 소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 설립 제한을 완화하고 2010~2011년 중 Labuan 소재 Offshore 은행 및 보험회사 중 요건 충족 금융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Onshore 영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금융산업분야 전문직 외국인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부문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금융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예산안 발표시 17개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신(ASP license), 기술직업학교, 사립병원, 백화점, 회계세무법인 등 9개 서비스 영역에서 2012년 1월부터 100% 외국인 지분보유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국제학교, 통신(NSP, NFP license), 사립대학, 치과, 법률서비스, 건축, 설계 등 8개분야는 개방을 위한 법률개정 등 조치에 착수하였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분 개방 조치와는 별개로 실



제로 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업면허(Licensing)는 별도로 관련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한국기업이 100% 소유의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외국인 지분 50%이상의 기업이 도소매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통소비자부에서 발급하는 WRT(Wholesale Retail Trader) License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주요 산업 개관

주요 산업별 성장률

말레이시아는 서비스업(호텔, 관광, 도소매업 등)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2013년에도 계속 건설업 및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단위: %)

	2010	2011	2012	2013
농수산업	2.4	5.8	1.0	2.1
광업	-0.3	-5.5	1.4	0.5
제조업	11.9	4.7	4.8	3.4
건설업	11.4	4.7	18.1	10.9
서비스업	7.4	7.0	6.4	5.9

※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요 제조업 매출액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후반 자원 등 일차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황을 교훈으로 삼아 외자 도입에 의한 적극적인 공업화 정책을 펼쳐왔다.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인 주요 제조업의 매출액은 정제석유제품의 매출액이 가장 높으며 TV, 라디오, 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산업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위: 백만 링깃)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제석유제품	23,946	27,939	33,861	37,313	36,577
TV, 라디오, 통신기기	26,327	32,195	30,679	32,281	34,310
화학 및 화학제품	17,756	21,177	25,224	27,244	27,568
자동차 및 수송장비	15,227	18,655	18,094	20,147	22,869
조립금속제품	8,519	9,499	12,054	13,875	15,354
비금속 광물제품	6,045	7,135	8,715	9,203	8,617
플라스틱 제품	5,535	5,720	7,070	7,966	9,285
고무제품	4,206	5,734	6,940	7,021	7,130
기초금속	5,618	6,918	7,233	6,714	6,952
기계류 및 장비	4,638	5,386	5,973	6,346	6,455
총계	169,661	195,533	215,125	228,141	235,988

※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단위: 백만 링깃)

산업생산지수

2013년 전체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I)는 전년 대비 2.7%증가한바, 이는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세와 궤를 같이한다.

	2009	2010	2011	2012	2013
광업	95.5	93.9	87.1	89.3	89.7
제조업	100.9	112.1	117.2	123.1	127.1
전기	111.4	121.2	123.6	129.9	137.0
산업합계	99.9	107.1	108.4	113.1	116.2

※ 주: 2005년 100을 기준으로 지수 산정

※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에너지·자원 시장

말레이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원 수출국이나, 에너지 수요가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 증가중인바,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요에 상응하는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대, 원자력 도입 등을 추진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정책은 1975 국가 석유·가스정책을 시작으로 1979 국가에너지정책, 1980 에너지 고갈 대비정책, 1981 4대에너지정책, 2001 5대에너지정책, 2010 신재생에너지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시장경쟁도입과 그간 말레이시아 정부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에너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맞추기 위한 점진적인 에너지 가격 합리화,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정책 실행의 가속화, △시장가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 개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등의 전략을 선정, 시행중이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매장량은 약 58.5억배럴로 추정되며, 일부 생산성 좋은 유전이 성숙 단계에 이르러 압력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매장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는 호주, 인도, 태국,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이자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2010년 약 7.1만ktoe으로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카타르에 이어 세계 제2위의 LNG 공급국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에 대부분 LNG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전력공급은 TNB(말레이반도), 사라왁에너지(사라왁주), SEB(사바주) 등 3개 회사가 공급, 관리하고 있고,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발전 규모(Installed Capacity)는 29,143MW이며 지역별로는 말레이반도가 24,309MW, 사바가 1,963MW, 사라왁이 2,871MW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소비시장은 전체 46,709 ktoe중에서 36.8%(17,180ktoe)를 사용하는 교통분야와 29.8%(13,919ktoe)를 이용하는 발전분야가 전체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스와 석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재의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1000MW급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과 총선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원전 도입 시기가 2025년으로 수정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말레이반도에 발전차액보조제도(FiT)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제도 도입 당시 신재생에너지펀드 조성을 위한 1%의 전력요금 추가 징수는 2014년 1월부터 1.6%로 상향조정되었다.

인프라·건설 시장

2013년 건설분야 성장률이 10.9%로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경제개조프로그램(ETP)에 포함된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속 발주될 전망이다.

우선, 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17년 완공을 목표로 1호선 공사가 진행중이다. 동 사업을 주관하는 지하철공사(MRT Corp)는 총 사업비를 약 10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공사비는 정부보증 이슬람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다. 이어서, 2014년말에는 2호선, 그 이후 3호선 공사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각 노선 100억미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2월에는 말-싱 정상간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전철 사업에 전격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대중육상교통위원회(SPAD)에서 동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현재 말레이시아는 2단계 타당성 연구를 진행중이며, 싱가포르측과 장관급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말까지 양국간 구체적인 사항을 협상을 완료할 계획인바, 중국, 일본, 유럽의 주요 고속철 기술보유 기업들이 여러 말레이시아 현지 건설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업내



용은 360km 구간, 소요시간 90분, 말레이시아내 총 6개역(KL포함), 사업비 130억달러(예상), 민자방식(BOT)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형 프로젝트는 PETRONAS(국영석유회사)가 조호주에 추진하고 있는 정유석유화학복합단지(RAPID) 프로젝트이다. 말레이시아 반도 남단 조호주 핑가랑 지역 총 2600헥타에 2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대규모 정유, 석유화학, 발전, 가스저장 등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RAPID 프로젝트는 '13년 하반기부터 정유, 발전 등 각 사업별로 EPC선정을 위한 입찰절차가 진행되어 '14년 8월에 5개 메인패키지와 6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낙찰업체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한 상황이다. '14년말부터는 석유화학 패키지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1년 도입된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inancial Sector Masterplan, FSMP)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금융부문이 말레이시아 경제성장 및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001년 이래 금융부문은 연평균 7.3% 성장하였으며 실질GDP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기관은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 및 충격 흡수력(buffers)이 높은 상황이며 리스크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내 위상이 확대되었다.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도 심도 있는 채권시장, 건전한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적인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포괄적인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외환위기 전후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변화

외환위기 이전	현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 다기화된 금융기관 - 채권시장 미발달 - 간접금융시장 의존 - 경직적인 규제 및 감독 - 이슬람금융 기능 미약 - 금융상품 가격발견기능 미흡 - 자금조달 차별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및 최적화된 금융기관 - 심도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시장 - 기업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강화 - 외국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효율적 중개 - 견고한 감독 및 규제시스템 구축 - 포괄적인 소비자보호프로그램 구축 - 이슬람금융 허브 토대 구축 - 중소기업 및 서민 자금조달 확대 - 시장친화적인 금융시장 구축 - 금융 및 실물경제간 연계성 강화

2013년말 현재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24개, 투자은행 15개, 이슬람은행 16개 등이 영업중이며 이외에도 국내 보험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카풀사, 증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 구성

(2013년말 현재)

	1986년			현 재		
	국 내	외 국	계	국내	외 국	계
일반은행	22	16	38	8	16	24
금융회사	42	5	47	0	0	0
이슬람은행	1	0	1	10	6	16
외국이슬람은행	0	0	0	0	5	5
투자은행	12	0	12	15	0	15
합 계	77	21	98	33	27	60
보험회사	53	10	63	18	18	36
재보험사	1	0	1	3	4	7
타카풀사	1	0	1	8	3	11
재타카풀사	0	0	0	1	3	4
외국 타카풀사	0	0	0	0	1	1
합 계	55	10	65	30	29	59

자료 : Financial Sector Blueprint 2011-2020, BNM



IMF 및 세계은행도 최근 발표한 말레이시아 금융부문 평가(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me, FSAP)에서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이 은행, 보험, 펀드 등 각 영역별로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1년말 현재 금융부문(은행, 보험, 자본시장)의 총자산은 GDP의 400% 수준으로서 이를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금 및 펀드가 각각 16%, 12%를 차지하고 있다.

할랄 제품 시장

말레이시아는 Halal 산업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Halal관련 인증제도의 발전을 추구해 온 바, 모든 육류, 가공육류, 돼지고기, 계란 및 계란제품은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JAKIM)로부터 Halal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04.7월 DSM은 Halal guideline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에는 이슬람 규율에 따른 도살, 가공 및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www.halal.gov.my 참조).

현재 한국에는 약 15만명의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 방문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랄식품 등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 관련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JAKIM 등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CJ 제일제당, 청정원, SPC 등이 할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13년에는 크라운제과(스낵 4종), 풀무원(라면), 농심(라면)이 인증을 받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할랄인증 제품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3. 7.1일 말레이시아 JAKIM이 한국 이슬람협회(Korean Muslim Federation)를 할랄인증 기관으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향후 한 국내 할랄 산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몽골

한·몽 교역 투자 현황 (2013년도 기준)

교역현황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달러이던 교역규모가 2012년 4.8억달러로 급증, 한국은 몽골의 제5위 교역 대상국

(출처: 한국무역협회, 단위: 천달러)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83,000	169,700	194,595	166,887	191,631	349,874	433,457	399,472
수입	21,000	20,700	29,892	21,479	38,839	60,623	53,598	26,958

※ 주요 수출품: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중장비, 석유제품 등

※ 주요 수입품: 광물, 의류 및 가죽 등

투자현황

2013.6월 우리나라의 대몽골 투자규모는 누계 3.5억달러이며 주요 투자 국으로 중국(37.5억달러), 네덜란드(42.2억달러) 등임

- 투자 회사수는 2,100여개로 주로 소규모 기업 및 개인 위주로 진출하여 왔으나, 최근 몽골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우리 대기업 진출 증가 추세

몽골 경제 및 교역현황(2013년도 기준)

몽골 경제 현황

- 2013년도 국내총생산은 115.2억달러로 2012년 대비 12.2% 상승



※ IMF의 2012년도 국가별 GDP 순위에 의하면, 몽골의 GDP는 102.5억달러로 조사대상국 187개국 중 130위를 기록

연도별 국내총생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GDP 규모	US\$ 42억	US\$ 60억	US\$ 85억	US\$ 102.7억	US\$ 115.2억
	6조 5,500억 투그릭	8조 1,180억 투그릭	10조8천억 투그릭	13조9천억 투그릭	19조 투그릭
GDP성장률	-1.6%	6.1%	17.3%	12.2%	11.7%
1인당 GDP(US\$)	1,527	2,180	3,100	3,663	3,980

출처: World Bank, IMF, 몽골통계청

산업별 국내총생산(2012년)

분야	금액(십억 투그릭)
광업	2,600
농림축산업	2,066
도소매	1,298
운송, 창고	905
부동산	880
제조업	869
교육	655
공공분야	593
금융, 보험	502

출처: 몽골 통계청, 단위 :10억 투그릭

- 국내총생산 산업별 구성비는 2013년 기준 광업 20.2%, 도소매 17.4%, 농림축산업 14.5% 등으로 구성

몽골 교역 현황

- 2013년 교역규모는 총 106억달러 수준이며 약 20.8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연도별 교역액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 출	1,885	2,908	4,817	4,384	4,269
수 입	2,137	3,200	6,598	6,738	6,357
무역수지	-252	-291	-1,780	-2,354	-2,088
교역규모	4,023	6,108	11,415	11,123	10,626

출처: 몽골 통계청, 단위: 백만달러

- 전체 수출품 중 석탄, 구리, 형석 등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9%를 상회하며, 단일 품목으로는 석탄 수출액이 18.9억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의 43.2%를 차지
-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가전제품이 전체 수입의 24.5%를 차지하며, 석유제품(가솔린, 경유, 등유, 중유 등),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으로 구성

□ 국가별 교역

- 중국은 전체 수출의 92.5%, 수입의 27.8%(교역액 기준 53%)를 차지하는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며,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이 몽골의 주요 교역국

■ 주요 교역국별 교역 품목

	수 출	수 입
對중국	석탄, 구리, 원유, 캐시미어 등	석유제품, 철강, 음료 등
對러시아	육류, 형석 등	석유제품, 밀가루, 전력 등
對미국	형석, 텅스텐 등	닭고기, 중장비 등
對일본	캐시미어, 의류 등	승용차, 불도저 등
對한국	광물, 의류, 가죽 등	자동차, 중장비, 석유제품 등



■ 주요 교역대상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캐나다	총계
수 출 (비중)	4,059 (92%)	79.6 (1.8%)	3.6 (0.08%)	5.6 (0.1%)	12.3 (0.3%)	16 (0.4%)	117.3 (2.8%)	4,384.7 (100%)
수 입 (비중)	1,861 (27%)	1,847 (27%)	535.9 (8%)	501.6 (7.4%)	467.8 (6.9%)	246.4 (3.6%)	97.2 (1.4%)	6,738.3 (100%)
총교역액 (비중)	5,920 (53%)	1,926 (17%)	539.5 (4.9%)	507.2 (4.6%)	480.1 (4.3%)	262.4 (2.4%)	214.5 (1.9%)	11,123 (100%)

출처: 몽골 통계청, 단위: 백만달러

□ 물가 및 환율

- 2008년 물가상승률이 25%까지 치솟았다가 2009년 6%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다시 14.2%로 두 자리 수 물가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물가상승률 14.6% 기록
 - 몽골 중앙은행은 2012년까지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13.25%까지 인상하였으나, 2013.2월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로 6월에는 10.5%로 인하하였으나 최근 심각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다시 12.0%로 인상
- 투그릭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최근 석탄 수출 및 해외 투자 감소 등으로 몽골 경제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13년도 평균환율(1달러=1,523.93투그릭) 대비 약 19.5% 평가절하(1달러=1,892.93투그릭, 2014.11.18)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몽골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하나 국내 채소 재배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채소의 경우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에 대해서도 국내 맥주 생산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수입상품의 관세율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01			생축, 동물	5
		0101.11.00	순종 종마	0
		0102.10.00	순종 종우	0
		0103.10.00	순종 종돈	0
	01.04		양, 염소	0
02			고기, 식품	5
03			물고기, 게, 오징어 및 기타 무척추 동물	5
04			우유, 유제품, 계란, 꿀,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식품	5
			계란	15
05			다른 곳에 명시 되지 않은 가축 및 동물로 만든 상품	5
06			나무, 식물 심는 재료, 땅속줄기, 뿌리, 식물의 기타 부분, 생화 다발, 장식용 식물	5
07			아채, 일부 식물의 뿌리, 땅속줄기	5
	07.01		감자	15
		0703.10.00	양파	15
		0704.90.10	배추	15
		0706.10.10	홍당무	15
		0706.10.20	노랑무	15
08			식품에 사용하는 과일, 설탕, 오렌지와 박의 껍질	5
09			커피, 차, 특별한 맛과 냄새를 내는 식물	5
10			씨앗	5
11			밀가루 공장의 생산품, 좁쌀류, 전분, 끈적한 밀	5
	11.01 11.02		밀가루(BayanUlgii Tsagaannuur, Khovd Yarant, Uvs Borshoo, Zavkhan Artssuuri, Govi Altai Burgastai를 통해 수입된 경우)	
			7월 1일 부터 4월 1일 까지	15
			4월 1일 부터 7월 1일 까지	5
			기타 출입국을 통해 수입한 경우	15
12			기름을 함유한 식물의 씨앗 및 열매, 기타 씨앗, 열매, 공장 및 병원용 식물, 짚, 동물 사료	5
13			옷, 역청, 식물성 기타 진액	5
14			매듭 식물,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5
15			가축, 동물 및 식물성 기름, 이것을 가공한 생산품, 지방, 기름, 가축, 동물 및 식물성 밀랍	5
16			고기 및 물고기, 게, 끈적거리는 동물 등 물속에 사는 기타 무척추 동물로 만든 식료품	5
17			설탕 및 설탕 제품	5
18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5
19			곡물, 밀가루, 전분, 유제품, 밀가루 제품	5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20			야채, 과일, 잣 및 이를 함유한 기타 제품	5
21			각종의 야채로 만든 것	5
22			물, 음료수, 알코올, 술, 포도주, 간장	5
		2203.00.00	생맥주	25
		2207.10.00	80% 이상의 에틸 알코올	금지
		2207.20.00	에틸로 만든 알코올 및 기타 알코올	금지
		2208.90	80% 미만의 에틸 알코올	금지
23			식료품 공장에서 나온 찌꺼기 및 나머지, 사료	5
24			담배, 담배가 들어간 제품	5
25			소금, 유황, 흙, 광물, 돌, 진흙성 광물, 석회, 시멘트	5
26			광석, 광물, 찌꺼기 및 재	5
27			광물 연료, 석유 및 석유제품, 광물 접착제	5
		2716.00.00	전기 에너지	5
28			무기체, 귀금속, 방사선원소 및 무기물	5
29			유기 화학체	5
30			의약품	5
31			비료	5
32			가공, 염색용 농축액, 타닌(식물), 페인트 종류, 라카, 마개, 회반죽, 잉크	5
33			휘발성 기름, 역청 액, 향수, 미용, 위생품	5
34			비누, 표면활성 유기체, 세제, 청소, 광택제, 양초류, 건축용 진흙, 치아용 석고, 의치	5
35			단백질류, 풀, 풀 종류	5
36			폭발물, 성냥, 인화성제품, 가연성 제품	5
37			사진 및 영화용 제품	5
38			기타 다른 곳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제품	5
39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5
40			카오축 및 카오축 제품	5
41			천연 가죽 및 가공 가죽	5
42			가공한 가죽 제품, 여성 가방, 핸드백, 동물 내장으로 만든 제품	5
43			무스탕, 인조 무스탕	5
44			목재 및 목제품, 석탄	5
45			자작나무 및 자작나무 제품	5
46			짚 및 기타 꼬아서 만든 제품, 바구니 종류	5
47			재생 종이, 포장지, 나무와 톱밥으로 만든 반죽품	5
48			종이, 박스 종이, 종이 짚이긴 것, 종지와 박스종이 제품	5
49			책, 신문, 화보, 인쇄물, 손이나 기계로 쓴 자료나 그림	5
50			비단	5
51			양털, 가축, 동물의 굵은 털, 잔털, 말총, 이의 가공품	5
52			솜	5
53			식물성 뜨개질의 기타 종류, 종이 방직물, 종이 천	5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54			화학 천	5
55			화학 삼베	5
56			몽땅이 솜, 에스기, 봉제 안 된 재료, 줄, 끈	5
57			카펫 및 기타 깔개	5
58			특별 방법으로 짠 천, 망사 천, 장식자수, 장식 뜨개물	5
59			여러 방법으로 짠 직조 천, 이의 공업용 가공 직조물	5
60			재봉틀이나 손으로 짠 천	5
61			뜨개 의상 및 의상 뜨개용 기계	5
62			봉제 옷 및 봉제용 기계	5
63			기타 헨 옷, 헨 천, 조각 천	5
64			신발, 신발의 발목 부분	5
65			모자, 모자류	5
66			우산, 채양, 지팡이, 파라솔, 채찍류	5
67			가공한 오리털, 캐시미어 및 이의 가공품, 조화, 가발	5
68			돌, 보석, 시멘트, 반짝이는 돌 및 이의 가공품	5
69			세라믹 제품	5
70			병, 유리 제품	5
71			자연산 및 인조 진주, 보석, 귀금속 광물, 이의 가공품, 동전	5
72			철강	5
73			철강 제품	5
74			구리 및 동 제품	5
75			니켈 및 니켈 제품	5
7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제품	5
77*			해당상품 없음	
78			흑납 및 흑납 제품	5
79			아연 및 아연 제품	5
80			백납 및 백납 제품	5
81			기타 금속, 금속-세라믹 및 이의 가공품	5
82			기초 광물로 만든 반지, 도구, 절단기, 수저, 포크, 및 이의 제품	5
83			기초 광물로 만든 각종 제품	5
84			핵 제어봉, 증기 솥, 기계 설비류	5
	84.71		정보제공 자동제어기 부분, 자석 및 광학 입력기, 정보 코드화 기계, 기타 다른 곳에 명시 안 된 입력기	0
		8473.30.00	84.71항에 명시된 기계, 부속품	0
85			전기제품, 전기 설비류, 음성 녹음기, TV 녹화기 및 부속	5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광학 반도체, 모듈의 포토갈바닉 원소	0
	85.42		거시 전자도면, 미시 전자 도면	0
86			철도 및 궤도 전차용 기계 설비류, 부속품, 모든 종류의 전기 계통 교통신호기	5



	번호	코드	상품명	세율
87			철도 및 궤도 전차용 설비류 이외의 수송 시설, 설비, 부속	5
88			항공기, 우주선 및 부속품	5
89			선박, 보트 및 부유제품	5
90			광학, 사진, 영화, 그림, 측정기, 감사, 정밀, 병원, 수술용 도구, 설비, 부속	5
	90.18		병원, 수술, 치과병원, 가축병원용 도구, 부품, 방사선 측정, 기록용 도구, 병원 이외의 학술용, 실험용 전기 설비류, 측정기	0
		9018.31.00	바늘이 있거나 없는 주사기	5
	90.22		병원, 수술, 치과 병원, 가축병원 용도 및 다른 용도의 X-ray 선, 알파, 베타, 감마, 방사선기, 라디오그래프기, X-ray 발생기, 감사, 조절기 철판, 진료용 책상, 의자, 스크린	0
91			시계, 손목시계, 이와 유사제품	5
92			악기, 이러한 종류	5
93			무기, 병기, 이러한 종류	5
94			가구: 침대를 구성하는 모든 부속재료, 조명기구, 조명기, 조명간판, 이와 유사한 제품	5
95			장난감, 오락 및 스포츠용품, 이와 유사제품	5
96			산업용품	5
97			예술품, 수집품, 고대 유물	5

* 2011.10.1일부터 국내업체 지원을 위해 야채에 대한 계절적인 차등을 없애고 무조건 15%로 적용

수출상품의 관세율

코드	상품명	세율
5102.19.41, 5102.19.42	낙타 수컷의 미가공 털	1kg당 100TG
5102.19.43, 5102.19.44	낙타 암컷의 미가공 털	1kg당 200TG
4301.80.12, 4103.90.40, 4103.90.50	염소, 새끼염소의 미가공 가죽	1개당 1,500TG/특별세/

○ 면세품

- 석유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기술, 장비, 재료, 원료, 부속품, 연료, 근로자의 식료품 및 개인 생활용품
- 의료용으로 활용될 혈액, 혈액 제품, 장기 및 이의 조정, 품질유지, 운반에 필요한 진단기, 화학약품, 도구 등
- 가스 연료, 연료통, 장비, 특수용도 자동차, 기계, 자재 등
- 장애자용 특수 장비 및 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및 자재

수입부과금

- 특별세법: 술, 담배, 휘발유, 경유, 승용차, 도박용 게임기계 및 관련 장비 등에 부과

■ 특별세 적용 물품과 세율표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	특별세율(\$)	
			몽골내 생산 물품	수입 물품
1	식용 알코올: - 주류생산공장에 판매된 - 기타 장소에 판매된	리터당	1.00	-
		리터당	10.00	-
2	모든 종류의 주류: - 도수가 25도 미만 - 도수가 25도 이상 40도 미만 - 도수가 40도 이상	리터당	2.00	5.00
		리터당	4.00	10.00
		리터당	9.00	12.00
3	공장생산 방법으로 생산한 우유 증류주	리터당	0.20	-
4	모든 종류의 포도주: - 도수가 35도 미만 - 도수가 35도 이상	리터당	0.50	1.50
		리터당	4.50	6.00
5	모든 종류의 맥주	리터당	0.20	0.20
6	퀄런 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100개당	2.40	2.40
7	가루담배 및 이와 유사한 담배	kg당	1.80	1.80
8	휘발유 - 옥탄가 90미만 - 옥탄가 90이상	톤당	0-11.00	-
		톤당	0-12.00	-
9	디젤	톤당	0-15.00	-

- 휘발유와 디젤의 경우 수입 시 국경세관별로 상이한 비율의 특별세 부과(운송이 편리한 지역은 특별세를 높게 책정)
- 맥주에 대한 특별세는 국내산, 수입산 모두 리터당 20센트를 부과하였으나 2009.3월 수입맥주에 대해 차등을 두어 35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09.4.1일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우리 대사관의 노력으로 몽골 헌법재판소는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은 위헌이라는 2006년 판결을 재차 표명함에 따라 2009.6월부터 수입맥주



에 대한 특별세 차별적용을 철폐함(몽골 국회는 2005년에 맥주에 대한 특별세 국내산 20센트, 수입산 50센트로 차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임을 판결한바 있음).

■ 수입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세 (2012년 개정)

구분	실린더 용량(cm³)	특별세율(미화 \$)			
		출고 이후 경과 기간(년)			
		0~3년	4~6년	7~9년	10년 이상
1	1500이하	500	1,000	2,000	6,000
2	1501~2500	1,500	2,000	3,000	7,000
3	2501~3500	2,000	2,500	4,000	8,000
4	3501~4500	4,500	5,000	6,500	10,500
5	4501 이상	7,000	7,500	9,000	13,000

■ 도박 게임기, 베팅 기계, 장비에 부과되는 특별세

구분	특별세 과세대상 품목	기준 단위당 특별세율 (대당, 매월, 미화\$)
1	게임대 즉, 전자 회전축(룰렛)	80,000
2	자동 게임(777)	3,000
3	게임 결과를 보여주는 카운터대	80,000
4	베팅을 계산하는 복메이커 센터	80,000

■ 특별세 면제 대상: 몽골내에서 생산된 수출품, 가정에서 제조한 술, 코담배, 하이브리드 자동차

통관절차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제한이 없으며,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통관을 위해 등기소 등기를 마친 뒤,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관세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책정되며, 책정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필요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제약은 없다.

수입규제

- 수입 제한품목
 - 우라늄과 그 부산물
 - 유해 화학물질
 -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신체 부위, 장기, 기증 혈액
 - 무기 및 관련 부품
 -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동물, 식물, 고생물, 광물, 인체, 건축, 인류학 등)
 - 특정 품종의 가축(소, 말, 양, 염소, 낙타 등)
 - 동물과 관련된 원료, 희귀동물의 신체부위, 자연식물
- 금지품목
 - 마약류, 환각제 및 환각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
 - 모든 종류의 주정 원료
 - 재활용 음료수 캔을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
 - 잣, 잣나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법률은 없으며, 몽골내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이외에 특별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적용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

최근 몽골정부는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경우 생산년도와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광산개발(특히 금)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고자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기업의 몽골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무역장벽

몽골내 수입되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중장비, 통신기기, 전자제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하며,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다만, 몽골은 유목국가로서 농·축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제품, 계란, 채소, 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밀, 야채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 및 농기계,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업자들이 몽골 주류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맥주를 제외한 모든 수입주류에 대해 특소세를 국내생산 주류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밀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입 주류에 대한 특소세 차별적용으로 인해 몽골 국내 주류업자에게 간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수출상품 역시 직접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수출업자의 경우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 상의 제약

시공분야는 1천만 투그릭 이하, 물품·서비스는 10만 투그릭 이하의 경우 외국업체 참여가 불가하나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 자유경쟁 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법이 있어 동일한 회사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투자 장벽

법적환경

몽골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투자법, 석유법, 광물법, 환경보전법, 외국인력송출법 등이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유해물질 또는 무기생산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건축업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해당 투자자가 본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서(건설업 면허)를 제출해야 신규 건설업체 설립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연장허가를 해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높은 기술력 또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에만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의 고용허가를 받아야 고용이 가능하다.



신투자법

몽골 신투정부는 2012.5월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하면서 주요 전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분야 외국인투자조정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동 법이 외국인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3.10월 동 법을 폐기하고 외국인 투자안전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신투자법’ 제정하였다.

- 신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①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고, ②증권교체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투자리스크 최소화, ③투자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투자안정보증서 발급 등)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지분소유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은행에 10만달러를 예치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액 비율이 25%이상 즉 25,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상한선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고액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억 투그릭 이상(광산, 중공업, 인프라분야는 300억 투그릭 이상) 투자할 경우 몽골 정부와 투자안정보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몽골 경제개발부 산하 외국인투자조정등록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투자조정등록국에 관련 서류 제출시 3일내 허가를 해준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은 몽골의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15~60년 이하, 1회에 한하여 4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개인이나 투자업체는 아파트,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상의 제한

- 과실송금 관련(송금액 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 제한)
 - 과실출처에 대한 증명으로 송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금융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송금세가 없으며 재투자의 제한도 없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 자금 차입과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자금이동이 가능하다.
-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 신용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담보에 의한 조달이 일반적이며 자본시장이 열악하여 공모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나 증자는 어려운 상태이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한은 없다.
-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외환구좌 보유제한 등)
 - 외환계좌의 개설이 자유롭고 외환구좌의 보유제한도 없다. 다만, 현지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관계로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 몽골은 이중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외환거래소가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과 외환거래소의 환율이 비슷한 관계로 암달러상이 없다.



세제상의 제한

-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 한·몽골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5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몽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 세율상의 차별 여부
 - 특별한 차별이 없다.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이전가격 산정 방법 등)
 - 관료주의 잔재와 세금공무원의 개인적 성향으로 간혹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몽골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 주류생산업자들이 외국의 주류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생산 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주류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매 1년마다 체류허가를 연장하며, 몽골내 소속 기관 공문과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본과 함께 도로교통부에 제출하면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3년 개정)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사항

몽골 금융시장 현황

- 은행
 - 몽골 금융산업은 전체 금융자산의 95%이상을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이 차지하고 있는 은행 중심의 구조이다.
 - 2014년도 기준 총 13개 상업은행이 있으며, 상위 4위의 TDB 은행, Khan 은행, Khas 은행, Golomt 은행이 전체 예수금의 77.9%, 전체 대출자산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2014.9월)
 - 외국계 은행은 대표사무소 형태로 EBRD, Standard Chartered, ING, SMBC, BTMU 및 Bank of China 등 총 6개 기관이 진출하고 있다.
- 보험
 - 2014년도 기준 17개의 보험사가 영업 중이며, 이들 보험사의 영업 형태는 주로 자동차보험, 가축보험에 편중되어 있다.
- 비은행 금융기관
 - 2014년도 기준 289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며, 주로 대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 증권
 - 몽골 주식시장은 일일평균 거래량이 1억 투그릭 내외로 주식거래가 미미한데, 이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유통주식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1년 정기적금 15%내외)로 인해 주식투자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기인한다.
 - 또한 주식상장시 해당기업에 주어지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MCS, MAK, Just Group, Bodi Group 등 몽골 주요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몽골 진출과 관련된 장벽

- 은행업
 - 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정부는 자본금 규모를 점차 늘리고자 하여 은행 간 합병과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은행업에 신규 투자한 외국 자본이 있으며 현재에도 외국 자본의 진출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를 통한, 또는 일본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WTO 가입전인 2000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2%였으나, 2012년도에는 11.36%(베트남 통계청), 2013년도에는 9.5%(UN ESCAP 분석)로 낮아졌다. 그리고 한국과의 양자간 FTA 타결(2014.12 월), 미국 등과의 TPP 협상, EU와의 FTA 협상 등이 추가적으로 완료 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 ATIGA(아세안지역 FTA, ASEAN 회원국들 간의 공동실효우대관세율); 회원국 간 관세율을 품목별로 0~5%, 전체 평균관세율을 3% 대로 낮추기로 함
- * 베트남-일본 FTA(V-J EPA); 2018년에 베트남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2.8%로,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7%가 될 것으로 예상
- * 베트남(ASEAN)-중국 FTA(ACFTA); 2015년까지 베트남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0.1%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0.6%로 하기로 함
- * 한-아세안 FTA(AKFTA): 2007년 발효되어 베트남은 2018년까지



품목수 기준으로 90% 관세철폐 예정

- * 한-베트남 FTA(VKFTA(가칭), 2014):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2014.12월 타결된 한-베트남 FTA로 현재 발효를 기다리고 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 베트남측은 92.2%의 관세 철폐를 한국은 94.7% 관세철폐 예정

우리나라와는 ASEAN-Korea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2007.6월 발효됨에 따라 한-베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 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일반품목(Normal Track), 민감품목(Sensitive Track),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 양허제외(Ex-ception)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품목의 경우 2018년까지 관세가 철폐되고, 민감품목은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0~5% 수준의 관세율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초민감품목 그룹에 분류된 상품 역시 2021년까지 각기 정해진 관세율 상한선까지 관세를 낮추거나 관세할당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베트남 수출시 A-K FTA에 의한 저율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TA의 규정에 따르는 원산지증명서 제시가 필요하며, 상품의 HS 코드별 수입관세율 정보는 한국 관세청의 FTA 포털(<http://fta.customs.go.kr/kcsweb/template/fta2010/html/>)을 참조하실 수 있다.

A-K FTA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원산지기준에 맞도록 생산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야만 현지에서 낮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베트남은 A-K FTA에 독특하게 허용되어 있는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제도를 이용하여 낮은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높은 WTO MFN 관세율을 적용한다.

관한-베 FTA 추진현황

한-베트남 FTA는 지난 2012. 8월 협상을 시작으로 2년 4개월 만인 2014.12.10일에 타결되었다.

베트남의 2007년 WTO가입이후 MFN관세 인하와 한-아세안 FTA의 베트남측의 낮은 개방수준으로 베트남 시장 개방이 실질적이지 못하였고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만성적 적자를 기록중인 베트남은 한국과의 양자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우리 현지투자 기업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양자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상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9천만 인구의 30대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된 베트남 내수시장은 소비잠재력이 높아 베트남 내수시장 선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베트남 FTA 타결 결과

한-베트남 FTA는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으로 나누어진다.

1. 상품관련은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 베트남 92.2%로 자유화 수준에 합의하였다.

* 베트남 측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관세철폐 약속(86.2%)에 추가하여, 1.2%는 무관세, 1.7%는 3년, 2.9%는 5~10년, 나머지 0.1%는 15년에 관세를 철폐하여 92.2%의 자유화율 달성 예정(2012년 수입액 기준)

* 우리측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철폐를 완료한 91.7%에 더해, 1.3%는 즉시, 1.0%를 3~5년, 나머지 0.8%는 7~15년(3개 품목 15년)에 관세를 철폐하여 94.7%의 자유화율 달성 예정(2012년 수입액 기준)



-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개방은 없으며,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건조·기타 등) 등은 10년 철폐, 천연꿀·팥·고구마전분은 15년 철폐
- 대배 수입액이 가장 큰 새우(2012년 수입액 기준)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관세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

2. 서비스·투자 관련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확보
- * 우리 금융업계의 협지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 확보
- * 우리 통신 사업자의 대 베트남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통신 시장 개방 및 GATS이상의 규범 확보
- *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3. 규범·협력 관련은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하였고 무역구제,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
- * 무역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
- *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
- * 한-베 FTA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을 논의할 무역구제위원회

를 신설

-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
-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로(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산업분야 :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직물, 유통·물류 등
 - 농림수산업 :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분야 협력 규정
 - 규정 및 절차 :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분야협력
 - 기타 :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 *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
 - 협의요청시 10일내 답변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20일(긴급시 60일)내 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패널설치일로부터 150일(긴급시 75일)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수입정책 안내

수입 관세

(1) 관세율표

201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표는 재무부 시행 규칙 164/2013/TT-BTC (2013.11.15)에 의거, 제작, 배포된 것이다.

한국의 수출입자는 2014.12월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이에 따른 한-베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며 현재 적용을 받는 AKFTA와 2014년 타결 된 VKFTA(가칭)의 HS코드 확인을 명확히 하



여 새로이 체결되는 FTA의 활용이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014.12월 현재 AKFTA 적용)

베트남의 수입 관세율 확인은 정식으로 인쇄된 수출입관세 책자(Bieu Thue Xuat Nhap Khau)를 구입하여 확인하거나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 관세율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나 현재는 베트남 관세율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이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대체로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 * 현재 한국산 수출품은 한-ASEAN FTA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2014.12월 타결된 한-베트남 FTA 발효가 발효되면 한-베트남 FTA 관세율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두 FTA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하는 수출입물품은 한-ASEAN FTA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FTA는 A.TIGA(아세안),

AKFTA(한-아세안), ACFTA(중국-아세안), AJFTA(일본-아세안), VJEP(일본-베트남), AANZFTA(호주, 뉴질랜드-아세안), AIFTA(인도-아세안), VCFTA(베트남-칠레) 등 8개이며, 한국-베트남, 베트남-EU, TPP, EFTA, 러시아 등과의 FTA가 협상 진행 중이다. (한국-베트남 FTA는 2014.12월 타결 되었으며 현재 발효를 기다리고 있음)

관세납부 유예 및 환급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20조에 의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가 일시 면제되며, 그 대상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위탁기업이 직접 공급한 원부자재, 소모품, 구성요소, 부분품, 샘플기계 장치 등이 된다. 납부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수입 전 해당 세관으로부터 납부 유예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임가공 목적이 아닌,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용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세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입화물 우선통관 제도

재정부 시행령 No.86/2013/TT-BTC에 따라 베트남 관세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기업에게 신속하고, 간소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통관 기업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2년 평균 수출입액이 각각 5천만 달러 이상 또는 전체 교역액 2억 달러 이상인 기업,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례가 없는 기업,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의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전자 통관·납세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해당된다.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들을 폭 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통관절차가 아직 전산화 미비, 중복신고,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 규정 불일치 등 현대화 되어 있지 않고, 각종 검역 및 검사·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민권의식도 높아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며,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보통 10~70%이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가격을 기초로 산정된다.

2014년 12월 초, 베트남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술, 담배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상될 전망이다.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이 공산품 및 서비스 용역으로 나뉜다.

- 담배류(Cigarettes & cigars)
- 알코올(Liquors)
- 주류(Spirits and beer)
- 24인승 이하 자동차(Automobiles with twenty-four seats or less), 화물차
- 가솔린,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Gasoline, naphtha, reformed components and others), 에어컨(Air conditioners with capacity of 90,000 BTU), 게임용 카드(Playing cards), 부적 등 잡화제품(Other miscellaneous such as votive paper or joss-paper)
- 서비스분야(골프,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골프, 사행성 스포츠 및 복권 등)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생산, 판매 또는 베트남 내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며, 국내 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부가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표준가액에도 부과되며, 수입자는 관세를 지불하는 동시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 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된다.

- 0% 적용대상: 수출품, 임가공 수출, 수출가공기업 및 수출가공지역 등에 대한 매출, 수출 가공기업(EPE)를 위하여 제공된 건설 및 설치 용역, 항공·해운·국제 운송 용역 등



- 5% 적용대상: 생활필수품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로 생수, 비료, 교육서비스, 교과서, 의약품, 특정 문화예술 스포츠 서비스/제품 및 복지주택의 공급 등
- 10% 적용대상: 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모든 재화 및 용역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코코넛 등 일부 농산물,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석재 포함), 금속, 철·비철 금속 Scrap 등 87개 품목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DA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코코넛 3%, 암석·석재류 17%, 철광석 40%, 동광석 30%, 천연고무 라텍스 3%, 쇠가죽 10%, 원목 10%, 철 및 기타 금속 스크랩 15% 등이다. 수출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해외 수입자와의 계약을 임가공 수출입으로 처리하고, 외국 가공자에게 임가공료를 지불한 후, 완성품을 재수입하는 해외임가공 수출입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소득세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1년 기간 중 183일 이상을 베트남 내 거주하거나, 항구적 주거를 베트남에 가진 경우(외국인 거주중 포함)는 베트남 거주자로 인정되어 베트남 내외에서 지급된 모든 개인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에서 근무하여 벌은 근로소득에 한하여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비근로소득은 다양한 세율로 과세된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부터 개인 소득세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의 누진세율에 의해 계산된 세액을 납부한다.

- 500만 동 이하: 5%

- 500만 동~1,000만 동 이하: 10%
- 1,000만 동 이상~1,800만 동 이하: 15%
- 1,800만 동 이상~3,200만 동 이하: 20%
- 3,200만 동 이상~5,200만 동 이하: 25%
- 5,200만 동 이상~8,000만 동 이하: 30%
- 8,000만 동 이상: 35%

샘플, 광고 및 홍보물품에 대한 관세

베트남 관세법령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도 관세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일시수입-재수출 절차를 거쳐 면세가 되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관련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베트남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판촉물과 팜플렛을 한국으로부터 공수 받아 사용 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달력이나 회사 다이어리 통관 시에도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 및 검역, 검사

통관 절차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5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1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총국”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공무원 신분を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통관절차는 우선 종이서류에 의한 수출입 통관신고와 전자통관시스템(VNACS)에 의한 신고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의 많은 신고 건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신고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5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공무원들은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처리기한을 지켜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늦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도 대개 신청 후 5 근무일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세관 검사

모든 수입화물은 수입자/수출자/신고대행자가 통관신고서와 통관물품 관련 첨부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통관될 재화에 대한 실물검사의 대상이 되며,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 Green Channel(40%): 서류검사 면제 + 실물 개장검사 면제
- Yellow Channel(40%): 서류검사 실시 + 실물 개장검사 면제
- Red Channel(20%): 서류검사 실시 + 실물 개장검사 실시

* 육류 · 수산물 · 곡류 · 두류 · 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세관검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위험관리시스템에 장기간 등록되어 매 수입 시 마다 반복적으로 세관의 개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 정부의 검사 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 기본요건: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 표기언어: 베트남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재화의 라벨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해야 함.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내용에 추가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 옆 수입업체 라벨을 별도로 부착
-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의 상호 및 주소
 -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 제품의 원산지

안전요건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서가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STAMEQ(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 베트남 보건부의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필요 서류 참고.

- 식품, 음료 : 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제품정보 등의 서류 준비 필요
- 화장품 : 자유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위임장(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베트남내 유통을 위임한다는 내용), 제조자 정보, 제품 원료리스트 등 서류 준비 필요

수입규제품목

2006년 초 베트남 정부는 국제적인 재화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상법의 시행령을 발표하였고, 2006.5.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순수 베트남 자본의 회사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관련해서만 수출입이 허가 되었으나, 새로운 상법 시행령에서는 업종과 관계없는 자율적인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외국계 회사 또는 외국과의 합자형태인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어 투자허가와 연관된 부문에서만 기계장치 또는 원재료 등을 수입할 수 있다.

(1)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약, 산업용 폭약 군사장비
- 폭죽
- 중고 생활용품(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 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
- 우측 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블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 번호가 조작된 차량
-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의 전구체(Schedule I)

(2) 수입허가품목

베트남에서는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표준

베트남은 약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000여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



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총리령 50/2006/QĐ-TTg(2006.3.7)에서는 이러한 품목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의료장비
-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 바다양식 사료
- 수산물 및 해산물 즉석식품
- 수목을 위한 화학약품, 살충제
- 비료
- 동물 진료 관련 용품
- 가축 사료
- 산업용 폭약, 고농축 질산암모늄
- 크레인, 기중기, 굴착기 등의 중장비(트랙터 및 오토바이의 완제품 또는 차체, 운반기 장착용 보일러, 고압 컨테이너를 포함)
- 시멘트, 석면 지붕판, PPB(압축 콘크리트), 바닥 및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장비 및 설비: 안전모, 분진마스크, 절연장갑/모자, 용접 고글, 고압컨테이너, 기중기, 권양기 보일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오토바이용 헬멧
- 철제 제품
- 전기선
- 가정용 전기제품
- 가솔린, 디젤 연료
- 유아용 완구(36개월 미만)

환경관련 규제

베트남은 2015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베트남 환경보호법이 발효되며, 신법은 2005년 환경보호법에 대한 일부 수정, 개정을 포함한다. (신법 : 20개조 170개항, 구법 : 15개조 136개항) 기본적인 내용은 구법과 동일하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의 투자 시 일정부분을 환경보호비로 납부토록 하는 규정 강화, 베트남의 환경보호 마스터플랜 추가, 재활용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등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입활동과 관련한 환경보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수입활동과 관련한 환경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 중고 기계 및 장비(환경안전기준, 생산년도 제한), 폐기 대상 운반구
 -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 폐품 및 재활용 폐기물 수입에 대한 환경 보호 규정
 -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용 폐품항목에 해당해야 한다.
 - 폐품 수입자의 설비조건 및 폐품 수입 전후과정이 요건에 충족,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 기준 충족해야 하며,
- 매년 수입 폐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환경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되는 환경규정은 주로 유럽 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新 베트남 환경보호법 14조~18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①전략적환경영향평가(국가적, 지방성, 도시의 경제·사회 발전 관련 전략, 계획에 영향) ②환경영향평가(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환경에 악영향 초래 가능 프로젝트) ③환경보호약속 이행서(환경영향평가 미 대상 프로젝트)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관련 기관을 통해 작성하고, 반드시 예비조사 및 타당성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정부 의정서(29/2011/ND-CP)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역사 유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 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철금속 공장(연간 20만톤 이상)
- 가축처리, 섬유 및 염색, 페인트(연간 100톤 이상), 고무가공(연간 4,000톤 이상), 설탕(연 1만 톤 이상), 식품가공(연 500 톤 이상), 냉동 공장, 화력발전소, 펄프 및 제지(5,000 톤), 시멘트, 공항, 부두, 철도, 고속도로, 수력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광물탐사, 벌채업, 양식업(50 헥타 이상), 유독물질 생산, 저장 또는 사용업, 방사능 유출 공장, 쓰레

기 재처리, 오염방지 및 공해 처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제제(환경허가 효력 상실 및 기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하다.

베트남 내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투자가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조달 및 입찰

베트남 입찰법은 지난 2005년 입찰법에 대한 개정안을 2013년 11월 26일 통과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찰 절차 간소화 및 법률정보 공시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조달 시행, 완화된 입찰 기준 적용, 외국인 계약자의 개입을 위한 두 가지 신규 조건 ‘① 베트남 회사와 제휴하여하거나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야 함 ② 사업진행을 위한 책임자가 없을 시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함’을 제시하였다.

입찰자 선정에 관하여는 구법에서는 단지 건설입찰, 구매입찰, 자문입찰에 관하여 규정하나, 개정안에서는 투자프로젝트 입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한 새로운 적용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을 분권화하여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련 공무원에 재량권으로 주어졌던 모호한 내용을 규정으로 명확화하여 사업을 관리토록 하였다.

새로이 시행되는 전자입찰제도는 컨설팅 서비스, 비 컨설팅 서비스, 조



달, 건설과 공개 입찰, 제한입찰, 경쟁 제안, 직접 조달과 같은 혼합 입찰에 대해 전자 입찰자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자와 계약자가 모두 국가 입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입찰 ‘평가 방법론’에서는 입찰 심사방법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 방법’을 도입, 이론적으로는 고품질 저가격의 다중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현행 저가 입찰과 동일하거나 더욱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베트남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 정부 출연자금이 총 프로젝트 예산의 30% 이상인 투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재화의 공급자, 자문 용역, 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의무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제 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기부국의 국제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 입찰의 경우

그러나 낙찰자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발주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물품 공급계약을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ODA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부국에서 관례적으로 현지에 진출한 자국 국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입찰을 요구하거나, 자국의 업체를 공식 납품업체로 지정하기 때문에 기부국의 국적을 가진 업체가 유리한 자격을 부여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은 ODA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도급 업체들 또한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세계지식 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의 가맹국이다. 이외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과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및 위성전송 프로그램 배포에 관한 브뤼셀협약(Brussels Convention)에 가입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의 산업재산권보호법(1989), 저작권보호법(1994)을 통합한 지식재산법(2005)을 제정하였고, 기술이전법(1988), 종자령(2004) 등의 특별법을 통해 특수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일반법에서 지식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Solution Patent), 상표권(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저작인접권(Rights Related to Copyright), 디자인(Industrial Design), 반도체배치 설계권(IC Layout Design)이 있다.

베트남에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이 마련되어 있고, 이들 기관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감찰단, 산업무역부 산하 시장관리 사무소, 공공관리부 산하 경제경찰, 재무부 산하 세관 및 인민법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제반 법률과 관련 기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적인 인식부족과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



장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느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의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2014년 12월 10일 타결된 한-베트남 FTA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양국간 FTA의 지식재산권 챕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TRIPS)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배타적 복제권을 보장하고 실연가와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여 한류콘텐츠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였다. 상표권 분야에서는 제품의 형상과 포장 디자인도 상표로 보호하고 유명상표는 등록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간 피해가 급증하던 상표의 선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상표 출원 과정을 공개하고 제3자의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하여 상표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를 강화하는 다수의 조항이 포함되어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보완했다.

2012년 6월 21일 한-베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 전수 및 베트남 특허청과의 협력사업 실행 계획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심사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사노하우를 전수하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의 한국 정부기관 기업, 방문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과의 심사관 교류 사업을 통해 베트남의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돕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특허심사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투자장벽

투자법 개정안 국회통과(2015년 7월 1일 발효)

2014년 11월 6일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금지 또는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수를 줄였는데 투자법 개정안 제6조에 따르면 투자금지분야는 기존 12개 분야에서 6개로, 조건부 투자허가 사업 분야는 기존 386개에서 267개 사업 분야로 줄어들어 외국인 투자분야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해당 관련 법인설립 인증서인 ERC(회사설립 허가서)와 IRC(투자등록증명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세분화되었다. (기존 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IC(Investment Certificate)가 프로젝트와 회사 설립을 동시에 포함)

바뀐 규정에 따르면, 법인설립·투자프로젝트 인허가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ERC 신청·발급 이전에 IRC를 사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 상기 언급된 IRC 와 E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미만일 경우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다.

투자(Investment)의 개념이 변경됐다. 기존 투자법상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를 포함했으며 직접투자는 투자+목적사업 관리·운



영, 간접투자는 투자(주식 및 채권 매입 등)로 각각 구별돼 사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투자활동이란 투자자간의 법인 설립, 출자 및 주식매입, PPP사업 및 BCC 계약 방식으로의 모든 투자를 포함한다.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자는 하기 회사 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 1인의 유한책임회사
-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이하)
-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투자방식

- 직간접 투자 통합형식(신규)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권, 자본출자,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 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



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오염 축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1)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업무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사무소는 외국 투자법인과 달리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매년 연차보고서를 익년 1월 말까지 무역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 연속 미제출시 대표사무소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최대 활동기간은 5년이며, 이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베트남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Trade Bureau)이다.

(2)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수출입업무), 본사가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된다. 지사는 법인세 납부 등 현지 법인에 준하는 회계업무가 요구되며, 지사장 등 주재원은 베트남 노동허가증 및 거주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Decree No. 72/2006/ND-CP dated Sep. 9, 2000 issued by Government)

- I. Goods purchased in Vietnam for exports
 1. Handicraft and fine art articles
 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excluding rice, coffee)
 3.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Consumer industrial goods
 5. Animal and poultry meat and processed foods
- II. Goods imported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Branch offices of foreign businessmen having foreign exchange earned from exports of goods stipulated under point I of this list are allowed to import the following goods for sales in Vietnamese market with the condition that they have the licenses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mport turnover does not exceed export turnover:
 1. Machinery, equipment serving extracting of minerals,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2.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medicines for people and animals
 3. Raw material for production of fertilizers, pesticides

(3)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지난 법령에서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이번 2014년 개정 투자법, 기업법을 통해 수정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 및 자본금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다.

-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기존 36개월→90일)
 - * 1차 소집 시 납입자본의 최소 65%(기존75%) 이상 보유 구성원
 - * 2차 소집 시(15일이내)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 * 보통결의 정족수 65%, 특수결의 정족수 75%
- 주식회사의 경우
 - * 정관자본금 납입기간(90일, 동일)
 - * 1차 소집 시 의결주식의 51%(기존65%) 이상 보유 주주
 - * 2차 소집 시(15일이내) 의결주식의 33%(기존33%) 보유 주주
 - * 보통결의 정족수 51%(기존65%), 특수결의 정족수 65%(기존75%)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 *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및 청산 의결
 - *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 출석 주주의 65% 이상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의결
 - * 출석 주주의 51%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BOM: 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사원총회(MC: 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만 그들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 제공도 허용된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 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실무상 베트남파트너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의 대여금약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파트너가 베트남 파트너 측에 토지 수용 비용을 우회적으로 선 지급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베트남은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파트, 단독 주택 소유)를 허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노동허가소지자로 제한)도 2015년 7월1일부로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금융 및 외환관리

(1) 과실송금

재무부 시행규칙 186/2010/TT-BTC (2010.11. 18) 따르면, 투자가들에게는 ①이익금의 연간 해외송금, 그리고 ② 베트남 내의 투자활동이 종결된 후의 해외송금만이 허용되게 된다. 기존 반기별 임시 해외송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투자 활동에 따라 분배되거나 수령한 이익금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당해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는 때에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을 종결하여 얻은 이익금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외국인 투자가 투자형태로 참여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회계 연도의 법인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며, 동시에 세금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필 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한 해외송금이 허용되게 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의 직접 투자활동에 따라 분배 받거나, 수령한 당해년도의 이익금에 대하여 만일 투자가 기업의 재정보고서가 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누적손실이 여전히 지속될 경우, 그 해외송금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국가가 외환관리를 독점하여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외국환을 집중 매각 예치할 의무가 있다.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 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단 2011년 9월 1일부터 5,000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반출 반입 가능함).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3)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Safe Deposit Account: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 대상으로는 정확한 법규가 없었으나 2003.10.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804/2003/QD 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이용 직후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철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

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내 여러 외국계은행이 여신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미화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 되고 있다.

(4) 달러연동 고정환율제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공정한환율(Interbank rate) 일일 변동폭은 $\pm 3\%$ 이며 은행 간 매매율 허용범위를 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동 공정한환율을 기준으로 대고객 매도율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어 동 공정한환율 0.25%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달러의 만성 초과수요에 따라 과도한 환율인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매도 및 매입을 체계를 보면 한국에서처럼 전신환 매도매입율, 현찰매도매입율, TC 매도매입율 등으로 다양화 되어있지 않고, 매도율의 경우 위에서 말한 상한선내에서 매도율만 있으며, 매입율의 경우 현찰매입율과 계좌인출에 의한 매입율로 단순화되어 있다.

(5) 수입결제용 외환환전상의 애로

대외부채 상환, 과실송금 및 수입결제 시 필요한 외화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했으나, 동 규제를 완화하여 승인 없이 매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인가 시 경화 자체조달을 위해 수출의무 비율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6) 외환거래 규제 강화

국민 대다수가 미 달러화를 선호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집중관리 하에서도 시중에서 달러거래가 통용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외화대출에 대한 거래 제한에 나서 대외 수입대금 결제, 수출목적의 신규투자 용도, 기존 달러화대출의 만기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한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7)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4월 폐지되었다. 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에게 외화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8) 외화 의무보유 비율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 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12개월 이하의 기한 또는 무기한 예금에 대한 의무 보유 비율은 7%였으나 2010년 1월부터 4%로 하향되었다. 12개월 이상의 외화 예금경우에 국영 상업은행, 주식 상업은행, 외국인 100%자본 은행, 합작은행, 외국인 은행지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보유 비율은 2%이다.

경쟁정책

베트남 투자법 및 WTO 양허안에 따른 유통,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들이 동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국내업자가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4년 경쟁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경쟁위원회 및 경쟁관리국과 같은 경쟁법 관련 부서를 창설하는 등 경쟁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고, 경쟁법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경쟁법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데, 베트남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베트남에 영업소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에는 ①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경제력집중 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와 ② 불공정 경쟁 행위가 있으며, 경쟁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에 위반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투자허가증 회수, 업무수행 자격증 취소, 위반 행위로 인한 국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기타 장벽

비자발급 및 노동허가 발급 애로

베트남 출입국관리법(2015년 1월 1일 효력) 및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시행령(2013년 11월 1일 효력)에 따르면, 베트남 상사 주재원, 투자기업 직원 등 단기 체류자는 최대 3개월 이하만 체류가 허용되며, 3개월 이상 체류시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기 출장용 무비자 입국시(15일) 출국 후 30일간 재입국을 불허하는 등 비자관련 애로사항이 예상된다.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워 외국인 근로자 중 본국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지상사 주재원(Foreigner internal transferring)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자,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 전문가(Expert)는 엔지니어 레벨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 기술자(Technician)는 적어도 3년 이상의 해당직종 경력과 해당직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도한 국영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 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건이나 의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싱가포르

적도의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도 부족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중동, 서남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거점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정책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전략을 통해 동남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6.3.2 한-싱 FTA 발효이후 매년 20%이상 확대되어 왔지만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년대비 12.8% 감소했다. 2010년 글로벌 수요회복과 더불어 對싱 수출이 152.4억달러로 11.9% 증가하고, 총교역액도 전년대비 7.5% 증가하여 231억달러에 이르며 2008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한 이후로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싱가포르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5대 교역상대국(수출 5위, 수입 14위)으로 2012년(6위)에 비해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2012년 싱가포르의 對韓 투자액은 1,405백만불(신고기준)로 5위 규모를 유지하는 등 교역/투자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과 21개의 FTA를 체결(ASEAN 일원으로 체결한 6개 포함)하였으며, 최근 캐나다, 멕시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전통적으로 개방경제를 추구해 온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해 오고 있다.

관세(Customs Duty)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8단위 기준 8,285개 품목 중 아래와 같은 6개 품목(주류)에 국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 6개 품목에 대한 관세도 한·싱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HS Code	품목명	관세	특소세
22030010	Stout or porter	S\$16.00 / litre of alcohol	S\$60.00 / litre of alcohol
22030090	Other beer including ale		
22089010	Medicated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S\$8.00 / litre of alcohol	S\$88.00 / litre of alcohol
22089020	Medicated samsu, exceeding 40% alc/vol		
22089030	Other samsu, not exceeding 40% alc/vol		
22089040	Other samsu, exceeding 40% alc/vol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보건증진 등을 위한 국내소비 억제 차원에서 수입물품 중 주류(50개 품목), 담배(30개), 유류(7개), 자동차(151개) 등 4개 품목군, 238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이 되는 세부 리스트 및 각 품목별 세율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부과금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통관 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ST(Goods and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한다. GST 세

율은 1994.4.1일 최초 도입당시 3%이었으나, 몇 차례의 인상과정을 거쳐 2007. 7.1일부터 7%가 적용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중계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통관절차를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흐름을 저해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통관장벽은 없다. 수출입과 환적 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서류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관세, GST 등의 납부도 무역업자의 은행계좌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

한·싱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은 한·싱 FTA 제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싱 FTA “원산지 규칙”은 완전획득기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누적규정(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싱 FTA에서 특기할 사항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될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입규제

수입쿼터제 등 특별한 수입관리제도는 없으나, 보건, 공공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안전·보건 목적의 수입금지 품목〉

- 껌(단, 의료용 껌은 치료용도에 한하여 수입 가능)
- 씹는 담배, 물담배 등 유사품(물담배는 2016년 7월 31일 이후 수입 금지)
- 권총모양의 라이터
- 폭죽(firecrackers)
-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 금지약물(amidopyrine, noramidopyrine, amygdalin, danthron, pangamic acid, suprofen 등)
- 금지물질이 포함된 화장품
- 890~915Mhz 주파수를 쓰는 무선전화기, 감시카메라
(일반휴대폰 대역과 겹치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음)

〈환경보호 목적의 수입금지 품목〉

- 3년 이상 된 중고차
- 석면 (통제 물품)
- 석면으로 된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Aldrin, Chlordane, Dieldrin, DDT, Hexachlorobenzene, Endrin, Heptachlor, Mirex, PCB, Toxaphene 등
- 할론(halon) 등 오존층 파괴물질
- 로테르담 협약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등

축산물, 해산물, 과일, 영화, 음반, 비디오, 출판물, 제약품 등 일부 품목은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허가 대상

제품과 관계당국은 아래와 같다.(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정보포털인 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함)

수입허가 대상품목	관계당국
Animals, birds and their by-products Endangered species of wildlife and their by-products Meat and meat products Fish and seafood products Fruits and vegetables	농축산검역청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Website: http://www.ava.gov.sg
Arms and explosives Bullet-proof clothing Toy guns, pistols and revolvers Weapons, kris, spears and swords	경찰청 (Singapore Police Force) Website: http://www.spf.gov.sg
Films, video and video games Publications and audio records	미디어개발청 (Media Development Authority) Website: http://www.mda.gov.sg
Pharmaceuticals Medicines Poisons	보건과학청 (Health Sciences Authority) Website: http://www.hsa.gov.sg
Telecommunication and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Toy walkie-talkies	정보통신개발청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Website: http://www.ida.gov.sg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까지 타국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소비자 보호 등록제도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에 해당되는 SPRING Singapore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요망되는 전기제품, 가스용품, 가전제품 중 47개 품목을 통제물품(Controlled Goods)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통제물품을 광고,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등은 안전검사 당국인 SPRING Singapore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 증명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아 SPRING Singapore에 등록해야만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육류 및 조류 수입 시 엄격한 품질요건 부과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육류 및 조류는 수출국에서 나고 자라야 하며, 수출국의 검사를 필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미국 내 광우병(BSE) 발병을 계기로 2003.12.24일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2006.2.20일부터는 뼈와 SRM이 제거된,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싱가포르 정부는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공기, 수질, 소음, 오염 및 위험물질 규제 관련 법률을 1999.1월 폐기하고 새롭게 환경오염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국립환경청 환경보호국(오염방지과)은 신규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1) 계획안을 검토하고, 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3) 신규산업개발 또는 주택개발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뤄지며 주변의 토지용도와 양립가능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으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며, 공장이 적절한 산업지구에 자리할 수 있어야 계획된 산업 활동이 허용된다.

품목별 장벽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을 관리,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무역정보포털 사이트인 www.tradexchange.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않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위하여 정부조달 포털(www.gebiz.gov.sg)을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털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방식은 조달규모에 따라 소액구매(small value purchases), 견적서 입찰(quotations), 입찰(tenders)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입찰은 다시 공개경쟁입찰(open tenders),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제한입찰(limited tenders)로 구분된다.

소액구매의 경우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견적서 입찰(3천~7만 싱가포르달러)이나 입찰(7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대상이 되는 구매건은 정부조달 포털(Gebiz)에 사전 공지하여 경쟁적이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들도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구분	기준	구매방식
소액구매	≤S\$3,000	조달기관에서 수의계약
Quotations	S\$3,000< ≤S\$70,000	구매건을 Gebiz에 공지 Gebiz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Tenders	S\$70,000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2월 회원국 간에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싱가포르는 혁신주도형,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 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싱가포르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제약,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의 기술집약적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허(patent)의 경우 싱가포르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사무소(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에 등록을 할 경우 20년간 보호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4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심사가 불합리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상표(Trade Mark)는 상표법에 의해 IPOS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나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한다.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 등과 그 출판물, 음반, 영화, TV 및 라디오

영상물, 케이블 방송물,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출판연도로부터 25년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물은 방송연도로부터 50년간, 문학작품, 뮤지컬, 예술작품은 저자 사후 70년간, 음반, 영화는 발매 또는 상영연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2000.11.13일 발효된 등록의장법(Registered Designs Act)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최대 15년간 보호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999.2.15일 IC디자인법(The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IC디자인 개발 후 5년내에 상업화될 경우 10년간 보호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15년간 보호하고 있다.

싱가פור는 파리협약, 베른협약, 부다페스트조약, 마드리드프로토콜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5.6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부가 싱가포르에 설치되었다.

한·싱 FTA 제17장 “지식재산권”에 의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실제 심사 없이 특허권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장벽

한·싱 FTA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현지 주재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접근 등이 적용되지 않는 조치들을



부속서에 명기하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건축사 자격, 토지감정, 의약품 도소매, 회계, 약사 제공 서비스 관련 등 34건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불가)를 하고 있으며, 법률, 방송, 도박, 신문간행, 초·중등 교육, 우편, 신용평가, 부동산, 운송지원 관련 서비스 등 30건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 가능)를 하고 있다.

투자 장벽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 및 노동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된 투자 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싱 FTA 제10장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특정 이행 의무부과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1) 제조업

6개 제조업종(맥주, 시가담배, 일반담배, 압연철, 껌, 성냥) 진출에 대해서는 제조규제법(Control of Manufacture Act)에 의해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2) 방송 서비스

싱가포르의 공중파 방송, 케이블, 신문 등은 외국기업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법은 싱가포르 국내 방송사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개인 소유지분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제도적으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 그 이상의 지분소유도 가능), 사실상 싱가포르 공기업의 모회사인 테마섹이 방송, 신문, 케이블 관련 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르 유일의 방송사인 MediaCorp사의 지분중 80%는 테마섹이 소유하고 있다.

(3) 법률 서비스

외국 법률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하거나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 법률이 아닌 국제법과 자국 국내법 또는 제3국 법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자문만 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싱가포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합작의 경우 단순합작이나, 공식제휴냐에 따라 외국 법률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단순합작(Joint ventures)의 경우, 은행, 금융, 기업업무 등과 관련된 싱가포르 법률사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검찰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며, 소송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제휴(Formal alliance)의 경우, 일국 또는 하나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싱가포르 법률과 관련된 법적의견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싱가포르 변호인만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변호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중재(arbitration)인 경우에는 외국인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지만, 회장 및 이사회 3분의 2는 싱가포르 국내 관련단체(Professional bodies)에 등록된 엔지니어, 건축가, 또는 토지조사 전문가(Land surveyor)이어야 한다.



외국회사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 현지인 대표가 있어야 하며, 현지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건축사여야 하고 유효한 개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도 개업할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회사 이사회 또는 건축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국내에 유효한 개업 장소가 있어야 한다.

(5) 회계 서비스

공인회계사로 개업하거나 회계법인을 설립하여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설립 가능한 회계법인은 회계사무소(개인기업, accounting firms), 회계합자회사(accounting LLP), 회계기업(accounting corpor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회계사무소와 회계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2/3이상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회계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싱가포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투표권의 2/3이상을 싱가포르 공인회계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은행 및 증권업

은행업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역외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내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은행의 종류로 모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Full bank, S\$25만 이하의 비은행고객 예금 수취가 제한된 Wholesale bank, 싱달러 업무에 제한이 있는 Offshore bank로 구분하고 있다.

(7) 공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GLCs: government-linked companies)에 대해 지분제한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PSA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구분 없이 개인 소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PSA와 Singapore Airlines는 5%,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은 15%, 에너지 회사인 Singapore Power, SP Power Grid, SP Services, 그리고 Power Gas는 10%의 개인 소유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영업기관(Business Organizations) 설립 관련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공히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은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cra.gov.sg)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 관련 제한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건물층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공터 및 토지부 주택(landed property) 매입시에는 법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허가기준은 영주권 유무,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등을 가지고 판단한다.

산업 및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개별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격면허(Qualifying Certificate)를 얻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이 필요하며, 6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 미개발상태 또는 부분개발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 지가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세제상의 제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세정책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회사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단일 세율로 20%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부터 18%로 인하되었고 2010년부터는 17%로 인하되었다.

이밖에 사회보장세 납부 등 이중과세, 세율상의 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등은 없다.

금융상의 제한

과실송금 관련 제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이중환율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없다.

경쟁정책

싱가פור는 2004년까지 별도의 독과점제한법을 두지 않고 개별법령에 의해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2004년 경쟁법(the Competi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5.1월에는 정부조직으로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를 설립하여 경쟁정책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크게 3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첫째, 가격담합, 입찰 공모, 시장분리 등 경쟁을 제한, 금지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둘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재국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주행시험 없이 싱가포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1년 미만 체류자의 경우 외국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제면허증 또는 공식 영어 번역본을 사용해야 하며, 1년 이상 체류코자 하는 자는 싱가포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수 및 자산규모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2014.11월 말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중인 은행은 싱가포르 로컬은행 5개, 외국은행 120개로 총 125개에 이르며, 이밖에도 머천트뱅크 39개, 보험회사 173개, 보험브로커 74개, 증권회사 122개, 선물회사 60개, 펀드메니지먼트사 274개 등이 영업중에 있다.(국내은행 지점은 5개)

2013년말 싱가포르내 전체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2조4,203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한다. Asian Currency Units의 자산이 48.8%를 차지하고, 국내은행(머천트뱅크 포함)의 자산이 43.7%, 보험회사 6.9%, 금융회사(Finance Company)가 0.6%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말 은행부문의 총자산은 9,732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말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대출금 총액(은행 간 대출 제외)은 5,743억 싱가포르 달러로 기업대출이 3,492억 싱가포르 달러(전체 대출의 60.8%)에 이르는데, 제조업 대출은 5.5%에 불과한 반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높은 편이다.



소비자대출의 경우 2,250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 대출의 3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 및 주택연계대출이 29.0%를 차지하고 자동차대출 등 기타개인대출이 10.2%를 차지하고 있다.

Asian Currency Units

ACU의 총자산은 2013년말 11,806억 미달러로 전년말의 10,933억 미달러에 비해 7.9% 증가하였다. 비은행 대출은 4,006억 미달러로 전년말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은행 간 대출은 6,145억 미달러로 전년말대비 9.2% 증가하였다.

자산관리업 (Asset & Wealth Management)

싱가포르에 영업근거를 둔 금융기관들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총 규모는 2013년말 1조8,180억 싱가포르 달러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던 2008년 말 8,640억 싱가포르 달러에 비해 88.2%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0.7%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운용자산의 77% 이상은 해외로부터 조달되었는데, 이는 역내투자 및 국제투자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자산운용사들의 주식투자 비중은 4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채권투자가 2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투자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비중이 67%, 유럽지역 비중 12%, 미국지역 비중 11%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내의 헤지펀드나 사모 펀드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대체 운용 자산은 전체 자산의 15% 가량이며 그중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전년도 734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888억 싱가포르 달러로 20.9% 늘어났고, 사모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전년 559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33.6% 증가한 747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며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개선 실적

싱가포르 정부는 2007.7.1일부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5%에서 7%로 인상한 반면, 2009년도 법인소득분부터는 법인세가 18%에서 17%로 인하하였다.

인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수입장벽을 낮춰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2014 회계연도(12월까지) 중앙정부의 세수 중 12.68%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는 2004년 20%에서 2005년 15%, 2006년 12.5%로 다시 2007년에는 10%로 지속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한 관세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MFN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5년 19.2%(농산물 37.6%, 비농산물 16.4%)에서 2007년 14.5%(농산물 34.4%, 비농산물 11.5%), 2009년 12.9%(농산물 31.8%, 비농산물 10.1%)로 낮아졌다.

수입부과금

인도로의 수입품에는 MFN 관세율을 지칭하는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외에 국내 공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Duty, 최종제품 제조시 사용 원자재·부품에 대한 납부분은 환급 가능하며 통상 12%)에 상당하는 부가관세(Additional Duty 또는 Countervailing

Duty),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가관세 (Special Additional Duty), 교육세(Educational Tax)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총관세율은 상당히 높아진다.

전형적인 공산품의 경우 기본관세는 10%이지만 교육세 3%, 부가관세 12%, 특별부가관세 4%가 합해지면 총관세율은 28.85%에 달한다. 다만, 인도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요 제품의 소비세율(Excise Duty)을 2008.12월 10%로, 2009.2월 추가로 8%로 인하하였다가 2010년 10%로 재(再)인상하고 2012년 12%로 재인상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7.6월 인도의 부가관세, 특별부가관세부과가 총관세율을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어 WTO 의무위반이라며 인도를 WTO 분쟁해결패널(DSP: Dispute Settlement Panel)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부가관세는 알코올음료(alcoholic beverage)에 대해서만, 특별부가관세는 공산품/농산품의 예를 인용하였다. 2008.2월 DSP는 부가관세가 동종 국내생산 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보정하는 WTO 합치 제도라는 인도측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한편 미국은 2008.8월 DSP 결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WTO Appellate Body)에 항소한 바, WTO 상소기구는 2008.10월 DSP 결정을 뒤집고 미국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WTO 상소기구는 판결에서 내국세를 보상하기 위한 수입부담금이라도 그 부담정도가 동종제품의 내국세 부담을 넘어선다면 WTO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업무는 현지 통관사(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사소한 서류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다. 통상 해상운송의 경우 통관에 약 2~3일, 항공운송의 경우 약 1~2일이 소요되며, 통관사와 세관의 유대관계가 처리일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통관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일선 세관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제도 운용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일례로 인도정부의 우리 광섬유(optical fiber)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999.12월 부과되었다가 2004. 12월 종료된 바 있는데 2005.10월에도 한 인도 지방세관은 연방 재무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속 반덤핑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당 우리업체의 요청에 의해 상공부 반덤핑위원회 및 인도 재무부와 협의, 동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재무부의 서한을 발급받았으나 우리 업체는 동 서한 발급 시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다만, 최근 정부가 통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 가는 추세에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국의 관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 원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마다 상이하며 무역협정의 부속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2010.1.1일 발효되었으며, 원산지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 간 합의된 대로 원산지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수입 규제

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이고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

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2008.11월 세계경제위기로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열연강판, 탄성사, 철강관/파이프 등 12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내산업간 이해상충, 경제호전 등으로 인해 탄성사, 카본블랙, 철강관/파이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회하였고 인도 경제개선에 따라 점차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반적 수입수량규제는 호주, 캐나다, EU, 미국 등과의 협의의 결과로서 2000.12월에 714 품목, 2002.2월에 715 품목의 수량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에는 매우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우선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중고자동차만 수입이 허용되고, 우측 핸들 및 km 표시 속도계 장착 등 인도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수입자는 인도로의 선적 직전 검사를 받았고 자동차법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며, 수입 후 최소 5년간 운행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자동차는 뭄바이항을 통해서만 수입될 수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수입개방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등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왔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13.6월말까지 총 690 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513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는 1995~2013.6월 총 52건의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38건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그간 SBR, 나일론필라멘트사,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스터사, PS Plates, PVC, 페놀, 아세톤, 과산화수소, 고무노화방지제(PX-133, 6PPD), CD-R, CRT,



NBR고무, 아크릴단섬유, 시안화나트륨, 가성소다, 수황화나트륨, 탄산칼륨, 고분자판재폴리올, 무수프탈산 등 품목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2014.10월말 현재 NBR고무, 유연성판재폴리올(FSP), 탄산칼륨, 냉연·열연 강판,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등 품목은 조사 중이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1995년 이후 2013.3월 말까지 총 29건의 세이프가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5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2013.8월 말 우리나라 관련 품목은 무수프탈산(PAN), 디옥틸프탈레이트(DoP)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고무노화방지제, 아질산나트륨, 무용접 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중이다.

※ 한국은 중국에 이어 인도의 두 번째 반덤핑 피해소국(2013.6월말): 중국(157), 한국(52), 대만(51), 미국(37), 일본(31)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인도 정부는 분유, 용기식수, 일부 전기설비, 일부 철강제, 타이어 등 90개 품목에 대해서 인도품질규격(Indian Quality Standard)을 의무적(Mandatory Certification)으로 따르도록 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에 앞서 인도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단,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사전에 인도표준청으로부터 제조설비를 검사/승인 받게 되면 자동통관이 가능하나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 해당품목의 H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관 당국이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모든 가축, 농산물, 식품의 수입시에는 농업부가 발급하는 위생 및 검역-식물검역 수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분야의 위생관련 규정이 국내업체에게는 관대하고 통관절차 등에서 외국제품에게 까다롭게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도에서 라벨링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5와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Rules, 1955의 적용을 받는다.

중고 소비재, 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해 안전을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성능, 경과연수, 사전검사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자동차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규모가 막대함을 감안할 때 유치산업 단계에 있는 인도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인도는 헌법으로 환경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의 환경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환경법(The Environment(Protection) Act, 1986)을 기본으로 수질법(The Water(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74), 대기법(The Air(Prevention and control pollution) Act, 1981),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등의 개별 환경 법규를 통한 환경관련 규제장치가 발전 및 강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총리실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을 수립하여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지속가능 주거, 수자원, 히말라야 생태보전, 녹색 인도, 지속가능 농업, 전략 지식 분야 별로 환경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최근 “기후변화위원회(Prime Minister’s Council on Climate Change)”를 재구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어 동 정책 실현을 위한 법



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제는 다소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 이행이 점차 구체화·의무화 되고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중에서 특히 사전 환경승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환경법은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공고(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Notification)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은 반드시 환경산림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또는 주 환경영향평가기관(SEIAA: Stat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uthority)으로부터 사전 환경승인(Environmental Clearance)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994년 및 2006년 환경영향평가공고를 기본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개정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공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들은 동 산업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A, B 범주로 나뉘며(규모가 클수록 A범주에 속함), A범주의 산업은 중앙 정부인 환경부로부터, B범주의 산업은 주 환경영향평가 기관(SEIAA)으로부터의 사전 환경승인이 필수적이다(예: 광산업의 경우, 50ha 이상의 임대지 사용은 A범주, 5ha 이상~50ha 미만의 임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B범주에 속함).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인도 정부는 수출목적 자본재관세감면(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목적 자본재 관세면제(DFIA: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Scheme), 수출간주(Deemed Export Scheme), 관세권리 장부제도(DEPB: Duty Entitlement Pass Book Scheme)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추진 중이다.

EPCG제도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세를 5%만 납부하면 되나 일정기준의 수출의무를 지게 되며, DFIA는 표준 원재료-완제품 규정(Standard Input & Output Norms)에 따른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수출간주제도는 수출전용기업(Export Orient Units),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관세상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DEPS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인도 정부는 2009.8.27일 발표한 「대외무역정책 2009~2014」(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9~2014)에서 2011.3.31일까지 한시적으로 EPCG 하에서 영세율(zero duty)을 도입하였다. 상기 혜택은 엔지니어링·전자제품, 기초화학·의약품, 의류·섬유, 플라스틱, 수제품, 가죽제품 등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인도 중앙정부의 구매는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General Financial Rules를 따라야 한다. 자체 웹사이트를 가진 조직은 입찰 내용을 동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하며, 자체 웹사이트가 없는 조직은 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는 상공부 산하 인도 조달청(Directorate General of Suppliers and Disposa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인도에서는 공사 입찰시 공사금액의 1%, 공사 수주시 공사금액의 10%를 보증채권 형식으로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많은 인도 공기업들이 인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건설업체들은 한국의 주거래 은행에서 일차적으로 채권을 발급받고 다시 인도 내에서 이 채권을 재보증(Counter Guarantee)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게 되어 우리 건설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는 WTO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 (Amendment) Act, 2010), 상표및매매법(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규정(The Designs(Amendment) Rules, 2008), 상품의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카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특허권과 관련하여, 인도는 TRIPS 이행을 위하여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함으로써 식품, 의약품 또는 화학공정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 특허(Product Patents)를 허용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개정 특허법은 2005년 1월 이전에 신청된 의약품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이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하도록 하되 보호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허권이 부여된 시점에서 이미 동 특허권이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이 경우 특허 소유자는 적절한 수준의 로열티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외국인투자 정책상 제조업은 대부분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나 서비스업은 지분 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이 상존한다. 예를 들어 유통업의 경우 '12.9월 현재 단일브랜드 소매업은 외국인 지분이 최대 100%까지 허용되며 또한 복수 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최대 51%까지 허용되어 주정부가 복수브랜드 소매업을 허용하는 주에서는 백화점·쇼핑센터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업의 경우 외국인지분은 현재 26%까지만 허용되나, 의회계류중인 보험법안(Insurance Bill)이 의회통과시 49%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해운분야에서는 인도 정부화물 운송에 대하여 '인도 국적선 우선 적취권'으로 인해 외국선사는 정부화물 운송권 획득에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며, 이중과세협정 관련 현재 인도는 7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국별 적용 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투자 장벽

1991년 시작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외국인투자자에 개방되어 있으나, 원자력, 복권, 도박, 전통소매금융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승인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한 정부승인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자동승인 대상이다. 정부승인을 요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우선, 산업허가(Industrial Licensing)를 사전 취득해야 하는 투자가 있다. ①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방위산업설비, 산업용 화약, 유해화학물질 등 강제허가업종, ②소기업 고유업종, ③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지역에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기술·금융·상표 분야 협력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주



식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와 산업정책상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제조업 외에는 각 산업별로 투자지분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인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정이 그간 외환관리법(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및 시행규칙, 인도중앙은행(RBI) 회람(Circular), 상공부 산업진흥본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등 복잡한 형식으로 규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전체적인 정부 정책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2013.4.5일자로 통합FDI정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상공부 DIPP에서 발표하였으며, 2013.7.6일 통신부문 FDI 확대 등 추가개방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투자에 앞서 최신 동향은 상공부 홈페이지(<http://dipp.nic.in>)를 통해 확인할 경우 인도의 FDI 정책 전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정책(상공부 Consolidated FDI Policy)(2014.11월 현재)

제한 종류	해당 업종 및 제한내용
투자금지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Atomic Energy) - 복권(Lottery Business) - 도박(gambling & Betting) - Business of Chit Fund(*우리나라 칠판과 유사한 금융) - Nidhi Company(* 신용조합의 일종) - 양도가능개발권(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의 거래 - 민간투자가 금지된 업종
정부승인 필요 업종 (주요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a, 농업·목축업 - 타이타늄(titanium) 광산 및 관련산업 - 담배(cigars & cigarettes) - 방산(지분제한 26%까지) - 공항(기존공항에 대한 투자로서 외국인지분 74% 이상 경우) - 자산구조조정 회사(지분제한 49%) -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 택배서비스 - 신용정보제공(지분제한 74%까지) -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투자회사 - 정유(공기업과 합작시 지분제한 49%까지)

제한 종류	해당 업종 및 제한내용
정부승인 필요 업종 (주요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매체(뉴스·시사분야는 지분제한 26%, 과학, 전문잡지는 100%까지 가능) - 유무선통신사업(100%) - 소기업 생산품 거래 - 소매업(단일브랜드 100%, 복수브랜드 지분제한 51%) - 위성설치 및 운영(지분제한 74%)
자동승인 대상이나 지분 제한이 있는 경우(주요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26%) - 국내 정기선항공(49%), 외국항공사의 자국 항공사 지분(49%) - 전세기, 화물기, 비정기노선항공(74%) - 유무선통신사업(49% 이내)
기타 (주요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 전자메일 등: 일정기간 내 인도국민에 26% 주식 매각 - 비은행 금융, 소도시 등 프로젝트: 최소 투자금액 요건 충족 - 각 업종: 산업허가 시 부여되거나 산업별 정책에서 규정된 요건 충족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90년대 중반 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상 법인을 설립할 경우 동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이 발달한 공단 지역이나 대도시의 대부분은 인도 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인도인의 경우도 최대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이다. 부족한 인프라설치비용도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부품 사용 및 수출의무 비율

단일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총가치의 30%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 조달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수브랜드 소매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이상 구매 조달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대형 발전소 건설 및 IT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부품구입의무(local value addition) 규정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대규모 투자진출기업의 경우 진출시 해당기업과 주정부 등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부품 사용비율, 수출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기도 한다. 특히 통신정보기술부의 경우, 2013.6.12 일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카드 등 18개 일반전자제품 및 심카드 등 24개 통신기기제품에 대해 정부조달시 자국내 제조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부여지침(Preferential Market Access)을 고시한 바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송금액제한, 송금세 부과, 재투자제한)

기업의 과실송금 자체는 별 어려움이 없다. 개인의 경우에도 연간 순소득(소득 - 소득세) 범위 내에서 연간 100,000~200,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세(16.99%)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유효법인세율 약 49.44%로 한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또한 배당세에 대해 한-인도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해외 납부세액 공제가능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며, 개인이나 기업 모두 송금할 때에는 인도 내에서 세금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CA(Chartered Accountant) 증명서가 필요하다. 재투자에는 별 제한이 없다.

(2) 본국 및 해외로 부터의 자금 차입 규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외환통제가 심하였으나, 최근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자금차입(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ECB) 시 금액, 목적, 금리 등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동 승인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선, ECB는 자동승인부(Automatic Route)와 승인조건부(Approval Route)로 구분되고 있는데 자동승인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RB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동승인 조건	주요 내용
차입자(borrower)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기업(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 비정부기관 중 소액대출(micro-credit)에 관련된 NGO - 특별경제구역(SEZ)에 있는 기업 - 소액금융기관
대출자(lender)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행, 수출신용기관, 수출입은행 등) - 국제 및 지역금융기구 - 국제자금시장 - 해외 합작사 - 해외 주주: 해외 주주의 경우 아래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백만불미만: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5백만불이상: 차입기업 주식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차입자금이 동 주주 보유 지분금액의 4배가 넘지 않아야 함
금액 및 만기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최대 2억불 - 호텔, 병원,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연간 최대 7억 5천만불 - 비정부기관 및 소액금융기관: 연간 천만불 -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의 75%까지, 환노출의 75% 헤지 - 2천만불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함 - 2천만불 이상 7억5천만불 이하는 최소 평균 만기 5년 이상이어야 함
금리 한도 (all-in-cost cei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3년~5년: 3.5% - 만기 5년 이상: 5%
자금사용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및 기술 수입 - 신규 프로젝트 수행 - 인프라 투자 - 합작 투자 및 자회사 투자 - 소액금융대출관련 ※자금 사용 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 대여 또는 자본시장 투자 - 인도회사 인수 자금 - 부동산 투자 - 일반 기업 자금 및 운전 자금으로의 사용 - 기존 루피화 대출 상환
보증조건	- 은행, 비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보증신용장, 선적이행각서, 지급확약서 발행 금지
담보조건	- 담보제공은 차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야 함
중도상환 가능조건	- RBI 승인 없이 5억불까지 중도상환 가능
각종 절차 조건	- 해외 차입 전 차입자는 RBI로부터 Loan Registr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함



(3) 현지금융 조달상의 제한(금융서비스의 범위제한 등)

(은행입장) 자금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콜금리기준 하루 변동폭 1~2%, 연간 최고 20~30%까지 오르는 경우 자주 발생) 은행 간 장기 차입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은행간 차입을 통해 장기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입장) 기업의 해외차입(ECB)은 목적, 차입기관, 기간, 금리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금 목적이나 시설자금 이라도 인도 루피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수출대금 결제 자체는 별 어려움 없다. 다만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루피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므로 달러나 유로화를 통해 국제 자금을 결제한다. 선 물환 시장 미발달로 스프레드(Spread) 변동폭이 큰 편이다. 수출이나 해외송금 입금 되는 경우에는 외화구좌(EEFC)를 가질 수 있다.

(5) 이중환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본적으로 이중환율은 없으며 시장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 및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인도 루피 환율 불안이 야기 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과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지 않은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 이래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왔으며, 2011.4월부터는 내국기업에게는 32.45%(30% corporate tax + 5% surcharge(소득금액이 1천만 루피 이상인 경우) + 3% 교육세)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비해 외국기업에게는 42.02%(40% corporate tax + 2% surcharge

(소득금액이 1천만 루피 이상인 경우) + 3% 교육세)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해외투자자로부터 차별 논란을 불러왔다(2013/14 회계연도에 한해 소득금액이 2억루피 이상인 내국(외국)기업의 surcharge를 5(2)%에서 10(5)%로 인상). 여기서 내국기업에는 순수한 의미의 인도기업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이지만 인도 회사법에 의해 설치된 기업도 포함된다.

외국기업에는 지사 또는 지점(Branch Office: 제조활동 이외의 영업활동 가능),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며 우리업체 중에서는 건설회사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진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보수집 및 업무연락 이외에는 영업활동이 불가능) 등 세 종류가 있다.

인도정부는 내국법인은 배당금(dividend)에 대해 16.99%의 배당세(Dividend distribution tax on corporate profits)를 추가 부담하므로 실질 법인세부담이 49.44%이므로 오히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실질법인세 부담 42.02%)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2001년 이전가격 세제를 도입한 이후 외투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오고 있어, 2012/13년 회계연도에 진행된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54%가 과세되었고, 총 이전가격 조정액은 14억불에 이르렀다. 인도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될 때마다 조사의 강도가 강화되며, 새로운 이슈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전가격 결정에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도정부는 근로자 연금 규정(Employee's Provident Fund Scheme)을 개정(2008.11.1 시행)하여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작업장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의 경우 월 소득의 24%에 해당하는 근로자 연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월 500달러 전후의 근로자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동 근로자 연금의 납부 면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인도 정부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여 2010.10.19일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 해외동포부장관 간에 협정 서명을 완료, 2011.11.1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근로자들은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어 연간 100억여 원(현재 인도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약 800명으로 인도의 외국인 근로자 연금 보험료율(24%) 감안)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적립기금(EPF) 적용사업장에서 퇴사하고 영구 출국하거나 EPF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그간 적립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

불공정 관행 등에 의한 투자진출 억제

각종 인·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되며 처리담당자의 부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 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고용 문제에 관한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사회주의 전통과 인권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하고 규제적이다. 노동자 보호에 치중된 법제는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최근 출범한 모디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고용 증대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노동법제는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개별 고용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노동조합법(The Trade Unions Act, 1926), 산업분쟁법(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임금지급법(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최저임금법(The Minimum Wages Act, 1948), 출산혜택법(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 계약노동법(The Contract Labour Act, 1970), 퇴직금지급법(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 평등임금법(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 등 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중앙 노동법규들과 별개로 각 주의 노동 관련 법규 또한 함께 고용 문제에 적용된다. 개별 주 및 지역 규정을 통하여 중앙 법규가 수정 적용되기도 하며, 심지어 이들 법규들이 상호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충돌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용 문제를 명료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 및 기타 관련 사실관계 따라 사안별로 중앙 및 사업장 해당 주의 다양한 법률들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시 허가 지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 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수도 있다. 인도중앙은행이 지사 등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재무부에 의견을 문의하고 재무부는 다시 관련부처에 의견을 문의하게 되는데 특히 통신 업종처럼 인도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경쟁정책

독립 이후 인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고, 1969년 독점및제한적거래관행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69: MRTP Act) 제정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경쟁력 집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경제개방 이후 동법은 규율 대상이 독점 및 제한적 거래에 국한된 구시대적 법제로 평가되어 폐기되었고, 2002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이 제정되어,



2007년 및 2009년 개정(Competition(Amendment) Act, 2007, 2009)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쟁 정책 및 법제의 주요 규제 대상이 ‘독점’에서 ‘불공정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인도 국내시장 뿐 아니라 국제적 형태의 경쟁 문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동법에 따라 2003년 경쟁법 집행을 위한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 기관은 2009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경쟁 촉진 및 유지,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자유 시장경쟁 보장을 위한 경쟁법 집행 및 준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법집행 의지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경쟁위원회 명령에 대한 불복은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에 할 수 있다.

기타 장벽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의 이행상 충실성 제고

최근 10년간 한국-인도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확대일로에 있는 바, 1994년 한국방문 인도인은 11,294명, 인도방문 한국인은 5,818명 등 총 17,11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각각 60,675명, 112,619명으로서 무려 1,000%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3. 체결된 「한-인도 사증발급절차간소화협정」으로 비자(사증)신청 서류의 간소화, 등록외국인에 대한 최단 체류기간의 명문화 등에 힘입어 인적교류의 꾸준한 증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인프라의 부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미흡 등의 이유로 인도측의 협정이행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

장(체류기간)요건의 엄격화 및 절차지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정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등록을 보고적 신고의 성질로 파악하고, 90일 이상 국내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되, 제출서류 및 절차는 간소화하여 최초 등록은 절차적 이행만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고 있다. 다만, 이후 비자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외국인이 체류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비자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외국인등록갱신과 연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측(외국인등록사무소: FRRO/FRO)은 최초 외국인등록신청 접수 시 사업체 소재여부 및 실적 등 실체적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 미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신청 자체를 수리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을 3월~1년간 지연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관행은 인도의 재외공관이 비자발급을 느슨하게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비록 적법하게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지만, 이러한 실체적 심사 및 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 처리기간(근무일 기준 5일)을 규정한 한-인도 사증 발급절차간소화협정 정신과 목적에도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투자자)비자연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 비자의 최초 연장은 외국인등록사무소가 아닌 내무부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고 연간 한화 약2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비자연장을 불허하거나 3월~2년간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연하여 신청자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투자)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초 2년간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 외국인투자자가 동 기간 내에 사업선 발굴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사업체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연간 2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고려할 때 동 최저 매출액기준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측은 외국인투자자의 비자연장 요건으로서 획일화된 매출액 기준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지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비자납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측이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의 지속 확대, 업무처리기간이 장기화를 방지할 위한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및 내무부의 주기적 모니터링, 2014.4.15 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도착비자(Tourist visa-on-arrival)의 부여 등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운전면허 취득

인도의 운전면허 시험 주관기관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주정부 Transport Department(주정부산하의 운송국)이며, 지역별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전면허 종류로는 ①Motor Cycle ②Invalid Carriage(지체장애자용 차량) ③Light Motor Vehicle(8인승 미만) ④Transport Vehicle(8인승 이상 및 화물운송 차량) 등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학과시험(객관식, 60점이상)을 거쳐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운전연습학원에서 수강하고(증명서 지참) 기능 및 주행 시험을 합격하여야 “정식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인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를 인도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도정부는 별도 시험 없이 유효한 한국면허증에 대하여 인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주한인도대사관은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인도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영문 번역 운전면허증, 거주지증명서)에 대해 영사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은행

2014.11월 초 현재 43개의 외국계은행이 310개 이상 지점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 중이며, 또한 45개의 은행이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를 두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산업의 총자산 중 6%, 부외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1개, 50개, 42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델리, 뭄바이, 벨로르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4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하여 남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뉴델리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은 RBI에 지점 개설을 신청하여 최근 예비인가를 취득하였으며 신한은행은 뿌네 지점에 대한 예비인가를 취득하였다.

인도 정부는 2005.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지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4.11월 현재,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험회사 설립 최소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7월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하는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2014.11월 현재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우수 사례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1996년 구 조흥은행이 뭄바이에 최초 진출하였고 이후 신한은행과 합병하여 행명이 변경되었다. 2005년 뉴델리지점 설치허가를 받아 2006.12월 뉴델리지점을 개점하였으며, 2010.12월에는 첸나이 인근 벨로르 지점을 개점하였다. 이에 인도의 북부, 중부, 남부에 걸친 대도시에서 영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계 기업이 신한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다. 높은 진입 장벽에 의해 외국계은행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인도 금융 산업에서 상업은행 중 최초로 인도에 진출하여 인도 전역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인 신한은행은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다른 은행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IMF 위기 때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인도 진출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든 주요인이 되었다.

개선 실적

2008.9월 미국 리만브러더스사 파산신청 이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4.1월 이후 현재 한국과 관련된 반덤핑 조사는 냉연·열연 강판, 아세톤, 고순도테레프탈산(PTA), 인산, 탄산칼륨 등이며, 2014.1월 이후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조사는 포화지방알콜, 구연산나트륨, 유연성고분자판재폴리올, 스판텍스, 내연강판 등이다. 최근(2013.5) 세이프가드총국은 아국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스판텍스에 대한 세이프가드관세 부과를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인도정부는 일부 보호주의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2009.8월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여, 2010.1.1일부터 협정이 정식 발효되었다. 특히 발효 후 첫해인 2010년 양국간 교역액이 171억달러로 2009년 121억달러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2013년 양국간 교역액은 175.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양국간 교역은 CEPA를 통한 양국의 경제 교류 발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소기업 고유업종(Items reserved for exclusive manufacture by Micro and Small enterprise Sector)은 1951년 입법으로 도입되어 1978년 504개에서 1991년 836개로 확대되었으나, 2006년 말 326개로 축소된 후 점진적으로 해제되어 2010.7월 빵, 양초, 목재가구 등 20개만 남아 있다(2007.1월 87개, 2007.3월 125개, 2008.2월 79개, 2008. 10월 14개, 2010.8월 1개 품목 추가해제). 상세품목은 주재국 중소기업부 홈페이지(<http://www.dcmsme.gov.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력, 도로, 항만 등 취약한 인프라 분야 등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규정을 상공부 Press Note 형식으로 수시로 개정하고 있는바, 실제 투자에 앞서 최신 동향은 상공부 홈페이지(<http://dipp.nic.in>)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니 경제관계 현황

개관

1973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이래, 지난 40년 동안 양국간 경제 협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수교 당시 2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역액은 250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8위 이자 아세안 국가 중 제2위(베트남 1위)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2010년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이행을 위한 파트너가 되었고, 2012년부터 각료급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한·인니 양국은 2012.3월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천억 불로 확대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운데 이어, 2013.10월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교역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 발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관한 협상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교역 현황

한·인니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4년 100억불을 돌파한데 이어,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16.5% 감소한 247.6억불을 기록(우리나라가 16억불 적자)하였다. 한국은 인니의 제7위 교역국이고, 인니는 한국의 제12위의 교역국이며, 인니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싱가포르 1위, 베트남 2위)이다.¹⁾

1_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규모는 2013년 기준 1,353억불(수출: 820억불, 수입: 533



2013년 한국의 對인니 수출은 115.7억불로 전년대비 17.1% 감소했으며, 수입은 131.9억불로 15.9% 감소하였고,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2년 17억불에서 2012년 16억불로 다소 개선되었다. 수출은 경유, 휘발유, 합성수지, 편직물, 열연강판 등 5대 품목이 對인니 수출의 42.4%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중유, 천연고무 등 5대 품목이 對인니 수입의 65.6%를 차지하였다.

한·인니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불, 전년 대비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수 출	금액	4,874	5,771	7,934	6,000	8,897	13,563	13,946	11,568
	증가율	-3.4	18.4	37.5	-24.4	48.3	52.3	2.8	-17.1
수 입	금액	8,849	9,114	11,320	9,264	13,986	17,216	15,678	13,190
	증가율	8.1	3.0	24.2	-18.2	51.0	23.1	-8.9	-15.9
무역수지		-3,975	-3,343	-3,387	-3,264	-5,089	-3,654	-1,732	-16.4

자료: 관세청

투자 현황

2013년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8위 투자대상국(수출입은행, '13년말까지 누계, 신고기준)이며,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제4위의 투자대상국(인니 투자조정청, '13년, 실제 투자기준)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두 번째 투자 대상국(1위 : 베트남)이다.

2013년 현재까지의 한국의 對인니 투자는 총 4,709건, 113.8억불('13년 말까지 누계, 신고기준)으로 '13년에는 373건, 5.2억불을 기록하였다. 인니의 對한국 투자는 '13년말까지 누계 신고기준으로 총 121건, 9.7억불로, '13년에는 6건, 9.2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억불)로 전체 국가 중 제2의 교역국(중국 21.3%, 아세안 12.6%, EU 9.8%, 미국 9.6%, 일본 8.8%)으로 최근 5년째 수출 비중이 확대

한·인니 연도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건)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누계*
對 인니투자	금액	137	276	619	658	527	1,793	1,333	1,950	525	11,389
	건수	175	278	127	138	312	331	440	314	373	4,709
對 한국투자	금액	25.7	0.3	0.1	11.9	2.1	752.1	6.1	68.3	9.2	966.2
	건수	11	4	1	12	12	17	11	9	6	121

자료: 수출입은행

누계: 對인니 투자('68-'13), 對한국 투자('6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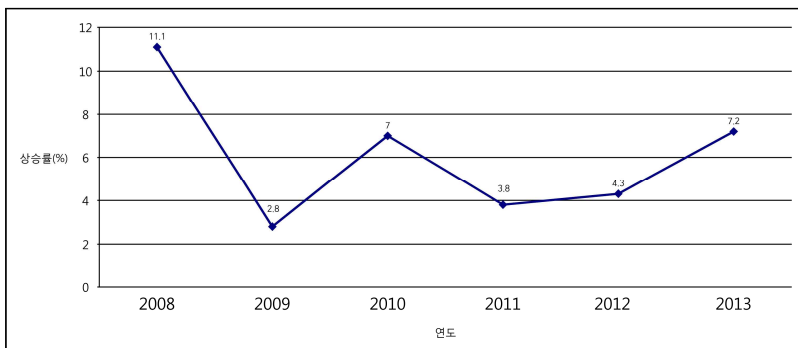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최근 경제 동향

인도네시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제 자원 붐(boom)에 힘입은 원자재 수출 증가, △중산층 확대에 따른 내수 증대, △활발한 해외투자 유입 등을 기반으로 2010~2012년 3년간 6%대의 고성장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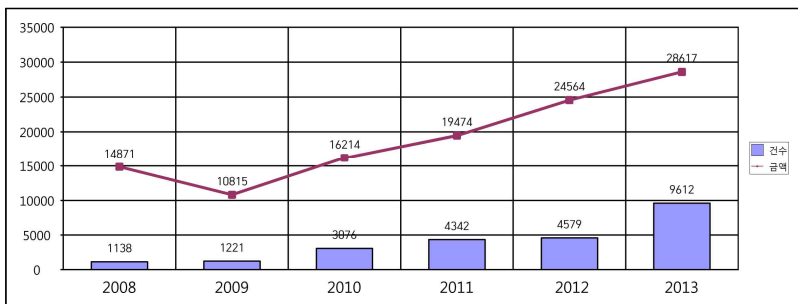
그러나, 2013년 들어 국제 자원 붐이 끝나자 수출은 원자재(석탄 등) 가격 약세로 위축된 반면, 보조금 지급 석유류의 수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2/4분기에 GDP의 4.5%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연준(FRB)의 양적완화 축소(실제 시행은 2014년 1월) 우려와 맞물려 인도네시아 자산에 대한 매도를 불러 왔고, 연초 대비 주가와 루피아화 가치가 20% 이상 급락하는 등 금융 불안을 경험하였다. 이후 외부충격 해소를 위한 △인니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5.25%→7.5%), 수입 억제 등 긴축적 경제운용과 더불어, △보조금 석유 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 △외국인 투자 증가세 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급격한 임금 인상 등의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5.78%로 둔화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연도별 인도네시아 FDI 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1,138	1,221	3,076	4,342	4,579	9,612
금액	14,871	10,815	16,214	19,474	24,565	28,617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청)

2014년 들어서도 경상수지와 루피아화 방어를 위한 인니 정부의 긴축적 경제운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자원가격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출 위축,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신광물법 시행에 따른 미가공 광물 수출 중단, △4월 총선, 7월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외국인 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률은 5% 초반대로 하락(2/4분기

5.12%)하였다.

한편, 금융시장은 상반기에는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인플레이션을 하락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조코위 자카르타 주지사의 대통령 선거(7.9) 출마로 정치, 경제개혁의 기대감이 커지며,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자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강세를 띠는 “조코위 효과(Jokowi Effect)”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2/4분기 GDP의 4.3% 수준 경상수지 적자 발표,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및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 △대선 이후 정치적 불안 지속 등으로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 12,000선을 넘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1	2012	2013	비고	한국(2013)
GDP	명목(억불)	8,456	8,778	8,703	한국(15위)에 이은 세계 16위(IMF, 2013)	13,045(IMF)
	1인당(불)	3,508	3,591	3,510	루피아화 가치 하락 영향	25,975(IMF)
경제성장률(%)		6.5	6.2	5.8	G20 국가 중 2위 고성장(1위는 중국)	3.0%(BoK)
실업률(%)		6.6	6.1	6.3	6%대 지속	3.1%(통계청)
물가상승률(%)		5.3	4.0	6.4	14년 목표 4.5%(±1%)	1.3%(BoK)
중앙은행 기준금리(%)		6.0	5.75	7.5	13.11월 이래 7.5% 고금리 유지	2.5%(BoK)
외환보유고(억불)		1,101	1,128	994	6개월치 수입, 단기외채 상환가능	3,465(BoK)
달러당 환율		8,700	9,670	12,189	약세 전망	1,095(BoK)
교역	수출(억불)	2,035	1,900	1,825	국제자원가격 약세로 원자재 수출 둔화	5,596(무역협회)
	수입(억불)	1,774	1,917	1,866		5,156(무역협회)
	무역수지(억불)	261	△17	△31		440(무역협회)
GDP 대비 재정적자(%)		1.2	1.9	2.4	재정 건전한 편	1.0%(기재부)

출처: 인니 재무부, 통계청, 투자청, 중앙은행, IMF 등 종합



최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2004.10월-2014.10월) 하반기 이후 △가공되지 않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新光물법 시행(14.1월),² △2014년초 광범위한 무역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무역법 및 신산업법 제정, △산업기준 인증의 무 품목 확대 움직임 등을 통해 자원보호주의 및 보호주의 색채가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6%대에서 5%대로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국산 제품 및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수입을 증대하며, 천연자원을 보호하려는 등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신무역법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에 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기존의 기업법(1934년), 상품법(1961년), 상품통제법(1962년), 물류법(1965년) 등 4개 법안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부가가치 향상 등을 통해 국익 확대, 국내산업 보호, 자국산 제품의 수출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말 출범할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비하여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및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국내생산 증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 수입규제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도 해당 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 집행에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² 2009년 제정된新光물법의 시행령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No. 07. 2012)이 2014.1.12.부터 전격 시행되어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물 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투자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

※ 신무역법 주요 내용

- (자국산 제품 생산·소비 촉진 및 보호) 필수재·전략물자 수급 관리
 - 국내 수요 충족 및 원자재 확보, 원자재·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등을 위해 수출 제한 가능
 - 국내 산업 보호와 교역 균형을 위해 수입 제한 가능
 - 수입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국산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편의·인센티브 제공
 - 국내 제조업자에게 손해 발생시 반덤핑조치 및 수출국의 보조금 부과로 국내 제조업자에게 손해 발생시 보상조치 발동
- (국제무역협정 관련 의회 감독 및 정부의 협정 검토·무효 권한 부여)
 - 무역협정 체결시 의회와 협의(정부는 국제 무역협정을 협정 서명 9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
 - 의회는 무역협정이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shall reject)는 점을 명시
 - 정부는 국익을 위해 의회가 비준한 무역협정 검토·무효화 가능
- (기타) 중소기업 우대, 전자상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
 - 무역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무역위원회 설립
 - 동 법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 규정 제정 의무

2014.10월 출범하는 조코위 신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행정시스템 및 투명성 개선을 통한 부패퇴치, 연료보조금 등 경제개혁, 인프라 확충 등 시장친화적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국내산업 보호, 천연자원 관리 강화 등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조코위 신정부 출범 이후 실제 통상환경의 변화 동향 및 통상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투자 환경

개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80~1990년대 다수의 규제완화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과 1998년의 투자규



정 개정에 의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100% 외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다.

2004.10월에 첫 민선대통령으로 취임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가 경제발전, 특히 IMF 금융 위기 이후 거의 손을 못댄 인프라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투자유치 확대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1월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 제1차 인프라 서밋을 개최하고 91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고, 2006.11.1~3일간 제2차 인프라 서밋을 개최, 10개의 모델 프로젝트와 101개의 잠재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2009.3월 말에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87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으며, 2010년 3월에 개최된 인프라 서밋에서는 민관협력사업(PPP)으로 다시 100개의 프로젝트를 발표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2010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asterplan for the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Indonesia 2011-2025 : MP3EI)를 수립, 인도네시아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특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석탄과 팜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수마트라 섬 권역에는 석탄과 팜 오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종단/횡단 철도와 도로, 항만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자바 섬 권역은 자카르타 특별주를 중심으로 자동차, 식음료, 통신 산업 등의 고도화,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을 잇는 순다 대교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MP3EI 의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 투자를 포함 총 4,45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진행된 투자 관련 법령 정비는 의회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마침내 2007.4.26일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신투자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신투자법은 1967년의 외국인투자법, 1968년의 국내투자법을 통합해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정비되었고, 내용상으로도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2007.7월에 발표되고, 2010년 5월, 2014년 4월에 개정된 투자제한 규정(Negative List of Investment)도 일부 산업에 대한 제한은 강화되었지만, 규정 자체의 내용은 종전보다 명료화되어 투자제도의 투명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5억을 보유한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서 내수시장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인근 아세안국가 시장까지 감안하면 현지 내수시장 겨냥 목적의 투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 노사분규 발생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FDI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286억 달러로,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두 자리수로 높은 편이다.

긍정적 요소

(1)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

- 2004.10월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선 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대통령의 부패척결,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
-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이 점차 안정화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매년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6.5%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도 경제성장률도 6.5%를 달성하고, 2013년에는 5.8%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향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풍부한 천연자원

- 인도네시아는 LNG, 석탄, 니켈, 주석 및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 세계적인 코코넛, 야자, 천연고무, 고무 생산국이다.



(3) 젊은 노동인구 풍부

- 세계 제4위의 인구(2억 5,000만명)를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
- 평균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반면,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의 50%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두터워지고 있는 중산층 및 내수시장 확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실시한 가계지출조사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중산층 이상의 인구가 현재 7,400만명 수준이며, 2020년에는 1억 4,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산층을 일일 \$2~\$20을 지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apgemini와 Merrill Lynch의 2011년 Wealth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고소득층(동산 1백만달러 이상 소유자)은 78만5천4백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소매협회는 2013년 유통시장 규모를 2012년 대비 10~15% 증가한 151조8000억~158조7000억 루피아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중·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유통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증가로 2013년 스마트폰 판매가 22% 성장할 전망이며, 용기포장협회(FPI)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대로 2013년 포장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대비 10~12% 성장한 48조~49조 루피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정적 요소

(1) 노동의 유연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 높은 해고 비용: 1년 근무당 1개월치씩 해고 수당 + 3년 근무당 1개월치씩 근속수당 지급(단, 기한부 고용계약은 해당되지 않음)

-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 큰 폭 증가(자카르타 및 인근지역 최저 임금 상승률: 2006년 15.1%, 2007년 9.95%, 2008년 8.0%, 2009년 10%, 2010년 8.2%, 2011년 10.3%, 2012년 18.5%, 2013년 44%)
- 초과 근무 수당의 누진제 적용: 1시간 초과 150%, 2시간 이상 200% 지급

(2) 높은 물류비용과 낮은 물류 경쟁력

- 간선도로, 유료/고속도로, 철도, 항만, 터미널 등의 인프라 설비가 부족하고 장비 낙후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등의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은 편
- 인도네시아의 물류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24~27% 수준

(3)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 투자 인·허가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비공식적 비용 발생
-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 시의 부조리 발생

투자매력도

WEF(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조사 2013-2014’에서 인도네시아는 2009년에 54위(133개국 중), 2010년에 44위(139개국 중), 2011년에는 46위(142개국 중), 2012년 50위(144개국 중)에 이어, 2013년에는 148개국 중 38위를 차지하면서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입증하였다. 분야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시장규모(15위)였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노동시장 효율성(103위)으로 전년도의 94위에서 더 떨어졌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투자 대상지로 유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29위(전년도 26위), 태국은 37위(전년도 39위), 말레이시아는 24위(전년도 21위)를 차지하



였으며, 필리핀은 59위(전년도 75위), 베트남 70위(전년도 65위), 캄보디아는 88위(전년도 97위), 방글라데시는 110위(전년도 118위)를 차지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즈니스 적합지로서의 평가가 비슷해지면서, 향후 동남아시아 투자유망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법

외국인 투자법 및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법 1967년 최초 제정
- 2007년 개정된 신투자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시행
- 법제정 목적은 외국의 자본과 경영기법, 기술개발에 의한 고용창출, 수출증대 및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추진

투자 우대 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 등의 혜택은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일부 혜택 존재
 - 신규투자자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계수입(자본재), 최초 2년간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에 대하여 마스트리스트를 작성하여, 최고 5%의 수입관세 납부(재무부령 2000년 135호)
 - 투자 촉진 세제 우대 제도로는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Tax Holiday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Tax Allowance를 시행

(1) 법인세 면제(Tax Holiday)

- (요건) 인내에 신설되는 법인 납세자 및 2011.8.15. 기준으로 12개월 이내(2010.8.16. 이후)에 설립된 법인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기한은 2015.8.31)

- 선구산업(pioneer industries), 즉 기초금속, 유류정제, 석유화학, 기계류, 재생가능 에너지, 통신장비 산업에 속할 것
 - * 다만,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경우 재무장관이 상기 선구산업 외 산업체에도 세제 혜택 적용 가능
- 최소투자금액 1조 루피아(약 1억불) 이상일 것
- 총 투자금액의 최소 10%를 인니 은행에 예치할 것
- (혜택) 상업생산 개시연도부터 5~10년간 법인세 면제(Tax Holiday) 및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 * 다만,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경우 재무장관이 적용기간 연장 가능
- (절차) 산업부 또는 투자청에 신청서 접수 → 심사(투자대상지역의 인프라 유무, 고용잠재력, 선구산업 해당여부, 기술이전 잠재력, 거주국가의 조세감면 제도 활용가부 등) → 신청서의 재무부 이관 → 재무장관 승인
- (납세자 의무) 납세자는 정기적으로 투자금 사용내역 분기보고서, 자본투자 시행 연간 감사보고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2) 투자금액 소득공제(Tax Allowance)

- (요건) 52개 특정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납세자 또는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납세자 및 투자면허를 획득한 기업으로서 최소 1조루피아 이상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 * 특정사업군 : 음식업, 의류 및 섬유, 종이 및 제지, 공업화학원료, 의약업, 고무 및 합성수지업, 철강, 기계장비업, 전자업, 육로이동 차량운반구, 조선, 시멘트, 지질탐구, 원유정제, 천연가스정제업 등
- (혜택) 총 투자금액의 30%를 6년에 걸쳐 매년 5%씩 순이익에서 차감
 - 세무상 조기 감가(모) 상각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경감



- 다음의 조건하에 결손금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투자가 산업공단이나 보세구역내에 이루어질 것
 - 최소 500명 이상의 고용을 5년 연속 유지할 것
 - 투자처에서 경제·사회 인프라 비용이 100억루피아 이상 발생할 것
 - 5년 연속 국내 R&D 지출이 총 투자금액 대비 5% 이상일 것
 - 투자 후 4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원자재의 70% 이상을 조달할 것
- (절차) 투자청장에게 신청서 접수 → 투자청장 추천서와 함께 재무부(국세청) 이관(납세번호증, 투자면허, 상세사항) → 10 영업일 이내 국세청 승인 / 거부(결정서 교부)
- (납세자 의무) 납세자가 투자계획의 80%이상을 실현한 이후 혜택 부여, 2007 정부령에 따른 투자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기 부여받고 있지 않아야 함(중복 배제)

신투자법 주요 내용

(전문 및 17개 장(Chapter), 40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 조세혜택(18조)
 - 일정기간 이행된 자본투자량에 따른 소득세 감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본재, 기계류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원자재 및 보조원자재 수입 시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수입 관세 면제 또는 감면
 - 일정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기계류 및 생산 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제 또는 중지
 - 특정지역의 특정 분야에서의 토지세, 건물세 감면
 - 개척분야 산업(Pioneer Industry, 신기술과 국가경제에 전략적 가치 부여 산업) 투자에 대한 일정 기간, 일정 범위의 소득세 감면, 면제
- 투자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 확인(22조)
 - 토지경작권(Right to Cultivate): 최장 95년까지 가능

- 건설권(Right to Build): 최장 80년까지 가능
- 토지사용권(Right to Use): 최장 70년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거주 편의 강화(23조)
 - 자격을 갖춘 투자자중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에 따라, 2년간의 거주허가 및 현재 1년 및 6개월 비자를 대체하는 2년짜리 복수 입국사증 부여
 - 2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5년 유효 거주 허가서 부여 가능 등
- 사업허가서 취득의 통합서비스시스템 도입(25~26조)
 - 상업행위를 하는 자본투자기업은 동 사업허가서 통합서비스시스템(One Door Integrated Services)을 통해 획득
- 투자정책의 조정과 이행(27~28조)
 - 정부는 정부기관 간, 정부기관과 인도네시아 은행 및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간 투자정책을 조정
 -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정책을 이행하며, 투자조정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동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
- 외국 투자자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 처리(32조)
 - 정부와 외국투자자간 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결정되고, 양측은 이에 구속

2014년 Negative List 개정안 발표 (투자법 시행령 2014-39)

인도네시아 정부는 4.23 대통령 재가를 거쳐 4.24부터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령 No.39 2014년’가 공식 발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10.5.25 ‘대통령령 No.36 2010년’ 이후 4년 만에 발표된 리스트는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2007, 2010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영문판도 제공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크게 투자제한 업종,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으로 구분되며, 금번 개정판은 ‘투자제한업종 7개 산업, 18개 업종, 20개 항목’과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 16개 산업, 216개 업종, 500여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으로 투자제한 업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불가하며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허용조건 10개 중 업종별 해당 조건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허용 조건(Persyaratan)은 네거티브 리스트 원문 업종별 목록표상 ‘a’부터 ‘j’까지 총 10개로 구분되며, 외국인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대상 업종은 일반적으로 허용 조건 ‘c’에 해당되며 최대 지분 보유 한도가 함께 명시된다. 이 밖에도 g, h, j 조건도 상황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투자제한 업종 주요 변동 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가 투자제한업종에서 교통부 별도 허가를 통해 외국인 최대 지분 한도 49%까지 획득 가능한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으로 변경되고 투자제한 화학물질 품목군도 과거 단일 분류에서 3개 분류로 내용이 세분화되는 등 소폭 변동
- 구(舊) 문화관광부가 교육문화부와 관광·창조경제부로 분할됨에 따라 투자제한 산업이 2010년 6개에서 2014년 7개로 증가하였으나, 마리화나 재배, 알코올음료 제조,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 산호 채취, 승객 운송용 육상터미널 건설 및 운영, 카지노 건설 및 운영 등 세부 업종은 과거 규정과 동일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 주요 변동사항>

- 농업 :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용작물 업종은 과거 면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25헥타르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할 경우로 적용기준을 강화

- 원예 : 포도, 열대과일, 귤, 사과, 석류, 베리류, 약재, 버섯, 화초 작물 류 씨앗(업), 재배업, 프로세싱, 실험실(연구업), 원예 관광업 및 원예 작물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최대 30% 허용 규정을 신설
- 축산 : 2014년 개정판에서는 125마리 초과 양돈업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인에 허용하는 항목을 신설(2010년 리스트에는 125마리 이하의 경우 내국인에만 허용토록 규정)
- 임업 : 맹그로브 나무 중간재 산업을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던 규정이 개정판에서 삭제
- 어업 : 육상에서 12마일 이상의 거리를 두고 총톤수 100톤 이상 어선을 사용하는 조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되었으나, 2014년 개정판부터는 특별 허가 취득시 외국 투자 기업도 가능토록 변경
- 오일&가스 : 오일,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탐색, 개발, 운영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제한은 확대된 반면 지열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는 확대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오일가스 분야 설비건설 관련 육상 오일 가스 업스트림(upstream) 생산설비,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 육상 저장 및 판매시설의 설치는 내국인(기업)에만 허용하고, Platform 은 75%, Spherical tanks는 49%, 해상(Offshore) 파이프라인은 49%로 외자지분 한도를 설정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자원 탐사 서비스에 외자투자지분 한도 설정: 오일가스 49%, 지열 95% 등
 - 육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과거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외국인 투자 불가로 변경되었으며, 해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75%로 축소하였고 지열 분야는 90%에서 95%로 확대
 - 유전, 가스전의 O&M, 엔지니어링, 기술검사 등은 외자지분 95%에서 국내 기업 한정으로 변경



- 발전 : 자국 내 전력개발을 위한 민자투자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발전 분야의 외국 투자 허용범위 확대
 - 발전용량 10 MW 이상의 경우 기존과 같이 95%로 유지하되 PPP 일 경우 100% 외국 지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
 - 과거 1~10 MW 급 발전은 생산공정의 일부 협업만 외국 투자가에 허용하고 지분 확보는 불허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외자지분 한도 49%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개편(다만, 1 MW 이하는 여전히 불허)
 - 전력 설비 가설 분야는 과거 95%까지 허용 외자지분을 허용하였으나 2014년 개정판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며, 아울러 송배전 분야에서는 과거 95%만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PPP일 경우 100%까지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 제조 : 땀뻘 제조업, 목공 등 수공업품 제조는 생산협업만 가능하였으나 개정판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Crumb Rubber의 경우 특별 허가 취득 조건부 허용에서 외국인 투자 불허로 변경
- 환경 : 비위험 물질 폐기물 처리분야 외자 지분을 95%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
- 상거래 : 자국 내 중소기업인 보호와 도매(유통) 등 서민경제와 관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다수 신설
 - 도매(유통), 창고업 외국인 투자 33%로 외자지분 한도를 신설하고 냉장 보관업은 수마트라, 자바, 발리에 투자할 경우에만 외자지분 33%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깔리만탄, 술라웨시, 누사똥가라, 말루꾸, 빠뿌아에 투자할 경우 67%까지 허용
 - 슈퍼마켓/미니마켓, 백화점 외의 소매업, 게임·장난감,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인터넷 또는 우편을 사용한 소매업, 식음료 소매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
 - 대중 의견조사 및 시장조사는 금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원칙적으로는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되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는 51%까지

외자지분 한도를 허용

- 복사, 제본, 사무지원 서비스, Alternative trading은 내국인만 가능하고 선물(Future) 교역은 외자지분 95%까지 허용
- 관광·창조경제 : 지방정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텔급 숙박업소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최대 49%, 현지 중소기업과 합작한 경우 51%까지 허용하되 자바, 발리지역은 최대 70%까지 인정
 - 골프장 투자는 자바, 발리 지역이 70%, 그 외 지역은 100%로 지분 한도를 인정하고 아울러 동영상을 포함한 광고시장도 아세안(ASEAN) 투자자에 한해 51%까지 외국인 투자지분한도로 인정
- 교통 : 물류 중 항만시설의 경우 과거 49%만 허용되었으나 신규 개정판에서는 PPP 형태는 최대 95%까지 허용하며 육상 Cross-border 운송은 내국인만 가능
 - 교통부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정기점검(Periodic test) 분야도 49%까지 외국인투자지분을 허용
 - 아울러 multi mode transport(국내외 포워딩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49%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통신, 정보 : 유·무선·위성통신은 65%로 외자지분을 확대한 반면 데이터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중계서비스는 각각 95%, 65%에서 49%로 지분 한도를 축소하며, 통신탑은 여전히 외국인투자를 불허
- 금융 : 벤처캐피털 외자투자지분한도가 80%에서 85%로 상향 조정
- 교육 :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분야(Higher Education)의 학위/비학위 과정은 과거 교육법 No. 20, 2003과 그 부속조항에 따른 특별 라이선스와 허가를 받았으나 개정판에서는 교육법 No. 12, 2012와 그 부속조항을 따르도록 변경
- 의료보건 :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에 대한 각급 병원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자국 의료수요의 해외 유출 방지를 도모



- 약품 및 원재료 제조업의 외자투자지분 한도가 75%에서 85%로 확대되었으며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에 한해 일반 병원은 과거 67%에서 각주의 주도에 위치한 경우 70%까지 확대
- 아세안 투자자에 한해 치과를 포함한 전문 클리닉은 마카사르, 마나도 주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주도(州都)에 투자시 지분 한도를 70%까지 인정하고 간호서비스(CPC 93191)의 경우 마나도, 마카사르 투자시 51%,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주도(州都)에 투자시 70%까지 허용

<시사점>

-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은 2010년에 이어 2015년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의료, 광고 분야 등 아세안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 허용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동일
- 소상공인 보호, 광물자원 개발 분야 등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한층 강화된 반면, 대규모자본 투자가 필요한 전력개발 분야에서는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한 외자지분 한도 확대 등 외국 투자 유인책을 제시
- 일부 산업과 세부 업종에서는 투자 허용 및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대대적인 투자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2013년 10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189개국 중 120위(우리나라는 7위)로 2012년 116위에서 하락

※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참고사항

-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BKPM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반드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대상 지역 지방정부의 확

인을 거쳐야 함.

- 개정판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Grandfather 조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 신규 진출 시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부서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이루어진 우회 및 포트폴리오 투자는 투자 제한 및 조건부 허용 투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일 업종 내 사업 확장을 통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한 경우 2년 내 세칙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초과 지분 조정을 마쳐야 함.

환경 관련 규제 및 투자 여건

임업분야 수출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2014년 현재 29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38만ha 조림 허가 취득하여 조림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41만ha에 대해서는 허가 획득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불법벌채, 도벌 등을 방지하고자 원목 등 목제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중이며, 재무부 장관령(2008년, No 223/PMK.011/2008)를 통해 모든 원목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제재목 등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가 실시되어 투자 확대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바, 조림목 수출 허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인도네시아의 목제품 수출 규제 경과

- 1985년부터 원목 수출 전면 금지
- 1989년 저가 제재목 수출 금지 및 고관세 부과(250~4,800\$/m³)
- 1992년 원목 수출 금지 해제, 고율의 수출세 부과(500~4,800\$/m³)로 사실상 금지
- 2001년 원목 수출 금지 재시행
- 2006년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 수출 금지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도 2013년에 목재산업용 조림 투자 활성화 및 합법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인증제 시행 등에 근거하여 조림용 원목의 수출 허용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진 자국의 목재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목재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림용 원목 수출뿐만 아니라 전체 원목에 대한 해외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2014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자원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공약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당분간 원목수출금지 해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2.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 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하여 동 인증을 획득해야만 내수 및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우리 진출기업도 이를 획득해야 하며, 인도네시아-EU간 인증 관련 자발적 협정이 2013.9월 체결됨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다면 對EU 시장 진출이 일정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 보호를 위하여 2011년부터 천연림과 이탄지의 개발허가를 전면금지하는 산림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이를 2015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팜농장에 대해서는 자국 농민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의 지분비율을 제한(95%→30%)하는 논의가 국회 등에서 있었으나, 팜농장 확대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외국자본이 절실한 인도네시아 상황을 고려할 때 팜농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당분간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분야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9월부터 신선원에 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관련 규정: 농업부장관령 / No.42/Permatan/OT.140/6/2012), 신선 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항구→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 통관 가능 항구: 자카르타(수카르노 하타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타 항구)
- 검사 강화: 종전은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
- 쿼터제: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책정함. 쌀, 사과, 김, 미역 등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국 인정체결국(country recognition agreement)에 대해 자카르타 항구(탄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RA 획득국가는 인니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니 주된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니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니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자유무역협정

인도네시아는 아세안국가 간의 FTA인 AFTA,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인 AK-FTA,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인도네시아와 일본과 FTA인 IJ-EPA, 아세안과 인도와의 FTA인 AI-FTA, 아세안과 뉴질랜드 및 호주와 FTA인 ANZA-FTA 등 FTA협정을 맺고 있다.

아세안과 중국과의 FTA인 AC-FTA 발효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 급증



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인도네시아의 FTA 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호주, 인도, EU 등과의 FTA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ASEAN+6(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차원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는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12개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TPP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RCEP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ASEAN FTA

2007.6월에 발효된 ASEAN과의 FTA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10년까지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91.1%에 달하는 4,76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일반품목군 308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서는 2012.1.1 (법령 작업 지연으로 실제로는 7.10부터 적용)부터 관세율을 20%까지 감축하였으며, 동 품목은 2016.1.1까지 0~5%로 감축될 예정이다. 전체 품목수의 3%에 해당하는 상품(초민감품목, HS 6단위 156개)은 양허제 외, 관세율 장기 소폭 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설정 등 방식으로 보호된다.

2016.1.1 이후에도 여전히 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등 품목과 156개의 초민감품목이 현재 진행되고 한-인니 CEPA 협상의 시장개방 협상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Form AK)을 사용하여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조회는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http:// idn.mofa.go.kr](http://idn.mofa.go.kr)) ‘인도네시아 관세 및 FTA’ 코너 또는 인도네시아재무부 홈페이지(<http://www.tarif.depkeu.go.id>) 법령코너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8 /PMK.011/2012’을 찾아보면 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의 ‘수출활용/세율정보’ 코너에서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각 나라별 양허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FTA 포털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AK) 발급신청을 하고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였다.

AFTA (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무역 보호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로 만들어진 역내 자유무역협정이다.

1992.1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AFTA 설립에 공식 합의하였고, 1992.12월 자카르타에서 AFTA 평의회가 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해설서 등에 대한 3개 실무협정이 체결된 후 1993.1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2010.1.1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9.11%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을 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평균 관세율이 2009년 0.79%에서 0.5%로 낮아지게 되었다.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0.1.1부터 5%로 관세율을 낮춘데 이어 2015.1.1부터 완전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중·ASEAN FTA

2004.11월 라오스 개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한 후, 2005.7월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1.1부터 ASEAN 창설 6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90%의 시장개방(관세 철폐)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4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은 2015.1.1부터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및 ASEAN 정상들은 2013.10월 브루나이 개최 ASEAN+1 정상회의 중 ASEAN FTA의 업그레이드에 합의하여, 2013년 중에 1차 협상을 개최하고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일·인도네시아 EPA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07.8.20일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했고, 2008.7월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對일본 수출품 가운데 대부분인 9,275개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무관세 대상 품목 중 80%는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는 향후 3~10년에 품목별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서는 92%에 해당하는 11,163개 품목의 93%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무관세 품목 가운데 58%는 협정 발효 즉시, 나머지 품목은 향후 3~10년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동 협정은 5년 후에 재검토(Review)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에 동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재검토 회의시 추가적인 시장개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규제 제도

관세장벽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세인하 노력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MFN (Most Favored Nation; 최혜국대우) 관세율은 종가세 0~40%로 유지

되고 있으며, 2010.4월부터 주류에 대하여는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맥주 L당 14,000Rp, 와인 및 과일주 L당 55,000Rp, 증류주 L당 125,000Rp 등)로 관세부과 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CIF가격을 기준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한 전산 가격자료를 통하여 실적가격대비 수입신고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WCO의 HS협약 가입국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 번호(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단위의 품목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HS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K Code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되는 정확한 HS번호를 파악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관세청 내부자료(기존 수입가격을 근거로 책정된 Database), ON LINE MARKET 등을 통한 판매가, 시장 가격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확인하고, 세관 자체기준(통상 5% ± 차이)에 미달 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인도네시아 세관의 통관심사관(PEPD)의 권한도 강화되어 민원인 대면이 불가하고 신고가격 심사 후 신고가격 불인정 및 추징이 강화되고 있다. 세액추징시 벌금은 누락세액의 최대 1,000%까지 부과된다(최소100%에서 최대 1000%). 세관의 추징에 따른 불복시 세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SURAT KEBERATAN) 작성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과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관에서 기각하는 경우 수입자는 조세법원(PENGADILAN PAJAK)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세관 결정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죽



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료 등으로서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된다.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아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다음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 허가(NPIK)를 취득해야 한다.

-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식물 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선적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아래의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화학제품 수입 시는 MSDS 반드시 첨부
- 중고 기계 수입 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선적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 요망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 시 선적전 검사(SGS 검사)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시 수입 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 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 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1월부터 시행)
-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 받은 선적전 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2월부터 시행)

2009.1.1일부터 상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Tanjung Perak 항구(수라바야), Belawan 항구(메단), Soekarno-Hatta 항구(마카사르), Dumai 항구(리아우 지역)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을 강화하면서 2007.7.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제도를 강화해 지정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4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도 아래와 같은 비관세 장벽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전자제품 수입규제: 핸드폰, 핸드헬드/테이블 PC의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 사전 취득 후, 수입 품목을 산업부에 등록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며,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
 - *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Surabaya), Hasanuddin(Makassar)
 - *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 수입라이선스 강화: 무역부는 2013.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
- *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
-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이 가능

2014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1) 수입규제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ASEAN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 관련 조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수입규제 내역

인도네시아는 한국제품에 대해서 반덤핑관세와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의 경우에는 2014.8월 현재, 열연코일, 냉연코일, Tinsplate Coil/Sheet 등 총 6건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거나 조사중에 있다.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는 철강제 연선, 무게목 강관, 갈바륨 등 총 7건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조사 및 부과된 상태이다.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 개시	최종 판정	품목	비고
연연코일 (Hot Rolled Coil)	7208.10.0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27/36/37 /38/39/90	반덤핑	'09.4.8	'11.2.7	철강 금속	한국: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하이스코를 제외한 모든 기업→3.8 % 기간 : '11.2.7 - '16.2.7
철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Steel Wire Rope)	7312.10.90.00	세이프 가드	'10.4.30	'12.4.19	철강 금속	1년차: 24,080 루피아 / Kg 2년차: 21,464 루피아 / Kg 3년차: 18,849 루피아 / Kg 기간 : '12.4.19 - '15.4.19
Tarpaulins made of Synthetic Fiber Other Than Awnings and Sunblind	6306.12.00.00	세이프 가드	'11.3.22	'11.11.17	섬유	1년차: 13,643 루피아 / Kg 2년차: 12,643 루피아 / Kg 3년차: 11,643 루피아 / Kg 기간: '11.11.17 - '14.11.17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	7209.16.00.10, 7209.17.00.10, 7209.18.90.00, 7209.26.00.10, 7209.27.00.10, 7209.28.89.00, 7209.90.90.00, 7211.23.20.00, 7211.23.90.90, 7211.29.20.00, 7211.29.90.00, 7211.90.10.00, 7211.90.90.00	반덤핑	'11.6.24	'13.3.19	철강 금속	-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 '13.3.19일 최종 판정 - 반덤핑 관세 : 현대 11%, 포스코 10.9%, 동부제철 10.6%, 동국제강 10.1%, 기타 11% - 기간 : '13.03.19~'16.03.19
Tin Plate Coil/Sheet	7210.12.10.00 7210.12.90.00	반덤핑		'14.01.15	철강 금속	- 대상국 : - 반덤핑 관세 : TCC Steel 6.2%, 동부제철 7.9%, 신화실업 4.4%, 기타 7.9%
면사 (Cotton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5205.27.00.00 5205.28.00.00 5205.33.00.00 5205.34.00.00	세이프 가드		'14.5.28	섬유	1년차 : 28,065 루피아 / kg 2년차 : 25,522 루피아 / kg 3년차 : 22,979 루피아 / kg - 기간 : '14.5.28~'17.5.28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 개시	최종 판정	품목	비고
	5205.46.00.00 5206.33.00.00 5206.34.00.00 5206.44.00.00					
면직물 (Woven Fabrics of Cotton, Bleached and Unbleached)	5208.11.00.00 5208.12.00.00 5208.13.00.00 5208.19.00.00 5208.23.00.00 5208.29.00.00 5209.29.00.00 5210.11.00.00 5211.11.00.00 5211.12.00.00 5212.11.00.00	세이프 가드		'11.3.23	섬유	1년차 : 116,800 루피아 / kg 2년차 : 109,500루피아 / kg 3년차 : 102,200 루피아 / kg - 기간 : '11.3.23~'14.3.23
한면 또는 양면을 도포한지와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board, not including Banknotes Paper)	4810.13.11.00 4810.13.19.00 4810.13.91.90 4810.13.99.90 4810.14.11.00 4810.14.19.00 4810.14.91.90 4810.14.99.90 4810.19.11.00 4810.19.19.90 4810.19.91.90 4810.19.99.90	세이프 가드	'14.6.20		판지	- 제기업체 :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합금강(&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7228.70.10.00 7228.70.90.00	세이프 가드	'14.2.12		철강 금속	- 제기업체 : PT Gunung Garuda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Wire Rod)	7213.91.10.00 7213.91.20.00 7213.91.90.00 7213.99.10.00 7213.99.20.00 7227.90.00.00	세이프 가드	'14.1.17		철강 금속	- 제기업체 : PT Ispat Indo, PT Krakatau Steel.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 개시	최종 판정	품목	비고
부분배향사 (Partially Oriented Yarn)	5402.46.00.00	반덤핑		'14.9.2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중국 - 제기업체 : PT Indorama Synthetics Tbk, PT Asia Pacific Fibers Tbk, PT Indorama Polyester Industries Indonesia
SDY (Spin Draw Yarn)	5402.47.00.00	반덤핑		'14.9.12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 제기업체 : PT Asia Pacific Fibers. Tbk, PT Indorama Ventures Indonesia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	7209.16.00.10, 7209.17.00.10, 7209.18.90.00, 7209.26.00.10, 7209.27.00.10, 7209.28.89.00, 7209.90.90.00, 7211.23.20.00, 7211.23.90.90, 7211.29.20.00, 7211.29.90.00, 7211.90.10.00, 7211.90.90.00	반덤핑 (중간 점검 조사 중)	'14.4.17			- '14.4.17일 인도네시아 반덤핑 위원회 냉연코일 반덤핑 관련 중간점검 (interim review) 조사 실시 - '13.3.19일 반덤핑 과세 조치 이후 냉연코일 수입 감소로 하부산업 (Downstream industry)의 냉연강판 부족분 발생

조세 제도

(1) 조세체계

국세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재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서 재건축세, 자동차세, 텔레비전세, 유흥세 등이 있다.



(2) 신고 및 납세방법

월별/연간 세금은 지정된 은행을 통하여 국고에 납부하고, 적절한 세금 신고를 세무당국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별 법인세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고 익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결산최종일로부터 4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하고, 연간 소득세는 결산 최종 일로부터 3개월되는 말일까지 납부 후 신고해야 한다. 지연납부에 대해 월 2%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법인세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고정사업장도 포함) 거주자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와 관련된 모든 현금보상, 보너스 및 수당은 어디에서 지급 되든 과세가 된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현물 지급의 모든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본옵션 계획 및 연불소득 계약은 통상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과세 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 25%가 적용된다. 다만 총 발행 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의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연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기업은 매출액의 1%를 최종분리과세로 적용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가 있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 예납해야 한다. 결산시 환급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조사 및 환급지연으로 인하여 법인의 현금흐름 애로가 빈발하고 있다.

(4)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은 임금, 상여, 근로보상금, 상금 등 국내원천의 모든 소득금액

이며 근로소득이외 금액은 부부합산 신고토록 되어 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이 연 1억2천만루피아 이상인 경우 가장된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며 동 금액 미만 사업자는 재무부령에 의거하여 추계 결정한다. 소득공제에는 본인공제(약 24백만루피아), 배우자 공제 (약 2백만 루피아), 기타 인적 공제(최대 3인, 각 약 2백만 루피아), 의료비 공제, 노후저축예금의 종업원 부담금 공제 등이 있으나 공제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개인소득세율은 종전 5단계(0~2천5백만: 5%, 2천5백만~5천만: 10%, 5천만~1억: 15%, 1~2억: 25%, 2억 초과: 35%)에서 4단계(0~5천만: 5%, 5천만~2억5천만: 15%, 2억5천만~5억: 25%, 5억 초과 30%)로 변경되면서 소득별 적용세율이 낮아졌다.

■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최초금액 - 50,000,000	5
50,000,001 - 250,000,000	15
250,000,001 - 500,000,000	25
500,000,000 -	30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종전 15,840,000루피아에서 2013년부터 24,000,000 루피아로 높아졌다.

(5) 거주자 과세 / 외국 주재원 급여에 대한 통제

‘거주자’는 12개월에 걸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납세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총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에 발생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조세협정하에서 단기방문 목적의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지급은 과세되지 않으며 어떤 비용공제도 받지 못한다.



현지 세무당국은 외국인 주재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현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직책별 급여소득 인정과표에 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 과세소득은 현지에서 비과세한다.

(6)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한·인니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용역수수료(Service fee)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고, 이자·배당·로열티 수취시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각각 10%, 10%, 15%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혜택은 소득 수취자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감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Domicile, CoD)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고정사업장 과세 등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양국 당국간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7)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최고 15%에서 최저 5% 범위 내에서 경제환경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세율로서,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다.

(8) 외국인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2010.4월부터 외국인 여행자가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점("VAT REFUND for TOURIST")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출국전 준비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항 부가가치세 환급 카운터에 제출하면 제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자카르타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Ngurah Rai 공항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 카운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식음료, 담배, 충기류 제품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한 점포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총액이 최소 500,000루피아 이상(구입금액이 최소 5,000,000 루피아 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서비스 시장

항공

최근 한-인도네시아간 협력 관계는 양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인해 경제통상 및 투자, 문화관광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의 문화·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증하고 있는 양국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ASEAN 10개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두번째로 큰 국가(싱가포르 1위)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도 2,000여개 이상으로 양국간의 항공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양국간 설정되어 있는 제한된 공급력 수준은 한국과 ASEAN 10개국 중 많은 국가가 자유화가 되었거나, 자유화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력을 설정하여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양국간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09년 43만4천명, '10년 51만1천명, '11년 61만2천명, '12년 65만5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4년간 연평균 13% 증가), 탑승률은 평균 75% 수준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교역규모 또한 등락세('09년 153억불, '10년 229억불, '11년 308억불, '12년 296억불, '13년 247억불)를 보이나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양국간의 항공수요 증가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간 항공시장의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의 항공 공급력 증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인도네시아 항공여객 수송실적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급	515,588	523,858	619,531	676,422	837,204	883,248	945,366
수송	384,595	404,518	434,159	511,204	612,429	655,321	712,757
L/F	74.6%	77.2%	70.1%	75.6%	73.2%	70.8%	75.4%

* 출처 : 한국공항공사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6.9% : 33.1%)

한·인도네시아 항공화물 수송실적

(단위: 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 인니	17,441	16,967	15,370	17,727	16,916	20,537	18,537
증감율	-	-2.7%	-9.4%	15.3%	-4.6%	21.4%	-9.7%
인니 → 한국	8,348	7,436	5,016	6,057	6,929	8,221	8,287
증감율	-	-10.9%	-32.5%	20.8%	14.4%	18.6%	0.8%

* 출처 : 한국공항공사 (국적사 : 외항사의 점유율 = 66.4% : 33.6%)

한인도네시아 교역실적

(단위: 백만불)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7,934	6,000	8,897	13,564	13,955	11,568
증감	37.5%	-24.4%	48.3%	52.5%	2.9%	-17.1%
수입	11,320	9,264	13,986	17,216	15,676	13,190
증감	24.2%	-18.2%	51.0%	23.1%	-8.9%	-15.9%
수지	-3,387	-3,264	-5,089	-3,652	-1,721	-1,622

* 자료 : 무역협회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은 '82.11.10 가서명을 거쳐 '88.11.10에 서명되었으며, '89.5.3부터 발효된 바 있다. 또한 '89.7.12 1차 개정 이후 '95.11.17, '00.5.31, '05.4.15, '07.3.28에 이어 '12.6.28 제7차 개정제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정항공사는 복수제에 따라 한국측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인니측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P.T. Mandala Airlines, PT. Air Paradise International(Denpasar-Seoul), PT.Metro Batavia PT.Batik Air Indonesia 등이 지정되어 있고 노선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한-인니 항공 노선구조 현황

구분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한국측	한국내 제지점	일본내 1지점, 대북 또는 홍콩, 마닐라 또는 방콕, 싱가포르 또는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덴파사 및 한국측 지정 2개 지점('95.11 AM)
인니측	인도네시아내 제지점	일본내1지점(←도쿄, '89.7), 대북 또는 홍콩, 마닐라 또는 방콕, 싱가포르 또는 쿠알라룸푸르	서울 및 인니측 지정 3개 지점 ('95.11 AM)

공급력은 여객에 대하여 주23회*('13년 하계부터), 기종 무제한(콤포지기로 가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다. 국적사 배분내역과 관련하여 대한항공(KAL) 주13회('00년 증대운수권(주3회) 내역: '01년 OZ에 주3회 배분, '01.5월 첫 취항, '05.9월 일부 운휴, '06년 운항중단, '07년 회수 및 '07.3월 KE에 배분)이며 아시아나항공도 10회로 '13.7월부터 인천-자카르타 주7회, 인천-발리 주2회 취항을 시작하였다. '14.4월부터는 대한항공이 주3회 추가 증편하여 운영중이며 가루다 항공도 주2회 추가운영방안을 현재 검토중으로 양국간 교류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항공 증편이 전망되고 있다.

운임은 신고제(인가제→ 신고제, '00.5 AM)이며 Code-sharing 등 상무협정과 관련하여서는 일국,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편명공유를 허용하되 해당항공사는 모든 구간에 운수권 보유가 필요('00.5 AM)하다. 항공안전 및 보안조항과 관련하여서는 '05.4.14~15 회담에서 신설된바 있다.

운항 현황('14.10월 현재)은 아래 표와 같다.

국적	항공사	노선 및 운항횟수
대한민국	대한항공 (주21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10회) 서울/덴파사르/서울(주9회) (貨) 서울/자카르타/쿠알라룸푸르/서울 (주2회)
	아시아나항공 (주9회)	(客) 서울/자카르타/서울(주7회) 서울/덴파사르/서울 (주2회)
인도네시아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주14회)	(客) 자카르타/서울/자카르타(주7회) 덴파사/서울/덴파사(주7회)



건설 및 부동산

(1) 법령 제도

○ 건설업 면허 제도

- 외국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R/O,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나 현지법인(PT,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로부터 건설업 면허(등급)를 취득할 필요
 - 구비서류(국내 PQ심사 서류와 유사): 국내외 공사실적, 본사 재무구조,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등
 - 면허관할기관: Dept. of Pekerjaan Umum
 - 면허시행기관: 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LPJK)

○ 건설면허는 G1~G7의 등급 규정 적용

- <입찰 참여한도> G5~7등급이 대기업으로 분류
- G7등급: 10억 루피아(10.5만불) 이상 한도 없음
 - G6등급: 10억~250억루피아(약 263만불)
 - G5등급: 10억~100억루피아(약 105만불)

○ 상기 건설업 면허 신청시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보편적

-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투자개발 업종으로 신고만 할뿐 특별한 허가요건이 없으며, 대단지 개발 인허가시 신청사의 자금력 등 증빙이 필요

(2) 인허가 절차

가) 토지개발권 신청 및 취득

- 대상토지의 유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토지에약허가(Land Resevation Permit, Surat Pencadangan Tanah (SPT))
- 자카르타의 경우는 Surat Persetujuan Prinsip Pembebasan Lokasi/ Lahan(SP3L)를 지역정부 책임자에게 사전에 받아야 할 필요
- SP3L 신청시 포함사항: 허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
 - 투자목적-부지개발계획
 - 토지취득, 재원조달, 실행,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영향 등에 관련 된 사항
 - 토지취득 및 사업실행 스케줄

나) 심의, 허가 등

- 자본투자승인
 - SP3L과 동시에 외국투자회사(PMA 회사)의 설립승인 신청
 - 승인은 자본투자승인서(Capital Investment Approval Letter, Surat Pemberitahuan Pesetujuan Presiden(SPPP))의 형태
- 위치허가 승인
 - 대상토지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거나 면적이 5,000m²을 초과할 경우 위치허가(Location Permit, Surat Izin Penunjukan Penggunaan Tanah(SIPPT))를 받을 필요
 - 개략디자인, 토지소유 증명서류, 토지 및 건물세(Land & Building Tax) 납세증명, 토지사무소의 추천장, 계획국 기술부의 계획 관련 조인, 회사등록사항 등을 제출하며 SIPPT는 주지사나 지역책임자가 발급
 - 토지사용기간은 위 SIPPT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 부지조사
 - 계획국이 부지조사를 하여 대지의 위치, 경계, 모양 등을 확인하여 Survey Site Plan(Peta Situasi Terukur)을 작성



- 개발계획 승인(Keterangan Rencana Kota or Advis Planning) 신청
 - 상기의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것으로 부지의 용도와 관련된 허가사항, 도로경계 및 도로확장계획 등을 명시
 - 승인신청시 포함되는 배치도에는 도로경계, 건축선, 건물의 배치, 부지형태, 고도제한, 구획 및 건폐율, 동선계획 등을 명시
- 개발계획 승인 취득후 Block Plan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Development Levy(개발세)를 내야 함.
 - 규모에 따라 다르나 약 500,000\$이 소요됨.
- 개발완료후 사용허가(Occupational Permit, Izin Penggunaan Bangunan) 신청

3) 공공사업의 토지취득 체계

가) 주요 경위

- 토지수용법 부재로 외국정부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ASEAN 국가의 건설사에 입찰을 주었으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약 5년 이상이 소요
-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2012.1.14일 ‘공익 위한 건설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Law No.2/2012)’을 발표
 - 토지 매입은 정부의 공간활용계획(Spatial Zoning Plan), 국가지 역발전계획, 전략적 계획,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작업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토지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소유
 - 이 법률 10조에서 명시한 공익에 해당 부분은 국방 및 보안, 국도·고속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상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등으로 정의
 - 이 법률은 공익위한 ‘토지매입 조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입과 예산 지출에 근거한 한다.’라고 명시

나) 대통령령 발효

- 8개월간 진통 끝에 대통령은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대통령령(PR No.71·2012)’ 발표
- 이 대통령령은 토지수용 절차별(계획, 준비, 실행, 종료) 기한과 총 수용기간을 구체화(최대 583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
 -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구체방법(현금, 대토, 이주, 지분참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방법 등)을 명시
 - 토지수용대상자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토지청(BPN: Badan Petanahan Nasional)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근거해 토지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지급 가능

다) 세부 토지수용 단계

- (1단계) 계획단계
 -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은 공간 활용계획과 발전 우선순위에 관한 토지수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 정부에 제출
 - 토지수용계획서에는 개발계획 의도와 목적 등이 포함될 필요
 - * 개발계획의 의도와 목적, 공간활용계획과 국가지역발전계획의 일관성, 토지 위치, 토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 토지매입의 예상 소요기간, 건설의 예상 소요기간, 토지 예상가치, 예산 계획
 - 토지수용계획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 * 지역사회경제조사, 지역 타당성조사,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토지 예상가치, 환경영향평가 등
- (2단계) 준비단계
 - 주지사는 토지수용 계획서 수령 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토지매입 준비팀(시장·군수, 지역정부 예산 및 자산관리 조직, 토지사용자, 기타 관련기관)을 구성할 필요
 - 준비팀은 주지사가 토지수용계획서를 수령 후 적어도 20일 이내로 건설계획을 발표
 - 건설계획 발표 후 적어도 30일(근무일) 이내로 당사자들과 토지



에 대한 예비정보 자료를 수집

- 준비팀과 관련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토지위치를 위한 공청회를 끝내야 함.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 내 재 공청회를 개최

* 관련 당사자(Pihak Yang Berhak):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 관습적 토지소유자, 공공토지사용권자, 미이전등기 실소유자, 건물·밭 등의 소유자 등

- 공청회에서 토지위치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주지사는 토지 사용 허가권을 발급(SP2LP)
- 재 공청회 후, 반대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지사는 평가팀을 구성해 14일(근무일) 이내로 반대의견을 철회 및 수용할 지를 결정할 필요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 토지사용 희망 기관은 토지위치를 재조정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SP2LP를 발급
- 관련 당사자들은 30일(근무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행정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근무일)이내 판결을 완료, 패소 시 판결 이후 14일 이내 대법원에 재소하고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판결

○ (3단계) 토지매입단계

- 토지청(BPN)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 목록·소유주·활용, 토지 가치의 측정
- 보상 협상은 토지가치의 평가 후 최장 30일간 진행
- 토지가치의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 후 14일 이내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 수령 후 법원은 3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의 결정 파기를 위해 판결 후 14일 이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30일 이내로 판결해야 함

- 보상의 형식은 현금, 토지 교환, 위치 조정, 지분 참여(국영 공기업 부만 가능), 당사자들간 동의 방식이 존재
- (4단계) 이행단계
 - 토지청장은 토지권리 포기 후 최대 7일 이내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본 2부를 작성해 토지사용자에 1부 양도해야 하고, 사본은 토지청에서 보관
 -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토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토지청장이 위원장인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결과를 받은 후 토지사용자는 건설 시작 가능
 - PR 71/2012 법률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는 이전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와 No.65/2006)에 의해 12.31일까지 적용
 - 2015년부터는 토지매입은 PR 71/2012에 따라야 함.

라) 제도의 평가

-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지수용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업계는 지적
-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거에 부재하던 토지수용법 제도를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4)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신청서(Building Permit Application) 및 설계도면을 첨부, 건물소재지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신청서 제출에서 허가까지 통상 3개월 소요(건축허가의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



요금 요구 관행)

- 절차상 우선 부지계획(Block Pla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상세도면과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건축허가서 취득과 동시에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수행
- 시공단계에서 관련기관의 단계별 검사를 거쳐 공사가 마무리되면 컨설턴트가 점유허가(OP, Occupancy Permit)를 신청하고 OP를 취득하면 비로소 건물사용이 가능

구분	인허가 종류	준비설계도서	승인기관
1단계	Permit of Location		BPN(인니 토지청)
2단계	Permit of Land Use Designation(IPPT)	Building Design(조감도포함)	City Planning Department(DPPK)
3단계	Site Plan - Advice Planning - Block Plan	Building Layout Plan	City Planning Department(SDPPK)
4단계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AMDAL)		BPLHD
5단계	Recommendation from Fire Department		
6단계	Building Permit(IMB)	Architect Drawing	DPPK SDPPK
7단계	Permit of Using Building(IPB)		DPPK

통신서비스

(1) 전체 ICT 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인도네시아 ICT 시장은 약 170억불 규모(2012년 기준)로 통신분야가 전체의 66%, 휴대폰·PC 등 하드웨어 분야가 24%,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IT서비스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ICT 시장 규모는 아시아 국가들 중 중간 정도로 평가되나 성장률은 연 15%로 매우 높은 편이다. ICT 분야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2% 내외에 불과하고, 통신 인프라 등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 역설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ICT 시장 규모

(단위: 억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하드웨어	24.2	31.6	38.0	42.0
소프트웨어	6.0	7.7	5.9	6.9
서비스	4.1	5.3	8.7	9.9
통신	86	93	101	112
합계	120.3	137.6	153.6	170.0

출처: 자카르타 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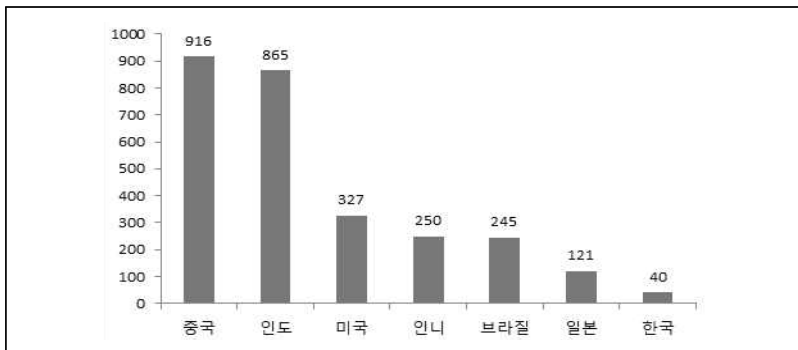
인근 국가에 비해 비교적 성장이 늦었던 이유는 국토가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여건 외에도 소비자 구매력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득 증대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와 PC 및 핸드폰 구매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국가적 어젠다에 의한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주목 받는 시장이다.

(2) 통신 서비스 시장

2012 기준 유선 가입자는 8백만에 불과하지만, 무선 가입자는 2억5천만 명으로 브라질, 일본보다 많으며, 2015년 3억3천만 가입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넷 가입자는 2012년 기준 약 6천3백만명으로 매년 20~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 약 1억4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사용도 2012년 3천3백만대이나 2015년에는 7천5백만대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위터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트위터와 페이스북 중심의 SNS 서비스 사용자 수는 전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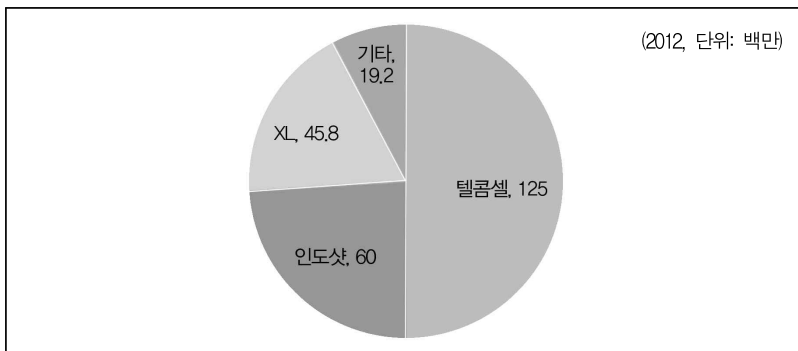
■ 국가별 Mobile 사용자 수 비교



출처: IDC 및 자카르타 무역관

인니 이동통신 서비스는 3G 위주이며 4G LTE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다만, 최근 발리에서 열린 2013 APEC 행사시 4G LTE를 시범적으로 서비스한 바 있고, 조만간 4G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인니 당국은 10여개나 되는 통신사를 인수/합병 등 구조 조정을 통해 5~6개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 바, 신규로 외국 기업이 LTE 주파수를 할당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시장은 빅3 통신사(국영 Telkomsel, Indosat, XL)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이다.

■ 이동 통사별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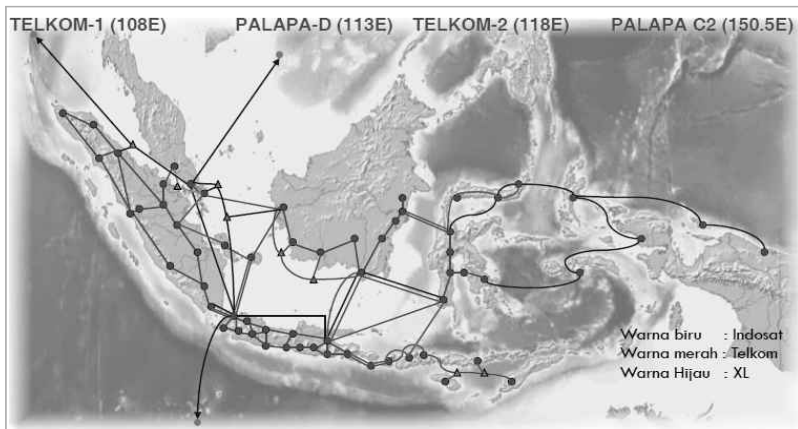
출처: IDC 및 자카르타 무역관

(3) 통신 인프라

국내 유일의 유선사업자인 Telkom은 국가 통신망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사업인 광케이블 설치 작업이 80% 이상 진행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니 통신 정보부와 Telkom이 함께 추진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는 총 길이는 57천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가네트워크 사업으로서, 도시화정도에 따라 광케이블, Wireless, 위성 등의 통신 방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정보부의 USO(Universal Service Obligation) 프로그램에 따라 전국 4만3천여개 마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약 5천여개 마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USO 예산은 통신사업자 수익의 1.25% 기부로 충당이 되고 있다.

■ Palapa 프로젝트 광케이블 설치 계획



(4) 외국인 투자 규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2014년 개정된 Negative List(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대통령령 제39호)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지역 방송국(라디오, TV), 인터넷 카페,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전용 업종이고, 공영 TV 및 라디오는 국내 방송사



독점이며,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잡지/뉴스레터(보도) 발행의 경우는 100% 국내자본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유무선/위성 통신망 서비스와 통신서비스와 통합된 통신망 분야(65%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 콘텐츠, 콜센터, 인터넷 공급, 데이터 통신 시스템, 인터넷 전화, 기타 인터넷 서비스 분야(49%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우편(49%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통신장비 검사업(95%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사설 방송국 및 청약제 방송국(사업 확장시만 20%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등이다.

또한,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은 다른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100% 국내 자본만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니 고객에 대한 인터넷 관련 공공 서비스 시에 데이터센터를 반드시 인니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Data Localization)는 규정이 제정되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종 투자에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

(5) 외국기업 진출전망 및 장애요인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분야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하드웨어의 경우, 저가 중국산 핸드폰 압박(현재 M.S. 30%) 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갖춘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은 지속 증가 전망된다. 둘째, 소프트웨어 분야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Banking 및 증권거래 시스템, GIS, 사이버시큐리티 부분에서 외국의 솔루션 진출이 유망하다. 셋째, 전자정부 부문의 경우, 정부투명성 요구 증대에 따라 국세, 조달, 관세 등 수요증가 예상되며, 내부 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제, 재난관리시스템 등도 인니 정부가 투자를 원하는 분야이다. 넷째, 이동통신 분야는 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송수신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LTE 시장에 대한 라이선스 획득 등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수

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도 인니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ICT 인력 시장의 경우, 매년 30만명 필요로 하나, 현재 2만명 졸업생 정도 밖에 배출되지 않아,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하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교육 수요 및 외국기술자 유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서비스 등 ICT 분야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나 유의사항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사업발굴 및 실현 단계의 애로사항으로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 유통, 브로커들의 과도한 개입, 동일 국가 업체끼리의 경쟁 등이 사업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서, ICT 및 전자정부 추진의지는 강하나, 과도한 요구나 성사단계에서의 갑작스런 취소 등으로 외국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예, 인니정부의 모바일 콘텐츠 일괄 Shut-Down으로 외국 중소기업 피해 사례, 국세청 세정관리시스템 입찰 취소 사례 등). 셋째, 물류 및 통관 낙후성으로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규제, 투명하지 못한 통관과정, 물류의 비효율성 등은 상당한 비용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문화 및 의사소통 한계로 인한 애로사항으로서, IT 및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요구 파악 및 반영이 필수적이나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는 것도 투자/진출에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통관 운송

수입통관제도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통관 사후심사 원칙(Post Auditing)이며, 지역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FCL 화물검사시 종전 샘플검사에서 100% 검사로 검사를 강화하였다. 수입자 필수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 허가(APIU), 세적등록(NPWP),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등이 있으며,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사치세(Luxuary Tax; PPNBM), 소비세(CUK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 있다.

수입통관절차는 ①수입 제세를 은행 납부후 수입신고서(PIB)를 세관에 전송(EDI SYSTEM) ②세금 납부가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서를 접수 ③세관의 수입신고서 접수 확인이 되면 원본서류를 세관에 제출 ④세관에서 원본 서류 접수 이후 검사 또는 검사생략 결정 ⑤통관승인, 화물출고 동의서 수령 및 창고비 지불후 출고 등으로 진행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첨부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B/L 사본도 인정된다고 하나, 일선에서는 아직도 원본 제출 요구)하여야 하며, 화물검사시 수입신고서 내지 선적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고액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B/L상의 수하인과 수입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선적 서류상 수량·중량 및 B/L No·C/T No 등의 일치도 필요하며, 정확한 품명 기재가 요구된다. 수입신고시 법규위반 내지 신고오류는 수입업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관당국은 신용데이터에 따라 수입자를 차별 관리한다.

보세지역(KB) 제도

인도네시아는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세지역(Kawasan Berikat; Boded Zon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세창고·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 등의 보세구역제도가 있다. 또한 보세업체는 아니지만 수출 장려책으로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³제도를 운영하여 관세

면세(담보설정) 및 부가세 유예(담보설정) 혜택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2. 1월부터 보세지역(KB)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하였는 바, 주요 목적은 보세지역 제도의 원래 기능 환원, 서비스 향상과 보세지역 통제강화, 보세지역 전산화 및 보세지역 위치 통합 등이다. 인도네시아의 보세지역으로부터 수출입은 일반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과 비교하여 세관의 통제가 비교적 많지 않아 왔으나 2013.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내수판매를 종전의 전년도 수출금액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보세지역업체의 IT Inventory설치를 의무화(2014.10월부터 실시)하면서 모든 보세지역업체를 위험도에 따라 적색(Red), 황색(Yellow), 녹색(Green)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하면서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세지역에서 밀수 또는 보세물품 국내 무단 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인도네시아세관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세관직원은 보세업체 현지직원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세지역에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일반 수출입절차와 유사하나, 보세지역 관할세관에서 보세지역으로 현지 파견된 공무원이 물품 관리를 하고 항만세관에서는 물품검사를 생략하므로 항만세관에서는 신속히 통관되고 있다.

수입자 및 수입물품 위험관리제도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통관경로(Channeling System)를 지정함으로써 수입통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3_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Import Facility for Export Purpose)제도: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조립용 원자재, 수출 물품에 설치될 물품, 수출용 물품 등이 수입되는 때에 관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등)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



- 적색경로(Red Channel): 고위험 업체
- 황색경로(Yellow Channel): 위험 업체
- 녹색경로(Green Channel): 우수업체
- MITA 특급경로(MITA: Mitra Utama): 최우수업체
 - Priority Channel 업체
 - Non Priority Channel 업체로 구분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법규준수도 및 신용도가 높은 우수 성실업체에 대해 MITA 채널로 지정, 혁신적인 통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당국에서 Channel 분류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신용도 및 재정능력이다. 인도네시아에서 Red Channel 자격으로 무역을 하는 경우 통관 지연 등 애로가 많으므로 가능한 Yellow Channel 이상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평소 관세법규 위반 내지 각종 신고오류를 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관에서 Channel 분류 실사 시 가능한 많은 회계자료를 보여 주고 당해업체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우수회사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Green 혹은 Yellow 지정에 유리하다.

노무관리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의 특징

인도네시아의 노동관계법은 법률 및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장관령(Peraturan Menteri),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 대통령지시(Instruksi Presiden)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노동관계법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Undang-Undang tentang Ketenagakerjaan): 근로기준법에 해당
- 노동조합법(Undang-undang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 산업관계분쟁해결법(Undang-undang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 근로안전법(Undang-undang tentang Keselamatan Kerja)
- 근로자사회보장법(Undang-undang tentang Jaminan Sosial Tenaga kerja)
- 해외 인도네시아근로자 보호 및 배치법(Undang-undang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시간: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휴가: 12개월 근무 시 연 12일의 휴가
- 6년 근무 시 7년 8번째 1개월의 휴가
- 종교활동: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초과근무: 1일 3시간, 최대 주 14시간까지만 허용

근로계약서 관련

노사 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관계법령에 따르되 근로자의 의무를 상세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하며 노동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회사와 근로자의 기본정보
- 직책 및 직무의 종류
- 급여 액수 및 지급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 발효 시점 및 기간
- 근로계약 체결 장소 및 일자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서명



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해고를 ‘근로관계단절(pemutusan hubungan kerja, PHK)’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가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해고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한 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각각 6개월간 유효하다.

퇴직금제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퇴직금은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상의 과도한 퇴직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 지급 기준

- 해고수당(uang pesangon): 노동법 제156조 제2항
 - 1년 미만: 1개월 급여 임금
 - 1~2년: 2개월 급여
 - 2~3년: 3개월 급여
 - 3~4년: 4개월 급여
 - 4~5년: 5개월 급여
 - 5~6년: 6개월 급여
 - 6~7년: 7개월 급여
 - 7~8년: 8개월 급여
 - 8년 이상: 9개월 급여
- 근속수당(uang penghargaan): 노동법 제156조 제3항
 - 3~6년: 2개월 급여
 - 6~9년: 3개월 급여
 - 9~12년: 4개월 급여

- 12~15년: 5개월 급여
- 15~18년: 6개월 급여
- 18~21년: 7개월 급여
- 21~24년: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10개월 급여
- 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 노동법 제156조 제4항
 - 연차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
 -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데 따른 이 전비
 - 근로자의 해고금 및 근속수당의 15% 상당의 보상비
 - 기타 고용계약 또는 사규, 단체 근로협약에 규정에 따른 사항

노동분쟁 해결 절차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특히 1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인력이주부장관에게 제소할 수 있으며 인력이주부장관은 제소 후 7일 이내에 중재 및 조정애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2011년 제24호)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근로자사회보험기관인 잠소스텍(JAMSOSTEK)이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으로 전환되었으며, 산재, 노후, 사망 및 연금보장을 관리하는 근로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과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sehatan)이 각각 설치되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의무가입대상이며 2015년 7월 연금보장을 포함하여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록의무를 게을리하



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지방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종전에 비해 근로자 및 건강 사회 보장제도의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진출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저임금제도

현행 노동법 제88조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합당한 생활에 충족하는 소득 실현을 위해 임금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생계비 및 생산성,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주(provinsi) 및 시·군(kota, kabupaten) 단위에 노·사·정 대표,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적정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조사하고 다음 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주지사에게 통보하면 각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지역에서의 최저임금수준을 정하여 주지사에게 금액을 추천하며 모든 지역임금의 최종 결정 및 고시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2014년도에 제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2014년도 대통령지시 및 인력이주부장관령에 의해 주최저임금(UMP)은 매년 11월 1일 모든 주가 동시에 발표하며, 시·군 최저임금(UMK)은 늦어도 11월 21일까지 주지사가 결정·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적정생계비 계산을 위한 시장가격조사 항목(component)은 음식, 의류, 주택, 교육, 의료비, 교통비, 여가선용 7개 분야에서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부터 종전 46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지역별 최저임금(UMP, UMK)는 각 지역별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적용하는데 특히 적정생계비 조사 항목에 대하여 노사 간 입장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3.9.27일

대통령이 서명한 지방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인 「근로자 복지 향상과 사업지속 계획 내 최저임금결정 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를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관계 장관과 지방정부의 장에게 적정생계비,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 조응하는 최저임금인상을 권고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저임금은 매년 11월 1일 동시에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2013년 제7호)도 입안되어 최저임금 결정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졌다.

한편,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주지사는 최저임금 적용유예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예절차는 장관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 2014년 각 주별 월 최저임금

(단위: 월, Rp)

	주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2010	2011	2012	2013	2014	
1	Aceh	1,300,000	1,350,000	1,400,000	1,550,000	1,750,000	13
2	North Sumatera	965,000	1,035,500	1,200,000	1,375,000	1,265,000	10
3	West Sumatera	940,000	1,055,000	1,150,000	1,350,000	1,490,000	10
4	Riau	1,016,000	1,120,000	1,238,000	1,400,000	1,700,000	21
5	Riau Islands	925,000	975,000	1,015,000	1,365,087	1,665,000	22
6	Jambi	900,000	1,028,000	1,142,500	1,300,000	1,502,230	16
7	South Sumatera	927,825	1,048,440	1,195,220	1,350,000	1,825,600	35
8	Bangka Belitung	910,000	1,024,000	1,110,000	1,265,000	1,640,000	30
9	Bengkulu	780,000	815,000	930,000	1,200,000	1,350,000	13
10	Lampung	767,500	855,000	975,000	1,150,000	1,399,037	22
11	West Java	671,500	732,000	780,000	850,000	1,000,000	18
12	DKI Jakarta	1,118,009	1,290,000	1,529,150	2,200,000	2,441,000	11
13	Banten	955,300	1,000,000	1,042,000	1,170,000	1,325,000	13
14	Central Java	660,000	675,000	765,000	830,000	910,000	10
15	Yogyakarta	745,694	808,000	892,660	947,114	988,500	4
16	East Java	630,000	705,000	745,000	866,250	1,000,000	15
17	Bali	829,316	890,000	967,500	1,181,000	1,542,600	31



	주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
		2010	2011	2012	2013	2014	
18	Nusa Tenggara Barat	890,775	950,000	1,000,000	1,100,000	1,210,000	10
19	Nusa Tenggara Timur	800,000	850,000	925,000	1,010,000	1,150,000	14
20	West Kalimantan	741,000	802,500	900,000	1,060,000	1,380,000	30
21	South Kalimantan	1,024,000	1,126,000	1,225,000	1,337,500	1,620,000	21
22	Central Kalimantan	986,590	1,134,580	1,327,459	1,553,127	1,723,970	11
23	East Kalimantan	1,002,000	1,084,000	1,177,000	1,752,073	1,886,315	8
24	Maluku	840,000	900,000	975,000	1,275,000	1,415,000	11
25	Maluku Utara	847,000	889,350	960,498	1,200,622	1,440,746	20
26	Gorontalo	710,000	762,500	837,500	1,175,000	1,325,000	13
27	North Sulawesi	1,000,000	1,050,000	1,250,000	1,550,000	1,900,000	23
28	Southeast Sulawesi	860,000	930,000	1,032,300	1,125,207	1,400,000	24
29	Central Sulawesi	777,500	827,500	885,000	995,000	1,250,000	26
30	South Sulawesi	1,000,000	1,100,000	1,200,000	1,440,000	1,800,000	25
31	West Sulawesi	944,200	1,006,000	1,127,000	1,165,000	1,400,000	20
32	Papua	1,316,500	1,403,000	1,585,000	1,710,000	1,900,000	11
33	West Papua	1,210,000	1,410,000	1,450,000	1,720,000	1,870,000	9

인증제도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 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TV나 PC 등 부품으로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관 시 SNI인증강제 적용 품목군〉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되며, 2014년 4월 현재 강제인증 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해당 품목의 SNI 리스트에 포함 여부는 품목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결정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



고 2014년 국가규격인증(SNI) 강제 품목 리스트에 66개 품목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신규 추가 품목으로 식품, 음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4년 3월 이미 한차례 94개 품목을 강제 인증 리스트에 추가한바 있다. (농업부문 제품 6개, 식음료제품 12개, 기초금속철-철강 제품 12개, 비료-석유화학 제품 12개, 신발-가죽 제품 3개, 봉제 제품 1개)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 (대략 3명을 3일간 파견) 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자에게 부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관련기관>

-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유관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

- 기관명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Indonesia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 주 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10270, Indonesia
- 전화번호 :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 팩 스 : +(6221) 5747045
- 이메일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

-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수여 여부를 결정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5개에 이르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며, 또한 각 정부부처는 품목별로 정부가 권고하는 실험인증 기관 목록을 발표

실험인증기관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 62-21-798-3666 / Fax :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 62-21-5794-4579 / Fax : 62-21-5794-4575

<등록 절차>

- SNI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 검사로 구성
- (1단계) SNI 인증 신청
 - LSPro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단, 인허가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규 등록 또는 연장 신청 시 각 별도의 신청서 사용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만이 SNI 신청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입상 지정하여 수입상이 SNI 취득 절차 진행
- (2단계) LSPro의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는지, 제대로 작성됐고 유효한지 LSPro에서 확인
 - SNI 등록 단계에 맞는 등록비 청구



- (3단계) 기술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 (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하고,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 가능
- (4단계) 패널 최종 검사
 - 패널은 의장 1인 그리고 7명의 전문가로 구성
 - 테스트 이전 서류 검사 결과에 의거, SNI 발급 여부 결정하는 단계이며 만약 수정사항을 요할 경우 신청서를 수정해야 함.
- (5단계)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서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

<소요 기간 및 비용>

-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되며,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미화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외환 관리 및 자금 조달

투자 자금

중앙은행(Bank Indonesia)이 외환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외환통제가 없어 투자자들은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투자 총액은 루피아로 환산하여 결정되는데,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 손익은 투자사의 회계장부에 할인 또는 프리미엄으로 계상되며 미실현 손익으로 인식된다. 환차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배당의 원천이 될 수 없으나 청산 시는 송금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투자계획을 이행하는데 소요될 자금의 인도네시아로의 반입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금계정

회계단위는 루피아가 원칙이나 외화계약도 인정된다. 영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루피아로 이루어지나 많은 계약이 외화 즉 달러나 엔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수 통화 바스켓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연동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요 교역통화의 현금계정 설치에 외국환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자본 및 이익의 송금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익배당금, 청산소득, 급여,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로열티 등 인도네시아 투자로 인한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외국인자본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에서 모든 주요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열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청산 후 잔여금
 - 손해 배상
 - 인수비
 -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식재산권비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자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열티 및 기타 부과금 징수 시
 - 투자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집행 시

< 환전 송금 제한 사항 >

- 실수요증빙제 - 환전거래(통화파생상품 포함)의 경우 중앙은행은 2008년 12월부터 루피아 통화가치 안정 및 투기거래 방지목적으로 증빙없이 은행을 통한 외화매입을 동일인당 월 \$100,000 상당액(송금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증빙제”를 실시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NPWP), 실수요증빙확인서(은행 소정양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 송금목적 - 인도네시아는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 US\$ 10,000 초과 송금거래 시 자금 용도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계좌종류,

거래당사자 자격,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거래목적 등, 예: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 등).

-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후 이익, 특정 비용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예) ① 자본금, ②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③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계속사업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자금, ④ 투자에 필요한 추가 자금, ⑤ 차입금 상환, ⑥ 로얄티 등 지불 의무가 있는 사항, ⑦ 외국인 근로자 급여, ⑧ 회사 청산 후 잔여금, ⑨ 손해 배상금, ⑩ 인수비, ⑪ 계약서로 약정된 기술비, 경영용역비 및 지적재산권 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산업디자인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 한국 영화를 까지도 미화 1달러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제품은 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의 간이 매장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Special 301조 보고서를 통해(지식재산권침해) 인도네시아를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팀을 2005년 하반기부터 격상시키는 등 표면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강화해 왔으나 실질적인 억제효과는 별로 없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사이에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을 2% 줄이는데 그쳤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의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상위 11번째 국가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87%가 불법 복제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13억달러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영화, 음반, 드라마 등의 불법 CD나 DVD가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상표

인도네시아 상표법이 주지·저명한 상표(Well-Known Mark)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부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지·저명한 상표의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 상표출원 등록 절차

- 소정 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특허국에 신청
- 외국 소재 신청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신청 시 1주일 이내 상표출원. 등록 접수증 발급
- 상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9개월 이내에 심사 종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출원자에게 통보하며, 출원자는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 심사에 통과하면 3개월간 공고 실시하며, 등록에 이의 있는 자는 공고기간 중 이의 신청 가능. 이의서 접수 시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 제출 가능. 이의서와 반박서가 접수되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 실시
- 재심사 실시 후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위원회(Appeal Commission)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여부에 관해 최종 결정
- 공고기간 중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증 교부

(2) 상표권의 등록유지

-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매 10년마다 갱신 가능. 보호기간 종료 12개월 전에 연장 신청

(3) 상표권의 등록취소

- 상표가 등록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3년간 연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상표가 등록 출원시 신청했던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4) 우선 등록주의 채택

- PARIS 협약 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 상표 등록을 마친자가 최초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하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
- 최초 상표등록을 출원한 국가에 출원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인도네시아에서도 상표가 이미 등록 되어진 것으로 인정

특허

특정기간 동안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 권리이다. 발명자는 발명 자체에 대한 권리 이행자이면서 타인에게 동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취득조건

-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한 가지 발명에 대해 한 가지 특허권 부여
-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할 필요
- 발명가 또는 일반인은 특허신청을 함으로써 동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지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Patent Consultant를 대리인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



(2) 특허출원절차

- 소정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발명에 관한 설명서와 함께 제출
-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18개월 후에 6개월간 공고
- 특허등록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가능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항변서 제출
- 출원인은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 요청
-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여부 결정

(3) 취소사유

- 특허권 승인일로부터 4년간 권리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연간수수료(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 특허사항이 다른 특허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발명 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미 특허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자가 취소소송을 함으로써 특허가 취소

(4) 의장

상표권에 준하여 취급되며 등록절차 등 제반 사항이 상표권 담당기관인 특허국에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

적용대상

- 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의 모든 창작물
- 비인도네시아 시민, 거주자, 법인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최초로 창작한 것

효력

책, 팜플렛, 논설, 강의, 연설, 통역, BATIK을 포함한 그래픽예술, 작곡, 건축술 등 최초로 등록된 창작물은 저자 생애기간은 물론 사후 50년까지

지 보호를 받는다.

음악쇼, 전통음악 및 노래, 드라마, WAYANG 연극, 판토마임, 영화촬영기술, 비디오 녹화, 음향녹음 등은 최초 발표 후 50년간 보호를 받는다.

사진 촬영기술, 컴퓨터 프로그램, 번역, 각색 등은 최초 발표 후 25년간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되며,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나, 저작권 존속의 증거가 된다.

(1) 저작권등록절차

- 저작물 등록신청서 작성
- 저작권등록을 위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
- 형식심사 요건 누락시 3개월 내 통보 및 보완
- 형식요건 및 실질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3개월 내 저작권등록증명서 발급

(2) 저작권 보호범위

- 인도네시아인의 저작물
- 인도네시아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맨 처음 공표한 저작물
- 인도네시아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자 협약 또는 다자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시민이 창작한 저작물

산업디자인권

법률 No.19/2002 은 저작권, 법률 No.14/2002 는 특허권, 법률 No.15/2001은 상표권, 법률 No.30/2000 은 사업기밀, 법률 No.31/2000은



의장(산업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산업디자인은 미적 인상을 주는 창작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제품이나 수공예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등록 출원절차

- 산업디자인등록신청서와 산업디자인의 물리적 예시 등을 제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
-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출원인은 이의제기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심사관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여부 결정

(2) 산업디자인권자

- 디자이너
- 디자이너와 정부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 디자이너와 사기업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디자이너가 산업디자인권을 보유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의 주요경제지표

구분(단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f)
인구(만 명)			1,580.0	1,620.0	1,655.0	1,692.0	1,716	1,730
G D P	총액 (억 텡게)		155,574	208,440	268,470	287,960	395,099	401,469
	(억달러)		1,056	1,415	1,831	1,931	2,171	2,206
	성장률		1.2%	7.3%	7.5%	5.0	5.9	3.9
	1인당 GDP		\$6,683	\$8,734	\$11,300	\$13,743	\$14,391	\$15,013
인플레이션(%)			7.3	7.1	8.8	5.1	4.6	7.6
평균환율			148.2	147.4	146.6	149.10	153.61	182.07
대출금리(%)			6.8	7.0	7.5	6.6	6.3	7.8
무역 (억달러)	교역량		727.3	927	1,296	1,378	1,331	1,322
	수출		439.6	608	884	900	834	855
	수입		287.7	319	412	477	497	467
	무역수지		151.9	289	472	422	337	388
총외채(백만달러)			111,096	118,151	124,670	111,019	148,734	N/A
외국인 직접투자(백만달러)			21,437	22,246	23,506	27,007	24,137	N/A
실업률			6.3	5.8	5.4	5.3	5.2	11.3
외환보유고 (억달러, 국가기금포함)			476	589	729	860	895	N/A

자료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 Kazinvest. * f : 2014년 추정치

2007.9월 미국 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신용 경색 및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GDP 성장률이 2008년 3.2%, 2009년 1.2%로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제 회복 및 국제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면서 2010년 7.3%, 2011년 7.5%, 2012년 5.4%, 2013년 6%의 GDP성장률을 시현하였다. 2013년말 생산이 예



정되어 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카사간 유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경제성장률은 6~7%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최근까지 전망되었다, 그러나 동 유전의 석유생산이 2016년으로 지연되고 2014년 2월 20%의 자국화 평가절하조치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률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6%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2014 혁신산업개발계획”을 통해 산업다변화에 기반 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1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장기발전 전략 <카자흐스탄-2050>을 통해 교육, 보건 개선,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선진국 3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1.1일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관세동맹이 발효되어 회원국 간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러시아-카자흐-벨라루스 3국간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출범시 회원국간 경제통상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카자흐 양국 간 교역은 1992년 11백만 달러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7년에는 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2008년 6.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 들었으며, 2009년에도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0년에는 양국 간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약 98%가 증가한 9.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한 11억 달러에 이르러 양국 수교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 대를 돌파하였다. 2012년에는 수출액은 17%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8 % 감소하여 전체 교역 규모는 2011년과 유사하다. 2014.1~8월말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US\$9.3억이며, 그 중 수출이 US\$5.9억, 수입이 US\$3.4억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주요 수출품목(MTI 2단위 기준)은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축산물, 정밀화학제품 등이다.

2014.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 투자금액(신고누계)은 약 US\$24억에 달한다. 주요 투자프로젝트는 LG전자 현지 생산 공장, 국민은행 BCC 은행 지분인수, 우림건설 및 동일토건 주택건설, 삼성물산 발하쉬 발전소 건설, LG 화학 아티라우 화학단지 건설 사업 등이 있다.

■ 한-카자흐 교역현황

구분(백만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년	2014년(1~8월)
교역규모	474 (-32.1)	938 (97.8)	1,134 (20.9)	1,193 (25)	1,323 (10.8)	938 (N/A)
수출	307 (-11.4)	604 (96.2)	757 (25.3)	885 (17)	1,074 (21.4)	590 (-14.8)
수입	166 (-52.5)	333 (100.7)	377 (13.2)	308 (-18)	249 (-19.2)	348 (185.3)
무역수지	141,584	270	380	577	825	243

자료원: KOTIS, WTA, KITA.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걸쳐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카자흐스탄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수량, 과세금액, 적용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1) 관세, 2) 통관비용,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80% 등으로 세분화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¹⁾가 적용되며,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기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1_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취지 아래 2009.1.1부터 부가가치세가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된 데 따름.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입 제품의 서류상 기재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 등이다.

수출관세율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하는 것에 반해, 수입 관세율은 관세동맹의 관세동맹 관세위원회에서 정한다.

통관신고는 상품 반입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통관승인은 1년간 유효, 통관신고, 서류 및 상품의 검사는 통관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벨라루스와 2009.11.27일 3국 관세법을 서명함으로써 2010.1.1일부로 관세동맹을 출범시켰다. 동 관세동맹 출범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통합관세지역 출범: Special Protection, anti-dumping, 또는 Compensatory measure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 및 경제적 제재가 없다.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 지역 내에서는 미관세이며, 어떠한 경제적 제한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간편한 세관수속이 제공된다.
- 관세관련 이슈에 관한 통합규정 적용: 외국경제활동에 있어서 관세 기관 및 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 통합세관절차, 분류, 관세가치 및 상품원산지 결정에 관한 통합규정 등이다.
- 통합관세율 규정 적용
- 통합비관세율 규정 적용

수입부과금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특별 수입부과금 또는 기타 부과금은 없다. 다만, 2011.8월 설탕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톤당 140달러의 수입관세를 부과 조치한 바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 또는 중개인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정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지위부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제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 지위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에 의거 수출입 안정우수인증업체(이하 AEO)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한다.

AEO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관세법 63조, 총 7개의 조건)

-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 2년 이상 대외무역활동 수행
- 관세 및 세금 채무 부재
- 조세 채무 부재
- 법적 기록(체납 및 벌금 등) 부재
- 행정 제재 부과 행정 제재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 물품 검사 시스템 보유

상기 조건에 부합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무작위 출하 세관검사가 실시되며, 동 검사 일환으로 국가기관(세무당국, 검찰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한다. AEO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인은 관세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 신청서
-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증증명 사본
- 세관기관 지정양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
- 관세 및 세금 지불 일반보증 확인서류(금액: 1백만유로, 기간: 1년 이상)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 상품의 원산지가 무관세 대상 국가인 경우
-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계

반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 후 반덤핑 관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부과,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반덤핑 제소는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수입규제제도

수출입 관련 국제법과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규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외국으로 제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

령과 정부는 제품 및 차량에 대한 수출입 쿼터 또는 수출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금지 품목은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 무기 원료,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정부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Red Book에 등록된 동식물, 마약류, 향정신의약품(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 취소 증권 등이다.

수입제한 품목은 각종 무기, 탄약 및 폭탄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와 마약 등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동 약품의 재료들은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Antiques Artwork, Fine Batteries, Haz Bearer Documents Bio Products, Haz Bunker Oil for Sample/Analysis Ceramic Products Chemicals, Haz Corrosives Cosmetics, Haz Credit Card Blanks Credit Cards Cyclamate Dangerous Goods as defined by IATA(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Devices for smoking opium or hashish Drugs, Prescription Flammables Fire Extinguishers Furs Gambling Devices Gases Gold Graphite Products Ice, Blue Ice, Dry Ice, Wet Infectious Substance Isopropanol Ivory Jewelry Loqour, Haz Magnetized Materials Metals, Precious Military Equipment Money Orders Nuclear Material Oil Products Oxidizers Paints, Haz Perfume, Haz Personal Effects Poison Pilitical Material Precious Stones Psychotherapy Substance Radioactives Substances containing sodium/calcium Toiletries, Haz Undeveloped Photographic Film Unused Postage Stamps etc.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소비자보호국은 10월부터 일시적으로 주류



제품에 관하여 관세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을 발표하였다. 알콜 제품의 라벨링 등 주류 제품에 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6월 1일부터 자국어로 성분표시, 경고문 등이 부착되지 않은 주류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관세 동맹 협정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족 정체성 확립 정책의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준비해오고 있다. CIS 지역 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지역 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CIS 지역 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로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인증 선언에 의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품목을 확인해오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연구소에서는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몇몇 품목에 있어서는 (의약품 등) 현지 바이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증 여부이다. 인증이 없을 경우 바이어들이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카자흐스탄 인증서 발급 기관

- 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알마티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727-221-0808, 221-9941, 221-9212
 - 팩스: +7-727-228-5655
 - 이메일: naceks@afnaceks.kz, naceksalmfil@mail.ru
- 위생검역소(Sanitary Epidemic Station) 알말린구 관할(Almalinsk District)
 - 주소: 130-A Tole-Bi Str., Almaty, 050026, Kazakhstan
 - 전화: +7-727-243-1393
 - 팩스: +7-727-279-6577
- 아우에조브구 관할(Auezov District)
 - 주소: 144 Dzhanosov Str., Almaty, 050042, Kazakhstan
 - 전화: +7-727-220-7900
 - 팩스: +7-727-220-6990

특히, Labelling의 경우, 카자흐스탄어 및 러시아어로 반드시 번역 표기해야 하며,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조성분 검사서 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부에서 환경관련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데,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 방출 시에는 환경보호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1년이다. 허가 신청은 카자흐스탄 각지에 소재한 환경 보호부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에 의해 결정된다.

품목별 장벽

2014년 09월 기준으로 우리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에 대한 제도적인 장벽은 없으나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중저가 소비재의 경우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를 무기로 하는 중국산과의 경쟁에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카자흐스탄은 WTO GPA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2.5월 Local Clause(국산화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달법(the Law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재개정하였으며, 국산화를 상품 10%, 서비스 및 건설 5%로 규정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및 노동력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 국산화 비율은 국내 및 외국 기업에게 공히 적용되며, 비율측정은 외국투자자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에서 인정하는 specific formula에 의해 계산된다. 즉,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주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입찰 전에 동 국산화 비율을 산업신기술부로 부터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회사 주식을 50%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사는 외국인 회사로 규정되어 정부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최종상품을 생산하며, △현지 노동자 고용율이 85%를 초과할 경우 'National Producer'로 인정되어 입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와 같은 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질 참여가 용이치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주로 현지에서 LTD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1월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law on subsurface use and to public procurement)을 포함한 관련법류 개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정부조달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만약 외국기업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권 연장불허, 계약파기와 같은 강력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카자흐스탄은 1992~1993년부터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은 1996.6.10일에, 상표, 상호 및 원산지표기 관련법은 1999.7.26일에, 특허법은 1999.7.16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print 및 digital media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권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1993.2.5),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1967),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1967),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1967), 특허협약, 베른협약, WIPO 저작권 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등의 당사국으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상표권은 IPRC에 등록, 권한을 획득²할 수 있으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등록도 IPRC에 등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IPRC로부터 인증서를 받으면 상품 원산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발명품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발명특허는 20년간 유효하다.

2_ 카자흐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등록자우대 원칙에 따라 IPRC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 없이 저자에게 부여됨.



저작권의 경우 과학,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는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부여되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에 걸쳐 보호를 받는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카자흐스탄 내 지식재산권 및 특허와 관련한 사업은 카자흐스탄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권 국립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다.

☐ 관련 입법조항 발효

- 저작권 및 관련법 : 1996.06.10
- 상표권, 서비스 마크, 원산지 표기 관련법 : 1999.07.26
- 특허법 : 1999년 7월 16일 427-1의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발효됨.
-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 : 1993.02.05

서비스 장벽

카자흐스탄 보안에 관한 법(the law on national security)에 의거하여 통신서비스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언론서비스 분야에서는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행 및 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을 설립해야만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를 비롯한 건축설계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건설 표준 및 규칙에 부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현지 건설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건설면허 재등록/갱신 관련법규를 변경하면서 건설면허 제도를 1-3등급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건설업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재등록 시한 2012.1.31까지).

- 1등급: 100m 이상 건축물, 플랜트(10년 이상실적)
- 2등급: 책임수준 ‘중’에 해당하는 주거, 사회공용, 생산, 농업분야 건물(3등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적)
- 3등급: 개인주택 및 하도급 공사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석유 분야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50% 미만까지 허용된다(해상 석유생산 및 분배에 관한 계약 관련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나, 석유 관련 정부령에 의하면 석유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참여지분은 50% 미만이어야 하고, 카자흐스탄 국내 회사의 지분 비율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다. 특히, 2010.6.25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립 국산화 비율 발전청(National Agency for Local Content Development)을 설립하여 석유가스 분야에서의 국산화비율 상향을 감독하고 있으며, 법규 미달 시 상당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점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고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국내은행들은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영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2008.2월 현지에 은행설립 예비인가를 취득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2007년에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2008.3월 현지 은행인 Bank Center Credit의 지분 30.5%를 인수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여 41.93%(9억 달러 상당)의 지분비율로 활동을 하고 있다.

토지법에는 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조건(농지, 임업지 등의 제한) 하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 토지 매수가 불가하다. 또한, 토지 임차권(사용권)은 영구, 장기, 단기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인은 영구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고 농업 및 농업 가공업 등 목적을 위한 장기임차권도 임차기간이 10년(내국인은 49년까지 가능)으로 한정되어 있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용 빌딩 또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2013.6.18)하였다.

수출의무 부여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내 투자진출 시 수출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허가 및 비자취득

카자흐스탄은 2011.2월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인 의무고용비율을 규정하는 ‘노동쿼터,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외국인 대비 현지인 고용비율을 2011.7.1일까지 상위직 5:5, 하위직 3:7에서, 2012.1.1일부터 상위직 3:7, 하위직 1:9로 변경하였다.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그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카자흐스탄 노동법상 채용 시 외국인 인력보다 현지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특정직업 또는 고급인력 부재 등으로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의 경우에만 허용됨으로써 실제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노동허가는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된다.

노동허가는 필요시 해당지역에 복수 노동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의 규정에 따르면, 비자의 경우 카자흐스탄 지역 전체에 대해 유효하지만 노동허가는 노동허가가 사용될 특정지역(Oblast)에 대해서만 발급되며, 한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근무 시키는 경우 노동허가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시 노동법에 의해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기간은 약 2~3개월 소요되며 사용자가 지방정부 또는 시청에 외국인 전문가 고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허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비용으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게 된다. 한편, 채용대상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노동허가의 취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하는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는 매년 경제활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는 데 통상 경제활동인구의 0.85% (2012년 기준) 규모이다. 노동허가 규정은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방당국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한-카자흐스탄 양국정부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근로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10.14일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2차 한-카자흐스탄 영사국장회의의 협정문 안에 상



당부문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카자흐스탄 국내의 이슈(고용, 테러, 기타 범죄문제 등) 및 주변국과의 관계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상의 제한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재무부의 조세위 원회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1.1일에 시행된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 로 삼아 제정되었으므로 이전 조세법보다 형평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실제 적용과 집행 측면에서는 세부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하며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이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세제는 투자 사업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본세율 인하 등 외국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어 왔으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수준이다.

2009.1.1일 개정된 조세법은 부가가치세를 기존 13%에서 12%로 인하했 고, 개인소득세도 최고 20%의 차등세율에서 정액세율인 10%로 인하하 였다. 사회보장제도 현재의 5~20%에서 5~13%로 인하하였다.

행정처벌법은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카 자흐스탄은 세법위반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로 여겨지는 세법 위반행위는 과세표준을 2,000 MCI(1 MCI=1,852달러)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구조는 분류 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 창출 시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에 서 다시 과세를 하는 체제이다. 모든 거주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배당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는 종결된다.

2009년 발효된 신 조세법은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인세와 비채굴 산업의 조세를 경감하고 채굴산업의 조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현재 주요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 20%
- 부가가치세(VAT): 12%
- 사회보장세(social tax): 11%
- 개인소득세: 10%
- 재산세(property tax): 법인의 경우 1.5%, 개인의 경우는 재산규모에 따라 차등 (비영리기관 : 0.1%)
- 토지세(land tax): 농지의 경우 0.48~202.65텡게/ha, 도시지역 토지의 경우 0.48~28.95텡게/ha
- 소비세(excise duties): 품목별 및 구입량에 따라 차등
- 운송세: 운송수단별 차등 (4-117MCI, 1030 텡게)
- 경매세(auction fee): 3%
- 관세: 평균 11%(품목에 따라 다름)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카자흐스탄 사업자의 독점시도

2001년 채택된 ‘경쟁과 독점 방지에 관한 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있으며, ‘State Register of Dominant Participants’, ‘자원독점 규제 및 경쟁보호위원회’ 등이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단일 품목의 경우 두 개의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요 감시 품목으로는 석탄, 가스, 항공·디젤유, 석유, 정유, 곡물 등이다.



카자흐스탄에는 공정경쟁 보호에 관한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 대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세무서에 의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경찰 조사, 통관지연, 자료등록 제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 등을 유도,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 이익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도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내국산 상품임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 마크의 제작 인쇄, 국가의 상징과 관련된 무늬, 그림, 인장 등의 제조는 국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전기, 물, 열 공급), 철도, 해상 운송 및 통신 분야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카자흐스탄 입국 예상일 약 2주전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주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53 (지번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48)
- 전화: 02-391-8906(영사과)
- 팩스: 02-395-9719(영사과)
- 근무시간: 09:00~12:00(월~금, 단, 매주 수요일 휴무)

비자발급의 경우는 여행사에 맡기면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여행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일주일간 알마티에 머무르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여행 비자를 받으면 된다. 대개 여행사들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곳이 많다.

다음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할 경우 절차이다(관광, 개인

초청, 비즈니스 비자).

- 구비서류: 여권, 여권 복사본 1부, 사진 1장(반명함판 정도), 신청서, 관광의 경우 호텔예약서류 제출
- 비자유효기간: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1년(비자 기간에 따라 비자 FEE 가 다름)
- 발급소요기간: 1박 2일, 3박 4일, 7박 8일(발급소요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는 다름)
- 사증발급 수수료는 대사관 구좌에 입금

※ 단기 90일 이내 관광, 개인초청, 비즈니스 비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카자흐스탄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초청장이 면제된다. 다만, 입국목적에 관광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호텔예약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무부 기관에 정해진 절차로 등록한 경우에 운전 시험을 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주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아스타나 소재) 및 주 알마티분관에 서 공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참고사항>

2013년 5월 달라진 변경된 비자법으로 인하여 각종 비자 신청 절차가 바뀌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이민/비이민 비자의 구분이 없던 카자흐스탄 비자 제도에 처음으로 이민 및 비 이민 비자 형태가 도입되었으며, 비 이민 비자는 기존 관광 및 경유, 사업비자 등이 있고 이민 비자로는 거주, 노동 비자 등이 있다. 현재 단수 비지만 발급되던 관광 비자가 앞으로 1,2,3회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각각 입국 시 체류 가능한 기간은 30일이다.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이민자들에게는 사업이민 비자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비자를 발급하며, 최대 기간은 1년이다. 투자활동을 위해 카자흐스탄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투자 비자를 신설하였으며, 단수비자의 경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복수 투자비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 투자기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7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0대 주요 투자국을 대상으로 비자면제 조치를 실시한바, 우리나라 국민은 15일간 무비자로 카자흐스탄에 머무를 수 있으며 15일간 체류 후 출입국을 반복 할 수 있다. 2014.6월 체결된 한-카 일반여권 상호 비자면제 협정은 2014.10월 현재 카자흐측 국내 절차 진행중으로 2015년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협정에 따르면 180일의 체류기간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방문 시 30일 초과 또는 180일 동안 60일을 초과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다.

기타 관행상 제약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고 시장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치가 높은 고급정보의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과 커넥션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정상적으로는 입수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역 또는 투자진출을 하고자 하는 진출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카자흐스탄 내수시장이 소비자 1,670만 명에 불과한 시장이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장접근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경험적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동향

카자흐스탄은 타 중앙아시아보다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으며 금융제도 관련 선진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이후부터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금융개혁 및 인수합병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1990년 중반 150여개에 달하던 국내 상업은행의 수가 38개로 감소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최소 자본금과 자본적정성비율(BIS비율) 등의 요건을 강화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 회계기준

을 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정성 규제 및 감사 의무를 강화하였다.

금융부문의 GDP대비 총 자산증가율은 2002년 이후 연평균 60%에 달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69.2%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 가운데 금융부문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1~2005년간 연평균 56.9%의 대출 신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경색에 따라 2007년도 금융성장은 2006년도에 비해 급하강 하였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중앙아시아의 금융 허브화 프로그램(알마티 금융센터 건설: Regional Financial Center of Almaty City-RFCA) 방향이 은행권 국유화 및 구조조정으로 모호하게 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거시 경제지표와 환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노르웨이의 Petroleum Fund와 같은 성격인 National Fund를 설립하여 원유, 가스 및 기타자원 판매 정부수입을 적립하면서 그것을 통해 과잉유동성 공급을 완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금융시장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영향을 피할수 없었는데, 카자흐스탄 시중은행이 2006년도에만 약 150억 달러를 해외에서 차입하여 대부분의 차입금을 건설사업 지원 및 모기지론 등 리테일 영업에 활용한 결과이다. 전체 모기지의 70~90% 가량이 주택 모기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중반 이후 주택가격이 이미 30% 이상 하락하여 개인대출자들의 자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데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부동산 대출자금 유동자금의 급격한 저하로 2009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지속되었다.

구조조정 실시 배경은 높은 해외차입 의존도, 건설 및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도한 위험노출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여신(NPL: Non Performing Loan)이 급증하고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시작되었다. 은행산업의 총 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중(NPL)은 '08년 말에 8.1% 수준이었으나, '09.6월에 30.8%를 기록하였으며 최고 38%를 기록하였다가 2012년 12월 현재 36.68%를 기록한 바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BTA가 6.1%('08년)→64.8%('09년 6월), Alliance Bank가 8.1%('08년)→66.4%('09년 6월), Termir bank 6.3%('08년)→44.8%('09년 11월)이다.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NPL 대 신 총여신 대비 90일 이상 미회수 여신비중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3년 말 현재 31.15%를 기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년초 이 수치를 2016년 10%대로 낮춘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차입 여건 악화, 자산 부실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탕계화 평가절하 조치에 따라 외채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4개 은행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다. 2009.3월 Alliance Bank을 시작으로 BTA, Astana Finance, Temir Bank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으며, 2009.4.20일 BTA는 유로채권, 신디케이트론 등 150억 달러 규모의 채무에 대해 지급중단을 선언하였다. 구조조정 주요 조치로는 민간예금 보장금액을 6,000달러에서 4만 2,000달러로 대폭 증액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 시중은행의 원활한 대외채무 상환 환경 조성 및 유동성 진작을 위해 50억 달러의 금융지원("삼룩 카즈나"가 대행)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에 자산 순위 5위내 은행인 Halyk, Alliance, BTA, KKB, 외국계 은행인 ATF, BCC 등에 대한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되었다. 한편, 삼룩 카즈나(Samruk-Kazyna) 통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4개 은행에 신규 여신을 공급하고, 일부 은행의 국유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2009.2월 국부펀드와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삼룩 카즈나 펀드를 통해 BTA 은행 지분의 81.5%, Alliance Bank 지분 76%를 인수하여

국유화하였다.

한편, 주요 3개 은행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대한 협상이 '10.10월 모두 완료되어, BTA의 채무는 167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BTA는 경영정상화와 이후 동 은행 지분의 해외 매각을 추진하였다.

■ 채무불이행 은행의 채무조정 현황

은행명	채무불이행 선언 시기	채무재조정 진행 상황
Alliance Bank	09.3월	10.3월 협상 완료
BTA	09.4월	10.9월 협상 완료
Temir Bank	09.11월	10.6월 협상 완료

자료: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

은행권 구조조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100억 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2.9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은행들의 차입축소 및 금융시스템 개선에도 건전성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반면, 카자흐스탄 정부 주도하의 채무재조정, 정부지분출자로 은행의 자본적합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은행 산업

카자흐스탄의 금융제도 관련 법률은 1995.8월 발효된 ‘은행 및 은행활동에 관한 법(Act on Banks and Banking)’이다. 동 법은 은행의 영업활동 조건과 법적 지위, 활동중지 조건, 지점과 은행대표부 개설 조건 등과 더불어 외국은행의 현지은행 설립 및 참여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년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은행설립시 필요한 최소 요구(설립) 자본금을 100억 텡게(5,520달러)에서 10배 증가한 1,000억 텡게(5.5억불)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38개 은행 중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은행은 15~20개이며, 2020년 까지 소형은행은 합병 또는 소액금융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의 반발이 적지 않아 최소요구 자본금을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는 등 실제 실행여부는 지켜보아야 한다.



은행 산업현황

카자흐스탄의 은행은 경제적 역할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뉜다.

A. 중앙은행(Kazakhstan National Bank)

중앙은행인 카자흐스탄 국립은행(KNB)은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등 금융정책을 입안·수행하고 전체 은행을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 조정, 관리하며,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은행 간의 협조 및 업무 조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은행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개인저축에 대한 집담보장시스템 개선, 은행 간 여신거래의 상환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B. 카자흐스탄 개발은행(Kazakhstan Development Bank)

카자흐스탄 개발은행(KDB)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 다른 상업은행들과 달리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주 업무이므로 일반은행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C. 상업 은행

일반 상업 은행들은 차입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위험과 수익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외국계 은행 18개를 포함하여 38개가 영업하고 있다.

■ 은행업 구조



자료: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은 아직 금지되어 있으므로 외국은행은 현지 진출을 위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인과 공동투자 등의 방법으로 은행 운영이 가능하다.

상업은행들은 1995년부터 도입된 BIS 등 International Standards Transfer Programme을 통해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고객자금의 안전성 제고 등에 주력하고 있다.

설립자본금은 상업은행 300만 달러, 투자은행 500만 달러이고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유지의무가 있다. 1993년 은행 감사 기준 도입, 설립자본금 증액, 신규허가기준 강화, 은행 간 결제제도 도입 등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라 은행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외국계 은행 진출 현황

외국계 은행의 자산, 예금은 증가 추세이며, 경영성과는 양호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영업 확대로 '12.9월말 자산과 예금은 카자흐스탄 전체 은행시장의 29.1%, 31.2%를 차지하고 있다.



■ 상업은행 자산 및 예금 비중

(단위: 10억 텡게, %)

		'10	'11	'12.09
자산	국영상업은행	7,129(59.3)	7,107(55.5)	6,951(51.7)
	민간상업은행	1,588(13.2)	2,138(16.7)	2,588(19.2)
	외국계 은행	3,314(27.5)	3,573(27.9)	3,907(29.1)
	합계	12,031(100.0)	12,818(100.0)	13,445(100.0)
예금	국영상업은행	3,844(56.1)	4,062(52.1)	4,001(48.3)
	민간상업은행	1,016(14.8)	1,401(18.0)	1,701(20.5)
	외국계 은행	1,990(29.1)	2,335(29.9)	2,585(31.2)
	합계	6,851(100.0)	7,797(100.0)	8,287(100.0)

주 : ()는 전체 은행업 대비 비중

자료: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

■ 주요 외국계 은행 경영성과 지표(2011년 기준)

(단위: %)

	BIS	NIM	ROA	ROE
Citibank	15.0	2.0	1.7	20.1
HSBC	13.2	9.1	1.6	18.6
Alfa Bank	19.3	5.1	3.1	23.7

자료: Bankscope

외국계은행은 외화부채에 대한 8% 준비금 적립 등 국내은행에 비하여 조달여건이 불리하고 15% 특별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외국계은행의 경쟁 제한 및 M&A로부터 보호시스템으로 인해 진출이 어려웠으나, WTO 가입을 위하여 외국계 자본 참여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제거되고 있어 향후 소비자금융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한 진출이 전망된다.

최근 외국계 은행의 진출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은행의 BCC 지분 참여로, 2008년까지 30.5% BBC 지분을 인수하고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여 41.93%의 지분비율로 활동을 하고 있다.

과실송금

카자흐스탄은 1996.7월 IMF 협정 8조를 수용하여 내국인의 외환 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였다. 외환 반출·입은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외환 반출(과실송금)을 위해서는 계약서 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만 달러 이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환관리에 필요한 단순서류의 제출로 가능하나,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ransaction passport 라는 거래 허가서 및 송장 사본, 계약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2009.8월 the Law on Currency Control 개정). Transaction passport 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게 될 때 관세위원회가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하며, 외환의 송금은 내·외국인 불문 모두 외환구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증권 산업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있어 증권 산업의 역할은 은행의 역할에 비해 아직 미미하다. 1993년에 증권 거래소가 개설됨으로써 증권 산업의 발전 기틀을 갖추었으나 실제 발전한 시점은 2003년에 새로이 주식회사법과 증권시장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증권업은 은행업이나 보험업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세를 보일 뿐 아니라,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의 자금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들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상품과 금융기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지역 금융센터의 개발 등 대외개방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향후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A증권이 2007.12.14일부터 세제 혜택 수혜가 가능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방식으로 운용하는 A 신탁운용의 『카자흐스탄 주식투자 신탁 1호』를 판매하고 있다. 펀드의 운용은 카자흐스탄 내 해외 현지운용사인 Seven Rivers Capital의 투자자문을 받아 A신탁운용에서 담당한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펀드인 삼룩카지나가 보유한 국영 및 공기업, 자회사의 IPO와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추진 대상은 32개 국영기업, 585개 공영자산, 삼룩카지나 자회사 191개로 향후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노력 및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6.1.29일 WTO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WTO 가입 패키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이다. 가입 패키지는 실무그룹 report와 카자흐스탄의 WTO 조항이행(상품과 서비스 시장진입 약속 일정, 농업 보조금등)에 관한 가입기록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협상은 2009.6월 카자흐-벨라루스-러시아 3국간 관세동맹(CU) 형태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발표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러시아가 관세동맹 공동가입을 포기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가입 협상이 2010.4월 재개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과 상품부문(2010.11.22) 및 서비스 부문(2011.9.26)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여전히 통상제도, 농업보조금,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3국간에는 2010.1월 관세동맹, 2012.1월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출범에 이어 2014.5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EEU는 2015.1.1 정식 출범 예정으로, 회원국간 경제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CIS권 국가 중 키르기스스탄이 CU 가입을 위한 공식 가입서를 제출하였으며,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이 CU 가입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캄보디아

최근 캄보디아 통상환경 및 특징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000불 수준(2013년 1,008불)인 저개발국이나, 외국의 원조자금 및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유입되면서 연평균 7%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달러화 경제(경제활동의 95% 이상 달러 사용), 외화 유출입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으로 투자진출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행정의 불투명성 및 부패 심화,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전성 등은 여전히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산업인 봉제, 관광, 농업, 건설 등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봉제분야는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세안 여타국보다 저렴한 노동비용(2013년 최저임금 80불)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2014년 100불 : 25% 상승, 2015년 128불 : 28%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의 경우, 앙코르와트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 외국 관광객의 방문(2013년 421만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이 지속 증가하면서, 관광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 리조트 등 관련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농업은 주산업인 쌀의 경우, 쌀 증산 및 수출확대 정책(2015년까지 도정



미 수출 100만톤 목표)에 따라 쌀 산업에 대한 면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기업 투자 및 쌀 생산·수출도 증가되고 있다. 다만, 관세시설, 유통, 물류 등 여건이 미흡하여 태국, 베트남 등 인근국에 비해 국제 시장에서 쌀의 경쟁력은 아직 떨어지는 실정이다.

건설의 경우, 캄보디아 경제의 높은 성장과 낙관적인 발전 전망 등으로 최근 부동산 투자, 상업건물·주택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4년 57.4점을 기록하여 108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42개 국가 중 23위를 차지하였다. 인근국가인 인도네시아(100위), 베트남(147위), 라오스(144위), 미얀마(162위) 등과 비교할 때 시장개방 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로서 특별한 관세 장벽은 없다. 2004년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인하 양허계획을 WTO에 제출하는 등 추가 관세인하에도 적극적이다.

■ 캄보디아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기업활동자유	36.6	평균 64.6	투자자유	60.0	평균 54.9
무역자유	71.0	평균 74.8	금융자유	50.0	평균 48.7
재정자유	90.8	평균 77.6	재산권보호	30.0	평균 42.6
정부지출	88.4	평균 62.5	부패자유	18.7	평균 39.3
통화자유	77.9	평균 73.9	노동자유	50.2	평균 61.7

※ 자료원: 헤리티지 재단 2014 Index of Economic Freedom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HS 번호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종가세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얼화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생산연도 및 배기량

에 따라 미화 정액을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은 리엘화로 부과된다.

관세율은 크게 0%, 7%, 15%, 20%, 35% 5단계로 구분되며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는 0%,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현지에서 이용 가능한 원자재는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자재는 20%,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 완제품, 석유제품, 차량, 귀금속 및 보석은 35% 관세율이 부과된다.

수입품목 중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 농약 등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 기계류,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의 수입, 국가간의 상호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회원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8.11월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수출입시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캄보디아 세관 통관 시 특혜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캄보디아의 낙후된 세관행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자유무역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부과금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별 특별세율은 다음과 같다.

- 4.35%: 디젤
- 10%: 모터사이클 및 부품, 담배, 경유, 등유, 윤활 그리스,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광천수, 기타 과일음료
- 20%: 맥주 일부 및 포도주 일부
- 25%: 자동차부품, 시가, 윤활유



- 30%: 맥주 일부
- 33.33%: 휘발유, 양주, 포도주 일부, 샴페인
- 45%: 승용차

차량의 경우, 용도, 배기량 등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높은 배기량일수록 관세가 누진 적용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과 관련한 제도상의 장벽은 없으나, 통관화물 품질 및 수량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무부 산하 수출입검사부(CAMCONTROL: Cambodia Import Export Inspection and Fraud Repression Department)는 불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통관 시 무수히 많은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9월 제4기 정부 출범 이래 2011.8.1부로 반부패법 전면 발효 등 개혁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애로사항 중 하나로 원부자재 수입시의 과도한 통관비용을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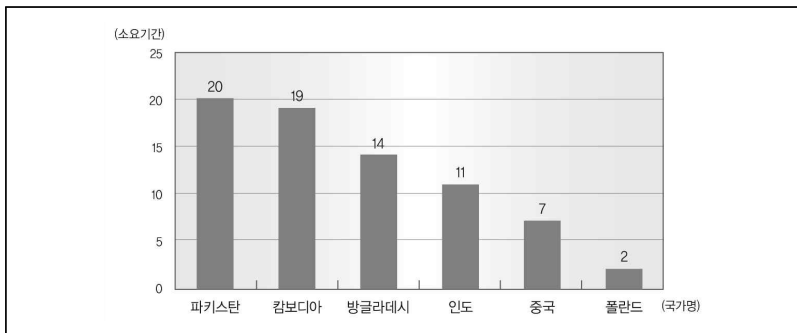
현재 캄보디아의 최대산업으로 600여개의 공장에서 6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봉제산업의 경우, 캄보디아 국내에서 섬유 원부자재 생산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부자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수입 원부자재 운송 및 통관 비용은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3배, 홍콩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상품의 통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여타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적으로 통관 시 총 11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732달러 정도의 통관 비용, 통관에 2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출용 의류의 경우 통관시 총 45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통관기간도 평균 19일 소요됨으로써 중국과 비교하여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수입통관시 US\$ 4,500 이상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 정부와 계약한 프랑스 회사(BIVAC)를 통해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받아야 했으나, 2009.4.30일부로 선적전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캄보디아 세관에서 직접 물품의 과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 섬유분야 통관 시 소요기간 비교



※ 자료원: IFC보고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쌀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과도한 수입통관비용으로 인해 쌀농사에 필요한 비료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의 2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태국의 7%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류를 수출하는데 무려 45종류의 서류절차가 필요하고, 담배원자재를 수입하는데 22종류의 서류절차를 거쳐야만 통관이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모든 서류처리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세관행정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 업자들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류처리 과정마다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지불해야만 정상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없다. 아울러 수입 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이 거부되거나, 수입이 지연 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원부자재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해야만 아세안산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수입규제

캄보디아는 봉제를 제외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의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입 제한, 금지, 규제 사례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전혀 없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나, WTO 가입을 계기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관련법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원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관련 장벽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부(CAMCONTROL)에서 품질과 수량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검사부(CAMCONTROL)는 소비자용 물품, 수산물, 석유화학, 농산품의 품질과 수량 일치여부에 대한 검사는 물론 수량 차이에 대한 검사 역할도 대신하고 있으나, 무역업계는 불투명한 업무처리에 대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의약품 등 소비자 보건과 관련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별도로 보건부로

부터 해당물품이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없다는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환경관련 규제

1996년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고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령”, “수질오염통제에 관한 시행령” 및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통제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시행에 관한 시행령”이 1999년 공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발주자가 고용한 컨설턴트에 의해 시행된다.

메콩강 지역은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국간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기배출, 소음기준,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 특성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이 왕성한 편이며, 특히 밀림보호를 위해 World Bank 주도하에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오염산업의 입지는 여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장벽

캄보디아는 취약한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캄보디아에는 독립된 입찰담당 기관이 없으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입찰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제입찰 시스템은 원조공여국 및 원조공여 기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World Bank 및 ADB 등 국제기구가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입찰 시행은 입찰기관의 입찰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세부 입찰 진행과정에서 각종 로비 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양자원조 제공에 의한 입찰은 원조 공여국의 관행 및 지침 등에 따르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체계

캄보디아는 199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8년 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규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후 2002년 상표법, 2003년 저작권법과 특허법,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법, 2008년 육종관리 및 식물품종보호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향후 캄보디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비밀 및 비공개정보 보호법, 집적회로 설계 보호법, 지리표기 보호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WTO가 2012.7.1일 만료 예정이었던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유예기간을 8년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상표법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등록에 의해 취득되며 상표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신청자가 파리협정 가입국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출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배급 및 수입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보유하며 배포권에 대한 위임장이나 계약을 통해서 배타적 배포권자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한다.

특허법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수료를 매년 등록기관에 선납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활동은 아직도 미흡하다. 현행 캄보디아 형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2003년 도입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통 중인 음반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제품 대부분이 불법복제된 것이다.

투자장벽

투자진출 금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투자금지분야는 2005.9. 27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관련분야	비고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벌목	금지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금지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제조 및 가공	금지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금지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금지

※ 자료원: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111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캄보디아 투자법에 투자와 관련된 지분제한은 없으며,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절차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관행으로 인해 투자진출과 관련된 서류절차가 종종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에 캄보디아 상무부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US\$ 1,000 정도가 소요되며, 서류 신청 후 15일 이후 지사 설치 허가증이 발급된다.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단지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 비영리 활동에 국한된다. 단,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국산화의무 부과

캄보디아 정부는 가능한 국산 원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기반이 워낙 취약하여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 의무화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캄보디아 투자법에 수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생산량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면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CDC(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서 One-Stop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허가가 예전에 비해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여타 행정부처의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투자 승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설립 이후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검사제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일례로 소규모 식품가공 기업의 경우 28종류의 인허가서류와 함께 12개 정부부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캄보디아는 헌법 제44조(1993년 제정), 투자법 제16조(1994년 제정, 2003년 개정)에 토지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캄보디아 국민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며 캄보디아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토지사용의 경우 외국인 투자목적 등 경제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인 경제적 토지양여(ELC: Economic Land Concession), 장단기 임차가 허용된다. 다만, 최근 ELC 기업과 주민간의 마찰이 점증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ELC 지역을 포함한 정부소유 토지내 장기 거주민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2012.5월 이래 신규 ELC는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허용 법률이 2010.5월 시행되었으며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합건물(아파트, 플랫하우스 등)의 총 가구 중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2층 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국경 30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고, 집합건물 전체 가구 중 외국인 소유 가구 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편, 외국인은 장기 임차 및 토지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를 통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자질 및 전문성 면에서 캄보디아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외국인이 관리자, 기술자 및 숙련공으로 캄보디아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인은 비자 및 고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 송금 관련

캄보디아에는 아직 외환규제가 없는데, 이는 외환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투자법 제11조에 의하면 금융시스템을 통한 외국통화의 획득과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통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금융조달

캄보디아 내 은행의 이자율은 완전 자유화되어 있으며, 은행의 대출에 금액 제한이 없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 자본금의 20%로 제한된다. 현재 캄보디아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시 이자율은 무려 10%에 달하고 있어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차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기업들은 본국 혹은 제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국외로부터의 자금차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상업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진출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자본금의 20%로 제한되어 큰 규모의 파이낸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국, 제3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현재 캄보디아의 은행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 2년 이상의 용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며, 1-2년 기간 용자는 29%를 차지하고 있고, 70%가 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 대부분인 실정이지만, 점차 중장기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용자를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대부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용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용자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용자를 전담하



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용자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용자는 기업의 재정상태 보다는 인간관계에 기준을 두고 용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강한 편이다.

(3) 외환구좌 보유제한

캄보디아는 리엘(Riel)화라는 자국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 리엘화는 소규모 거래나 공무원들의 급여지급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달러화 구좌를 보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는 세금은 없으며, 캄보디아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캄보디아 금융법 및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법인 소득세율은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기업은 30%, 보험 및 재보험은 총 프리미엄의 5%로 설정되어 있다. 투자자의 경우 CDC의 투자적격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캄보디아 기업환경 비교(Doing Business 2015)

관련 분야	주요 지표(단위, 기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창업	필요절차(횟수)	11	11	6
	소요기간(일)	101	31.4	92
	소요비용(% , 1인당 GNI 대비)	139.5	0.9	5.7
	소요 최소자본(% , 1인당 GNI 대비)	26.1	0.0	0.0
세금 지출	횟수(년당횟수)	40	7	35
	소요시간(년당시간)	173	261	362
소액 투자자 보호	이해충돌 규제정도 지수(0-10)	5.7	5	3.3
	주주통제 정도 지수(")	4.8	4	2.5
	소액투자자보호지수(")	5.3	4.5	2.9
건설 허가	필요절차(횟수)	20	22	22
	소요기간(일)	652	244.3	107.0
	소요비용(% , 건축물 가치 대비)	6.7	7.6	0.6
소유권 등기	필요절차(횟수)	7	4	5
	소요기간(일)	56	19.4	98
	소요비용(% , 자산가치 대비)	4.4	3.6	1.1
계약 이행 강제	시간(일)	483	452.8	443
	비용(% , 클레임 대비)	103.4	16.2	31.6
	필요절차(횟수)	44	37	42

※ 자료원: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캄보디아 사업자의 독점 시도

국내자본이 워낙 미약하여 내국기업에 차별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 일례로 공항까지 외국자본에 의해 건립되어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전사업도 대부분 민간기업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진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 또는 규정

현재 캄보디아의 외국 투자진출 사례는 전무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타장벽

상용비자는 주한대사관 또는 입국시 공항에서 1개월 유효기간의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수, 복수 선택도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비자 수수료가 상이하다. 다만 입국시 관광비자(T)를 취득한 경우 상용 비자로의 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고, 연장도 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 시에는 상용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여권 및 비자 사본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확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 교통부 산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1년의 캄보디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 다만 관광비자(T) 소지자는 캄보디아 면허증으로의 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용비자 및 면허증과 관련한 제도상 특별한 장벽은 없다.

개선실적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투자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10.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디아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가이드를 개정 발간하였으며, 2012.12월에는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2012.4월 개장됨에 따라 캄보디아

증권시장 투자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망한 투자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2013.9월에는 캄보디아 농업투자 가이드 북도 발간되었다.

또한, 일부 우리 기업인들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 발행 서류가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어 동 서류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2011.10월 캄보디아내 사업 관련 법인인증서, 영업등록증, 부가가치세 등록증명서, 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임대계약서, 경제적 토지양여권 계약서를 국문, 영문으로 번역한 CD를 제작하여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타지키스탄

주요 경제 지표 동향

1992-1997년 내전 이후, 경제 인프라의 파괴로 인근 중앙아시아 및 여타 CIS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2013년WB(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GDP는 약 85억 달러이지만, 현 라흐몬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권력 통제로 지난 10년간 연간 6-7%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타지키스탄의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상반기 *
GDP(억불)		56	65	76	85	35.7
1인당 GDP(불)		727	833	1,038	1,036	793
GDP 성장률		6.5	7.5	6.5	7.4	6.7
물가 상승률(%)		6.4	12.4	6.5	5.0	4.5
환율(불, 연평균)		4.38	4.61	4.74	4.76*	4.94
인구(백만)		7.6	7.8	8.0	8.1	-
무역 (백만불)	경상수지	-370	-171	-248	-59	-
	무역수지	-1,633	-1,801	-2420	-2958	-1850
	수출	1,303	1,739	1,358	1,163	521
	수입	2,936	3,540	3,778	4,121	2,371
외환보유액(백만불)		324.2	289.3	297.9	460.7	-

출처: WB 및 EIU 통계자료/2014.9 기준, *추정치

타지키스탄 경제는 1997년 내전 종식 이후 해외로부터의 원조와 주로 러시아에 이주하는 타지키스탄 노동자들의 국내송금(GDP의 약 43% 차지) 증가 및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최근 6%대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나, 면

화(연 30만톤)와 알루미늄(연 30~40만톤) 수출과 국외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 외에는 별다른 외화 소득원이 없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인접국 우즈베크의 항공 교통은 물론 육상 교통로까지 제한하고 있어, 무역 증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타지키스탄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성장 및 외국인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정치 인프라의 불안정으로 인한 리스크,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잦은 법률제도의 변경, 높은 세금, 운송 인프라의 낙후, 전력난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가스 및 전력 공급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12월 WTO에 159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전품목 평균 양허 세율(8.0%)·농산물(10.4%), 비농산물(7.6%) 11개 서비스 섹터 (111개 하위 서비스 섹터 포함) 양허되었으며, WTO 가입으로 인한 향후 관세 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타지 교역 현황

(단위: 만불)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8월)
교역 규모	6,217	13,378	10,930	4,273	4,447	3,468
수출	2,661	3,174	3,743	3,811	4,429	3,406
수입	3,555	10,204	7,187	462	18	62
무역 수지	-894	-7,029	-3,444	3,349	4,411	3,34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우리나라의 대타지키스탄 무역규모는 2011년 1억 930만 달러였으나, 2012년, 2013년 급격한 알루미늄 수입 감소로 2013년 무역규모는 4,44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3,811만 달러를 수출한데 이어, 2013년 4,429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대 타지키스탄 수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승용차, 기계류, 의약품, 섬유, 전자 제품으로서 기계류는 주



로 차량 부속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 타지키스탄 수입 품목은 알루미늄이 대부분으로 2010년 1억 달러의 알루미늄을 수입하였으나, 2011년 이후 알루미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 수입액은 18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타지키스탄 진출 우리 기업은 K 자동차 현지 대리점과 H 자동차의 현지 딜러가 있으며, 그 외 약 10여개 미만의 중소기업이 코이카 원조사업, 건설 등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1995년 국내 섬유 기업인 'K방직'이 면사, 면직물 연간 2,900만볼 규모로 투자한 바 있으나, 2008.4월부터 합작을 중단하였으며, 국내 K사가 2010년 타지정부의 ADB 차관(600만볼 규모)으로 후잔드 지역 관개수로 공사 완료한 바 있다.

지사·현지 법인 설립

법인 형태는 법인, 개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대표부/지사 등이 있다. 법인 등록에는 약 20~30일이 소요된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타지 세금위원회 산하, 통합 민원 창구인 '이딘노예 아크노(Unit window)'를 통하여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하다.

※ 이딘노예 아크노: <http://www.andoz.tj/index.php/ru/edinoe-okno>

법인 설립 시 필요 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회사 정관(노어, 타지어 각 2부)
- 창립총회 회의록
- 지사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서명)
- 지사장 임명장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조사보고서(감사)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 ※ 신청수수료(1,080TJS), 타지 소재 Amon Bank에 납입
- 은행통장 사본

상기 서류를 준비, 설립 자본금 미불 US\$ 300 이상을 현지 은행에 입금하고, 납입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 및 유한 책임회사 설립 시 필요 서류

- 여권사본
- 1년 기간 비자
- 거주 등록 신고
- 미화 US\$300 이상 입금한 통장 사본

건설업 인·허가 절차

건설업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현지 법인에 대한 정관 사본
- 세무 코드 번호 사본
- 통계청 코드 번호 사본
- 기타 현지 법인에 대한 서류 사본
- 건설업 허가 신청서-건설부 양식
- 서식 번호 1.2.3.4-건설부 양식
- 한국측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사본
- 사무실 계약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장비 보관 창고 계약서
- 두산베시 명의 건설부 앞 허가(추천)서
- 은행 통장 사본



법인 및 지사 설립시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타지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법인 설립 절차 및 세금 절차가 자주 변경이 되고, 담당 부서/직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준비토록 하여야 한다.

조세 제도

국세

- 법인 소득(이윤)세 24% (2015.1.1부터 적용)
 - ※ 제조업은 법인소득세 14%
- 개인 소득세 13%
- 부가가치세 18%
- 소비세, 사회 보장세
- 도로세 1% (2017.1.1 폐지 예정)
- 순수 이익세 15% (법인 소득세 외 순이익의 15%)

지방세

- 차량 보유세 (승용차 기준) 7.5%
 - *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무 차량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다. 고용주는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 토지세: 타지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지수 변동, 지역 요인 등을 고려 매 5년마다 발표
 - * 두산베: 500TJS/헥타르
 - * 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375TJS/헥타르
 - * 공화국직할주·호록: 250TJS/헥타르
 - * 기타 농촌지역: 180TJS/헥타르

- 부동산세 (부동산 면적+지방계수를 곱하여 계산)
 -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² 이하: 12.75%
 - * 상업용 부동산 기준 250m² 이상: 15%
 - * 지방계수: 두산베 1%, 후잔드·쿠르간투베·쿨랍: 0.8%, 공화국 직할도시, 호록: 0.55%, 기타 농촌 지역: 0.4% 등
- 소매 판매세 등

세제혜택

- 소득세 면제
 - * 제조분야 신설기업의 정부등록 첫 해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등록 1년 이후부터 설립자는 타지키스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투자액을 명시된 기간 이내에 신설기업의 공인 자산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 설립자가 정해진 금액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조건아래, 신설기업에 국한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US\$ 500,000 미만 -2년
 - US\$ 500,000 이상 US\$ 2,000,000 미만 -3년
 - US\$ 2,000,000 이상 US\$ 5,000,000 미만 -4년
 - US\$ 5,000,000 이상 -5년
- 부가가치세 면제
 - * 타지키스탄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자체 수요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부가세는 면제된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특별히 중요한 건축물의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사회(보장)세 면제
 - * 타지키스탄 영토 내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이며, 타지키스탄 국민이 아닌 자는 사회세가 면제된다.



관세 제도

관세는 상품 유형에 따라 0%~15%(0%, 2.5%, 5%, 7%, 10%, 15%)에 이르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 6.1%이다.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 인도적 지원물품, 정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수입된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외환 관리

타지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에 비해 비교적 외환이 자유로운 편이다. 타지키스탄 외환법은 「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비현금 외환을 특별한 제약없이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No.826, 1999.9.3)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 영토내 거주자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은행에서 자유롭게 외환 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법인대표자·본국으로부터 입금된 외환은 입금인의 필수자산으로 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영토 거주자는 타지키스탄내의 외환업무 및 외환과 관련된 모든 지불이행에 어떠한 제약이 없으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No.826, 1999.9.3)고 외환법에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 (타지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49% 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

2014.10월 현재 한-타지간 ‘투자보호협정’이 체결(‘95.7)되어 있으며, 2013.7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서명하였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과 유통망의 부재, 그리고 광물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및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對타지 진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는 회사법, 민영화법, 파산법, 외국인 투자법, 은행법 등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경제활동 부진,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실질적인 법적용은 미흡한 점을 주의하고, 낮은 급료와 정치적 불안정 등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한 관료 부패 문제는 정부로서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투자 관련 사이트]

타지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www.gki.tj/en/>

타지키스탄 투자법(영문): <http://gki.tj/en/base/investment/>

타지키스탄 세금위원회: <http://www.andoz.tj/index.php/ru/>

타지키스탄 관세청: <http://www.customs.tj>



태국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율 정책상의 장벽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198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태국 역시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 등의 관세율이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그 중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 등 다자 간 협정세율과 ASEAN 및 호주·뉴질랜드·일본·인도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적용되며, 이 외에 반덤핑관세 등 각종 탄력관세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태국은 1999.1.1일 이후 현재까지 6단계 관세율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원료와 의료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 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5%, 중간제품은 10%, 미완성 제품 등은 2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30%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율구조와는 별도로 차량(80%), 알콜음료(포도주 : 60%) 등은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제조용 부품 등은 2001.12.28일을 기해 종전의 35~60% 수준에서 0~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일조를 하였다. 이어 2003.10월에도 품목 전반에 대해 관세율을 일괄 인하한 바, 여기에는 공산품목이 1,047개, 농산품은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조치들은 기존 무역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관세율(MFN)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2011년 평균 실행관세율이 9.8%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농산물의 세율이 높는데, 농산물의 평균 실행관세율이 22%이며 조제식료품, 고기, 과일, 채소, 치즈 등은 30~50%이고 옥수수는 쿼터물량내는 20%, 쿼터물량 밖은 70%이다.

공산품은 평균 실행관세율이 8%이나 일부 품목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최고 80%이며 오토바이(60%), 특정 섬유제품(60%), 증류주(60%), 특정 플라스틱 용품(30%), 가정용전기제품(10~30%), 의약품(10%)의 세율이 높다.

최근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ASEAN에서는 권역 내 무역장벽과 비관세장벽을 과감히 축소(역내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여 나가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ASEAN 국가들은 ASEAN을 AEC(Asean Economic Community)로 전환하여 역내 교역 및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14.10월 현재 11개이다. 이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페루,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5개이며, 나머지는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한국, 방글라데시 등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현재 태국은 EU와 FTA 협상중이다.



비관세 장벽

태국은 일부 농산물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내각의 결의에 의거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 목적으로 수입물량을 할당하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유 등 23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주로 특수한 경제상황 및 여건에 따라 특별히 국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수입업체·기관, 국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된다. 쿼터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30~230%의 고관세를 부과한다.

WTO 협정에 따라 시장이 개방된 제품(2011.10.31)			
	Products	In Quota Rate (%)	Out Quota Rate (%)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 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Exempted	125
4	Onion	27	142
5	Galic	27	57
6	Coconut	20	54
7	Dried Longan	30	53
8	Coffee bean	30	90
9	Tea	30	90
10	Pepper	27	51
11	Maize (Corn)	20	73
12	Rice	30	52
13	Soybean	Exempted	80
14	Copra	20	36
15	Onion seeds	Exempted	218
16	Soybean oil	20	146
17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8	Coconut Oil	20	52
19	Sugar	65	94
20	Instant Coffee	40	49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2011.1.1-12.31	2	119
	2012.1.1부터-	10	119
22	Raw Silk	20	226
23	Tobacco leaf	30	72

출처: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한편, 태국의 높은 소비세(Excise Taxes)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맥주 60%, 위스키 50%, 담배 85%, 승용차 30~50%이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는 수입관세 80%에 고율의 소비세 40%, 부가가치세 7% 등이 부과되어(통합세율 : 200~300%) 수입차량 가격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전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 적용하였던 국산사용 및 수출이행 의무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2000.8.1에 폐기되었다. 반면, 2001.2월 Thaksin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업체 중시 및 무역 역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영기업의 국산 사용비율을 대폭 확대토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반입하는 수입원자재의 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99개 품목('14.10월 기준)에 대해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에서 인증하는 강제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소정의 양식과 현장 실사를 거쳐 표준인증을 받아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물품 통관시에도 화물보관해제(cargo release) 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 실사 및 태국산업표준인증표식(TIS sticker)를 부착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강제인증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강제 표준품목별 물품의 범위, 규격/성능 요건, 마킹/라벨링 방법, 테스트 방법 등 물품의 표준 및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해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신규/갱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지연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태국관세청은 2000.1.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을 WTO/GATT 신 평가기준을 전면 도입하였다. 동 평가기준에서는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Actual transaction value)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커미션 등 수출입관련 제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13.2월부터 수출입안전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 직원별 해석 및 판단의 상이 등으로 일관성이 낮아 통관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9.7)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태국에서는 투자청에서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진별 투자청 발행하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등에 기증하는 물품, 외교물품 등에 대해서도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 태국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면세승인(확인)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다.

현재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환급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많은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태국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전산화

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수입자별 우량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위해 1999년도부터 Gold Card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Gold Card 업체(우수업체) 및 우량관세사를 기준·여건에 따라 사전에 선별한 후, 여기에 선정된 업체 및 관세사들을 환급 신청시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왔으며, 2013년 10월부터는 Gold Card제도를 폐지하고, AEO 제도로 일원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태국은 ASEAN, 한-ASEAN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혜(협정)관세 부여를 위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ASEAN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의 일반원칙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40% 이상의 권역내 부가가치기준(RVC)이 적용되고 447개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조합기준, 특정 공정기준 등의 원산지기준이 적용된다.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보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수출입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1991년 상무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실제 제소는 1996년부터 있었다. 1999년에는 반덤핑 및 보조금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명료화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제소 및 조사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담당하며 이의 결정은 상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된 “반덤핑 및 반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조사를 담당하며 상무부 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것은 4건으로 모두 철강재에 대한 것이다. 우선, 냉연강(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에 대해 50.99%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1.2월 5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열연강(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13.9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POSCO의 경우 '08년부터 재심을 통한 무혐의 판정으로 일반관세율(5%)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2012.8월 이에 대한 재심요구가 청구되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8월 POSCO 13.58%, 현대제철 13.96%, 동부제철 58.85%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도색 및 비도색 냉연강(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와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은 2011.7월 제소되어 2012.7월 조사에 착수, 2013.1월 도색강판에 대해 2.51~10.25%, 비도색 강판에 대해 13.82~22.55%의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적용받게 되었다.

한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2012.11월부터 합금열연강(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s such as boron, chromium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여 2013.9월 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1년차 44.20%, 2년차 43.57%, 3년차 42.95%)를 확정하였다. 또한, 비합금 열연강판(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에 대해서는 2014.1월 조사에 착수, 2014.6월 잠정세이프가드 조치(적용관세율 34.01%, 200일 이내)를 개시하였다.

❏ 반덤핑 조치 사례(2014.10)

Product	Country/customs territory	Date of imposition	Definitive duty in force(c.i.f.)
H-shape Steel	China	10/10/12	13.905%
Paving blocks, Glass blocks	China	16/08/07	5.10 ~ 82.78%
	Czech Republic	15/01/09	54.33 %
Cold-rolled carbon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and cut-to length	Kazakhstan	25/01/03	26.36%
	Russian Federation	25/01/03	35.80~64.70%
Flat hot-rolled steel in coils and not in coils (단, 조선/철골조공사용으로 로서 투자청(BOI) 승인을 받은 경우는 0%)	Algeria	01/07/10	33.26%
	Argentina	01/07/10	37.94~53.09%
	China*	12/08/11	30.91%
	Chinese Taipei	01/07/10	3.45~25.15%
	India	01/07/10	20.02~31.92%
	Indonesia	01/07/10	24.48%
	Japan	01/07/10	0~36.25%
	Kazakhstan	01/07/10	68.11 ~ 109.25%
	Malaysia*	12/08/11	23.57 ~ 42.5%
	Republic of Korea	01/07/10	0 ~ 58.85%
	Romania	01/07/10	27.95%
	Russian Federation	01/07/10	24.20 ~ 35.17%
	Slovak Republic	01/07/10	51.95%
	South Africa	01/07/10	128.11%
	Ukraine	01/07/10	30.45 ~ 67.69%
	Venezuela	01/07/10	78.44%
Citric acid	China	20/01/14	57.79%
Woven Fabrics of Cotton and polyester	China	18/06/09	7.76 ~ 10.01%
Sodium Tripolyphosphate	China	18/01/10	6.95 ~ 31.42%

* 연간 1천톤 이내의 조선산업용은 0%, 연간 1천톤 이내의 JIS G 4501 grade S45 C 또는 HS code 7208.5100.033, 7208.5100.053, 721490.90은 0%임

출처: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품목별 장벽

자동차

태국은 IMF사태가 발생한 1997.10월에 승용차와 다목적차에 수입관세를 각각 42%와 68%에서 80%로 인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승용차 35~48%, 다목적차 29%의 높은 소비세(승수식 계산, multiplier)와 10%의



지방세, 7%의 부가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됨으로써 승용차에 대한 전체 세금부담은 배기량에 따라 213.2~308.1%, 다목적차에 대한 세금부담은 182.8%에 달하게 되었다.

반면, 이로 인하여 수입 승용차 및 수입 다목적차와 태국 내 현지조립 자동차간 세금부담이 100%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수입을 원천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태국 정부는 2000.1.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 생산업체에 부과하고 있던 54%의 국산화율 규정을 폐지하였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20%에서 33%로 인상하였다가 30%로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74개 자동차부품과 21개 자동차부품은 각각 10%와 5%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자동차 현지조립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현재 태국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소형 승용차 생산의 지역중심국가가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저소비형 자동차와 대체에너지 이용 승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소세를 조정한 데 이어 2007.6월 태국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승용차 생산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소세도 다시 인하하였다. 2014년 현재 태국의 자동차관련 세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관세

- 승용차: 완성차 80%, 부품 30%
- 상용차(버스, 트럭, 특수차량): 완성차 40%, 부품 20~30%

○ 소비세

< multiplier : $(CIF + \text{관세} + \text{부과금}) \times (\text{소비세율} / (1 - 1.1 \times \text{소비세율})) >$

- 승용차와 밴: 3,000cc이상 50%, 2,500cc이상 40%, 2,000cc 이상 35%, 2,000cc이하 30%
- 에너지 저소비자동차(Hybrid/전기/연료전지 자동차): 10%
- 대체에너지 자동차(NGV, 에탄올): 20%
- 픽업트럭: 3%, 승용픽업(PPV): 20%, Double Cab 픽업: 12%
- * 단, 3,000cc이상 승용차 및 픽업트럭은 50% 세율 적용

** 대형트럭, 10인승 초과 버스, 특수차량은 소비세 면제

- 지방세: 소비세의 10%(소비세 부과차량에 적용)
- 부가세: 7%(모든 자동차에 적용)

한편, 태국은 일본과 일종의 FTA인 태국/일본 경제협력협정(Thailand/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2005년 말 협상 완료하고 2007.11.1일 발효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의 3,000cc급 자동차의 관세가 현행 80%에서 60%로 인하되며 3,000cc이하 급에서는 현행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대형차에 대하여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중소형 이하에서는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태국 내 현지생산을 보호함으로써 일본 자동차의 독점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1.7월 총선당시 현재의 집권당인 프어타이당 공약사항으로 2011.8월 신정부 출범이후 2011.9.14부터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First Car Buyer Incentive”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업계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동 제도는 태국내에서 생산되는 1,500cc이하의 승용차와 Pick up차로 소매가격이 100만 바트 이하인 차량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소비세를 10만 바트 이내에서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 제도의 혜택은 1,500cc이하 차량을 태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사로 도요다,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들이 최대 수혜를 받았다. 1,500cc이하 차량을 판매하지만 태국내 공장이 없는 플로톤(말레이시아), 타타(인도), 현대(한국) 차량이 제외되었으며, 태국내에서 생산하지만 1,600cc를 판매하는 포드(미국)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식품·의약품 등 관리

태국 식품의약청은 식품, 담배, 화장품, 의약품, 마약, 사료, 비료, 유해물질, 동·식물, 종자, 의료기기, 향정신성 의약품, 휘발성 물질 등의 생산, 유통,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수입 시에는 수입면허를 받아



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의약품, 화장품, ‘특별관리’ 대상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에 대하여는 엄격한 등록절차가 부과되며 이들 등록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부 동물 및 그 생산물, 대부분의 식물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가 요구된다. 이들 식품·의약품 등의 수입면허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의 재량이 많아 면허발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면허발급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비싼 편이다.

2002.10월에 신설된 농업협동부 산하 농산물·식품표준국이 농산물 및 농수축산물의 위생 및 검역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한-태 양국 간에 투자협정은 2009.10.31, 상품협정은 2010.1.1부터 발효되어, 관세철폐(또는 삭감),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상투자 증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상품 관세철폐 계획

태국은 ① 총 5,079개 품목(수입액 기준 83.1%)을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② 128개 품목(수입액 기준 7.9%)을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제2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③ 175개 품목(수입액 기준 5.2%)을 2016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④ 민감 품목 중 123개(수입액 기준 3.7%)는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고 있다.

상기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2012년까지 83.1%, 2017년까지 91.1%의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들도 5%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관세인하가 가능하다.

공산품 분야별 태국의 주요 양허 현황

-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까지 관세 철폐
- 화장품의 경우 2017년까지 관세 철폐
-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상)의 경우 2016년까지 현행세율의 20% 감축
- 철강분야도 일-태 EPA와 거의 동등 내지 상응한 수준을 확보

하지만, 상당수 상품들이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스케줄에도 포함되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상호대응세율 조항에 의거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으로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와 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FTA 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일반적인 통상 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한반도 면적의 2.2배나 되는 비교적 큰 나라이나 국토의 80%이상이 사막이며 인구는 5백만명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세계 제4위의 가스보유량 및 20~30위권의 원유 잠재력을 바탕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로 건설, 정유, 농업 등 핵심 사업을 발전시키고 수입 대체 부문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08.9월 채택한 신 헌법에 시장 경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2010-2030 사회·경제 국가발전계획”을 통하여 에너지, 건설 등 인프라, 교육, 국방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은 국가소유이며, 전력·가스·수도 등 사회 기본서비스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가 또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주력산업인 석유가스분야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연간 2,500억m³의 천연가스와 1억톤의 석유를 생산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가스 수출선 다변화, 동서가스관 건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유가스 수출 확대와 병행하여 정부의 장기 국가발전계획 추진에 따르는 자본재 수입과 민간 부문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2016 5개년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수출 수익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투자를 지속해 나가면서,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가스수출 다변화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자원에너지 분야 사업으로는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증가를 위한 가스관 건설, 인도, 파키스탄으로의 가스공급을 위한 TAPI 프로젝트 본격 추진,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카스피해 횡단 배관 건설 등 자원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인프라 건설에도 주력하여 2014년 기반시설 건설 및 확충에 총 410억 미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건설분야는 공공시설 및 아쉬하바드 주거단지 건설, 2017 아시아 실내무도대회 개최 체육시설 건설 등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분야는 기존 발전 시설 개량, 레밥·마리주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 변전소 및 전력선 확장·개량 공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소기업 및 비자원에너지분야 육성,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 체제에서 시장중심경제 체제로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수도 및 가스 사용에 대한 계량 실시, 휘발유 부정수급 단속 등 국가보조금 축소 및 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1.1부터 모든 기업회계에 국제기준회계기준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까지 에너지분야를 제외한 국유재산의 70%를 민영화 한다는 목표 아래 2014.7.1 법 발효를 계기로 민간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 및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나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에너지 분야는 제외되어 민영화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자료에 따르면 2012년 GDP는 222억미불로 전년 대비 11.1% 성장,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0.2%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11%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는 연간 7~8%정도의 실질 GDP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2.7월 세계은행은 투르크메니스탄을 소득 저중위 국가에서 상중위 국가로 상향 조정하여 최근의 고도 경제성장세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수출 증대에 힘입어 GDP 대비 국가부채 감소하여 2013년말 기준 국가부채는 337백 만미불로 추산된다. 경상수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07, 2008년에 걸쳐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9.4 대러시아 가스관 폭발사고로 인한 대러시아 수출 중단으로 2010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중국으로의 가스수출증가에 힘입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EIU는 2011년 4억미불, 2012년 10억미불, 2013년 17억미불 흑자로 추계하였다. 2007.2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의 물가 통제 완화, 유류 가격 인상 등 복지 혜택 일부 철회, 외환 유입 증가 등으로 물가는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8.5%, 2013년 9%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2007년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향 조정,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새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여 2008.3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 및 8월 석유가스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여건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투르크멘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연간 1억톤의 석유(일산 200만 배럴, 2012년 25만 배럴)와 2,500억 m^3 (2012년 644억 m^3)의 가스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석유·가스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 사업기회와 저렴한 노동시장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제, 노동, 보건 등에 관한 법률 미비,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체제 결여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투자환경 열악하고, 강력한 국가통제, 더딘 경제개혁과 제한적 비자발급, 낮은 제도화 수준과 관료의 자의적 법·제도 집행 관행 등으로 시장 진입 및 외국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영국의 Fitch사는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신용등급을 철회하였고, 미국의 US Eximbank, 영국의 ECGD 등은 단기 채무만 인수하고

중기 인수에는 제한을 두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국제 신인도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례로 2013년도 경제활동관련 국제순위를 살펴보면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는 177개국 중 168위, Heritage 경제자유도는 178개국 중 171위이며, 2012년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발표에 따르면 무역정책은 79.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 효율성 -1.11, 법치 -0.98, 부패통제 -0.95, 규제의 질 -1.53로 외국인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¹

그러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시장진입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은 독과점 시장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건설업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뷔익 및 빈치, 터키의 폴리맥스 및 르네상스가 이에 속하며, 발전 분야에서는 터키의 로터스, 찰릭에너지, 송배전 사업에서는 벨기에의 에넥스 등이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에너지 플랜트 중심으로 L상사/H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은 LG와 삼성, 신차 승용차 시장의 경우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다. 2014.6.20-21 우리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핵심 국책사업에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은 에너지자원 플랜트 분야 이외에도 자동차, 건설, IT, 전력, 농업분야 등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원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에서 석유·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2009.4.10일 발생한 대 러시아 가스관 폭발 사고 및 유럽의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던 가스 수출이 2008년의 연 40bcm(billion cubic meter)규모 수준에서 2010년부터 연 10bcm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한때 국가 재정상

1_ 상기 지표는 국가별 순위를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로서 100이 최상급을 의미함.



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스 수출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여 2006.4월 중국 CNPC와 Turkmengaz는 2009년부터 30년간 연간 30bcm의 가스공급계약(PSC)을 체결하였으며, 2008.8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투를 계기로 연간 공급량을 40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9월 투르크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연간 공급량을 25bcm 증가한 65bcm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위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833km(투르크메니스탄 188km, 우즈베키스탄 530km, 카자흐스탄 경유 1,115km)의 A, B, C 병행 가스배관으로서, 사만데페 가스전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 호르고스 가스 집하장까지 연결되며, 중국 영토에서는 중국 국내 가스관인 “West-East II Pipeline”과 연결된다. 2009.12월 연 15bcm 규모의 A 라인을 준공한데 이어, 2010년말 연 15bcm 규모의 B 라인이 개통되었으며, 2014.6월 연 25bcm 규모의 C 라인이 개통됨에 따라 연간 55bcm의 대 중국 가스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14.9월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탄-중국을 연결하는 연 25bcm 규모의 D라인 타지키스탄 구간 건설에 착공하였으며, 2016년 공사가 완료될 경우 대중국 가스관의 총 용량은 2020년까지 80bcm(전체 중국의 가스 수입 물량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으로의 가스공급확대를 위하여 2013.9월 갈키니쉬 가스전 1단계 가스처리 플랜트 완공한데 이어, 2014.5월 연간 30bcm 규모의 제2단계 가스전 개발에 착공하여 2018년 완공할 예정에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중국으로 천연가스 수출은 2012년 20bcm, 2013년 25bcm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량 42bcm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제1의 가스수출대상국이 됨에 따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0.1월 투르크메니스탄 도블렛다바드(Doveletabad) 가스전에서 이란 한기렌(Hangiren) 으로 연결되는 총 연장 60km의 가스관 추가 건설로 종전 8bcm의 대 이란 가스 수출 물량이 14bcm 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0.11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란 국경지역에 소재한 사라스(Sarabs)에서 이란의 한기렌(Hangiren)에 이르는 2단계 가스관 추가 개통으로 연간 최대 20bcm의 가스를 이란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갈크니시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 인도에 공급하기 위한 TAPI(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과 TAPI 참여국간 가스구매협정 체결, ADB와 거래자문계약체결 등 TAPI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이미 마쳤으나, TAPI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컨소시엄 구성, 특히 역량있는 컨소시엄 리더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인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IOC간에 컨소시엄 구성 협상이 육상광구개발권 허용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장기 경제사회개발계획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자원 인프라, 건설, 교통 분야 등에서 잠재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경제 지표

경제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추정)	2014년(전망)
GDP(십억 달러)	17.1	21.1	24.5	28.8	34.9
GDP성장률(%)	6.0	10.0	7.0	8.0	9.2
인플레이션(%)	10.0	12.0	8.5	9.0	11.0
수출(십억 달러)	10.5	13.8	15.4	17.5	21.6
수입(십억 달러)	8.3	9.4	10.2	11.3	13.3
경상수지(백만 달러)	-1,337	411	1,069	1,727	2,832
외화보유액(백만 달러)	17,509	18,873	20,106	21,148	24,460
환율(기간평균, TMM/\$)	2.85	2.85	2.85	2.85	2.85

출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2013.7

한-투르크 교역현황

구분	수출			수입			수지		
	순위	금액	증감(%)	순위	금액	증감(%)	순위	금액	증감(%)
2010	106/237	109,542	+65.3	174/237	456	-39.2	68/237	+109,086	+66.51
2011	91/240	242,714	+121.6	178/238	472	+3.5	55/240	+242,216	+122.04
2012	94/243	193,509	-20.3	168/238	837	+77.5	66/253	+192,672	-20.5
2013	106/242	141,189	-27	197/242	126	-84.9	61/245	+141,063	-26.8
2014 (1-8)	93/242	148,553	+54.8	183/243	146	+29.1	53/244	+148,407	+54.8

자료원: KITA

우리나라는 2010년 1억9백만달러 수출, 2011년 2억4천만달러를 수출한 데 이어 2012년 1억9천만달러를 수출하는 등 3년간 수출이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갈크니시 공사²에 투입되는 장비의 수출이 주로 차지한다. 2013년은 갈크니시 공사 준공으로 1억4천1백만달러를 수출하여 감소세를 시현하였으나 2014년 들어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현대화 등 후속사업 본격 진행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등 수송기계, 철강 및 금속제품, 산업용 기계, 중전기 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섬유 및 면사 제품 등이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산업화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² 수제 모직 및

² 갈크니시 공사: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이래 에너지분야 최대규모의 가스 탈황 공사 프로젝트로서 총사업비가 100억달러에 달하며, L상사/H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중국 CNPC, UAE의 Petrofac과 함께 2009.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는 2013.9.4일 준공식을 거행함.

건직 카페트는 해외 반출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제조 후 30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1m² 당 20미화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시 표준, 인증, 위생 등과 관련된 장벽은 없으나, 건설 기자재의 경우 국내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건설자재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계약서에 투르크메니스탄 국내 생산 건설 기자재 우선 구매조항이 명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관세행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관료들의 법 집행 관행이 자의적인 편으로 통관 절차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대행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외국인 투자 장벽

권리보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외국인 투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법률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시부터 10년 동안 투자시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정보는 투르크메니스탄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보 접근이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 제한

헌법 수호,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제한이 가능하며(외국인 투자법 제8조에 의거), 외국인의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투자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는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대부분 49%이상의 투자 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제한 및 지상권 설정 장벽

내국인

토지 소유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토지 임차권만 허용이 되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 토지 임차권의 제공 대상: 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물, 임시 시설물
-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은 최대 40년까지 허용되고, 토지 사용권, 임차권은 매매, 증여, 담보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의 개인 및 법인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상가 등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외환 관리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1달러당 매입 기준 2.843마나트, 매출기준 2.864마나트), 개인의 경우 해외로부터 매월 5천달러 이하만 송

금이 허용이 되는데 해외로부터 송금된 외화 인출시 5,000달러 기준 37.5달러 내외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과실 등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제한을 받지 않으나 해외로부터 송금된 외화 인출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1만달러 기준으로 75달러 내외), 출금시 자금의 사용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한다.

정부 보증 및 상업 신용장 개설 장벽

투르크메니스탄은 차관 공여 사업에 대하여 정부보증(Sovereign guarantee)을 하지 않기 때문에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정부보증이 필요한 공적 개발원조 형식의 차관 공여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며, 상업차관만 제공 가능하다.

중앙은행에서 상업신용장(L/C:Letter of Credit)을 개설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개념의 상업 신용장으로서의 기능은 없다(현재 상업 신용장은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범위내의 금액을 본인 거래 은행이나 지정한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어음할인 또는 수출 선대금 용자가 가능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상품 수취 후 하자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Certification 형태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은행으로부터 하자있는 신용장으로 취급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법 장벽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전체직원 중 현지인 고용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를 통하여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정부 발주사업 종사자의 노동허가 신청시에는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 허가 신청서에 발주관청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 노동허가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 중 주민등록상 다른 주 출신의 근로자도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관청에서 별도의 노동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상용 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민국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한다.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시장 조사 등을 위해서는 투르크메니스탄 내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사업 발주관청 또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비자 초청장을 발급 신청 가능하다.

비자 초청장 발급 후 신규 발급된 여권으로 공항 입국시 구 여권을 신 여권과 함께 지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국 사증 발급이 거부되며, 입국 후 72시간 내 체류등록을 하여야한다.³

체류등록을 한 피초청인이 출국시에는 출국일로부터 3일 이내 초청기관에서 이민국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초청기관에 건당 112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세 제도 및 기타 부담금

국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5%가 원칙이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 지분이 1%만 포함되어 있어도 외국기업으로 간주)의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 특

³ 입국일과 출국일, 주말을 제외하고 72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비자 초청장 발급신청기관을 통해 사전에 체류등록을 하여야한다. 1회 불이행시 485달러의 벌금, 2회 위반시에는 벌금 이외에 5년간 입국에 규제를 가함.

례를 적용하여 약 2%만 부과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의 1%, 법인 소득세는 외국기업의 경우 20%, 내국기업(이 경우 세법상 용어로 ‘거주법인’으로 표현하며, 지사 및 대표부형태가 아닌 외국인 투자 법인도 포함)은 8%, 개인소득세는 10%, 사회보장세는 급여의 20%(외국인은 면제)가 각각 부과된다.

지방세

도시발전세는 이익의 0.5%, 주거 환경조성기금은 이익의 1%, 농업 발전세는 이익의 3%를 부과하며, 연금은 현지 고용 노동자의 경우 본인 희망시 봉급월액의 10%내외를 원천징수하며, 투르크메니스탄 행정관청의 주문 제작 품목은 관세 면세가 가능하다.

기타

에너지 분야의 생산물 분배 계약(PSA)을 체결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이 있다.

공공요금

가정용 전기, 수도, 가스는 무료이며, 내국인 자가용 소지자에게는 매월 120리터의 휘발유를 무상으로 공급한다.⁴

산업용 전기요금은 자국 기업의 경우 무료이며, 외국 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은 1kwh당 미화 3.5센트 상당의 요금을 부과한다.

외국 기업에 대한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은 1,000m³당 35달러, 산업 용수는 10m³당 2.75달러이다.

⁴ 120리터 초과시 1리터당 미화 21.8센트 가격으로 휘발유의 구입이 가능하다.



법인(corporation), 대표부(representative) 및 지사(branch office) 설립 관련 사항

법인형태는 국영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사회단체기업, 경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형태가 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 법인 설립 신청서
- 법인 설립 결정을 위한 투자자 회의 회의록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설립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사본 및 은행 거래증명서
-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및 은행거래증명서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서
- 총 투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신설 법인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임대차계약서(법정 주소) 등
- 신설 법인의 대표자가 자연인인 경우 해당 자연인의 신상명세서
- 법인 설립업무를 대행할 변호사나 회사에 대한 위임장
- 등록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대표부 설치에 필요한 서류

- 대표부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대표부 설치를 위한 본사 대표의 확인서(대표자 서명)
- 대표부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러시아어 각각 2부)
- 대표부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대표부 대표(지사장)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 경제개발부 외국인 투자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지사 설치에 필요한 서류

- 지사 설치 신청서(설치 목적, 투르크메니스탄 내 활동 목적, 모기업의 회사 소개 및 대표자 성명 등)
- 지사 설치를 위한 본사 대표의 확인서(대표자 서명)
- 지사 설치 근거가 되는 회사 내규(투르크멘어 및 러시아어 각각 2부)
- 지사 대표(지사장) 등록 신청서(3x4 크기 사진 및 여권 사본)
- 지사장의 활동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
- 본사 정관 사본(본사 대표의 확인, 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 확인)
- 경제개발부 소속 외국인투자청이 발급하는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원본(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계좌 및 잔고 증명서(투르크메니스탄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요)
-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지사 주소지 확인서
- 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증명서

상기 문서 준비 및 제출시 유의 사항

상기 대표부 및 지사 설치 관련 문서 중 모기업 소재지 언어로 된 문서는 모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문서와 함께 투르크멘어와 러시아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기관의 번역 공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관행상 한국인 투자법인 또는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 등록시 상기 필요 서류에 대한 외교통상부 및 주한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에 대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대표부 또는 지사 설치시 매 2년마다 연장 등록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시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임시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1단계)

상기 서류를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통계청에 제출하면 통계청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업무 활동 번호(code)를 부여하는 바, 이후 투자자는 동 번호와 상기서류들을 경제개발부에 제출하고, 경제개발부는 이를 다시 산하기관인 외국인투자청으로 이송한다. 외국인투자청은 상기 이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고, 이 단계부터 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청의 안내를 받거나 전문 법률회사의 조력을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서류가 완비되면 외국인투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기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투자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국가 보안부, 내무부, 경제개발부 대표들로 구성되며, 통상 2-3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사 또는 사무소 등록이 승인되면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개발부에 3,000 달러의 등록비를 납부하고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절차(2단계)

임시 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다시 통계청으로부터 업무 활동 번호(code)를 재확인⁵받아야 하는데, 그 후 투자자는 국세청에 설립하

5_ 경제개발부 및 외국인투자청에서 관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업무 활동 번호(code)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통계청에서 재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고자 하는 대표부 또는 지사를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현지화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자가 상기 통계청의 업무활동 번호(code) 재확인서, 국세청의 등록 확인서 및 은행의 현지화 거래계좌 개설 증빙 서류를 다시 해외투자청에 제출하면 ‘정식 등록허가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고 관련 서류를 경제 개발부에 이송하게 된다. 경제개발부가 정식 등록 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를 해외투자청으로부터 이송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 경제활동 허가서’를 발급 받게 되며, 신청인은 상기 등록허가서와 외국인 경제활동허가서를 내부무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규정상 법인 설립, 대표부 또는 지사 등록 소요기간은 관련 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 서류 보완 과정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전문 법률 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최소 3~4개월, 지연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협력조약(1991.12월 가입),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1999.9월 가입) 등 8개의 국제조약과 WIPO의 9개 기구에 가입하였고, EAPO(Eurasian Patent Office)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접근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화 수준과 현실적인 법 집행 관행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정부 조달

2011.7.23일 공표된 대통령령에 의거 20,000마나트(약 7,034달러) 이상의 정부 조달 사업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나, 관행상 입찰 공고시에는 이미 낙찰 대상 기업이 사실상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류 현황 및 전망

현재의 물류 시스템은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존하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 간 국경이나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었으며,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물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을 잇는 남북 철도를 2009년 착공하여 2013.5월에 카자흐-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을 개통하였고 2014에 이란을 연결하는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 삼국간 철도 공사도 2013.6월에 착공하여 2015년경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카스피해 주요 항구인 투르크멘바쉬를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투르크멘바쉬 항만 현대화 사업이 2013.8월 Erdogan 터키 총리의 방투 계기에 착공되었다.

통신 인프라

시내 유선 전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해외 유선 전화 사용료는 매우 비싼 편이다.⁶ 무선 통신의 경우 통화 품질이 좋지 않고, 무선통신 간 전화는 먼저 통화를 한 사용자가, 무선통신과 유선통신 간 통화의 경우 무선 통신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⁶ 한국으로 전화시 분당 최소 5천원 이상, 호텔의 경우 9천원 수준이다.

전화 모뎀 인터넷 속도는 매우 느리고, 3G 인터넷의 경우도 2G 이하 수준의 품질이다. 전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품질에 만족하기 어려우며, 또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통신 위성을 사용한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도 하나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운전면허, 차량 임차 및 운행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한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번역 확인한 확인서와 한국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투르크메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때 한국 운전면허증은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이 보관)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시에는 기 발급받은 투르크메니스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면허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 운행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 운전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⁷ 외국인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보험 공사의 대인, 대물 및 자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고의 또는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정부보험공사에서 전액 손해 보상 및 합의를 책임지므로 가급적 책임보험외 비의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양국간 협정 체결

우리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우리측 국내절차는 2014년내 완료될 예정이며, 과학기술협정 관련 절차는

⁷ 현지인은 위임장을 받아 외국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현지인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다.



2014.9월 완료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측도 이들 협정의 서명을 위한 자국내 절차를 이미 완료한 만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한국 답방 계기에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그간 3차례의 협상(제1차: 2010. 6월, 제2차: 2011. 3월, 제3차: 2014.8월)이 아쉬하바드에서 개최되었다. 투자보장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양측은 문안 협의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파키스탄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수입부과금

파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방 정책을 기본으로 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수입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왔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 부여 등 수입 자유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보호 및 과잉수입 억제 등을 위해 규제관세(Regulatory Duty)를 부과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8.8월 및 2009.2월 원유, 식량 등 국제원자재가 앙등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주요 사치성 소비재 397개 품목에 대해 규제 관세를 15~50% 부과한 바 있다. 2011.7월 이중 5개 품목(담배, 1800cc 이상 자동차, 타일, 무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관세를 폐지하였다.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출·수입에 대해 모두 부과한다. 일반 세율은 수입 관세(Custom Duty, 0~30%), 규제관세(15~50%를 초과 부과/관리 대상 품목에 따라 건별 부과), 판매세(Sales Tax, 0~25%: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 등이 있다.

파키스탄 재정국(Federal Board of Revenue) 홈페이지(www.fbr.gov.pk)를 통해 관세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Code와 HS-Code의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HS-Code에 대한 관세율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000.1월부터 거래가격제를 시행, 수입관세 부과시 인보이스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품의 약 90~95%는 거래가격제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식료품 및 소비재 등의 경우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으로 인해 동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인보이스와 관계없이 국제표준가를 적용한다.

파키스탄의 관세 부과율은 2013-2014년 기준 간접세 17.4%, 직접세 10.6%이며, 보통 1차 원료에 대해서는 0~5%, 2차 부품에 대해서는 5~10%, 완성품에 대해서는 20~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재무부는 2010년 이후 자국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였는바, 주요 관세 변동 품목은 다음과 같다.

○ 2009-10년

- 수입자동차에 대해 당초 50%의 관세에서 800cc이하(50% 유지), 1,800~2,500cc(90%→100%), 2,500~3,000cc(100%→150%)로 인상
-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 콘덴서(5%→10%), 철강 파이프(5%→15%), 이소부틸(Isobutyl), 아세테이트(5%→20%), 플라스틱 위생용기(20%→25%) 등
- 주석판 제조를 위한 CRC Black Plate(10%→5%), 변합기와 컨트롤 패널 원자재 세율인하, 선형 알킬벤젠(Linear alkylbenzene)의 관세 면제, 태양열관련 설비의 면세범위 확대
- 2010.7월 롯데의 현지 투자업체인 KP Chemical이 생산하는 고순도테레프탈산(PTA)에 대한 관세(7.3%→3%) 인하, 2014년 3%→4% 인상

○ 2011년도

-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 소재시 50%, 국내 유관 제조업체 미 소재시 35% 관세 부과

- 의약품 중 항생제, 항알리지제, 항당뇨성, 결핵치료에 필요한 22개 필수 의약품 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거의 면제
- 2012년도
 - 일반관세 35%에서 30%로 인하
 - 의약품 원료 10%에서 5%로 인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세를 25%까지 인하, 폐기고무 및 타이어 20%에서 10%로 관세 인하

통관절차상의 장벽(검역, 검사 및 통관지연, 통관절차상의 규제 등)

파키스탄은 2012/13 회계연도 정부예산 편성시 세계관세기구(WCO)가 매 5년마다 제정하는 HS 코드에 자국 관세 코드를 맞추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파키스탄의 수입 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향정신성 의약품, 주류, 돼지고기, Non-Halal Food(이슬람 방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육류)가 있다.

파키스탄은 수입업자들이 세관 신고 시 인보이스 언더밸류 관행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세관은 내부적으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수입가격 리스트(reference list)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입업자들과 세관간 가격을 둘러싼 마찰의 소지가 있다.

통계상으로는 90~95%의 수입에 대해 신고가격이 반영되는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실제 신고가격이 세관당국의 표준가격과 상이할 경우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년 컨테이너 안에 인보이스와 팩킹 리스트를 넣어두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선적지와 서류



작성지가 다를 경우나 선적 후 인보이스가 작성되는 경우,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 경우 등 동 제도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5월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업자가 \$58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관세현대화 및 세관 검사

관세현대화 개편은 높은 수준의 감사와 세관 검사를 통한 단순화, 표준화 그리고 자동 통관 수속 절차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온라인을 이용한 세관처리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위기관리 모델도 적용되었다. 현재는 자동차와 컨테이너의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위험기준 통관 수속 시스템(WEBOC)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납세자와 수납자간의 절차가 간소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통해 과실을 또한 감소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이스라엘산 및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수입규제(수입쿼터제 등 수량제한, 수출이행의무 부과 등)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국내산업 보호 또는 외환방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부처에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9.10월 군부 쿠데타 이후 수입신용장 개설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사전 예치하는 소위 L/C margi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0.11.14.일자로 전면 폐지되었다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

자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2008년 부활하였다. 특히 2008.8월에는 주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L/C margin이 기존의 10~3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되었다가 IMF가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 2009.7월부터 동 조치를 폐지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키스탄 정부는 반덤핑법(Anti-Dumping Duties Ordinance, 2000) 및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Ordinance, 200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지 수입구조상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고, 국내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 대해 자국산업 보호 압력을 가하고 있어 반덤핑관세 부과 건수가 2011년도까지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도에 신규 제소된 건수는 없다.

파키스탄 관세위원회(NTC)는 2004년 PVC 합성수지, 2005년 폴리에스터 섬유사(PFY), 2006년 폴리에스터 원면(PSF), 2009년 무수프탈산(PA)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우리업체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7년 자동차안전벨트(증거불충분으로 기각), 2009년 총 3건(과산화수소, 무수프탈산, 편면코팅판지), 2011년 포름산 85%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실시되고 일부 우리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2007년 이후 외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경영이 악화된 파키스탄 기업이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외국경쟁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출시 주의가 요망된다.

파키스탄 덤핑제소 현황

제 소	품 목	피 소 국	반덤핑관세(%)	비고
2004.6월	PVC resin	대한민국, 이란	10.18	관련업체 미대응, 2015년까지 관세연장
2005.3월	Filament Yarn	대한민국, 태국, 말레이시아	6.92 29.07	TK Chemical 신규사업자로 지정 반덤핑 미부과 판정 (2011.10.8)
				그 외 대상업체 Sunset review 형식으로 반덤핑 재부와 여부 심사중
2006.6월	Polyester Staple Fiber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2.14 4.34~10.26 5.04	
2008.9월	Seat Belt	대한민국	종료	
2009.5월	Phthalic Anhydride	대한민국,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7.36	
			6.17	
			11.84	
			5.84	
			27.28	
2009.6월	One side Coated Duplex Gray Paper Board	대한민국(한솔), 대한민국(HM),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5.32	12.12.27최종판정후, 14.8.21 최종판정결과 무효화 결정
			7.86	
			20.61	
			11.66	
			12.35	
2009.8월	Hydrogen Peroxide	대한민국, 벨기에,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터키	14.77	예비판정 (10.9.27)
			9.2~84.48	
			3.82~25.04	
			25.2	
			71.93	
			35.61 25.61	
2011.2월	Formic Acid 85% 이상	대한민국, 중국	44.1 3.48	최종판정(2012.2.10) 우리측, 포름산 미생산으로 미대응 결정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관세 세입 성과

2013-2014년 주요 관세항목은 자동차, 식용 기름, 연료, 기계류와 플라스틱 제품류로서 관세 수입항목의 45%를 차지하였고, 10개 주요 수입 품목으로부터의 관세 세입 비율은 52.3%로 조사되었다.

주요 수입품 관세 항목

(백만 루피, Rs)

관세 항목	2013-14	2012-13	성장률	점유율(%) 2013-14	점유율(%) 2012-13
자동차 및 부품	36,314	42,306	-14.2	14.5	16.9
식용 기름	20,659	20,247	2.0	8.3	8.1
POL 제품	16,761	20,399	-17.8	6.7	8.2
기계류	13,742	12,363	11.2	5.5	4.9
전기제품	11,326	10,396	8.9	4.5	4.2
플라스틱	11,056	8,821	25.3	4.4	3.5
제지류	5,900	5,173	14.1	2.4	2.1
쇠, 철 류	5,820	7,057	-17.5	2.3	2.8
섬유류	4,826	3,396	42.1	1.9	1.4
유기화학물류	4,337	3,917	10.7	1.7	1.6
계	130,741	134,075	-2.5	52.3	53.7
기타	118,989	115,746	2.8	47.6	46.3
총 계	249,730	249,821	0.0	100.0	100.0
환불/반환	8,732	10,361	-15.7		
순 총계	240,998	239,459	0.6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관련 장벽

표준(standard)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PSQCA(Pakistan Standard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로서, 2010.10월 말까지 15,000개의 ISO 및 6,000개의 IEC 표준을 포함하여 총 26,764개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제규격과 상이한 규격 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품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농산물에 대한 전사시설이 낙후하여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바,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차별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05.4월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유전자 변형 콩이 수입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육류제품의 경우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도살되었음을 표시하는 'Halal Food'라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경우 선진기술과 표준화된 제조공정에 따라 품질, 인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내기관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파키스탄 내 기관 또는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의 인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

파키스탄은 1997년 환경보호법 등 일련의 법규를 제정하고, 이후 국가 환경품질기준(NEQS)을 마련하여 주로 자동차, 공해배출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특별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파키스탄은 2012.7.1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차량은 반드시 EURO 2(로마자자로 변환)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차량의 탄소 배출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품목별 장벽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 환경, 안전, 보건 상의 이유로 술, 음란물, 마약, 무기류 등 6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에 대해서는 사전 검역 및 표본조사 등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2009.8월 발표된 파키스탄 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조류 독감 발생 전력이 있는 다수국가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은 제한되고 있으

며, 수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키스탄 상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SROs/0766=04092009.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섬유 수입에 적용하던 수량제한은 2000.11월 WTO와의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섬유제품은 현재 제한 품목이 아니다. 또한 중고 기계류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수입이 허가되었으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장려를 위해 섬유, 가죽, 스포츠용품 수출산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정부재정 악화 및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키스탄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정부의 조달은 종종 공개입찰이나 등록된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투명한 낙찰자 선정 등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2002.5월 공공조달관리청(Public Procurement Regulatory Authority)을 설립하여 공공분야 조달 관련 규정과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무를 위한 규정(Framework)을 제정하여 국제 입찰정보는 신문광고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조달 참여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외국 업체의 경우 등록된 현지



지사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주자 선정은 입찰 가격 및 기술심사를 기초로 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

파키스탄 정부는 시장에 만연한 해적판으로 인해 국내산업(특히 IT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수년간 특허, 저작권,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법규를 마련하였으며, 2005.8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권기구(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제로 일반 대중의 인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키스탄은 2009년 이후 미국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special 301조 보고서상의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낮다.

서비스 장벽

과거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적립, 과실송금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2004년 관련 제약이 모두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최소투자금(금융, 농업 등 일부 업종 외 15만 달러)조건 등을 충족하면 100% 지분소유 및 100% 과실송금이 허용되며, 로열티 및 기술비 이전도 가능하다.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과거 유선전화 서비스를 독점하던 파키스탄통신회사(PTCL)가 2005년 이후 민영화되었으며, 유무선 통신 서비스 모두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 파키스탄의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요건

구분	서비스 분야 투자 (정보통신 및 IT포함)
정부 승인	투자대상 분야 관련기관 허가외 불요
과실송금	허용
허용 투자지분	100%
최소투자금액	15만 달러
PME 수입관세	0-5%
Tax Relief (IDA, PME 비용 %)	50%
Royalty/기술이전료	초기 투자시 건당 10만 달러 허용 -순 매출의 5% 범위내 최초 5년간 허용

※ 출처 : 파키스탄 투자청 : www.pakboi.gov.pk

※ PME= Plant, Machinery and Equipment, IDA= Initial Depreciation Allowance

한국의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진출 기업으로는 대우고속버스서비스가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현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화된 경영기법과 서비스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파키스탄에서는 무기류(arms & ammunitions), 고도 폭발물(high explosives), 화폐/조폐(security printing currency/mint), 방사능 물질(radioactive substances), 비산업용 알코올 제조(non-industrial alcohol plants)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파키스탄은 상기 5개 분야 외에는 투자시 관련기관의 허가외의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고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금융업중 상세 후술).



제조업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투자가 가능하나, 여타 분야는 최소 투자금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금융 서비스 분야의 최소 투자금은 15만 달러이며, 농업, 인프라, 사회서비스 등 분야의 최소 투자금은 30만 달러이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하에서 체결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투자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키스탄에는 특별히 제한된 투자 진출형태는 없으며 라이선스 계약, 지사 설치, 연락 사무소 설치, 공장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장소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지사나 연락사무소와 같은 형태로 외국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청(BOI)의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법인의 경우 BOI의 추천을 받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of Pakistan)에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파키스탄내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동명 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SECP로 부터 기업명 사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 정관 4부 및 등기 이사 전원의 여권 사본과 함께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SECP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법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된 법인 계좌를 국세청(FBR)에 신고하고 National Tax Number와 General Sales Tax Number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11.7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신규 지사·사무소설립을 희망하는 외국회사는 보안심사통과(security clearance)를 내무부로부터 받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절차의 신규 시행에 따라 이전보다 법인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 절차의 신청은 BOI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다.

국산화 의무 부과

투자에 대한 국산화 계획(Deletion Programme)은 각 업종별 및 개별 투자건별로 투자 시 파키스탄 투자청(Board of Investment)과의 협약에 따르며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 조립 생산 진출 시 단계적인 국산화율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작년도에 약 26% 수준에서 시작, 매년 3%씩 국산화율을 높여 65% 수준까지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제조업 중 수추루가가치산업으로 인정되어 면세 및 기타 특혜등을 향유하는 투자의 경우,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하고 총생산의 80%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가죽, 섬유, 신발, 수술용구, 스포츠용품, 카펫, 수산물, 광업 등이 있다.

수출자유구역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1989년 카라치에 최초로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을 설치하였다. EPZ는 이후 Risalpur, Gujranwala, Sialkot, Faisalabad, Gawadar, Saindak, Dubbar, Haripure, Peshawar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력 및 용수 부족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PZ에 소재한 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전용상품에 대해서는 연방/지방 소비세 면제 또는 감면,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계류의 감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순이익금의 0.5%~1.25% 세금만 부여된다.



특별경제구역

파키스탄정부는 2012.9.10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법안을 발효시키고,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세제, 인프라, 절차간소화 등) 제공함으로써, 파키스탄 내에 외국 및 내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였다.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발면적이 최소 50에이커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별 경제구역 개발자와 참여기업에게는 자본재(설비, 기계류 등)에 대해서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고, 10년간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기존의 수출자유지역(EPZ)이나 산업단지(Industrial Zone)도 특별하게 경제구역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기 인센티브 제공시 중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 주무기관인 투자청에서 One-Window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고질적인 행정의 지연과 융통성 부족, 곳곳에 부패가 만연하여 실제 투자허가를 없는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개인의 사적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약이 가해지며, 지역에 따라 군사지역 등에 대해서도 임차권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한 정부기관에 의해 기 개발되었거나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된 대지를 구입해야 안전하며 개인의 경우, 계약후 제 2, 3의(경우에 따라 수십 명의) 사람이 새로 나타나 자기 소유를 주장하거나 지불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 사업가들은 외국인과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데 대부분 파키스탄측이 토지,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투자하고 외국인은 나무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계약관련 분쟁이 생겨 법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결되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1976년 외국인 투자(촉진, 보호)법을 제정 외국인 투자 시 투자에 따른 과실, 재투자 이익 및 기타 각종 이익의 본국 송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투자업체가 투자 촉진 시 중앙은행에 과실송금에 대한 허가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다만, 실제 송금시 테러자금, 돈세탁 여부확인 등을 거치는 절차가 타국에 비해 까다로우며, 외환부족에 따라 외화 송금에 대해 당국의 거부감이 커 송금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금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3)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현지 금융조달상 제도적인 제한은 없다. 단기 금융은 주로 상업은행에서 대출되며, 장기 금융 및 중장기 금융은 투자 금융 회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업무의 도입, 대출 규모의 완화, 자금 도입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던 2001년 이전까지는 외환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



하여(1998.5월 핵실험 직후 외환구좌 전면 동결 사례 등)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의 대테러전쟁 참여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 서방의 채무 재조정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 대외결제의 어려움이 대폭 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 따라 2008.9월 외환보유고가 80억 달러까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IMF구제금융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 등 대외지불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분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5) 이중환을 적용에 따른 문제점

과거 현지화로 공사대금을 받는 일부 우리업체의 경우 공식 환율보다 약 4~5% 높게 적용되는 시장환율로 환전, 외화를 송금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었으나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는 보고된바 없다. 다만, 기업의 경우 달러구좌 보유가 금지되어 현지화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달러 송금시 환전을 하여 송금하도록 되어 있다.

세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내외국인(기업)간의 특별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내외국인 사업자가 공히 부담해야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25~50%), 소득세(10%), 일반판매세(16%), 연방소비세(업종에 따라 0~20%로 다양) 등이 있다. 이 외에 기업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수익의 2%, 근로자이익배당기금에 수익의 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 종래 35%였으나 은행(50%), 공기업(35%), 민간기업(45%), 소기업(25%)로 변경하였다.

분쟁해결절차 개선

파키스탄은 2011.7.19일 분쟁해결에 관한 외국중재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그 효력을 2005.7.15 이후로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파키스탄내에 발생하는 외국인관련 각종 분쟁 발생시에 국제중재법에 따는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분쟁 해결에 크게 진일보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파키스탄 사업자의 독점 시도

파키스탄은 독점규제 법규를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한 감독기관으로 기존의 독점관리청을 개편하여 2007.10월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Pakistan)을 신설하였다.

파키스탄 사업자의 상품, 서비스 등 시장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은 없다. 과거 파키스탄 통신회사(PTCL)와 수전력공사(WAPDA)가 유선전화와 전력공급 서비스를 독점하였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 비자

2001.10월 이전까지는 한·파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방문이 가능하였으나, 2002.1월부터 우리정부의 비자 면제협정 효력정지 조치로 인해 상호 비자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하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안불안, 사회 간접자본 부족, 훈련된 기능인력 부족, 관료사회의 느장행정과 정책 집행상의 투명성 결여 및 관료주의 만연 등 정부 신뢰성의 문제, 그리고 회교 문화에 따른 부수적 제약요인(금주, 위락시설 부재, 여성 노동력 이용 장애 등) 등이 대표적인 교역/투자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여타 서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역 및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이 활발한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사항

파키스탄 금융시장 현황

1989년 이후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시장 개혁에 따라, 금융분야의 민영화와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10월 은행 총예금 4조 1천억 루피, 총대출 3조 3천억 루피로 성장하였고, 81%이상의 상업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금융기관 납입자본의 총 47%는 외국인 소유가 되었다.

외국은행이 파키스탄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50억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거나, 파키스탄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구(SAARC, ECO등)의 가맹국에 본점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 파키스탄에서 100% 지분을 소유한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은행은 국내은행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파키스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회사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파키스탄내 영업을 위해서는 최소 지불준비금 100억 루피(약 1.16

억 달러)를 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개혁에 따라 보험시장도 개방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업종에서 최대 49%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파 정부가 소유한 State Life Insurance Company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보험(대물, 사고, 건강)은 민간회사(점유율 86%)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종에서 과실송금에 제한은 없으며, 투자자본도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허가를 얻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된 장벽

외국 금융기관의 파키스탄 진출과 관련하여, 최소자본 요건을 제외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



파푸아뉴기니

통상환경 변화와 특징

경제일반

파푸아뉴기니의 방대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광물자원은 국내 및 대외 간에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파푸아뉴기니는 구리, 천연가스, 목재, 수산물 등 천연자원은 물론이고 커피, 코코넛, 코코아, 팜오일 등 농산물이 매우 풍부하다. 이로 인해 copra 분쇄, palm oil 가공, 합판생산, 우드칩 생산, 원유생산, 금·은·동 생산 등의 산업이 발달되었다.

무역정책

2002년 Michael Somare 전 총리 정부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로서 대외무역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이 경제회복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경제정책은 농업, 수산업, 산림업 분야에 초점을 두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생산과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광업, 석유, 가스 및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자족 수준에 있는 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산물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무역협정

파푸아뉴기니는 국가간 무역 확대를 위해 다수의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멜라네시아 선봉 그룹(MSG) >

파푸아뉴기니는 MSG를 설립한 국가로써 회원국인 피지, 솔로몬, 바누아트와 함께 공정무역과 회원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MSA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 태평양도서국 무역협정(PICAT) >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 14개국간에 체결한 PICAT 회원국이다. PICAT는 회원국간에는 비관세 장벽은 물론 관세장벽을 점차 제거함으로써 회원국간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에 관세자유화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모든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파푸아뉴기니-피지 양자무역협정 >

1996년에 파푸아뉴기니와 피지간에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양국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무역과 경제발전에 서로 협력한다는 협정이다.

< 파푸아뉴기니-호주 양자무역 관계 >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는 2008년 상호간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교육, 보건, 공공 서비스 등 파푸아뉴기니에 우선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파푸아뉴기니-중국 양자 경제협력 >

파푸아뉴기니는 중국을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1996년에 무역, 경제, 상업분야에 협력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



며 이후 양국 경제협력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경제, 무역,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과 이중과제방지협정, 수산협력협정 등이 있다.

< APEC >

파푸아뉴기니는 1993년에 APEC 회원국에 가입하였으며, 회원국으로써 WTO 규정 범위내에서 농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현재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ASEAN >

ASEAN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목표로 조만간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Cotonou 파트너십 >

Cotonou 파트너십은 정치, 개발, 무역협력을 통해 빈곤국 퇴치를 목표로한 지구상 가장 큰 개발협력 조직이다.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지역 국가 79개국 회원국으로 있으며 EU 15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파푸아뉴기니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경제 파트너십 협정(EPA) >

파푸아뉴기니가 특혜관세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WTO 규정과 불일치함에 따라, EU는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EPA를 체결하는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였다. 2009년에 EU와 EPA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EU와 파푸아뉴기니는 무역 및 경제발전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현재 파푸아뉴기니는 EPA협정에 따라 EU로 부터 참치 수출을 위한 특별 지위를 인정받은 최초 국가가 되었다.

< WTO >

파푸아뉴기니는 1996.6월에 WTO에 가입하여, 법, 규정, 관행, 절차 등

국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최근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제도의 현대화, 통상 및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수출입 관세절차 개선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접근성을 높여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외무역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대외교역동향

2013년 파푸아뉴기니는 주요 수출국 ①호주 ②미국, ③싱가포르 ④중국, ⑤일본이며, 수입대상국은 수입국은 ①호주, ②뉴질랜드 ③말레이시아 ④미국 ⑤싱가포르이다. 또한 주요 수출품은 ①광물 ②목재 ③팜오일이며, 수입품 ①석유 및 원유 ②정제유 ③자동차 ④ 기계류 이다.

■ 파푸아뉴기니 국가별 수출입(2013년)

(단위: 백만키나)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입액
1	호주	6,109	1	호주	4,090
2	미국	1,479	2	뉴질랜드	3,217
3	싱가포르	1,154	3	말레이시아	1,559
4	중국	177	4	미국	1,041
5	일본	172	5	싱가포르	591
9	한국	29	6	한국	284

자료 : PNG 상공부

■ 파푸아뉴기니 품목별 수출입(2012년)

(단위: 백만불, %)

수출			수입		
	품목	수출액(비중)		품목	수입액(비중)
1	금	2,037(22)	1	석유 및 원유	562(7.3)
2	금 함유물	1,493(16)	2	정제유	515(6.7)
3	구리	1,295(14)	3	트럭	300(3.9)
4	원유	1062(11))	4	철강	235(3.1))
5	팜오일	606(6.5)	5	공기펌프	219(2.9)



한-파푸아뉴기니 교역현황(2013년)

(단위: US\$ 1천, %)

년도	대PNG수출		대PNG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8	31,359	70.5	228,737	66.6	-197,378
2009	34,304	9.4	213,439	-6.7	-179,135
2010	82,852	141.5	201,139	-5.8	-118,288
2011	103,141	24.5	331,553	64.8	-228,412
2012	116,682	13.1	206,986	-37.6	-90,304
2013	64,227	-45.9	233,191	12.6	-168,970

자료: 무역협회

한-파푸아뉴기니 주요 수출입 품목(2013년)

〈 수출 〉

(단위: US\$ 1천, %)

순위	품목명	2012년	2013년	
		금액	금액	증가율
1	무기화합물	14,113	14,855	5.2
2	자동차	14,233	12,138	-14.8
3	기계, 컴퓨터	34,162	9,530	-72.2
4	고무제품	5,006	7,466	49.1
5	철강제품	9,179	5,211	-43.3

〈 수입 〉

(단위: US\$ 1천, %)

순위	품목명	2012년	2013년	
		금액	금액	증가율
1	광석	145,205	184,022	26.7
2	석유, 석탄	31,261	23,972	-23.4
3	목재	22,067	17,370	-22.3
4	알루미늄	3,954	4,216	6.6
5	커피, 차	2,445	1,199	-51.0

자료 : 관세청

수입 정책상의 장벽

수입제도

파푸아뉴기니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는 없다.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가 있다.

무역관세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 네가지로 분류된다.

- ① 영세율(Zero Rate) 0% : 대부분의 수입품에 영세율 적용
- ②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15% :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 상품들.
- ③ 보호세율(Protective Rate) 25% :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들과 경쟁하는 최종재
- ④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40% :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들(과일, 채소, 알콜, 목재, 일부사치품)이 밖에도 설탕 70%, 가정용 전자제품 30% 그리고 자동차는 0-110%까지 실행세를 부과

현재 파푸아뉴기니의 평균 수입관세는 5.1%이며, 최소 제한 무역제도를 운영하는 범위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비관세장벽

파푸아뉴기니의 유일한 비관세장벽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허가이다. 동법에는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모든 품목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세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되며, 수입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수입세율은 수입된 품목에 따라 다양하며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IRC(Internal Revenue Commission)에 문의해야 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 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없다. 따라서 특정 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도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규정도 없다.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수출제한 또는 금지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농작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된다.

수출면허 또는 인가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 약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된다.

■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한 주요 품목

품 목	면허 또는 인가 발급부처
<p>임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목, 목재, 백단향(sandal wood), 등(rattan), 합판, 박판(veneer) * 모든 원목 수출에는 외교부 발급 수출면허가 필요하며, 최소 수출 가이드라인 가격을 준수해야 함 * conifer, ebony, cordia, balsa, teak, rosewood, blackbean 등 종류는 원목으로는 수출 금지이며 목재로만 수출될 수 있음 * 등(rattan) 수출에도 수출면허 필요 	산림부, 외교부
<p>수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치, 새우(prawns), 가재(crayfish), 조개(sea shells), 롱스터 등 	수산청
PNG 예술품 및 역사유물	국립박물관 (PNG National Museum & Art Gallery)
멸종위기 동식물, 악어가죽	환경부
바닐라, 양념	양념산업협회(PNG Spice Industry Board)
고무	고무산업협회(PNG Rubber Industry)
커피	커피산업협회(Coffee Industry Corporation Ltd)
코코아	코코아협회(Cocoa Board of PNG)
코프라	코프라협회(Kokonasa Industri Koporesen)
금	국립은행(Bank of PNG)

자료: 파푸아뉴기니 상공부

수출세

특정 수출품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출세가 부과된다.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수산물, 악어가죽, 백단향(sandal wood)이다.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수입장벽

환경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보호

파푸아뉴기니는 상표법, 저작 및 저작권접권법(2000) 및 특허 및 산업디자인법(2000)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내의 지식재산사무소가 상표, 특허 및 산업디자인을 시행하며, 국가문화위원회(The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of PNG)가 저작 및 저작권접권을 시행한다.

정부조달관련 장벽

파푸아뉴기니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적인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공개경쟁으로 국내외 모든 업체에 입찰이 개방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정책 개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부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 규모가 확대되었고,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확대 실시,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자기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정부지분 확보, 특정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등의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외국인투자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투자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을 설립하였다.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및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 촉진 2)외국인투자 가능 사업형태 규정 3)외국인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4)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내 자원 활용, 기술축적, 수출증대, 원격지 개발에 기여하고 내국인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촉진한다.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합작 투자 파트너를 찾는 것을 지원한다. 공장에 대한 가중상각, 자본지출에 대한 초년도 가중상각, 수출시장개발비용 이중상각, 수출세 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민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면제, 자국민직원 교육비 이중공제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세율은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광업, 석유, 가스 기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회사형태	세율
외국인 기업 (비에너지 관련)	30%
외국인 기업 (비에너지 관련)	48%
내국인 기업 (에너지 관련)	30%
외국인 기업 (에너지 관련)	40%
석유기업, 내외국인	
- 진행중인 프로젝트	50%
- 신규 프로젝트	45%
- 인센티브율	30%
가스기업, 내외국인	30%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파푸아뉴기니에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기업등록 및 규정과에서 시행),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설립 또는 등록된 외국기업은 14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한다.

소규모 사업활동목록에 있는 사업 활동은 오직 자국민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진흥청의 기업정보 및 촉진과에서 담당하며 때때로 변경 검토를 한다. 해당되는 주요 사업활동으로는 ①농업(주로 5만키나 이하이며, 사냥 관련활동은 전부 해당), ②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③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④어업(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각류, 연체동물 등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⑤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⑥케이터링(음식조달서비스), ⑦야생산림물질 도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⑧기타 소규모 사업활동 등이다.

〈참고〉 파푸아뉴기니 부동산 등록과정 및 비용

No	부동산 과정	완료 소요 시간	비용
1	<p>완공전 매매, 토지 관리부 등기 사무소에서의 지방세 검색 및 소유권 검색</p> <p>대부분의 지자체 당국이 전산화 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이용 가능하다. 전산화된 DB도 서면상으로도 팩스로도 받을 수 있다. 기업 검색 서비스에서도 그 기업이 목록에서 제거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다.</p>	1일	PGK 50
2	<p>서류상에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p> <p>서류가 일단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Internal Revenue Commission의 도장을 찍어준다.</p> <p>인지세는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p> <p>인지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Stamp Duty Act 19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가치 36,000 PGK 미만: 토지가치의 2% - 토지 가치 36,000 - 70,000 PGK: 토지가치의 3% - 토지 가치 70,000 - 140,000 PGK: 토지가치의 4% - 토지 가치 140,000 PGK 초과: 토지 가치 5% 	14일	토지 가치의 5% (최대)
3	<p>서류를 접수하여 토지 부처장의 승인을 받는다.</p> <p>인지세를 납부 했으면 토지 부처 건물 2층 토지 관리부에 접수를 하면, 토지부에서 허가서를 내어준다. 관리부에서 임대계약일 시 임대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한다. 직접 사찰은 없으며, 부처장의 이름으로 대표 사인란이 있고 다른 곳엔 대표자의 이름이 오른다.</p>	35일	PGK 50
4	<p>이전 및 소유권 서류를 토지 부처에 등록하기 위해 접수한다. (소유권 등록)</p> <p>1996년부터, 이 과정이 전산화 되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는 집약적 소유등록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있으나 정보가 온라인상으로는 접근 할 수 없다.</p>	22일	PGK 100

출처: World Bank, IFC - Doing Business 2012 (Papua New Guinea)



외국인투자 관련 유관기관

외국인투자 승인업무는 광물, 석유 및 가스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광업, 석유부와 여타부분을 담당하는 투자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분야별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Department of Mining & Petroleum : 광물, 석유, 가스
- 2) Department of Agriculture & Livestock : 농산물
- 3) Department of Fisheries & Marine Resources : 어업
- 4) Department of Forest : 임업

이밖에 상공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정책 및 외국인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며, 은행의 구좌개설 및 은행으로부터의 용자가 가능하다. 미국 달러 등 외국화폐에 대해 변동환율이 적용된다.

세제상의 제한

파푸아뉴기니는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98.4.21 발효)하였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2%), 국민연금기금세(7%), 토지세, 인지세 등이 존재하며, 자본이득세는 없다. 천연자원 로열티 금액의 0.75%를 세금공제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시에 기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승인을 취득하여도 지역별 지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지체로 인한 사업포기가 많다. 투자 상담을 할 경우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이지만 실무 진행시

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관련 부서와 담당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파푸아뉴기니의 순위는 2012년 현재 46위로 지난해 44위 보다 두 단계 하락한 상태이다.

기타 투자장벽

파푸아뉴기니 국적을 가지지 않은 노동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하며, 1년마다 갱신한다. 일부 특정 비자가 있는 단기 목적의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PNG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주권 소유자 등은 노동허가가 면제된다. 최근 일정 조건(종업원 250명 이상, 연매출액 1천만키나 이상, 5년이상 PNG에서 기업 운영)을 충족하는 주요 대기업 CEO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와 파푸아뉴기니 간에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노동허가 신청은 고용주가 PNG 국내에서 진행을 하며 피고용인이 PNG 국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단, 피고용인이 유효한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노동허가 승인을 해 준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파푸아뉴기니 면허증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우리기업 투자 동향

투자동향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대 파푸아뉴기니 투자는 2014. 6월말 기준으로 신고건수는 92건이며, 신고법인인 33개, 신고금액은 220백만불이며, 투자금액은 145백만불이다.



필리핀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는 2013년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9,820개 품목의 58% 가량이 0~5%, 36%가 7~15% 그리고 나머지 6%의 품목에 대해 2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필리핀의 관세율 체계

관세율 (%)	적용품목(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	344	348	440	458	470	495
1	2,129	2,140	2,141	2,072	2,088	2,229
3	2,220	2,216	2,184	2,123	2,117	2,280
5	604	602	596	576	563	651
7	889	888	839	842	837	969
10	1,078	1,107	1,105	1,069	1,076	1,360
15	1,040	1,071	1,071	1,002	1,006	1,213
20	171	193	193	138	138	187
25	4	4	4	4	4	4
30	217	242	242	159	154	229
35	23	23	23	23	23	27
40	125	125	125	125	125	146
45	5	5	5	5	5	6
50	18	18	18	18	18	19
65	4	4	4	4	4	5
총계	8,871	8,986	8,990	8,618	8,628	9,820

자료출처: 필리핀 관세위원회 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필리핀 정부는 WTO 다자간 협상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관세율 단계를 간소화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간소화되고 있지 않다.

또한, 점진적인 관세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아직도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평균 관세율은 2009년 평균 7.34%로 높아진바 있으나 2013년 7%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 관세율은 초민감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부문이 12%로 가장 높으며, 제조업 6%, 광업 2% 수준이다.

■ Average Nominal Tariffs, 2009-2015(%)

연도	농업	광업	제조업	평균
2009	11.94	2.28	6.53	7.34
2010	11.94	2.28	6.18	7.02
2011	11.99	1.77	5.81	6.53
2012	11.97	1.76	5.79	6.51
2013	12	2	6	7
2014-2015	12	2	6	7

자료출처: 필리핀 관세청공식홈페이지(Tariff Commission)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는 2008.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2년부터 한·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이상이 관세가 철폐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 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4.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필리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 및 준비부족으로 2009년 상반기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2009.7.9일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동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필리핀 정부가 2011.8월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미 보상기간의 피해에 상응한 만큼 추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입부과금 등

2006.2.1일부터 선박, 비행기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고, 알코올, 담배, 석유제품, 광물자원, 보석류, 향수, 자동차, 영화 필름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y)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소비세 부과와 관련, 2010.3월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수입 증류주에 대한 필리핀의 차별적 관세 적용과 관련 WTO측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다. 필리핀은 설탕과 같은 필리핀 내 생산원료로 주조된 증류주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류주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1.8월, WTO는 증류주 특별소비세 부과는 차별적 관세 적용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2012.12월, 아키노 대통령은 증류주 및 담배에 대한 새로운 특별소비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국법 No. 10351, 일명 “Sin Tax”라 불리는 동 법안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증류주와 담배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모든 증류주에는 병 크기를 기준으로 20페소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증류주는 2016년부터, 담배 및 맥주는 2018년부터 매년 4%의 세율이 인상되게 된다. 별도로 물품가격의 15%가 종가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통관

필리핀은 수입업체를 Super Green Lane(SGL), Green Lane(GL), Yellow Lane(YL), Red Lane(RL)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왔다. SGL은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물품 및 경제지역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수입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검사 없이 통관시키고 있다.

GL은 양호한 과거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물 및 서류 검사 없이 통관되나, 관세청의 사후 회계조사를 받게 된다. YL은 신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실물 및 서류 검사가 행해질 수도 있다. RL은 불량한 수입기록을 가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집중적인 실물 및 서류 검사의 대상이 된다. 2010.7월 이후 관세청은 밀수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YL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한편, 통관 과정에서 필리핀 관련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아직도 보고되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은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세관 직원들이 빠른 통관진행을 대가로 비공식적인 통관 협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의도적인 통관 지연,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자의적인 과세 등 부당한 처분의 행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세관당국의 행정처리 관행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통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교통체증을 이유로 2014년 2월 마닐라 시에서 시행한 트럭통행규제(Truck Ban)로 인해 마닐라항내의 심각한 화물 적체, 운송업체와 중앙정부, 필리핀항만청 및 마닐라시 교통경찰 간의 마찰과 갈등, 내륙운송비의 급격한 인상 등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마닐라 시장은 2014년 9월, 트럭통행규제의 잠정적 철회를 지시하였다. 동 조치는 마닐라항이 국제 화물 대부분을 수용하는 필리핀의 대표 항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협력해 마닐라항에 적체되어있는 화물들에 대한 임시해결책인 바, 마닐라 시장은 시내의 교통체증으로 혼란이 재차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트럭통행규제를 재시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수입규제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규제에는 수입금지 품목, 수입수량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를 비롯해 공공위생,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폭발물, 불온서적, 비디오, 영화,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낙태관련 약품 및 기구 등으로 제반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수입쿼터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제품은 공화국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쌀, 밀
-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 통조림 우유
- 소고기 통조림, 콘드비프, 냉동소고기
- 교과서
- 종이, 펄프

반덤핑·상계관세

필리핀의 반덤핑법은 1999.8월에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실사착수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반덤핑 조사기간이 길어(평균 2.2년, 최장 4.7년), 필리핀 정부는 관세율 인상 또는 관세부과 대상가격의 불합리한 적용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 하였으나, WTO 협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동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반덤핑법(Anti-Dumping Act of 1999: Republic Act No. 8752)의 주요 내용을 보면, 덤핑제소 요건강화, 공시의무조항 신설, 관세위원회

반덤핑 관세 부과 의무조항 폐지로 WTO 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조사기간의 확대, 정부기관에 덤핑제소권 부여, 공무원 벌칙조항 신설 등으로 일부 규정이 강화되어 향후 수입규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증가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세이프가드

필리핀 정부는 2008년부터 세라믹 바닥 벽타일에 kg 당 2페소의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8.8월에도 필리핀 정부는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자국업체의 세이프가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한 바 있으나 2009.7.27일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3% 이하임을 들어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2.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발표한 최신 제외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봉강 수출은 2013.8월 기준 L형강은 전년동기 대비 40.1%, 기타형강은 92.4% 감소하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강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14년 3월부로 세 번째로 연장되었으며, 2015년 3월 만료될 예정이다.

또한, 2010.5월 필리핀 정부는 판지(Testliner Board)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는데, 2009년 판지의 총 수입액 310만달러 중 우리 기업의 수출액이 절반이 넘는 157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조사 결과 판지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2010.9.16일부터 3년간 톤당 1,324페소(약 30달러)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2013.6.14.일부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만료되었으나, 통상산업부(DTI) 주도로 3년 더 동 조치를 연장하여 2016년 12월까지 연간 5%의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2013년 12월부로 통과되었다.



보조금 등

수출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완전 철폐하였다. 국내 보조금 관련, 필리핀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생산가 10% 미만 범위 내에서 국내 보조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인프라시설(농장-시장간 도로, 정미소 시설 등) 및 농업관련 연구 개발 형태로 보조가 있으나,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현재 정부예산 중 약 2%만 농업부분에 할당).

품목별 장벽

석유화학분야

폴리프로필렌(PP) 합성수지 및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의 준공에 따라 국내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998.7월 15%로 인상한 바 있고, 2004년 한시적으로 5%로 인하한 바 있으나, 2012년 이후로는 동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플로트 유리 분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12.9월 부령(Department Order)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투명 플로트 유리(Clear float glass) 및 플로트 색유리(tinted float glass)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결정 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2.10.15부터 2013.10.16까지 투명 플로트 유리 수입에 대해서는 3,043.26페소/MT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플로트 색유리에 대해서는 3,687.22/MT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2014년,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는 철회되었고, 광학처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3%, 그 외 모든 제품은 1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분야

필리핀 자동차 개발계획(Philippines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 하에 국내조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비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율 중 최고수준인 30%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필리핀 정부는 2012년 AKFTA 협정에 의거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20%로 인하하였다. (승용차: 20%, 화물차: 20%, 승합차: 20%). 동 관세율은 2016년 이후 5% 이내로 인하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편, 최종소비자는 수입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12% 및 종가세 2%~60%를 지불해야 한다(종가세: 60만 페소 이하 2%, 110만 페소 이하 12,000페소+6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20%, 210만 페소 이하 112,000페소+1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40%, 210만 페소 이상 512,000페소+210만 페소 초과분 가격의 60%). *특별소비세는 품목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되면, 차량의 경우 종가세에 해당함 (참고사항)

필리핀 정부는 2003년 대통령 행정명령(EO 156)을 발표, 버스·트럭 등의 대형차를 제외한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2004.11월에는 수입억제를 위해 중고차에 대한 종량세(Specific Duty on Used Motor Vehicle)를 1대당 50만 페소를 부과하려다 취소한 바도 있다.

그러나, 수빅(Subic) 등 경제특구에서의 중고차 수입금지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2007.11월 대법원은 수빅 경제특구에서의 수입차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2008.7월 필리핀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수빅 경제특구와 카가얀(Cagayan)경제특구를 통한 중고자동차 수입을 동 지역 내에서의 이용 등 제한적인 여건 하에 허용한바 있다.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중고차 수입 문제는 해당 지역을 통한 중고차의 밀수가 성행함에 따라 결국 지난 2013.7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카가얀(Cagayan)에서의 중고차량 수입이 다시 금지되었으며, 수빅(Subic) 경제특구의 경우 특구 내 사용차량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2010.6월 기존의 중고자동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신차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령(EO 877-A)을 발동하였다. 2011.10월 신차 수입관세 및 소비세 등 동 대통령령의 이행규정이 결정된 바 없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WTO 및 한-아세안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동 명령의 후속이행규정 제정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8.11월 필리핀의 최초 양자간 FTA인 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JPEPA)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은 2010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30%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08.1.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우리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현행 30%의 관세가 2012년 20%로, 2016년에는 5%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며, 앰블런스 등 일부 특수용 차량의 경우는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농업분야

농업분야는 필리핀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농업부문에서 취해지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inimum Access Volume(MAV)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50%, 가금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에 규제대상이다.

쌀의 경우 당국의 특별 보호품목으로, 매 해 의무수입량(805,200톤)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2017년까지 Minimum Access Volume (MAV) 정책이 적용 될 예정이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필리핀의 표준화 및 인증은 통상산업부(DTI) 산하 제품규격국(BPS)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으로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와 PS(PS Quality & Safety Certification Mark)가 있음.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이며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성분 및 효능 테스트 통과가 필요하다. 섬유직물, 기성복,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해서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들어 인체에 유해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DTI), 보건부(DOH), 식약청(FDA) 등 주요부처 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2013.5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한 안전수칙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었으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요건에 미달하는 일부(중국제 다수) 품목에 대해 몰수조치를 취한바 있다.

2013.9월에는 ‘완구류안전표시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위험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14.9월부터 필리핀에 수출하는 모든 완구류에는 라벨링이 의무화되어 수출 기업들은 직접적인 규제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14.7월 관세청(BOC)은 제품규격국(BPS)에서 지정한 의무 인증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합판(Plywood)을 조건부통관허가서(CRPs) 위조를 통



해 무단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여 밀수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세청(BOC)과 제품규격국(BPS)은 당월 필리핀으로 수입된 합판 31,077톤 중 67%에 해당하는 양이 합법적인 제품 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발표하며 합판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규제

2001년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이 시행되었으며 그 중 외국투자자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소각시설(incineration) 사용금지 문제이다. 외국투자 기업들은 첨단 소각시설, 즉 850도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독성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소각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참여상의 제약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입찰에 순수한 외국업체(제조업자, 공급업체, 중개업체 등)의 참여는 불가능하며,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동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업체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입찰되는 모든 입찰정보는 필리핀전자정부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philgeps.gov.ph)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직접조달의 경우

마닐라 소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자체적으로 공사 및 컨설팅 서비스,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회원국(한국도

회원국) 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매월 10여건의 컨설팅 서비스 입찰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지만 향후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참여 제한

정부발주 건설공사

외자도입 없이 100% 필리핀 정부예산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외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불가능하고, 필리핀 업체 또는 필리핀인 투자비율이 75%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ADB, IBRD 등으로부터 외자를 지원받아 발주되는 공사는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필리핀 건설산업청(Construction Industry Authority of Philippines),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hilippines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로부터 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한다. 특별면허는 일회성 면허로 프로젝트 종료시 면허도 종료되게 되며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다시 획득해야 한다.

민자유치산업 (BOT, BOO 등)

외국기업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출자 지분 제한이 없으며 100% 전액 출자도 가능하다. 다만, 전기·상수도 등 공익사업(Public Utility)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출자지분이 40% 이하로 제한된다.

민자 유치사업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동 민자 유치사업에 외자가 도입된 경우에는 외국건설업체가 직접 입찰 참여 가능하나, 순수 필리핀 자본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발주공사로 간주되어 필리핀인이 60% 이상 출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발주 공사

민간발주공사는 외자 또는 내자 어느 경우이건 모두 필리핀인의 지분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수주를 하면 건설업 일반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면허 발급 요건은 까다로운 편으로 필리핀 내에 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을 갖춘 지사를 설치하고, 면허등급(AAA, AA, A, B, C, D, Trade 등 7개 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기술자·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설계·감리 등 컨설팅 용역

내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필리핀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리핀인이 부족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컨설턴트의 고용이 허용되고 있다. 외자에 의한 정부조달용역은 외국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나, 컨설팅회사 및 고용된 컨설턴트의 자격에 관하여 동 자격을 관할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용역의 경우 가급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필리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차관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외국업체와 필리핀업체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간이 발주한 컨설팅용역은 필리핀인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필리핀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회원국으로 2002년에는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은 1994년 이래 필리핀을 지적재산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상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 감시대상국 목록에 포함시켜 왔으나, 최근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감안하여 2014년 보고서에는 필리핀을 동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관련 법률로는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법(Patent Law), 상표법(Trademark Law),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발효된 의약품 특허등록에 대한 지식재산권법 개정,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국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표권 위반은 물론 모조상품도 만연된 상태이나 필리핀 법정에서 지식재산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가 드물며 심지어 20년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사건도 있을 정도이다. 2001년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었으며 대형 무단복제 업체나 배급업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69%에 달하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1년에는 70%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인터넷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상으로 확대 중이나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법(1991년)에 따르면 방송매체, 엔지니어링, 의료업, 회계업, 설계업, 화학관련분야, 통관중개업, 임업, 법률용역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소매업(자본금 250만달러 미만) 등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 헌법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분야, 독점 조장 가능 분야, 필리핀 업체가 이미 충분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Negative List상에 기재된 업종은 최대 지분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국내 및 해외인력 수급업, 건설 및 건설관련 보수계약(공공사업 분야) 분야, 방위 관련 건설업은 외국인 지분소유가 25%까지 허용되고 있다. 광고업은 외국인 최대 지분소유 상한이 30%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천연자원개발(광물생산 분배계약), 부동산 소유, 공공시설 운영관리, 관급공사, 국영 및 공공기업에 관한 물자조달업, 국내 및 해외 건설업·공공시설 건설업(민간 발주공사), 납입자본금 20만달러 미만의 국내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최대 지분 소유 상한이 40%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편, 광업 및 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대형(5천만달러 이상 투자) 지열발전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프로젝트의 외국인 지분도 40%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자본 요건

외국인 소유 내수기업(Domestic Market Firms)이나 소모성 자원(Depleting Resources)에 해당하는 필리핀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20만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단, 최신 기술 보유 및 직접고용인 50인 이상 기업 및 최소 10만달러, 필리

핀투자유치기관인 PEZA, CDC, SBMA 등록시 4만달러, 100% 수출기업은 자본금 불요). 기타의 경우 필리핀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최소 5천 페소의 불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해당업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실질적인 금액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필리핀측 지분이 60% 이상인 외국인 투자업체는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

현지부품 사용의무 비율

2003년부터 승용차, 트럭, 모터사이클에 대한 최소 국산화 비율 준수요구가 폐지되어 외국산부품을 전량 도입하는 조립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위: 달러)

품 목	최소투자규모
승용차 조립	1천만
트럭 조립	8백만
모터사이클 조립	2백만

※ 자료원: Executive order No.156 of the Philippines

수출의무 부여와의 관계

수출자유무역지대(PEZA, CDC, SBMA, BOI 등) 공단소재 외국투자기업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투자허가 신청과정에서 구비서류는 거의 완전하여야 한다. 간단한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차후에 제출한다든지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상의 제한 등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과 투자청이 정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무역규제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은행등록필증(DBRD)을 구비해야 한다. 중앙은행 등록필증은 영업 철수, 투자회수, 현금배당금이나 이자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증명서 역할을 한다.

세제상의 제한

필리핀의 조세제도는 1997년 조세개혁법(RA No.8424)에 근거하며, 2005. 11월에 시행된 RA No.9337에 의해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지 진출 외국기업과 관련된 주요 조세는 소득세(Income Tax), 원천과세(Withholding Tax), 부가가치세(VAT), 인지세(Stamp Tax) 등이고,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1986.11.9일 한국과 필리핀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소득세는 크게 법인과 개인별로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Corporation Tax) 부과율은 통상 35%로 2006.7월부터 적용되다가 2009. 1월부터는 30%로 조정되었다.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는 내국인(Resident Citizen), 비거주 시민권자(Non-Resident Citizen), 외국인(Alien)으로 구분하여 5~

32%의 차등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원천과세(Withholding Tax)는 Foreign loan에 대한 이자분의 경우 20%가 부과되며, 로열티의 경우 35%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세율은 해당국가와 필리핀이 체결한 세제 협정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2006.1월부터 기존의 10% 세율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쟁정책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나 외국인 투자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소매업 및 방송업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나 공공이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는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며, 외국인에 의한 특정분야 기업의 인수·합병은 제한되고 있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상용비자 9G를 발급 받으며, 7.5만달러 이상을 필리핀에 투자한 경우에는 특별투자비자(SIRV)를 발급 받게 된다. 9G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AEP(Alien EAEmployment) 등 10가지 이상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한인회가 투자청의 협조를 확보하여 9G 비자업무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주고 있으며, AEP 취득 후 약 2~3개월 내 비자를 승인해주고 있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4.7월 말 기준)

- GDP: 2,722억달러
- 1인당 GDP: 2,720달러
- 실질GDP 성장률: 5.7%(2014.3월 말 기준)
- 물가상승률: 2.9%
- 실업률: 6.7%
- 교역규모: 총 1,157억달러(2013년 기준)
 - 수출: 540억달러(반도체 부품, 기계 및 운송장치, 광물류, 화학제품 등)
 - 수입: 617억달러(광물연료, 반도체 부품, 운송장비, 기계, 철강, 플라스틱 등)
- 외채: 583억달러(2014.5월 말 기준)
- 외환보유고: 810억달러
- 환율: 1달러=44.95페소(2014.9월 말 기준)

자료원: IMF, World Bank, 필리핀 통계청, 중앙은행

홍콩

개관

홍콩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번창하는 자유무역 항구도시다. 홍콩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도시가 되었으며 아태 지역과 중국 본토까지 커버하는 국제 금융·상업센터가 되었다.

홍콩의 이러한 성장의 초석은 굳건하고 신뢰 가능한 다자간 교역시스템에 근간한다. 1995년 1월부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계승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다자간 무역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법을 제공해온 바, 홍콩은 WTO의 창립멤버이며 WTO의 여러 활동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이는 홍콩정부가 개방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은 WTO에서 “Hong Kong, China”라는 명칭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

이밖에 홍콩은 1991년에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Pacific Economic Cooperative Council)에 가입했다. 홍콩은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세계 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도 독립적으로 가입해있다. 또한 UN의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의 준회원이며 UN 무역개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 홍콩은 OECD 무역위원회의 옵저버로서 활동 중이다.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은 APEC, PECC와 OECD에서도 “Hong Kong, China”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중국 본토의 빠른 성장과 무역량증가는 홍콩의 대외교역과 중개서비스



가 성장하는 것을 도왔으며 홍콩-중국본토 간의 무역 및 경제 협력과 통합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지난 2003년 6월에 홍콩과 중국 본토가 CEPA를 체결(2014.1.1일 발효)한 이후, 양측은 후속협의를 추가로 체결하여 CEPA의 적용범위를 넓혀왔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10번째 추가협약안은 2013년 8월에 체결되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중국 본토는 CEPA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 홍콩 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했다. 2014년 5월말 현재 CEPA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1,796개에 달하며,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48개의 분야 403가지 자유화 방안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홍콩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중국 본토시장으로 뻗어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자국 내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에 발맞춰 홍콩정부는 홍콩기업들이 중국 본토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홍콩정부는 홍콩의 제품과 서비스가 국제시장에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홍콩의 이익에 부합하는 무역파트너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홍콩은 WTO의 규정을 준수하고 다자간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 최근 2012년에 홍콩은 칠레와 FTA를 체결했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를 추구하여 홍콩 내의 투자자들과 무역업체들이 동남아시아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13년초에 FTA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 홍콩의 FTA

- 홍콩 - 칠레
홍콩과 칠레는 2012년 9월 7일 러시아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홍콩으로부터 칠레로 수출되는 물품의 88%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추가로 10%가 3년에 걸쳐 철폐될 것이다. 남은 2%에 대한 관세는 칠레 국내시장에서 외부 영향에 민감한 시리얼, 설탕, 철광물 등에 대한 것이다. 반면에 홍콩은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 홍콩 -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홍콩과 EFTA국가들(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은 2011년 6월 21일에 리히텐슈타인에서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였다. EFTA 회원국들은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공산품들은 물론, 어류 등을 포함한 몇몇 수산물, 그리고

가공된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편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은 홍콩과 각국 간의 양자협상에 의해 관세가 결정된다. 반면에 홍콩은 EFTA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이번 FTA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투자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며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 홍콩 - 뉴질랜드

홍콩과 뉴질랜드는 2010년 3월 29일에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를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홍콩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 맺는 첫 자유 무역협정이다. 이번 CEPA를 통해 홍콩으로부터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체결 후 6년 안에 철폐된다. 협정 체결 이후 홍콩으로부터 수출되는 64%의 품목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그 후 2년 동안 수출품 27%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남은 4년동안 9%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중-홍콩 CEPA

1. 체결 배경

- 아시아 금융위기(1997년), 미국의 9·11테러 사건(2001년), 사스(SARS) 발생(2003년)으로 인한 홍콩의 정치·경제적 위기에 중국정부가 홍콩 경제의 회복을 위해 개입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 역대 최고 실업률(8.7%, 2003년 중반), 중앙정부의 압력에 의해 통과된 ‘반국가 전복법’ 등으로 홍콩시민의 여론이 악화되어, 2003년 7월 1일 홍콩 반환 6주년 기념일에 50여 만명의 홍콩시민이 시위에 참가

2. 중-홍콩 CEPA 체결 경과

- 2003.6.29일 중국과 홍콩 간 CEPA 체결

*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범위가 넓은 경제교류 협정으로,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인 Agreement 대신 Arrangement라는 표현을 사용함.

- 2003년 체결된 CEPA 협정에서는 상품관세 인하와 함께, 18개 서비스 분야 개방 실시
-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에 개방조치들을 먼저 도입하는 선행시험 조치(pilot basis) 방식을 택하여 개방의 효과와 영향 등을 점검

- 중-홍콩 CEPA는 2003년 체결이후 매년 보완을 거듭하여, 2014년 9월 현재, CEPA 본 협정 외에 10개의 보충협정(Supplement) 체결

- 2005년 10월에 체결된 제2차 보충협정에서 모든 홍콩산 상품에 대한 무관세가 실현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서비스무역 개방과 무역투자간소화 조치에 관한 추가 협상만 계속되고 있음.

* CEPA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은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①상품무역 : 2006년 1월부터 완전 무관세 실현
- ②서비스무역 : 추가 협정을 통해 중국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 현재까지 총 48개 분야 서비스 개방
- ③무역투자 간소화 조치 : 통관 간소화, 상품검역, 전자상거래, 중소기업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중의학산업 협력, 브랜드 협력 등 포함.



주요 통상제도

관세 등

홍콩의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해 홍콩정부는 수입·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홍콩 내 소비를 위해서 홍콩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주류, 탄화수소(석유제품 등) 그리고 메탄올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는 부과된다. 소비세는 판매자들이 먼저 부담하며 가격에 반영되어있다. 홍콩 내에서 제조되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소비세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홍콩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세금 또한 최소화한다. 전체 정부 수입의 2.8% 밖에 되지 않는 소비세를 철폐함으로써 홍콩정부는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국내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일례로, 홍콩정부는 와인에 부과되던 80%의 소비세를 2007년에 40%로, 이듬해에 철폐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와인제조업자들이 홍콩시장으로 몰렸고 2009년에 홍콩은 런던에 이어 세계 제 2의 와인경매센터가 되었다.

주요 과세대상품목별세율

1. 탄화수소	세율
항공기연료	HK\$ 6.51/litre
디젤연료	HK\$ 2.89/litre
유황디젤	HK\$ 2.89/litre
가연가솔린	HK\$ 6.82/litre
무연가솔린	HK\$ 6.06/litre
2. 담배	세율
중국제조	HK\$ 448/kg
수입시가	HK\$ 2455/kg
수입담배	HK\$ 1906/1000개비
일반담배제조를목적으로하지 않고제조된그외모든담배	HK\$2309/kg

3. 주세	세율
와인	0%
알코올30%이하주류(맥주등)	0%
알코올30%이상주류(위스키등)	100%
4. 메틸알코올	\$840/hectolitre 도수 30% 이상 1% 상승마다 28.1HK\$/100L 추가 부과

자료: 홍콩세관

또한, 홍콩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초기 차량등록세(first registration tax)를 내야 한다. 홍콩에서는 차량은 물론 부품 또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은 모두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2009년에 초기등록세금은 정부 수입의 2.3%를 차지했다.

초기등록세는 차량의 명시된 소매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매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운송비, 중개수수료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된다.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40~115%의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 친화적 차량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30%~100%까지의 감면혜택이 있다. 2017년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초기등록세는 없다.

수출입허가(라이센싱)

수입·수출품에 대한 라이센싱 또한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라이센싱은 홍콩이 거래국과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보안상의 목적으로 혹은 내부의 안보를 위해서만 적용된다.

Import and Export Ordinance 및 Reserved Commodities Ordinance, 그리고 산하 법령에 의해 특정 물품의 수출입은 무역·산업국(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공업무역서)의 라이센싱 규제를 받는다. 이외에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수출입은 홍콩의 환경보호국 관리 하에 무역·산업국으로부터 라이센싱 규제를 받는다. 무역·산업국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라이센싱 혹은 인증 제도를 통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쌀에 대한 라이선싱 요건은 주식(主食)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존 파괴물질에 대한 라이선싱의 목적은 오존층 위협물질에 대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준수하기 위한 물질 규제에 있다.

다음 항목들은 무역·산업국에 의한 수출입 라이선스 규제가 필요하다.

물품	수입 라이선스	수출 라이선스
식물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필요
쌀	필요	필요
비정제 다이아몬드	필요	필요
전략 물품들	필요	필요
오존 파괴물질	필요	필요

또한 다음 항목들은 무역·산업국의 위임을 받은 정부 부서에 의해 수출입 라이선싱 규제를 받는다.

물품	수입 라이선스	수출 라이선스	라이선싱 담당기관
중국산 약초 및 중국 특산 약품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냉동 육류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살충제 이외의 위험 화학품	필요	필요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 기구	필요	필요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살충제	필요	필요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약학품 및 의약품	필요	필요	Department of Health
방사성 물질 및 방사능 처리 기구	필요	불필요	Department of Health

식물 통제 정책

2005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식물·의류협약(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에 부합하여 WTO 회원국들 간의 식물과 의류에 대한 양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홍콩의 식물·의류산업은 쿼터제도 없이 세계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철폐 이후 홍콩의 무역·산업국은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식물산업의 수출을 장려하는 한편 홍콩 내의 식물산업의 이익을 보호해왔다.

2013년에 홍콩 관세/물품세국은 2,908개의 공장 및 배송물 검사를 시행했으며 식물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조사를 25차례 시행했다. 또한 41차례의 불시검문을 통해 20여개의 범법회사를 적발하였고 여기에서 추징한 벌금은 40만HKD에 달한다.

전략 물품 규제

무역·산업국은 군수품, 생·화학 무기와 그 전구품, 방사성 물질과 장비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행한다. 또한 당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되어 사용된 물품들의 최종사용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무역·산업국은 홍콩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매개체가 되거나 악성 단체들이 관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

무역센터로서의 홍콩 정부는 위와 같은 전략 물품들의 불법적인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며 동시에 합법적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117차례의 불법적인 전략물품거래를 단속했으며 51개의 범법주체를 체포하여 295만HKD 상당의 범칙금을 징수, 27만HKD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원산지 등 공인시스템

라이센싱을 발행하는 서비스 외에 홍콩의 무역·산업국은 홍콩 수출품들의 원산지 인증과 수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원산지 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산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다섯 개의 기관들은 무역·산업국 외에 원산지 인증을 할 수 있는 정부승인인증기관(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Organization)들이다.

- a. 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 b. 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
- c. The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 d. 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
- e. 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

원산지 인증서 발행은 Import and Export Ordinance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의 수출규제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다음 GACO들로부터 발행된 원산지 인증서들은 Protection of non-Government Certificates of Origin Ordinance에 의해 보호된다.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rtificate of Origin Processing
- Certificate of Origin Form 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CEPA
- Certificate of Hong Kong Origin - New Zealand
- Certificate of Origin - RE-export

SPS(위생검역)

식품 환경보건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는 홍콩 내의 식품포업 관련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다. FEHD는 제한품목(중국 찻잎, 회, 우유 등) 판매, 공공 오락시설, 개인 수영장, 상업용 목욕탕 등에 대한 허가서를 내준다. FEHD는 또한 주류허가위원회에 대한 지원도 한다.

2013년 한해 동안 FEHD는 7,537개의 식료품업 라이선스, 658개의 제한

품목 허가, 1,556개의 공공오락시설 허가, 919개의 주점 및 클럽 허가 등을 발행하였다. 2013.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받고 있다.

FEHD의 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는 홍콩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섭취 안전성을 관리한다. 2013년에는 약 65,000개의 샘플을 추출해 화학, 미생물, 방사선검사를 실행하였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99.9%였다.

또한 2013년 한해 동안 채소를 운반하는 32,700대의 차량과 돼지, 소, 염소 등의 살아있는 식용동물을 운반하는 43,000대의 차량들이 식품관리청과 동물검사청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500만마리의 가축들이 동물원성 질병에 관한 검사를 받았다. 2012년 6월에 통과된 식품에 대한 농약 관련 법안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은 2014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012년 11월에 정부는 두 달간의 공공협의를 통해 유아 및 36개월 미만의 영아용 유동식품에 대한 규정을 제안한 바 있으며, 도 drowjd안은 2014.6월 입법회 심의를 거쳐 10월 발효 예정이다.

영양표시법에 의해 면제된 제품 이외의 모든 사전 포장된 식품들은 지정된 몇몇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제조업체가 건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한다. 2013년에 CFS는 5,151개의 제품을 검사했으며 505개의 제품을 화학검사 하였다.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들은 전체의 97.71%였다.

식품안전법(Food and Drugs regulation)은 2012년 2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안을 통해 식품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은 식품을 신고해야 하며 식품 거래업자들은 적절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환경

홍콩정부는 정책 계획과 프로젝트 제안을 결정할 때 환경적인 평가도



적용한다. Public Works Subcommittee of the Legislative Council's Finance Committee로 제출되는 모든 개발·정책 계획은 환경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법은 특정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에 피해 완화방안을 찾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정부는 환경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들이 EIA에 따른 평가가 정확하고 필요시에 적용되는 피해완화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한다. 2013년에 환경보호부는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해 111건의 모니터링과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관련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니터링과정에서 나온 자료와 결과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들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 평가가 필수다. EIA법 하에 20헥타르 이상, 100,000명 이상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의 경우 EIA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상의 주요 환경문제와 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홍콩정부는 Green Manager Scheme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게 환경관리를 촉진한다. 모든 정부부서들은 지정된 green manager들이 있으며 연간 환경보고서를 제출한다. 2007년 이래로 모든 연간환경보고서는 홍콩정부가 대기 청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Clean Air Charter"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참여 또한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호부는 홍콩 내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주들에게 환경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을 촉진한다.

New Territories 교외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12년에 정부는 지방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다음은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10가지 법들이다.

- 폐기물 처리법
- 수질오염 규제법
- 대기오염 규제법
- 소음공해 규제법
- 오존층 보호법
- 해양투기 금지법
- 환경영향평가(EIA)법
- 유해 화학품 규제법
- 상품 환경책임법
- 차량 공회전 금지법

홍콩정부는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몇 가지 위해 환경 기준을 제정했다.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데에 드는 잠재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부문별 업체들이 환경보호법을 잘 준수하게 하기 위해 건설업, 요식업, 차량정비업 등과 협력한다.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법 준수지원센터(Compliance Assistance Centre)을 운영하여 환경보호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013년에 환경보호부 조사관들은 58,600차례 이상의 현장감사를 돌며 총 34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10만HKD 이상의 벌금을 추징했다.

스톡홀름협정(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와 로테르담협정(the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의 내용은 홍콩에서 적용된다. 유해 화학물질규제법은 농약 외의 유해한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제조 그리고 사용을 규제한다.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 처리법(Waste Disposal Ordinance)의 허가



시스템에 의해 규제된다. 이는 국경을 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을 따르는 것이다. WDO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하는 바젤협약을 준수한다.

유전자변형품목에 대해서는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적용하는 법을 따른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유전자변형품의 국제거래를 관리한다. 유전자변형품의 수입 및 판매는 농수산물보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제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들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의 하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제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규제당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를 적용한다. 이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는 위협종을 보유, 수입, 수출, 재수출 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한다. 높은 멸종위험에 처한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수출입은 금지되었으며 그 외의 동식물에 대한 상업적 국제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보호국에 의해 관리되며 동부서와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집행된다. 최대 5백만HKD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13년에는 26,935차례의 허가를 발행하였으며 총 1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수입규제

홍콩은 덤핑방지, 수출장려,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법이 없으며 아직 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지적재산권

홍콩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편리한 등록제도, 엄격한 규제 그리고 창의적인 공공광고를 통해서 홍콩은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홍콩의 지적재산권부서(Trade Marks registry)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 상표, 의장등록 등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다양한 전자서비스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보증서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http://ipsearch.ipd.gov.hk>)에서 중국어 혹은 영어로 무료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http://iponline.ipd.gov.hk>)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적재산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부서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은 등록 증명서나 지원서 상의 특정 내용들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항들은 즉시 업데이트되어 기록된다. 지난 2013년에는 전체 지적재산권신청서의 60%정도가 온라인상으로 제출되었다.

2013년에는 37,092개의 상표등록신청이 접수되었으며 31,464개(전년 대비 19.3% 증가)의 상표가 등록되었다. 주요 10개의 신청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홍콩	13,596	영국	855
중국	8,020	대만	821
미국	3,723	스위스	777
일본	2,143	독일	739
프랑스	934	한국	655

2013년말 등록되어있는 상표의 총합은 323,244개이다.

특허권 법령(Patents Ordinance)은 중국 지적재산권부서, 영국의 특허청 그리고 유럽의 특허청의 특허 승인기준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 내의 공식 시험과정을 통해 단기특허권을 부여한다. 2013년에는 13,916개의 일반 특허권 요청과 552개의 단기 특허권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6,546개의 일반 특허권과 538개의 단기특허권이 승인되었다.

홍콩정부는 2011년 10월에 특허권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시행하였다. 공개 컨설팅의 결과를 참고하여 경제/상업부장관에 의해 임명된 자문위원회는 홍콩정부에게 2012년 12월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2016년에 개정된 특허등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3년에 홍콩정부는 4,584개의 디자인에 대한 2,336건의 의장디자인 접수를 받았으며 4,765개의 디자인이 등록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7% 증가한 숫자다.

홍콩의 저작권법은 문학/드라마/음악/예술/영화 등 지역 내의 저작권자들을 보호한다. 국제적 관행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는 어떠한 요건도 없다. 2012년 7월부터 홍콩정부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법 또한 강화하고 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한다. 당국은 저작권 침해와 상표 위조 등에 관한 보고사례에 대해 수사하며 광디스크와 스탬퍼(stamper) 공장의 라이선싱 규제를 유지하고 상업적 목적에 의한 위조품의 제조, 배포, 판매, 수입, 수출을 막는다. 관세/물품세국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나 위조품 판매에도 대응한다.

2013년에 관세/물품세국은 99건의 저작권침해 사례를 적발하였고 143명의 위반자들을 체포하였으며 900만HKD에 상당하는 물품(이 중 대부분은 광디스크)을 압류했다. 당국은 또한 노상 위조품판매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취했으며 그러한 불법상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순찰을 통해 위조품의 유통을 억지했다. 2013년에 관세/물품국은 630건의 위조상표 사례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자 621명을 체포하고 1억3600HKD만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저작권침해와 위조품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지적재산권보호연맹과 다양한 상표/저작권 보유자들의 연맹을 통해서 해당산업 내의 지원과 협력을 촉진한다.

2013년에 9개의 무역협회들은 지적재산권부서의 “No Fake Pledge” 계획에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중교육(public education)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었는데 2013년에는 117개의 학교를 방문하여 36,924명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적재산권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지역 내의 세미나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의 소중함을 대중에게 알린다.

홍콩의 지적재산권부는 중국 본토 측의 대응부서와 협력하여 지방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추진한다.

보조금

혁신과 기술개발은 경제성장의 주요부분이다. 홍콩정부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이 산업에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계적인 부분은 물론 소프트웨어부문도 지원하여 기술개발분야의 성장을 통한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연구부문에서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추구한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ITF)는 응용 R&D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다. 2014.7월말 현재 이 기금은 총 85억HKD을 모아 총 4,028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2012년 7월에 각 프로젝트에 대한 ITF의 상한액이 2,100만HKD에서 3,000만 HKD으로 증가하였고 대상분야 또한 확대되었다.

ITF의 소규모 사업 리서치 지원프로그램(SERAP)은 신규업체들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액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있다. 2014.7월말까지 4.7만HKD 가량의 지원금이 391개의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2012년 4월에는 다음과 같이ITF SERAP가 개선되었다.



-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400만HKD에서 600만HKD으로 증가
- 벤처기업들까지 적용되도록 대상 확대
- 상업화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어 산업디자인, 테스트, 원형 인증 및 임상실험까지 적용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관련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시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총 지원액은 2억HKD 규모이다.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인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총 연구개발비용의 10%에서 30%로 증가했다.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는 R&D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홍콩 내의 선택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 R&D센터들이다.

- 자동차 부품 및 부속시스템 R&D 센터 (APAS)
- ASTRI산하 정보통신기술 R&D 센터 (R&D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under ASTRI)
- 홍콩 직물/의류 연구기관(Hong Kong Research Institute for Textiles and Apparel)
- 홍콩 물류 및 유통망 R&D센터(Hong Kong R&D Center for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 나노/선진 물질 연구기구 (Nano and Advanced Materials Institute)

APAS의 연구능력을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APAS는 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과 합병함
 홍콩-중국 과학기술협력위원회 (The Mainland/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mmittee)는 중국의 과학/기술부와 홍콩의 경제/상업부서가 기술합작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고위 위원회다. 2014년10월 현재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2013년 회의를 통해 중국측은 홍콩에 소재한 4개의 대학연구소를 국가급연구소로 추가하였으며(현재 홍콩대 총 16개 국가급 연구소 운영중), 홍콩사이언스파크를 Hong Kong National Modern Services Industrialization Base로 지정하였다.

통관절차

홍콩은 수입품의 관세·물품세국에 대한 사전 상품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일부 면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수입화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화물목록, 상업송장, 화물송장, 포장 명세서 등이 있다.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에서 도착 한 시간 전에 관세청에 화물내용을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비행기 착륙 이전에 통관절차가 처리된다. 해양화물에 대해서는 위험지표에 따라 세관조치를 취한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몇몇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의 선박들은 별도의 통관절차가 없다. 도로운송화물들이 홍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네 개의 검문소 중 하나를 지나쳐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검문 시간은 평균 약 30초이다. 홍콩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한 선적 전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정한 3개의 서비스 제공자들 (Service Providers)에게 전자 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때의 수수료는 SP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에 명시된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2013년 총2,100만건 처리)



수입신고에 들어가는 비용은 홍콩정부의 관세·물품세국 및 홍콩 통계청에게 지원되며 홍콩무역·개발위원회 주최의 여러 활동들을 포함한 무역 촉진활동들에도 지원된다.

홍콩 정부는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적용시켰다. 2007년 7월에 관세·물품세국은 Mutual Recognition of Reputable Enterprises to Expedite Customs Clearance Scheme을 통해 중국 본토로부터 들어오는 선박 중 일부 믿을만한 선박들에 대한 조사를 면제시켰다.

도로운송화물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세·물품세국은 2010년 5월에 전자 도로화물시스템(ROCAR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세·물품세국은 컴퓨터상으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특정 조사 대상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업자들은 홍콩-중국 국경을 건널 때에 더욱 원활한 통관절차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었다. ROCARS는 201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세·물품세국은 이로 인해 복합 수송화물에 대한 더욱 원활한 통관절차를 가능케 하였다.

2012년 4월에 개시된 관세/물품세국 하의 홍콩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안전기준을 충족한 홍콩 내의 기업들은 공인경제주체(AEO)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른 관세행정기관과의 상호승인을 통해 홍콩 내의 AEO들이 해외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BT(기술장벽)

홍콩의 시험/공인위원회 (Hong Kong council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은 정부의 인증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HKCTC는 공인인증산업, 기업, 전문기구, 정부 관련부서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정부는 HKCT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과 여석 개의 선택된 산업(중국산 의약품, 음식, 건축자재, 귀금속, IT기술, 환경보호)에 대한 시험 및 인증서비스 개발을 위한 3년 산업개발계획을 적용중이다. 여기에는 중국 약초에 대한 정품테스트, 식료품에 대한 위생관리 인증,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 등이 포함되어있다. 2012년 5월에는 환경보호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페널을 도입했다.

중국 본토는 점진적으로 홍콩의 테스트기관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고 이제는 홍콩에서 생산공정을 거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System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한 홍콩-중국테스트 기관 공동검사를 허가했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3년에 8,339건의 임의 추출조사를 진행하였고 1,147건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부 연구소는 관세/물품세국이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하는 데에 조언을 제공한다. 2013년에 정부연구소는 총 33,855차례의 물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서 물품의 품질 및 수량이 정확한지 또한 검사하였다.

제품표시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은 판매자가 제품에 대하여 허위묘사, 과장광고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정의하였다. 관세/물품세국은 이 법안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방송/통신상의 광고에 대해서는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관련법을 집행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이 홍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의 1.9%에서 2009년의 3.9% 사이의 낮은 비율을 유지한다. 1997년에 홍콩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의 조인국이 되었다. 홍콩에서 GPA는 모든 정부부서들



의 130,000SDR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축 서비스 계약 그리고 비정부 공공기관들의 400,000SDR 이상의 물품·서비스 구매, 5,000,000SDR 이상의 건축서비스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정부 정부조달의 원칙은 공공책임, 가치 있는 지출, 투명성 그리고 개방되고 공정한 경쟁이다. 입찰을 평가할 때 정부는 가격 경쟁력 이외에 신뢰성, 요구사항 충족, 질적 우수성, 그리고 필요시에는 애프터 서비스 또한 고려한다. 홍콩정부는 이러한 원칙과 고려요소들은 WTO GPA의 국내외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추구하고 일치한다.

정부조달은 Stores and Procurement Regulations(SPR)에 의해 관리된다. SPR은 정부나 정부를 대신한 공인이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나 건축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Government Logistics Department(GLD)는 홍콩정부의 주 조달자임과 동시에 몇몇 비정부기관들의 특정 물품들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건축서비스는 정부의 개발부의 감독 하에 조달된다. 개발부는 전반적인 지침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143만HKD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일반적인 서비스나 400만HKD을 초과하는 건설서비스는 공개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조달된다. 기술적 복잡성과 비용의 규모로 인해 이러한 선발적 입찰은 주로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한적 입찰은 드문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6-9 기간 동안 모든 정부 계약들의 63%는 선발적(selective) 입찰을 통해, 14%는 제한적(single or restricted) 입찰을 통해 결정되었다.

서비스/투자

홍콩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 규제제도가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으며, 홍콩의 로컬 기업들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나 자본소득의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송금

은 자유로우며, 외환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허용되며, 이는 홍콩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래의 표는 외자기업에 대한 제한이 있는 분야이다.

민간항공	일반적으로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홍콩에서 활동하는 국제 항공사들에 대한 규제는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맞는다. 홍콩과 중국내 다른 지역 간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허가는 홍콩정부와 중국정부의 협의를 통해 중국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텔레비전 방송	홍콩 내의 무료 TV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이 홍콩의 TV방송 라이선스를 2% 이상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의사결정 참여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라디오 방송	홍콩 내의 라디오 방송 라이선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홍콩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폭넓은 세금 감면혜택은 없다. 그러나 홍콩은 여러 나라들과 포괄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서 홍콩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항으로서 홍콩은 합법적인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수출입 서류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물품들은 홍콩에 들어오거나 홍콩으로부터 나갈 때 허가가 필요 없다. 허가는 홍콩이 국제적 의무(공중보건, 보안, 환경, 지적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를 준행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위험성프로파일링을 통해 통관수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Road Cargo System(ROCARS)을 운용한다. 이를 위해 홍콩 내로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나 관련 직원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전자상으로 제출해야한다. 이로 인해 육지를 통해서 홍콩을 출입하는(일부 검사 대상 차량 제외)차량들은 사실상 관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Intermodal Transshipment Facilitation Scheme(ITFS)는 공지, 해지의 복합수송상의 통관수속을 간소화한다. ITFS에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 관세/물품세국에 의해 승인받은 전자자물쇠와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한 수송차를 통해 운반되는 화물들은 출입지점 중 한 곳에서만 검사를 받는다.

정부의 전자거래서비스는 무역업자들이 전자상으로 특정 무역 관련 서류들을 제출도록 하여 효율적, 환경친화적으로 서류작업을 한다.

<참고자료>

- Hong Kong Trade Policy Review (2010, WTO)
- Hong Kong 2013 (2014, 홍콩통계청)
- 상무경제발전부 등 홍콩정부 홈페이지